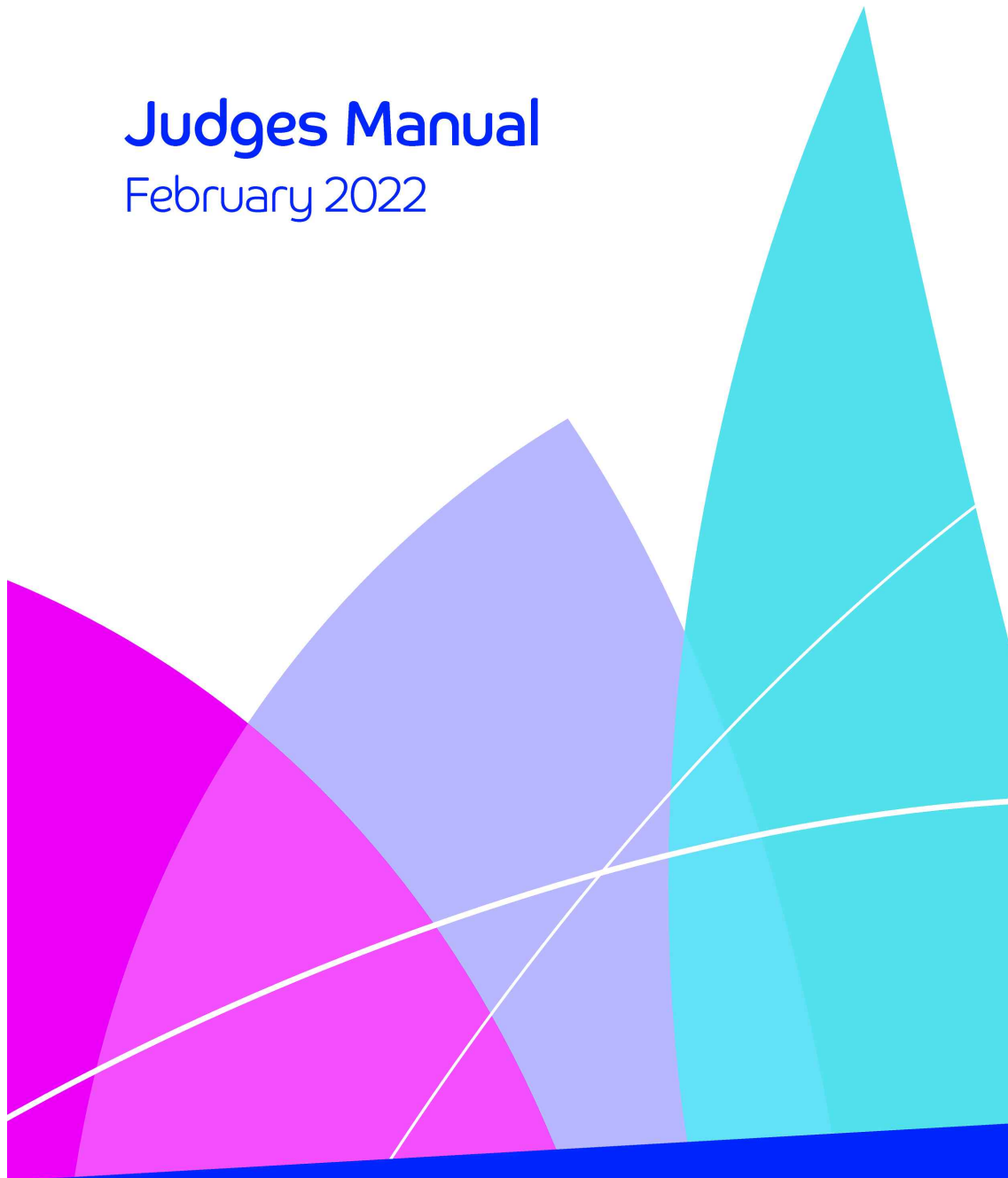


# Judges Manual

February 2022



sport / nature / technology



World Sailing

## Preface 서문

This manual is designed to be a learning tool for judges who are gathering knowledge and experience with the aim of becoming International Judges. It also should be a reference guide for existing International Judges, with the aim of contributing to consistency in judging all over the world.

이 매뉴얼은, 국제심판이 되려는 목표를 갖고 지식과 경험을 수집하는 심판들을 위한 교육용 교재로 디자인 되었다. 또한 현재 국제심판인 사람에게는 참고할 가이드가 되는데, 심판들이 판결함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일관성을 갖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Since our sport is constantly evolving, this Manual must be a living document that is kept up to date. Contributions for improvements and new subjects showing current practice, are welcome. Updated versions will be posted on the World Sailing website as changes and additions are made.

세일링은 계속 발전하고 있기에, 이 매뉴얼도 최신 상태에 맞게끔 살아있는 문서 (변화를 반영하는 문서)가 되어야한다. 개선점이나 현재관행을 반영하는 새로운 주제에 대한 의견제시를 언제나 환영한다. 변경이나 추가되는 것이 있을 경우, 업데이트버전은 WS 홈페이지에 게시될 것이다.

The January 2021 version reviewed all chapters, with revisions and updates to most, elimination of some material, and introduction of new material. All references to the Racing Rules of Sailing were updated to the 2021-2024 version and references to Regulations of World Sailing were updated to the version with changes approved in November 2020.

2021년 1월 버전은 모든 챕터에 대하여, 개정도 하였고, 가장 최신 내용으로 업데이트도 하였고, 어떤 내용은 없었으며, 새로운 내용을 추가도 하면서 모든 것을 검토하였다. 이 매뉴얼의 모든 것은 RRS(2021-2024 버전)과 WS Regulation(2020년 11월 승인된 변경을 포함한 최신 버전)을 참고했다.

We thank the International Judge instructors, the International Judges Subcommittee and other International Judges who contributed to this version of the Manual.

‘국제심판 강사(IJ Instructor)’와 ‘국제심판 소위원회’ 및 이 버전의 매뉴얼에 공헌한 다른 국제심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Andres Perez, Chairman 위원장

World Sailing International Judges Sub-Committee 월드세일링 국제심판 소위원회  
January, 2021

### Update January 2022

The International Judges Sub-committee gathers comments and recommendations about the contents of the Manual. The January 2022 version provides five updates: 국제심판 소위원회는 이 매뉴얼의 내용에 대한 비평과 추천의견을 취합하였다. 2022년 1월

버전은 아래 5개의 부분이 업데이트되었다.

- A.2 The definition of an umpire  
엄파이어에 대한 정의
- C.10 Procedures for the international jury to review a panel's decision in rule N1.4(b)  
규칙 N1.4(b)에 있는 패널의 판결을 재심하는 국제심판단의 절차
- E.7 Procedures for withdrawing a protest  
항의를 취소하는 절차
- F.4 Procedures for withdrawing a protest  
항의를 취소하는 절차
- F.22.8 Improper action or omission in rule 62.2  
규칙 62.2의 부적절한 조치 또는 임무의 누락
- K.3 Includes World Sailing Development Rule DR21-01 Alternative Starting Penalty  
<월드세일링 개발 규칙>인 DR21-01 <스타트 벌칙의 대체방법>

We thank the World Sailing Race Officials who have contributed to making this Manual better.

이 매뉴얼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월드세일링 운영요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Andrus Poksi, Chairman 위원장

World Sailing International Judges Sub-Committee 월드세일링 국제심판 소위원회

January, 2022

**Note of usage:**

**사용 시 참고사항:**

For clarity and brevity, this manual uses the feminine gender in the historical sense when referring to a boat and the masculine gender when referring to a person.

정확함과 간결함을 위하여, 또한 옛 부터 쓰던 관습대로, 이 매뉴얼은 보트를 언급할 때는 여성(관사/명사)을 쓰고, 사람에는 남성(관사/명사)을 쓴다.

However, the members of the judging community have found that a person's gender plays no part in determining his or her abilities

그러나, 우리 심판들은 모두, 어떤 사람의 성별이 그/그녀의 능력을 결정짓는 데는 큰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 World Sailing Judges Manual, 2022

## Contents

- A Race Officials at Events - Terminology  
대회의 운영요원 - 용어
- B Qualities and Skills of a Judge  
심판의 자격과 능력
- C protest committees  
항의위원회
- D Best Practice before and at the Event  
대회 전과 대회 중의 모범적 실무 지침
- E Protest Committee Administration at the Event  
대회에서 항의위원회의 행정업무
- F The Hearing  
청문
- G Rule 2 and Rule 69
- H Arbitration 중재
- I On the Water Judging Including Rule 42 and Appendix P  
규칙 42와 부칙 P를 포함한 수상에서의 판결
- J Judges and Youth Sailors 심판과 청소년 선수
- K Judging Oceanic and Offshore Raing  
대양 및 외양 경기 심판
- L Judging Radio Sailing  
무선세일링 심판
- M Sailor Categorization - World Sailing Regulation  
선수분류 - 월드세일링 규정

## A Race Officials at Events - Terminology

### 대회의 운영요원 - 용어

Contents 목차	Page
A.1 Introduction 머리말	A 1
A.2 Meaning of Terms 용어의 의미	A 1
A.3 World Sailing Race Officials 월드세일링 운영요원	A 5
A.4 Application for Appointment as International Judge 국제심판 임명 신청	A 5
A.5 References for International Judge Applications 국제심판 신청에 대한 참고 자료	A 6

#### A.1 Introduction 머리말

The primary role of a judge in sailing is to ensure that the competition is governed by the racing rules of sailing and the policies of World Sailing as the international governing body. The role is unique in many ways. First, a judge is required to determine disputes between competitors. To do this, and to be seen to be doing it fairly and according to the rules, a judge must be thoroughly familiar with the Racing Rules of Sailing and any other rules that govern the event, including Class rules, World Sailing Codes, the IRPCAS or any national prescriptions.

세일링에서 심판의 주요 역할은 대회가 세일링 경기규칙과 국제운영기구인 월드세일링의 방침에 따라 운영되게 하는 것이다. 심판의 역할은 여러 면에서 독특하다. 첫째, 심판은 선수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그리고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이기 위해, 심판은 클래스규칙, 월드세일링 코드, IRPCAS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또는 각 국가협회 규정을 포함하여 요트경기규칙과 대회에서 사용되는 다른 모든 규칙들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한다.

Second, a judge is often called upon to assist in many other critical aspects of a regatta, such as reviewing the notice of race and sailing instructions, deciding issues of measurement and rating rule compliance issues, watching for rule infringements, enforcing propulsion rules on the water, and much more.

둘째로, 심판은 종종 대회공고 및 범주지시서의 검토, 계측 및 레이팅 규칙 준수 문제에 대한 결정, 규칙 위반 감시, 수상에서의 불법추진에 대한 적발 등과 같은 대회의 많은 다른 중요한 측면을 지원하도록 요청받는다.

Last, and by no means of least importance, a judge is asked to make decisions concerning the fairness of the competition. To do these things well is a challenging and sometimes difficult task.

마지막으로, 심판은 경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잘 하는 것은 도전적이며 때로는 어려운 임무이다.

People who work to acquire the necessary knowledge and experience to accept this responsibility make a large contribution to our sport.

이러한 책임을 받아들여 그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쌓기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 세일링 스포츠에 큰 공헌을 한다.

This chapter begins with terminology and descriptions of the race officials who serve our sport, explaining the functions that they serve. The chapter then describes the World Sailing process for the appointment of International Judges.

이 장에서는 우리 세일링 스포츠에 봉사하는 운영요원들에 대한 용어와 설명으로 시작하고, 그들이 수행하는 역할을 설명한다. 이 장에서는 국제심판의 임명을 위한 월드세일링의 과정을 설명한다.

## **A.2 Meaning of Terms 용어의 의미**

Racing Rules of Sailing (the rules or RRS)

세일링 경기규칙 (규칙 또는 RRS)

The rules used for racing under the jurisdiction of World Sailing.

월드세일링의 관할 하에 경기에 사용되는 규칙.

World Sailing Codes    월드세일링 코드

These World Sailing Regulations have the status of a rule:

아래의 월드세일링 규정들은 규칙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Advertising Code    광고 코드

Anti-Doping Code    도핑-방지 코드

Betting and Anti-Corruption Code    도박 및 부패-방지 코드

Disciplinary Code    징계 코드

Eligibility Code    자격 코드

Sailor Categorization Code    선수분류 코드

They are not included in the Racing Rules of Sailing because they can be changed at any time during the four-year publishing cycle of the rules. Changes are posted on the World Sailing website at [www.sailing.org](http://www.sailing.org) and through member national authorities.

이 규칙들은 4년의 발행주기 동안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세일링 경기규칙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변경 사항은 월드세일링 웹사이트 [www.sailing.org](http://www.sailing.org)와 회원국가협회를 통하여 게시된다.

## **Case Book (the Cases) 케이스북 (판례 사례집)**

World Sailing publishes The Case Book based upon appeals and questions submitted to the Racing Rules Committee. They clarify the meaning of a rule or answer questions about conflicting interpretations.

월드세일링은 경기규칙위원회에 제출된 상고 및 질문을 기반으로 판례 사례집을 발행한다. 케이스북은 규칙의 의미를 명확히 하거나 상충되는 해석에 대한 질문에 답한다.

The rules, changes to the rules, and Cases are approved by the World Sailing Racing Rules Committee on behalf of the Council. The Regulation on Racing Rules Administration indicates that the Racing Rules of Sailing and World Sailing Cases are authoritative interpretations and explanations of the rules for all racing. Judges are required to follow World Sailing rules and Cases when interpreting the rules.

규칙 그리고 규칙의 변경 사항과 판결 사례는 평의회(WS의 최종 의사결정 위원회)를 대신하여 월드세일링 경기규칙위원회에서 승인된다. 경기규칙 관리에 관한 규정은 세일링 경기규칙 및 월드세일링 판결 사례집이 모든 경기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 및 설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심판은 규칙을 해석할 때 월드세일링 규칙 및 판결 사례를 따라야 한다.

## Question and Answer (Q&A) 질의 응답(Q&A)

The World Sailing Racing Rules Q&A are published on the World Sailing website as a joint responsibility of the Racing Rules Committee and Race Officials Committee.

월드세일링 경기규칙 Q&A는 경기규칙위원회와 운영요원위원회의 공동 책임으로 월드세일링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Q&A is intended to provide a service to Race Officials, Member National Authorities and World Sailing Class Associations, who may submit questions through World Sailing concerning the Racing Rules of Sailing (RRS). The answers are not authoritative interpretations and explanations of the RRS but represent an important service by providing carefully considered opinions of experienced Race Officials.

Q&A는 세일링 경기규칙 (RRS)과 관련하여 운영요원, 회원 국가협회 및 월드세일링 클래스협회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이들은 월드세일링을 통하여 RRS와 관련되는 질문을 제출할 수 있다. 그 답변은 RRS에 대한 권위있는 해석 및 설명은 아니지만, 경험이 풍부한 운영요원들이 신중히 고려한 의견을 제공하는 중요한 서비스이다.

These Q&As are further considered for inclusion in the World Sailing Case Book and the Call Books for Match Racing and Team Racing as part of the continual process of updating the rules every four years.

이러한 Q&A는, 4년마다 갱신되는 규칙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과정의 일환으로, 월드세일링 판결 사례집과 매치레이스 및 팀레이스 콜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가로 검토되고 있다.

This service is not to be used as a substitute appeal process but is simply to provide considered opinions on questions on the RRS.

이 서비스는 상고 절차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RRS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심사숙고한 의견

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World Sailing 월드세일링**

The international body governing the sport of sailing is World Sailing. It comprises member national authorities, class associations, and other affiliated organizations. Among the many responsibilities and programs of World Sailing is the training and certification of International Race Officials, which include International Judges, Umpires, Race Officers, Measurers, Classifiers and Technical Delegates.

세일링 스포츠를 관장하는 국제기구인 월드세일링이며, 가맹 국가협회, 클래스협회, 그리고 다른 산하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월드세일링의 많은 책임과 프로그램 중에는 국제심판, 국제업파이어, 운영요원, 계측관, 등급담당관 및 운용요원 대표자 (운영요원 전체를 대표하면서 위원회간에 의견충돌이 있을 경우, 이를 중재하는 역할)를 포함한 국제 운영요원의 훈련과 인증이 있다.

## **National Authority 국가협회**

The national authority is the organization that governs the sport of sailing within its jurisdiction. It is a member of World Sailing as well. Many national authorities have additional responsibilities, such as cruising and powerboat racing.

국가협회는 관할 구역 내에서 세일링 스포츠를 관장하는 조직이며, 월드세일링의 일원이다. 많은 국가협회들은 크루징과 파워보트 레이싱과 같은 부가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National authorities often prescribe additional rules to the racing rules. These prescriptions are included as rules governing sailboat racing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national authority by the Sailing instructions. They are rarely invoked for international events, although some national authorities prescribe that some of their prescriptions shall not be deleted.

국가협회는 종종 경기 규칙에 추가적인 규칙을 규정한다. 이 규정들은 범주지시서에 의하여 국가협회의 관할권 내에서 세일보트 경기를 관리하는 규칙으로 포함된다. 비록 일부 국가협회에서는 그들의 자체 규정 중 일부를 삭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국제요트대회에서 이 국가협회 규정들은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Most national authorities appoint a committee to hear appeals by boats or race committees against decisions of protest committees. Appeal procedures vary from country to country through their prescriptions. The highest appeal authority is the national authority under whose jurisdiction the event is held. World Sailing does not hear appeals.

대부분의 국가협회는 항의위원회의 판결에 대한 보트 또는 경기위원회의 상고를 청문하기 위하여 상고위원회를 임명한다. 상고는 자국 규정에 따라 국가마다 다양한 절차를 따른다. 최고 상고 기관은 대회가 개최되는 장소의 국가협회이다. 월드세일링은 상고에 대한 청문을 하지 않는다.



National authorities may submit appeals that they think clarify or help interpret a rule to the World Sailing Racing Rules Committee. If the Committee believes the appeal is beneficial to help understand the rules, it will accept the appeal as a World Sailing Case.

국가협회는 규칙을 명확히 하거나 해석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상고를 월드세일링 경기규칙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경기규칙위원회가 제출 받은 상고를 규칙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그 상고를 월드세일링 판례로 받아들일 것이다.

## **Organizing Authority 주최단체**

The body that plans and runs the event is the organizing authority. It may be a club, a class association, a national authority, World Sailing itself, or a combination of any of these. The organizing authority appoints the race committee. The organizing authority or World Sailing appoints the protest committee or international jury.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조직은 주최단체이다. 그 단체는 클럽, 클래스협회, 국가협회, 월드세일링 자체 또는 이들 중의 조합일 수 있다. 주최단체는 경기위원회를 임명한다. 주최단체 또는 월드세일링은 항의위원회 또는 국제심판단을 임명한다.

## **Race Committee 경기위원회**

The race committee is the committee appointed by the organizing authority to conduct the races. It is responsible for publishing the Sailing instructions and for scoring races. When the organizing authority has not appointed a protest committee or international jury, the race committee is responsible for appointing a protest committee to conduct hearings. Members of the race committee may sit on the protest committee. However, in the hearing of a request for redress alleging an improper action or omission of the race committee, the protest committee should be independent of the race committee because of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If this is not possible, the protests committee shall take into account the conflict of interest and follow the rules to determine how to proceed.

A member of the race committee may not serve as part of an international jury constituted in accordance with Appendix N.

경기위원회는 경기를 진행하기 위하여 주최단체가 임명한 위원회이다. 경기위원회는 범주지시서를 발행하고 채점하는 책임이 있다. 주최단체가 항의위원회나 국제심판단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경기위원회는 청문을 주관할 항의위원회를 임명할 책임이 있다. 경기위원회의 구성원은 항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경기위원회의 부적절한 조치 또는 임무의 누락에 대한 혐의에 따른 구제요청 청문에서, 항의위원회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경기위원회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항의위원회는 이해상충을 고려하여 규칙에 따라 진행방법을 결정한다. 경기위원회 위원은 부칙 N에 따라 구성된 국제심판단의 일원이 될 수 없다.

## **Protest Committee 항의위원회**

The protest committee hears protests, requests for redress and reopening, allegations of misconduct and reports that a support person may have broken a rule. It is appointed by the organizing authority or race committee. It may be independent of the race committee or a subcommittee of the race committee. It may, when meeting the requirements of Appendix N, qualify as an international jury.

항의위원회는 항의, 구제요청과 재청문, 부정행위 혐의 및 규칙 위반 가능성이 있는 지원인력에 대한 보고 등에 대하여 청문한다. 항의위원회의 위원은 주최단체나 경기위원회에서 임명하며, 경기위원회 또는 경기위원회의 소위원회에 속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N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제심판단으로 활동할 수 있다.

## International Jury 국제심판단

An international jury is a protest committee that meets the requirements of rules 91(b) and Appendix N. It is appointed by the organizing authority and subject to approval by the National Authority if required under their Prescriptions. It is completely independent from the race committee and the technical committee and has no members from these committees.

국제심판단은 규칙 91(b)과 부칙 N의 요건을 충족하는 항의위원회이다.

주최단체에 의하여 임명되며, 국가 규정에 따라 필요할 경우 국가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들은 경기위원회 그리고 기술위원회와는 완전히 독립적이며 이들 위원회와는 구성원이 중복되지 않는다.

An international jury is composed of experienced sailors with excellent knowledge of the racing rules and extensive protest committee experience.

Its membership is made up of people from different member national authorities, the majority of whom shall be World Sailing certified International Judges. Provided that it conducts itself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described in Appendix N, as stated in rule 70.5, its decisions shall not be subject to appeal.

국제심판단은 경기규칙에 대한 뛰어난 지식과 광범위한 항의위원회 경험을 갖춘 숙련된 세일러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서로 다른 가맹 국가협회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반수는 월드세일링 공인 국제심판이다. 부칙 N에 기술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을 경우, 규칙 70.5에 명시된 대로, 국제심판단의 판결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없다.

The responsibilities of an international jury include hearing and deciding all protests, requests for redress, and other matters arising under the rules of Part 5. When asked by the organizing authority, the race committee or technical committee, it also advises and assists them on any matter directly affecting the fairness of the competition. It decides questions of eligibility, measurement or rating certificates, and authorizes the substitution of competitors, boats or equipment under the rules. The international jury also decides matters referred to it by the organizing authority, the race committee and the technical committee.

국제심판단의 책임에는 제5장의 규칙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항의, 구제요청 및 기타 문제를 청문하고 판결하는 것이 포함된다. 주최단체나 경기위원회, 기술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경기의 공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도 조언하고 도움을 준다. 자격, 계측 또는 등급 증명서에 대한 요청을 판결하고, 규칙에 따라 선수, 보트 또는 장비의 교체를 승인한다. 또한, 국제심판단은 주최단체, 경기위원회, 기술위원회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도 판결한다.

## **Technical Committee 기술위원회**

The technical committee is appointed by the organizing authority or the race committee of an event to conduct equipment inspection and event measurement as directed by the organizing authority and as required by the RRS. Its functions may include measuring boats and checking compliance to the class rules before the start of the competition and carrying out checks (such as sails set within black bands, distribution of ballast, weight of clothing etc.) during the competition.

기술위원회는 주최단체나 대회의 경기위원회가 임명하며, 주최단체의 지시에 따라, 그리고 RRS가 요구하는대로 장비검사와 계측임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임무에는, 경기 시작 전 보트 계측과 클래스규칙 준수 여부 점검, 경기가 시작된 후 점검(세일의 블랙밴드, 밸러스트 분배, 의류 무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If during a hearing the protest committee is in doubt about the meaning of a measurement rule, it shall refer the question, together with the relevant facts, to an authority responsible for interpreting the rule, and is bound by the authority's decision. The Class Rules Authority is the body that provides final approval of the class rules, their changes and class rule interpretations. Class rule interpretation procedures are defined in World Sailing Regulation, World Sailing Class Associations,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e WS-Class agreement defined in the Regulation. See also the paragraphs on measurement protests in the section The Hearing in this manual.

항의 청문회에서, 항의위원회는 계측규칙의 의미에 의문이 있을 경우, 그 해석에 관하여 권위 있는 기관에 그 사실과 함께 문의하여야 하며, 그 기관의 답변에 따라야 한다.

클래스규칙 단체는 클래스 규칙, 그 변경 및 해석을 최종 승인하는 기관이다. 클래스규칙 해석 절차는 월드세일링 클래스 협정서에 다르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월드세일링 규정과 월드세일링 클래스협회에 명시되어 있다. 이 매뉴얼의 청문회 절에서 계측항의에 대한 내용을 참고할 것.

## **Judge, National Judge, International Judge 심판, 국가심판, 국제심판**

The term 'judge' is used to describe a member of a protest committee. The title 'National Judge' is given to a suitably qualified person by a national authority that runs a program to train national judges. The title 'International Judge' is given by World Sailing to a person who meets the criteria set out in the World Sailing Regulations.

'심판'이라는 용어는 항의위원회 위원을 지칭하는데 사용된다. '국가심판'이라는 명칭은 국가심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가협회에서 알맞은 자격을 갖춘 책임자에게 부여하는 명칭이다. '국제심판'이라는 명칭은 월드세일링에서 월드세일링 규정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부여된다.

## Umpire, National Umpire, International Umpire 엄파이어, 국가엄파이어, 국제엄파이어

An umpire decides the rules on the water in real time during the event.

엄파이어는 경기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수상에서 규칙을 판결해야 한다.

### A.3 World Sailing Race Officials 월드세일링 운영요원

World Sailing created the International Judges Program in 1981 to meet three perceived needs of competitors: first, the need to identify knowledgeable and experienced individuals to sit on protest committees at world championships and other high-profile events; second, the need to ensure that a protest committee at these international events reflects the diverse nationalities and sailing cultures of the competitors; and third, the need to determine the results by the end of the regatta.

1981년 월드세일링은 선수들에게 인지된 세 가지 필요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제심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첫째, 세계선수권대회 및 기타 유명한 대회에서 항의위원회에 걸맞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식별할 필요성; 둘째, 이러한 국제대회의 항의위원회가 참가자의 다양한 국적과 세일링 문화를 반영할 필요성; 셋째, 대회가 끝날 때까지 판결을 내려야할 필요성.

Since then, World Sailing has expanded from the judge training and certification program to include measurers, umpires, race officers, technical delegates and classifiers. Training and certification of race officials for sailing and administrating the Racing Rules of Sailing are recognized as the core purposes of World Sailing.

그 이후로, 월드세일링은 심판교육 및 인증 프로그램에서 계측, 엄파이어, 경기운영관, 대회운영 자문관 및 선수분류담당관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었다. 세일링을 위한 운영요원의 훈련, 인증 그리고 세일링 경기규칙 관리는 월드세일링의 핵심 목적으로 인식된다.

The World Sailing Race Officials Administration Regulation describes the governance of race officials. Race Officials programs are administer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Race Officials Committee. The International Judges program is administered through its Sub-committee, the International Judges Sub-committee. Its responsibilities and terms of references are stated in the World Sailing Regulation, Committees. Regulations and current updates are available at <https://www.sailing.org/documents/regulations/regulations.php>

월드세일링 <운영요원 관리>규정은 운영요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한다. 운

영요원 프로그램은 운영요원위원회의 권한 하에 관리된다. 국제심판 프로그램은 국제심판 소 위원회를 통하여 관리된다. 그 책임과 참고 조건은 월드세일링 규정<위원회>에 명시되어 있다. 규정 및 최신판은 <https://www.sailing.org/documents/regulations/regulations.php>에 있다.

## A.4 Applications for (Re-)Appointment as International Judge 국제심판 (재)임명 신청

World Sailing Race Regulation, Race Officials Administration, describes the governance of race officials. The requirements for appointment as an International Judge, along with the application procedure, are presented in World Sailing Regulation, Officials, and in the World Sailing publication 'Race Official Roles, Qualifications and Competences', the Application Document for World Sailing International Race Officials.

<월드세일링 운영요원 관리> 규정은 운영요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한다. 국제심판 임명요건은 그 신청절차와 함께 <월드세일링 운영요원>규정, 요원, 그리고 월드세일링 국제 운영요원을 위하여 <운영요원의 역할, 자격 및 권한>에 나와있다.

Resource papers for becoming an International Judge are available at [http://www.sailing.org/raceofficials/internationaljudge/become\\_a\\_judge.php](http://www.sailing.org/raceofficials/internationaljudge/become_a_judge.php)  
국제심판이 되기 위한 문서 자료는 다음 웹사이트에 있다.  
[http://www.sailing.org/raceofficials/internationaljudge/become\\_a\\_judge.php](http://www.sailing.org/raceofficials/internationaljudge/become_a_judge.php)

The specific qualifications required for a candidate applying to become an International Judge can be found in the most recent versions of the Regulation, Officials and the World Sailing publication, 'Race Official Roles, Qualifications and Competence'.

국제심판이 되려고 지원하는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월드세일링에서 발행한 <운영요원의 역할, 자격 및 역량에 대한 가장 최신의 버전에서 찾을 수 있다.

In preparation for the International Judges test, candidates are encouraged to review the list of English words that are used in the test.  
국제심판 시험에 대비하여, 응시자들은 시험에 사용되는 영어단어 목록을 검토하도록 권장된다.

To evaluate whether the events where one has served are considered to be Principal Events, also consult 'Race Official Roles, Qualifications and Competences'. 자신이 참가한 대회가 주요 대회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려면 <운영요원의 역할, 자격 및 역량>을 참고할 것.

The first-application package for International Judges is available on-line at [http://www.sailing.org/raceofficials/internationaljudge/become\\_a\\_judge.php](http://www.sailing.org/raceofficials/internationaljudge/become_a_judge.php)

국제심판들을 위한 최초 신청서 패키지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http://www.sailing.org/raceofficials/internationaljudge/become\\_a\\_judge.php](http://www.sailing.org/raceofficials/internationaljudge/become_a_judge.php)

World Sailing contacts International Judges during the year in which they are due to renew their certification, sending them the application package for renewal. 월드세일링은 자격 갱신이 예정된 해에 국제심판들에게 연락하여 갱신 신청서 패키지를 보낸다.

## A.5 References for First International Judge Applications

### 최초의 국제심판 신청에 따른 평가서

First-time applications must be supported by references describing the judge's performance at an event. Prior to the event, the applicant must request the jury chairman for the event to provide the reference. The jury chairman will complete the reference over the course of the event and submit it to World Sailing. There is an Event Reference Manual for the Applicant and an Event Reference Manual for the Referee to guide this process. They describe the requirements and timelines for these references. They are available on the World Sailing website at:

[http://www.sailing.org/raceofficials/internationaljudge/become\\_a\\_judge.php](http://www.sailing.org/raceofficials/internationaljudge/become_a_judge.php)

최초의 국제심판 신청서에는 대회에서 그 심판의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신청자는 해당 대회의 심판위원장에게 평가서를 요청하여야 한다. 심판위원장은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평가서를 완성하여 월드세일링에 이를 제출한다. 신청자를 위한 대회평가 매뉴얼과 이 진행과정을 안내하는 심판을 위한 대회평가 매뉴얼이 있다. 그 문서에는 평가에 대한 요구사항과 일정이 담겨 있다. 그 문서들은 아래의 월드세일링 웹사이트에서 열람 가능하다.

[http://www.sailing.org/raceofficials/internationaljudge/become\\_a\\_judge.php](http://www.sailing.org/raceofficials/internationaljudge/become_a_judge.php)

#### Guidance for the Candidate and the Jury Chairman on References

##### 평가에서 후보자 및 심판위원장을 위한 지침

At the conclusion of the event the jury chairman will complete the form at the event, discuss the assessment with the applicant, and submit it immediately to World Sailing at [raceofficials@sailing.org](mailto:raceofficials@sailing.org).

대회가 끝나면 심판위원장은 평가서를 작성한 다음, 신청자와 평가에 대해 논의한 후, 즉시 월드세일링 [raceofficials@sailing.org](mailto:raceofficials@sailing.org)으로 평가서를 제출한다.

The jury chairman should be aware of the Guidance for the Jury Chairman.

심판위원장은 <심판위원장을 위한 지침>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The applicant is entitled to a copy of the form, which may be requested directly from the jury chairman or the World Sailing office once it is received.

신청자는 평가서의 사본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심판위원장에게 직접 요청하거나 평가서가 월드세일링에 도착 후 사무소에 요청할 수 있다.

## B Qualities and Skills of an International Judge

### 국제심판의 자격과 능력

Contents 목차	Page
B.1 Code of Behavior 행동 강령	B 1
B.2 Conflict of Interest 이해 상충	B 2
B.3 Fitness to Serve 심판활동에 대한 적합성	B 3
B.4 Allegation of Inadequate Conduct or Competence 부적절한 행위 또는 월권에 대한 혐의	B 4

#### B.1 Code of Behavior 행동 강령

World Sailing International Judges are among the most exposed officials of the sport. It is therefore essential that judges behave with the highest degree of competence, propriety, and integrity. A judge should never do anything that may bring the sport into disrepute.

월드세일링 국제심판은 이 스포츠에서 가장 많이 활동하는 요원 중 한 명이다. 그러므로 심판은 가장 높은 수준의 능력, 예절, 그리고 진실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스포츠의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Specifically, International Judges are expected to:

구체적으로, 국제심판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maintain a high level of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the racing rules, cases, procedures, and World Sailing policies;  
경기 규칙, 판례, 절차 및 월드세일링 방침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와 적용을 유지할 것;
- ensure that each decision is based upon the rules and principles of fairness and objectivity, is made with care and without prejudice;  
각각의 판결이 규칙에 근거를 두고 공정성과 객관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편견 없이 이루어지도록 확인할 것;
- uphold the confidentiality of protest committee deliberations during and after the regatta;  
대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그리고 대회 이후에 항의위원회 심의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것;
- be polite, courteous, open-minded, and patient with colleagues, competitors, regatta officials, team officials, coaches, support persons and hosts;  
동료심판, 선수, 대회 운영요원, 각 팀의 임원, 코치, 지원인력 및 주최자에게 공손하고, 정중하고, 개방적이며 인내심을 가질 것;
- respect cultural differences in colleagues, competitors, regatta officials, team officials, coaches, support persons and hosts;

동료심판, 선수, 대회 운영요원, 각 팀의 임원, 코치, 지원인력 및 주최자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할 것;

- declare ant conflict of interest before accepting a protest committee invitation, and thereafter, declare ant change of circumstance that might become a new conflict of interest.(See World Sailing Regulation-Conflict of Interest);  
항의위원회의 초청을 수락하기 전에 이해 상충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 후에 새로운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변경된 상황을 분명히 알릴 것; (월드세일링 규정-이해상충 참고).
- plan to arrive at the event on time and remain until after the last protest issues are resolved;  
대회에 정시에 도착하도록 미리 계획하고 마지막 항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남아 있을 것;
- incur only expenses that are necessary, and when expenses are reimbursed, claim only legitimate and essential out-of-pocket costs, unless any other arrangement has been agreed with the organizing authority;  
시합 중 필요한 경비만 발생시키며, 비용을 정산할 때에는 해당 대회의 조직위원회와 다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합법적이고 필수적인 비용만 청구할 것;
- be on time and wear appropriate clothing on the water and ashore;  
제 시간에 현장에 있어야 하며, 수상 그리고 육상에서 적절한 옷을 입을 것;
- refrain from smoking in the protest committee room, other buildings and areas on the regatta site where smoking is prohibited and while judging on the water;  
항의위원실, 기타 건물 및 흡연이 금지된 대회장 내의 구역과 수상에서 심판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흡연을 자제할 것;
- abstain from consuming alcohol before or during a hearing and while afloat. Even if a meal is eaten before the hearings, alcohol must be avoided. Judges must never become inebriated during an event.  
청문 전이나 청문 도중 그리고 해상에 있는 동안에는 술을 금할 것. 또한 청문 전에 식사를 하더라도 반드시 술을 피해야 하며, 심판들은 대회기간 중에 절대 만취해서는 안된다.

A Judge who does not practice this code of behavior risks the termination of his appointment.

이 행동 강령을 따르지 않는 심판은 임명이 취소될 수 있다.

## B.2 Conflict of Interest 이해 상충

In the context of race officials serving at a regatta, a conflict of interest exists as stated in Definition 'Conflict of Interest' in the Racing Rules of Sailing.



운영요원들이 대회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이해 상충은 세일링 경기규칙의 정의 <이해 상충>에 명시된 바와 같이 존재한다.

World Sailing has published documents that Race Officials should consult to determine if they have a conflict of interest with regard to serving at a regatta. They are available on the World Sailing website at:

월드세일링은 운영요원들이 대회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해 상충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참고하여야 할 문서들을 발간하였으며 그 문서들은 월드세일링 웹사이트에 있다:

[www.sailing.org/raceofficials/conflict-of-interest.php](http://www.sailing.org/raceofficials/conflict-of-interest.php)

- Racing Rules of Sailing, Definition ‘Conflict of Interest’  
세일링 경기규칙 - ‘이해 상충’의 정의
- World Sailing Regulation - Conflict of Interest  
월드세일링 규정 - 이해 상충
- World Sailing ‘Race Officials Committee Guidelines for Assessing a Conflict of Interest for Race Officials’  
월드세일링 ‘운영요원을 위한 운영요원위원회의 이해 상충 평가 지침’
- Constitution Committee interpretations  
정관위원회의 해석

### B.3 Fitness to Serve

#### 심판활동에 대한 적합성

International Judges are expected to provide the services that are needed at the type of event where they serve. Before accepting an invitation, it is your responsibility to understand the requirements of the event and your ability to perform the necessary functions. There is a range of activities expected of a judge, not all of which are necessary at each event.

국제심판들은 그들이 참여하는 대회 유형에 따라 필요한 심판활동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초청을 수락하기 전에 대회의 요구사항과 자신의 능력을 이해하고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다. 심판에게 기대되는 다양한 활동이 있으며, 대회마다 모든 활동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Function at the event 대회에서의 기능	Necessary skills 필요한 기술
Hearings 청문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eading, writing and speaking with the appropriate terms, typically in English 일반적으로 영어로 된 적절한 용어를 읽고, 쓰고, 말하기</li> <li>• adequate vision and hearing, aided if necessary 적절한 시력과 청력(필요한 경우 보조장치 활용)</li> <li>• strong reasoning ability and memory for rules analysis and making decision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칙분석 및 판결을 위한 강력한 추론 능력과 기억력</li> <li>assessing and writing both facts and decisions for protests and requests for redress 항의와 구제요청에 대한 판명된 사실과 판결문 작성 및 평가</li> <li>writing allegations and decisions for rule 69 hearings 규칙 69조 청문에 대한 혐의제기 및 판결문 작성</li> </ul>
<p>Going afloat 수상에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perating small powerboats 소형 파워보트를 능숙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li> <li>mobility necessary to transfer from dock to boat and from boat to boat (sea legs) 선창에서 보트로, 보트에서 보트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기동성(갑판 위를 비틀거리지 않고 걷는 능력)</li> <li>agility to maintain one's balance afloat 균형을 유지하는 민첩성</li> <li>boat positioning to observe racing without interfering, considering the sailing characteristics of the class of boats 각 클래스의 범주 특성을 고려하여, 경기를 방해하지 않고 관찰할 수 있는 보트 위치 선정</li> <li>use of appropriate communication protocol on VHF (often a license is required) and private-channel radios VHF(종종 자격증이 필요함) 및 개인 무전기를 사용할 때 적절한 통신용어 사용</li> <li>physical fitness to spend long days afloat in any conditions 어떠한 해상 조건에서도 장시간 버틸 수 있는 체력 조건</li> <li>physical fitness to rescue partner from overboard 물에 빠진 파트너를 구조할 수 있는 체력 조건</li> <li>concentration to follow the race and record any issue that might affect the race or result in a hearing 경기코스를 따라다니면서 경기나 항의청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기록할 수 있는 집중력</li> </ul>
<p>Judging rule 42 under Appendix P 부칙 P에 따른 규칙 42 판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ee above 'Going afloat' 위의 '수상에서'를 참고할 것</li> <li>a thorough understanding of rule 42, class-specific common kinetics, and the procedures for Appendix P 규칙 42, 각 클래스별 일반적인 위반 동작, 부칙 P의 절차에 대한 철저한 이해</li> <li>knowledge of class-specific changes to rule 42 규칙 42에 대한 클래스별 변경에 대한 지식</li> <li>boat positioning for judging kinetics while minimizing the inconvenience to racing boats 경기 중인 보트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하면서, 경기하는 보트의 위반 동작을 찾아낼 수 있는 심판 보트의 위치 선정</li> </ul>
<p>Going Afloat Fast Flee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ee above 'Going afloat'</li> </ul>

수상에서 (속도가 빠른 플리트)	위의 '수상에서'를 참고할 것 • ability to withstand fast trips throughout the course, in any conditions 어떤 상황에서도 코스 전체의 빠른 움직임을 견딜 수 있는 능력 • continued vigilance for fast-approaching boats and boats that could gybe or tack onto a collision course with you 심판 보트로 빠르게 접근하는 보트 그리고 태킹 또는 자이빙하여 심판 보트와 충돌할 수 있는 경기 중인 보트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
Windsurfers/Kiteboards 윈드서핑/카이트보드	• see above 'Going afloat' 위의 '수상에서'를 참고할 것 • knowledge of rule changes in relevant Appendix 관련 부칙의 규칙 변경에 대한 지식 • Knowledge of specialized routes for driving the course 경기코스를 운전하기 위한 특정한 루트에 대한 지식
Oceanic/Long-distance Race 대양/장거리 경기	• thorough understanding of IRCAS and WS Offshore Special Regulations IRCAS 및 WS <외양 특별 규정>에 대한 철저한 이해 • knowledge of navigation calculations, tracking systems, etc. 항로 계산, 항적 추적 시스템 등에 대한 지식 • modified protest procedures 수정된 항의 절차 • discretionary penalty system (time, stop, stay) 임의재량벌칙 시스템(시간, 정지, 체제)
Direct Judging and Umpiring 즉결심판 및 엠파이어 방식	• see above 'Going afloat' 위의 '수상에서'를 참고할 것 • a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fleet umpiring rules and procedures that are in effect 유효한 플리트 엠파이어 방식 규칙과 그 절차에 대한 철저한 이해 • boat positioning for umpiring medal races and for direct judging of fleet racing 메달레이스 엠파이어 방식과 플리트 경기의 즉결심판을 위한 심판 보트 위치에 대한 지식 • making rapid decisions on breaches of Part 2 of the rules <제2장>의 규칙 위반에 대한 신속한 판결 • see above 'Judging rule 42 under Appendix P', if appropriate 해당되는 경우, 위의 '부칙 P에 따른 규칙 42 판결' 참고
Umpiring radio sailing 무선 세일링 엠파이어 방식	• a thorough understanding of Appendix E and its procedures 부칙 E 및 그 절차에 대한 철저한 이해 • making rapid decisions on breaches of Part 2 of the rules <제2장>의 규칙위반에 대한 신속한 판결 • physical fitness necessary to stand and move along

	<p>the pier for long days of competition  장시간의 경기에, 서 있는 상태로 방파제나 교각을 따라 이동하는데 필요한 체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pending long days outdoors in any conditions  어떤 상황에서도 야회에서 장시간을 버틸 수 있는 체력</li> </ul>
--	--

Judges must assess their own competencies realistically when deciding if they can comply with all the requirements necessary to serve at an event. Accepting an invitation to an event when they cannot serve properly, will affect the rest of the protest committee and, eventually, the competitors. The self-assessment table below helps judges evaluate their abilities relevant to requirements of different kinds of events:

심판은 대회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결정할 때 자신의 역량을 현실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회 초청을 수락하면 나머지 항의위원회 위원들은 물론, 최종적으로 선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 있는 자체-평가표는 심판들이 서로 다른 종류의 대회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견비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된다.

Level of my Abilities 능력 수준			
Requirements of the Event 대회 요구사항	Not Yet/ Not Now 아직 아님/ 지금은 아님	Developing 개발중	Competent 능숙함
Hearings 청문에서			
Going Afloat 수상에서			
RRS 42 Appendix P 부칙 P에 따른 규칙 42			
Direct Judging 즉결심판			
Windsurfers 윈드서핑			
Kiteboards 카이트보드			
Radio sailing 무선세일링			

As one's capabilities might change over time, the type of event that one is suited to judge may change as well. This means that the type of event that you could

judge might change over the course of your career. Therefore: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능력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심판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대회의 종류도 바뀔 수 있다. 이것은 당신이 심판활동을 할 수 있는 대회의 종류가 당신의 경력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 if you have temporary or permanent physical or cognitive limitations, do not accept the invitation if you cannot fulfill the required protest committee functions:

당신이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신체적 또는 인지적 제한이 있어, 항의위원회에게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초청에 응하지 말것;

- if you have special needs that require accommodating, inform the chairman of the protest committee or the representative of the organizing authority who takes care of officials, prior to accepting the invitation;

조정이 필요한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초청을 수락하기 전에 항의위원회 위원장 또는 대회에 관련된 운영요원들을 관리하는 조직위원회의 담당자에게 알릴 것;

- if you are billeted in a private home, inform the organizers if you have allergies to any pets or tobacco smoke, etc. or if you have mobility restrictions;

개인 주택을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애완동물이나 담배 연기 등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이동성에 제한 (휠체어 사용 등)이 있을 경우, 주최 측에 알릴 것;

- if you have dietary restrictions, inform the organizers before your arrival.

식단의 제한이 있을 경우, 대회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주최 측에 알릴 것;

## **B.4 Allegation of Inadequate Conduct or Competence**

### **부적절한 행위 또는 월권에 대한 혐의**

World Sailing Regulation, Disciplinary, Appeals and Review Codes, provides for reports alleging inadequate conduct or competence of a World Sailing Race Official to be submitted to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f World Sailing. When such a report is received, World Sailing uses the procedure in its Regulation, Race Officials Performance, to consider the allegations. Procedures for investigation if necessary, and possible decisions and sanctions if appropriate, as well as the appeal process available to the Race Official, are described in this Regulation.

월드세일링 규정인 <징계, 상고, 재심 코드>는 월드세일링 운영요원의 부적절한 행위나 월권에 대한 혐의를 제기하는 보고서를 월드세일링 최고 책임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가 접수 되면, 월드세일링은 규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운영요원의 혐의를 조사한다. 필요할 경우 조사 절차 그리고 적절할 경우에 가능한 판결과 제재, 그리고 운영요원이 이용할 수 있는 상고 절차가 이 규정에 설명되어 있다.

## C Protest Committee

### 항의위원회

#### Contents 목차

- C.1 Introduction 소개
- C.2 Conflict of Interest 이해 상충
- C.3 Composition 구성
- C.4 No Appeals Juries and International Juries  
상고할 수 없는 심판단 및 국제심판단
- C.5 Approval by a National Authority of the Composition of the International Jury  
국제심판단 구성에 대한 국가협회의 승인
- C.6 Approval by World Sailing of a Three-Person International Jury  
3명의 국제심판에 대한 월드세일링 승인
- C.7 Responsibilities 책임
- C.8 Additional responsibilities of International Juries  
국제심판단의 추가적인 책임
- C.9 Procedures 절차
- C.10 International Jury Panels 국제심판 패널
- C.11 Off-Site Protest Committee Members 외부 항의위원회 위원
- C.12 Off-Site Parties and Witnesses 외부 당사자 및 증인
- C.13 Recommendations for Remote Hearings  
원격 청문을 위한 권장 사항

#### C.1 Introduction 소개

The extent and level of judging services that an organizer should provide to competitors depend on the type of event. Services range from a protest committee of knowledgeable club members at a sailing club appointed by, the local race committee or club, to a non-appealable international jury at high-profile events appointed or approved by World Sailing. In most cases, the judge with the most experience, often a National Judge or International Judge, is asked to chair the protest committee and accept the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the rules and procedures are followed.

주최 측이 선수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심판단의 범위와 수준은 대회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심판단의 범위는 지역 경기위원회 또는 세일링 클럽이 임명한 지식있는 클럽 회원으로 구성된

항의위원회부터 월드세일링이 임명하거나 승인하여 상고가 불가능한 큰 대회에 국제심판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대부분의 경우, 가장 경험이 많은 국내심판 또는 국제심판이 항의위원회 의의 위원장이 되어 규칙과 절차를 준수하게 할 책임을 진다.

## C.2 Conflict of Interest 이해 상충

Before accepting an invitation to a regatta, a judge should determine whether he has, or might be perceived as having, a conflict of interest. If so, he should contact the protest committee chairman to determine whether, considering the level of the competition and of the conflict, it is sufficiently significant to prevent him from accepting the invitation. If there is doubt, the judge or protest committee chairman may consult World Sailing.

대회의 초대를 수락하기 전에 심판은 이해 상충에 해당되는지, 또는 그러한 것으로 인식될만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해 상충에 해당된다면, 심판위원장과 접촉하여 대회의 수준과 상충의 정도를 고려할 때, 초청을 수락하지 못할 정도로 충분히 중대한지 심판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심판 또는 항의위원장은 월드세일링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Rule 63.4(d) does not permit a person with a conflict of interest to be a member of a protest committee at World Sailing major events. In addition, World Sailing Regulation Conflict of Interest requires a World Sailing certified Race Official who is aware of a conflict of interest to decline an invitation to serve at a regatta at which an international jury is appointed.

규칙 63.4(d)는 이해 상충이 있는 사람이 월드세일링의 중요 대회에서 항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월드세일링 규정인 <이해 상충>에서는, 월드세일링의 공인 운영요원은 중요 대회에 국제심판단으로 지명되었을 때, 이해 상충을 인지하였다면 그 초청을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During the regatta rule 63.4 guides judges to determine whether they might have a conflict of interest related to a protest or request for redress, and to declare it as soon as they are aware of it.

규칙 63.4에는 대회기간 중, 항의나 구제요청과 관련하여 이해 상충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것을 인지하는 순간 가능한 한 빨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C.3 Composition 구성

In the majority of cases, the organizing authority appoints the members of the protest committee. In regattas such as a world championship, this decision is often made between the organizing authority and the class association. The only exceptions occur at specific events for which World Sailing is responsible for appointing the protest committee such as the Olympic Games, and other championships (see World Sailing Regulation Olympic Sailing Competition, and Regulation World Sailing and Other Events). While the chairman of the protest

committee is often asked to send out the invitations to recruit members of the protest committee, he does so on behalf of the organizing authority or race committee.

대부분의 경우 조직위원회가 항의위원회 위원을 임명한다. 세계선수권 같은 대회에서는 보통 조직위원회와 클래스협회에 의해 결정된다. 유일한 예외는 올림픽 및 기타 선수권대회(월드세일링 규정<올림픽 세일링 경기> 및 <월드세일링과 기타 대회> 참고)와 같이 월드세일링이 항의위원회를 임명할 책임이 있는 대회이다. 종종 항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항의위원회의 위원들을 모집하는 초청장을 보내도록 요청받는데, 이는 조직위원회나 경기위원회를 대신하는 것이다.

When making up the protest committee, consider the type of boats and kind of racing. At least one of the members of the protest committee should be fully conversant with the boats being sailed, and the rules and traditions of the class or type of event. The protest committee at a windsurfing regatta will face different questions than at a one-design world championship or an offshore race.

항의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보트 유형과 경기의 종류를 고려하여야 하며, 적어도 항의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은 경기하려는 보트, 클래스 규칙, 클래스의 특성 그리고 대회 유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윈드서핑 대회의 항의위원회는 원디자인 세계선수권대회나 외양경기와는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It is useful, where possible, to include one member who also has an intimate knowledge of the local conditions.

가능하다면, 현지 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위원 한 명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At an open event in which sailors come from other clubs, it is desirable that the organizing authority appoint a protest committee, usually with three members who are independent of the race committee.

다른 클럽에서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에서는, 조직위원회가 항의위원회를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적으로 경기위원회와 무관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To avoid an appearance of favoritism, prejudice or conflict of interest, this protest committee could be made up of members from different clubs.

편파, 편견, 이해 상충으로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항의위원회는 다른 클럽의 위원들로 구성될 수 있다.

To ensure a higher level of experience and knowledge, many national authorities have a program to train and certify individuals as national judges.

수준 높은 경험과 지식 함양을 위하여, 많은 국가협회는 개인을 훈련시키고 인증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Some national authorities require that at national events, the membership of a protest committee includes a majority of national judges.

일부 국가협회는 국내에서 열리는 대회에서, 항의위원회 구성원으로 과반수의 국가심판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If Appendix P is used for on-the-water judging of rule 42 Propulsion, the majority of the protest committee members should be experienced in this specialist type of judging. This is especially important when observers are appointed in this role.

수상에서 부칙 P를 규칙 42 추진에 대한 즉결심판으로 사용할 경우, 항의위원회 구성원의 대다수가 이러한 전문적인 유형의 심판에 경험이 있어야 한다. 옹저버가 이 역할을 하도록 임명되었을 때, 특히 중요하다.

In the case of an international jury, there is often room for one or two experienced national judges who would benefit from the experience. The jury chairman may delegate to a jury member the task of assisting them in developing the necessary skills on their path to become an International Judge.

국제심판단의 경우, 종종 한 두 명의 경험 많은 국가심판을 포함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는 유익한 경험이 될 것이다. 심판위원장은 심판위원 중 한 명에게 그 국가심판들이 국제심판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도록 돕는 임무를 위임할 수 있다.

#### **C.4 No Appeals Juries and International Juries**

##### **상고할 수 없는 심판단 및 국제심판단**

The rules give parties the right to appeal a protest committee's decisions or its procedures. However, the rules also set out conditions under which the right of appeal may be denied. Most frequently, this is done through the appointment of an international jury that conforms with Appendix N. In addition, rule 70.5 makes two other provisions for permitting the denial of appeals. In these two cases, care must be taken to obtain the necessary permissions and in the selection of the members of the protest committee to comply with all requirements of the rule.

세일링 경기규칙은 당사자들에게 항의위원회의 판결이나 절차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그러나, 세일링경기규칙은 상고의 권리가 거부될 수 있는 조건도 규정하였다. 대부분 이것은, 부칙 N에 따라 구성된 국제심판단을 임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추가로, 규칙 70.5에는 상고를 거부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한 조항이 있다. 이 두 경우에는, 필요한 승인을 얻고, 규칙의 요구사항을 준수할 항의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Some of the guidance provided for international juries is also useful to protest committees that have been granted the status of no appeals

국제심판단을 위하여 제공되는 지침 중 일부는 상고 불가의 지위가 부여된 항의위원회에도 유용하다.

The two key persons to the success of an international jury are the chairman and vice-chairman. In order that the protest committee be seen as independent, it is best that the chairman is well known and respected by the competitors, and preferably not of the same nationality as the country in which the event is taking

place. The 'local' vice-chairman is then given the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for pre-regatta administrative and organizational duties

국제심판단의 성공을 좌우 하는 두 명의 핵심 인물은 심판위원장과 부위원장이자. 항의위원회가 독립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심판위원장이 선수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하며, 가급적 개최되는 국가와 같은 국적이 아닌 것이 좋다. '현지' 부위원장에겐 대회가 시작되기 전, 관리 및 조직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다.

Since the regatta organizers usually know the 'local' judge, he is often the first asked to help organize the protest committee. At this point the 'local' judge should explain how the protest committee will be more easily seen as independent if a non-national is the chairman and he is the vice-chairman. He should also offer to help recruit a qualified judge from a different National Authority to act as chairman, and with the chairman, recruit the remaining members of the protest committee.

대회 주최 측이 대개 '현지인인' 그 심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항의위원회 구성을 돕도록 최초로 요청받게 된다. 이 시점에서 '현지인인' 그 심판은 외국인이 위원장이고 자신이 부위원장이자. 항의위원회가 얼마나 더 쉽게 독립된 것으로 보일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그는 또한 위원장으로 활동할 다른 국가 협회의 자격 있는 심판의 초빙과 항의위원회의 나머지 구성원을 위원장과 함께 모집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해야 한다.

Appendix N states the requirements for an international jury to be properly constituted. The National Authority Groups are shown in the World Sailing Constitution. A protest committee member's nationality does not create a significant conflict of interest (rule N3.1).

부칙 N에 국제심판단을 적절하게 구성하는 요건이 명시되어 있다. 국가협회를 그룹별로 나눈 표는 월드세일링 정관에 나와 있다. 항의위원회 구성원의 국적은 상당한 이해 상충이 되지 않는다 (규칙 N34.1).

Since a protest committee constituted as an international jury is independent of the race committee and technical committee, no member of the protest committee may also be a member of the race committee or technical committee.

국제심판단으로 구성된 항의위원회는 독립적이므로 그 구성원은 경기위원회나 기술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When a full international jury or panel is reduced to three or four members because of illness or emergency, the organizing authority is required to make a diligent attempt to find a qualified replacement (rule N1.5).

질병이나 응급상황으로 인해 국제심판단 또는 패널이 3~4명으로 축소될 경우, 조직위원회는 자격을 갖춘 교체인력을 찾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규칙 N1.5).

## **C.5 Approval by a National Authority of the Composition of the International Jury**

### **국제심판단 구성에 대한 국가협회의 승인**

Some national authorities, under their prescriptions, require approval for the appointment of an international jury. When approval is required, the organizing authority is usually required to submit details of the event with the names of the proposed chairman and members of the jury.

일부 국가협회는, 국가협회 규정에 따라, 국제심판단 임명을 승인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승인이 필요할 경우, 일반적으로 조직위원회는 추천하는 심판위원장과 심판위원의 이름과 함께 대회 세부 사항을 국가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Rule N1.8 requires that when the national authority prescribes that its approval is required for the appointment of an international jury (see rule 91(b)), notice of its approval shall be included in the Sailing instructions or be posted on the official notice board.

규칙 N1.8은 국가협회 규정에 국제심판단 임명을 위하여 국가협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규칙 91(b) 참고) 그 승인 공지를 범주지시서에 포함시키거나 공식게시판에 게시할 것을 요구한다..

## **C.6 Approval by World Sailing of a Three-Person International Jury** **3명으로 구성된 국제심판단에 대한 월드세일링의 승인**

In limited circumstances under rule N1.7, World Sailing may authorize an international jury of only three members, all of whom are International Judges, from three different national authorities (two, in Groups M, N and Q). Application is made to World Sailing based on Regulation World Sailing and Other Events.

규칙 N1.7 에 따라 제한적인 상황에서, 월드세일링은 총 3명만으로 구성된 국제심판단을 승인할 수 있으며, 모든 위원은 국제심판이어야 하고, 3개의 서로 다른 국가협회 소속이어야 한다 (M,N,Q 그룹에서는 2명). 월드세일링 규정인 <월드세일링과 기타 대회>에 기반하여 월드세일링 대회에 적용된다.

## **C.7 Responsibilities 책임**

The main duty of the appointed protest committee or international jury is to conduct hearings for protests, requests for redress, reports regarding support persons, and to write allegations and hold hearings under rule 69. Its responsibilities may be extended to include on-the-water judging of rule 42 and monitoring rule compliance. When requested, the protest committee will provide advice to the race committee or the organizing authority, and help to resolve problems that occur at regattas.

임명된 항의위원회 또는 국제심판단의 주요 임무는 항의, 구제 요청, 지원 인력에 대한 보고서를 청문하고, 규칙 69에 따른 혐의를 제기하고 청문을 개최하는 것이다. 또한 규칙 42조 위반에 대한 수상에서의 판결 및 벌칙이행을 제대로 하였는지 확인할 책임도 있다. 항의위원회는 경기위원회 또는 조직위원회로부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문을 제공하고, 대회에서 발생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 C.8 Additional Responsibilities of International Juries

### 국제심판단의 추가적인 책임

The main duties of an international jury are the same as for a protest committee. However, in practice, the higher the regatta level the more pressure on the judges, organizers, and competitors. Since there is no right of appeal from a protest committee formed by an international jury, the reputation of sailing rests upon the regatta's international jury making correct and fair decisions.

국제심판단의 주요 임무는 항의위원회와 동일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높은 수준의 대회일수록 심판, 주최자 및 선수들에게 더 많은 압박이 가해진다. 국제심판단으로 구성된 항의위원회의 판결에 대해서는 상고권이 없기 때문에, 세일링 스포츠에 대한 평판은 대회의 국제심판단이 명확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데 달려있다.

When asked by the organizing authority or race committee, an international jury has the responsibility to advise and assist them on any matter directly affecting the fairness of the competition. At these events the international jury are often asked to decide questions of eligibility, measurement, boat certificates, and to authorize the substitution of competitors, boats, sails, and equipment (see rule N2).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jury need to be familiar with the requirements in Appendix N.

조직위원회나 경기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제심판단은 경기의 공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문하고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대회에서 국제심판단은 종종 자격, 계측 또는 레이팅 증명서 문제에 대한 것, 그리고 선수, 보트, 세일 또는 장비의 교체 승인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규칙 N2 참고). 국제심판단은 부칙 N의 요건을 숙지하여야 한다.

## C.9 Procedures 절차

Decisions of the protest committee are by a simple majority vote of all members. Where there is an equal division of votes cast, the chairman may cast an additional vote.

항의위원회의 판결은 모든 구성원의 단순 다수결로 이루어진다.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추가 투표를 할 수 있다.

## C.10 International Jury Panels

### 국제심판단 패널

The requirements for a panel of fewer than five members to hold a hearing are outlined in rule N1.4(b). The panel requires three judges from different MNAs two of whom must be International Judges. Parties must be told that you are a panel

of the international jury.

5명 미만의 위원들로 구성된 패널이 청문을 개최하기 위한 요건은 규칙 N1.4(b)에 요약되어 있다. 패널은 3명의 서로 다른 국가협회 소속이어야 하며, 그 중 2명은 국제심판이어야 한다. 청문 당사자들은 위원들이 국제심판단의 패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If a party is dissatisfied with the decision of a panel, except concerning the facts found, they are entitled to a hearing with a full international jury. The request may be made orally or in writing. The Chairman would appoint the five-member international jury from among the members. All parties may attend and bring evidence to the hearing.

만일 당사자가 판명된 사실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3명으로 구성된 패널의 판결에 불만족할 경우, 그들은 완전한 국제심판단에게 청문을 받을 수 있다. 그 요청은 구두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5명의 국제심판을 임명할 것이다. 모든 청문 당사자는 참석하고 청문에 증거를 가져올 수 있다.

In practice, this means that the international jury will review the procedures used in the original hearing. They will then focus on whether the conclusion and decision match the facts. This new hearing is not a reopening under rule 66. If the international jury decides that the panel might have made an error, they may decide to reopen the hearing.

이는 사실상, 5명으로 구성된 국제심판단이 원래의 청문에서 사용했던 절차를 검토한다는 뜻이며, 그 결론과 판결이 판명된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 새로운 청문은 규칙 66에 따른 재청문은 아니다. 이전의 3명으로 구성되었던 패널이 실수를 저질렀을 수도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국제심판단은 청문을 재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 C.11 Off-site Protest Committee Members

### 현장에 없는 항의위원회 위원

Appendix N outlines the requirements for international juries. Appendix M, which is advisory only, gives recommendations on how to conduct hearings. Even though neither requires all members of a protest committee to be physically present at hearings, this should be the normal situation. However, in some exceptional cases, the protest committee may still act adopting a remote hearing procedure, without having all the members physically together.

부칙 N은 국제심판단에 대한 요건을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부칙 M은 비록 조언일 뿐이지만, 청문 진행방법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공한다. 비록 양쪽 부칙 모두에서 항의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청문에 출석하도록 요구되지는 않지만, 출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 항의위원회는 모든 구성원들이 신체적으로 함께하지 않는, 원격 청문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For example, it would make sense to proceed without the physical presence of one or all the members in the following situations: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한 명 또는 모든 구성원의 신체적 출석 없이 청문을 진행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if a decision has to be made before the start of the event, e.g. about the eligibility or categorization of a sailor;  
대회 시작 전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 (예로, 선수자격 또는 분류)
- if a decision has to be made after the event has finished, e.g. a complicated measurement protest that will take the technical committee several days;  
예를 들어, 기술위원회에서도 며칠이 소요되는 복잡한 계측 항의처럼 대회가 종료된 이후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
- in oceanic races; or  
대양 경기; 또는
- when a full jury, or a panel, has fewer than five members, because of illness or emergency, and no qualified replacements can be reasonably found, despite diligent attempts.  
질병이나 응급상황으로 인해 전체 심판단 또는 패널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 그리고 노력을 하였으나 자격을 갖춘 교체인력을 찾을 수 없는 경우.

## C.12 Off-site parties and witnesses

### 현장에 없는 당사자 및 증인

Rule 63.3 grants a party the right to be present throughout the hearing. It also permits the protest committee to proceed with the hearing if a party does not attend.

규칙 63.3 은 당사자에게 청문 내내 참석할 권리를 보장한다. 또한 청문의 당사자가 청문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항의위원회가 청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Best practice is to have all the parties and witnesses physically present during a hearing. However, there are some exceptional cases where the protest committee could offer them to attend the hearing by adopting a remote hearing procedure. Some examples are similar to those for off-site protest committees.

최선의 방법은 청문을 진행하는 동안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출석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항의위원회가 원격 청문 절차를 채택하여, 그들에게 청문회 참석을 제안하는 몇 가지 예외적인 사례가 있다.

In general, if the protest committee decides that its members can be present through a remote system, they could allow the same for parties and witnesses.

일반적으로 항의위원회 위원이 원격시스템을 통하여 출석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면, 청문 당사자나 증인들에 대해서도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C.13 Recommendations for Remote Hearings

### 원격청문 권고사항

The COVID-19 pandemic in 2020 has resulted in many more protest committees

making use of video conferencing technology for hearings. We anticipate more developments as technology progresses, especially with advances in business meeting and education programs. What follows are the lessons learned up until this review of the Judges Manual to January, 2021. Since this is an evolving process, updates and improved systems will continue to be developed.

2020년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하여 더 많은 항의위원회가 청문에 화상회의 기술을 사용하게 되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특히 비즈니스 미팅과 교육 프로그램의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한다. 아래의 내용은 이 심판매뉴얼 (2021년 1월 증보판)이 검토될 때까지 얻어진 교훈들이며, 이는 계속 발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업데이트 및 개선된 시스템으로 계속 발전될 것이다.

Remote hearings should be conducted with video conference systems and simultaneously transmitted to all the persons involved in the hearing. A video conference system is a program, protocol or device that uses the internet to transmit multimedia streams that include at least voice and video of the persons involved. Other streams may be included, like a video feed of the protest room table or a virtual whiteboard.

원격 청문은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진행되며, 동시에 청문 관련자 모두에게 전송되어야 한다. 화상회의 시스템은 적어도 사람의 음성과 비디오를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스트림을 전송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사용하는 프로그램, 프로토콜 또는 장치이다. 항의실 책상 또는 가상 화이트 보드가 비디오 화면으로 스트림에 포함될 수 있다.

It is essential to have a strong broadband connection to make remote hearings work. This may require some pre-regatta assistance from the organizers. It is best if the protest committee has access to a strong WIFI network that is not shared broadly. It is the responsibility of parties and witnesses to have a strong internet connection available. A party or a witness using internet while driving in a car usually results in intermittent coverage at best.

원격 청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강력한 와이파이 연결이 필수적이며 이는 주최 측의 대회 전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항의위원회가 광범위하게 공유되지 않는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다. 강력한 인터넷 연결을 준비하는 것은 당사자와 증인의 책임이다. 당사자나 증인이 차를 운전하면서 인터넷에 접속한다면, 기껏해야 간헐적인 접속만 될 뿐이다.

It is easy to imagine a future when more hearings might be done over the internet with parties and judges in many different places. If present, the on-site protest committee member has a major role in setting this up. The following is a non-exhaustive checklist of his additional duties:

서로 다른 곳에서 당사자와 심판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더 많은 청문을 여는 미래를 상상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현장에 있는 항의위원회의 위원이 원격청문을 준비하는 주요 역할을 맡는다. 다음은 현장에 있는 위원의 추가 임무에 대한 일부 비대면 점검표이다.

- Preparation of the hearing is a key component to making this system work. It will take more time than an in-person hearing.

청문 준비는 원격청문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이며, 직접 청문을 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 For hearings occurring during an event, pre-arrange a default time for hearings when you expect off-site persons to be available. Consider the time zones for all persons involved;  
대회 중 발생하는 청문의 경우, 모든 관련자들의 시간대를 고려하여 현장에 없는 사람도 참석할 수 있는 청문의 시간을 미리 정할 것;
- Send copies of the request for hearing form and other documentation to the off-site protest committee members and parties;  
현장에 없는 항의위원회 위원과 당사자들에게 청문요청서와 기타 문서의 사본을 발송할 것;
- If the parties will use video evidence, try to get copies in advance to forward to the off-site protest committee members and parties;  
당사자들이 영상증거를 사용할 경우, 사전에 사본을 입수하여 현장에 없는 항의위원회 위원 및 당사자들에게 전달하도록 노력할 것;
- Make sure that all the parties and witnesses are alone in the room, without communicating with others.  
모든 당사자와 증인이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못하도록 혼자 방에 있게 할 것.
- Make use of the waiting room function of the video conference platform to move witnesses in and out of the hearing and not listening to other evidence.  
화상회의 플랫폼의 대기실 기능을 활용하여 증인을 청문회장의 안팎으로 이동시켜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듣지 못하게 할 것;
- Make sure everyone, both at the hearing and off-site, understands the procedures.  
청문에 참석한 사람과 현장에 없는 모든 사람이 이 원격청문 절차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 할 것;

In some situations, a video conference remote hearing might not be possible, for example, during oceanic races. Only in this case should remote hearings be processed through emails. This process should be specified in the notice of race / sailing instructions as detailed in the section, Judging Oceanic and Offshore Races. 예를 들어, 대양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화상 원격청문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만 이메일을 통하여 원격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 과정은 <대양 및 외양경기의 심판> (이 문서의 K절)에 자세히 설명된 대로, 대회공고/범주지시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 D Best Practice before and at the Event

### 대회 전과 대회 중의 모범적 실무 지침

Contents 목차	Page
Before the Event 대회전	
D.1 Pre-event Responsibilities of the Chairman 대회-전 항의위원장의 책임	D 1
D.2 Communication with the Chairman and Vice-Chairman 항의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의사 소통	D 2
D.3 Deciding on the Extent of the Responsibilities of the International Jury 국제심판단의 책임범위 결정	D 2
D.4 Reviewing the Draft Notice of Race and Sailing Instructions 대회공고와 범주지시서 초안의 검토	D 2
D.5 Allocating Tasks to Protest Committee Members 항의위원회 위원들의 임무 할당	D 3
At the Event 대회 중	
D.6 Arrival 도착	D 6
D.7 World Sailing Jury Policy 월드세일링 심판단 정책	D 6
D.8 The First Meeting of the Protest Committee 항의위원회의 첫 회의	D 7
D.9 Pre-Race Meeting with Race Committee Chairman, Principal Race Officer, and other Officials 경기위원장, 총괄수역장 및 기타 주요 요원들과의 경기-전 회의	D 8
D.10 Briefing of Competitors 선수들 브리핑	D 8
D.11 Communicating with Support Persons 지원인력들과의 의사 소통	D 9
D.12 Communicating with the Media 미디어와의 의사 소통	D 10
D.13 Appointing an investigator, rule 69 allegations 조사원 임명, 규칙69 혐의	D 10

## Before the Event 대회 전

### D.1 Pre-event Responsibilities of the Chairman

#### 대회 전 항의위원장의 책임

Before an event begins, the chairman and vice-chairman of the protest committee have a variety of tasks to perform or allocate, and items to check.

대회 시작 전에, 항의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수행하거나 배정해야 할 다양한 업무와 점검할 사항들이 있다.

Although the chairman has no authority over an organizing authority, he has considerable influence if the relationship can be kept supportive. When possible, the chairman should tactfully ensure that the organizing authority is aware of its responsibilities with respect to the protest committee.

비록 항의위원장이 주최단체에 대한 권한은 없지만, 주최단체와 원활한 관계라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가능하다면, 항의위원장은 주최단체가 항의위원회를 존중하고 그 책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재치있게 처신하여야 한다.

The main pre-event responsibilities fall to the chairman and vice-chairman, but if other members can help, the protest committee will be that much better prepared.

대회 전 주요 책임은 항의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있지만, 다른 위원들이 도울 수 있다면 항의위원회는 그만큼 준비가 잘 될 것이다.

### D.2 Communication with the Chairman and Vice-Chairman

#### 항의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의사 소통

Long before the event begins, the tasks of the chairman and vice chairman include:

행사가 시작되기 훨씬 전에 항의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 Reviewing the notice of race and the draft sailing instructions ;  
대회공고와 범주지시서 초안을 검토할 것;
- If so required, assisting the organizing authority to choose the appropriate judges for the event;  
필요한 경우, 주최단체가 대회에 적합한 심판을 선정하는 것을 돕는 것;
- Agreeing with the organizing authority on reimbursement of expenses and housing;  
주최단체와 심판들이 사용할 경비의 정산 및 숙소에 대하여 협의할 것;

- Communication to the organizing authority the requirements of the protest committee for operations ashore and on the water:  
육상과 수상에서의 운영에 대한 항의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주최단체와 협의할 것.
- Deciding and communicating the time of the first meeting of the protest committee:  
항의위원회의 첫 번째 모임 시간을 결정하여 전달할 것.
- Verifying if the organizing authority is using an online communication platform for sailors or race officials, and to what extent; and  
주최단체가 선수들 또는 운영요원들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사용하는지, 그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것; 그리고
- Allocating other tasks and duties among the members.  
기타 과제 및 임무를 각 위원들에게 배분할 것.

### D.3 Deciding on the Extent of the Responsibilities of the International Jury 국제심판단의 책임범위결정

Rule N2 lists the responsibilities of the international jury. Rules N2.2 and N2.3 list the additional responsibilities that may be given to the international jury, as required by the organizing authority.

규칙 N2에 국제심판단의 책임이 기재되어 있다. 규칙 N2.2와 N2.3에는 주최단체의 요구에 따라 국제심판단에게 주어질 수 있는 추가적인 책임이 기재되어 있다.

An international jury is independent of, and includes no member of the race committee or technical committee. It does not oversee or direct the race committee. A prudent protest committee can suggest improvements and ideas about courses and other race committee matters to the principal race officer. If the decisions of the race committee, then come into question in a redress hearing, the protest committee will be able to make an impartial judgment, since they were not involved in those decisions.

국제심판단은 경기위원회나 기술위원회의 의원을 포함하지 않고 독립적이다. 국제심판단은 경기위원회를 감독하거나 통제하지 않는다. 신중한 항의위원회는 총괄수역장에게 경기 코스와 기타 경기위원회 문제에 대한 개선 사항과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는 있다. 만약 경기위원회의 결정이 구제 청문에서 문제가 된다면, 항의위원회는 그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D.4 Reviewing the Draft Notice of Race and Sailing Instructions 대회공고와 범주지시서 초안 검토

The notice of race is, in effect, an agreement or contract between the organizers

of the event and the competitors. The organizers set out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y are prepared to run the event and competitors use the information to decide whether they will invest the time, effort, and money to attend.

대회공고는 사실상 대회의 주최 측과 선수들 사이의 합의 또는 계약이다. 주최 측은 대회개최 준비를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 선수들은 이 정보를 활용하여 대회 참석에 필요한 시간, 노력, 비용을 투자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It is therefore important that the notice of race contains the information necessary to enable a competitor to decide whether or not to compete in the event. Competitors need information on variations from the racing rules, advertising, eligibility( crew weight restrictions, nationality, measurement or rating certificates, etc. ), type of courses, alternative penalties, scoring, and prizes, together with the other requirements of Rule J1. Appendix J and the notice of race and sailing instruction guides published on the World Sailing website should be used to review the notice of race and ensure that all the required information is covered, and that the standard wording is used for consistency and to prevent future problems. 따라서 대회공고에는 선수들이 대회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수들은 규칙 J1의 다른 요건들과 함께 경기규칙, 광고, 자격 ( 승정원 몸무게 제한, 국적, 계측 또는 레이팅 증명서 등), 코스의 유형, 대체 벌칙, 채점, 시상 등의 변경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부칙 J와 월드세일링 웹사이트에 게시된 대회공고와 범주지시서 안내서를 사용하여 대회공고를 검토하고,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었는지 그리고 향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 문구 사용으로 일관성을 유지하였는지 확인한다.

If an online platform is used for competitors to access documents or to submit requests ( hearing, scoring, crew or equipment substitution, etc. ), the notice of race should mention the requirements to access the platform ( e.g., a smartphone with internet connection ). Specific platform details can be specified later.

선수가 대회에 사용 될 문서에 접근하거나 요청서 (청문, 채점, 승정원과 장비의 교체 등)를 제출하기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해야 하는 경우, 대회공고에 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는 요건 (예,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명시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플랫폼 세부정보는 나중에 명시할 수 있다.

However, even after a thorough effort, changes to the notice of race may be necessary. Examples could include the harbor blocked by a vessel or available radio frequencies changed by government authority. In most cases competitors will understand and accept the change; but changes must be kept to a minimum.

하지만, 철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회공고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그 예로는 선박에 의해 막힌 항구나 사용 가능한 무선 주파수가 정부 당국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 포함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선수들은 이러한 변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그러나 변경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Check the notice of race and the sailing instructions for any differences or omissions of the requirements of RRS Appendix J. If there is conflict between the notice of race, the sailing instructions or any of the other documents that govern

the event, rule 63.7 instructs the protest committee to apply the rule that it believes will provide the fairest result for all boats affected when deciding any protest or request for redress. However, good practice is to amend the notice of race and/or sailing instructions as soon as the conflict is discovered.

RRS 부칙 J의 요건과의 차이점이나 누락이 있는지 대회공고와 범주지시서를 확인한다. 대회공고와 범주지시서 또는 대회에 적용되는 그 외의 문서사이에 상충이 있을 경우, 규칙 63.7은 항의 또는 구제요청을 판정할 때, 영향을 받는 모든 보트에 가장 공정한 결과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는 규칙을 적용하라고 항의위원회에 알려준다. 그러나 문서 사이의 상충이 발견되면, 즉시 대회공고 및/또는 범주지시서를 수정하는 것이 최선이다.

Any change to the World Sailing Advertising Code requires careful review. Restrictions to advertising must be stated in the notice of race. Unless some form of alternative or discretionary penalty system is incorporated, the protest committee has no choice but to disqualify a boat after finding as a fact that she did not comply with a sailing instruction which includes the words 'boats shall' or 'boats shall not'.

월드세일링 광고 코드의 변경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광고에 대한 제한은 대회공고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대회공고나 범주지시서에 대체벌칙 또는 임의재량 벌칙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의위원회는 '보트가 해야 한다' 또는 '보트가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범주지시서를 따르지 않는 보트를 실격시킬 수 밖에 없다.

The description of the starting and finishing lines and courses instructions should be clear. If the members of the protest committee cannot easily understand them, then some of the competitors will be confused as well.

스타트라인과 피니시라인의 설명과 코스 도해는 명확하여야 한다. 만약 항의위원회의 위원들이 위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면, 선수들 중 일부도 역시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The chairman and vice-chairman of the protest committee and, if possible, the other members, should review the sailing instructions before the final draft is agreed upon. Members should send their comments to the chairman who reviews these before submitting them to the race committee. All members of the protest committee should review the final document so that any corrections can be suggested to the race committee before the competitors' briefing. However, last-minute changes should be limited to only those required to sail the regatta. .

항의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른 항의위원들도 최종안이 합의되기 전에 범주지시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항의위원들은 항의위원장이 경기위원회에 범주지시서를 보내기 전에 이를 검토하고 있는 항의위원장에게 그들의 의견을 보내야 한다. 참가 선수들에 대한 브리핑을 하기 전에, 경기위원회에 어떤 정정 사항이든 건의될 수 있도록 항의위원 전원이 범주지시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종 변경사항은 대회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만 제한되어야 한다.

## **D.5 Allocating Tasks to Protest Committee Members**

### **항의위원회 위원들의 업무 할당**

At least two weeks before travel, the chairman should contact other members of the protest committee to welcome them. The protest committee chairman should consider how the protest committee will operate, decide when the first protest committee meeting will be held and allocate and communicate tasks to the protest committee members. This will enable them to plan their travel well in advance and to come to the event well prepared. A brief draft agenda for the first protest committee meeting will help the less experienced judges who are then able to see the topics to be discussed and be well prepared to contribute to them.

적어도 여행 2주전에, 항의위원장은 항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연락하여 환영인사를 전하여야 한다. 항의위원장은 항의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하고, 첫 항의위원회 회의가 언제 열릴지 결정하며, 항의위원들에게 임무를 할당하고 이를 전달하여야 한다. 그래야 위원들이 미리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대회 준비도 잘 할 수 있다. 항의위원회의 첫 회의에 대한 간략한 초안을 미리 보내주면, 경험이 적은 심판들이 그 토론 주제들을 파악하고, 토론에 기여할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These tasks will vary according to the type of event, and the size of the protest committee. At most events it is useful to establish a shared document repository ( e.g. Dropbox or Drive ) with all the applicable rules, notice templates etc., protest committee member tasks, and information about any online systems that the protest committee will be expected to use at the event. The protest committee chairman should take account of the experience of each of the committee members, any requirement to conduct international judge reference assessments and local language considerations. It is good practice to ask committee members for their task preferences and, if possible, take these into account when allocating tasks.

대회의 유형과 항의위원회의 규모에 따라 주어지는 임무는 달라진다. 대부분의 대회에서 공유 문서 저장소 (예, 드롭박스 또는 드라이브)를 설정하는 것이 유용하며, 그 저장소에는 모든 해당 규칙, 공지템플릿 (각종 양식들) 등, 항의위원회 위원의 업무, 항의위원회가 대회에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라인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항의위원장은 각 위원들의 경험, 국제심판 자격기준 평가서를 위한 수행 요건, 현지 언어 사용가능 여부를 참작하여야 한다. 위원회위원들에게 업무 선호도를 묻고, 가능하면 업무 할당 시 이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Typical tasks for many events are:

대회의 일반적인 업무는 아래와 같다.

#### **Notice of race and sailing instructions.**

##### **대회공고와범주지시서**

This task involves reviewing the notice of race, sailing instructions and other documents governing the event prior to the event. At the event, ensure that any amendments are made available to all members of the protest committee.

이 업무는 대회에 앞서 대회공고, 범주지시서와 대회와 관련된 다른 문서들을 검토하는 것을 포함한다. 대회 중, 모든 항의위원회 위원들이 수정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점검한다.

#### **Liaison with the organizing authority.**

##### **주최단체와의 연락**

This task is usually performed by the chairman; however. Local language considerations can sometimes make it more appropriate for the task to be allocated to a person who speaks the local language.

이 업무는 보통 위원장이 수행한다. 그러나 현지 언어 사용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해당지역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업무가 할당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 **Liaison with the race committee.**

##### **경기위원회와의 연락**

This task is usually involves attending a daily meeting and communicating the intentions of the race committee back to the protest committee. Agree on which committee will post the protest time limits after racing each day. It may also involve the diplomatic communication of any issues that the protest committee decides should be drawn to the attention of the race committee. This task is sometimes allocated to a member who is also a qualified race officer.

이 업무는 보통 매일 열리는 경기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항의위원회에 경기위원회의 의사를 다시 전달하는 것을 포함한다. 어느 위원회 (경기위원회, 항의위원회 또는 조직위원회 등)가 매일 경기를 마친 후 항의마감시간을 게시할 것인가를 합의한다. 또한 항의위원회가 경기위원회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고 결정한 사안에 대한 외교적 소통도 포함될 수 있다. 이 업무는 때때로 경기운영요원 자격도 가지고 있는 항의위원에게 배정된다.

#### **Liaison with the technical committee.**

##### **기술위원회와의 연락**

This task involves communications with the technical committee on issues of measurement and class rules that arise during the event.

이 업무는 대회 중에 발생하는 계측 및 클래스규칙에 관련된 기술위원회와의 소통을 포함한다.

#### **Question and answers.**

##### **질문과 답변**

This task involves leading a subset of the protest committee in receiving written questions to the protest committee and preparing answers on the official notice board.

이 업무는 항의위원회에서 서면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항의위원회 내의 소위원회를 이끌고, 공식게시판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을 포함한다.

#### **Hearing management.**

##### **청문 관리**

This task is to oversee the receipt of requests for hearing, schedule hearings and arbitrations as appropriate, and to ensure that all related notices are post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and that any changes to scores are communicated to the scorer. This task will vary depending on whether a jury secretary is provided

by the organizing authority.

이 업무는 필요에 따라 청문요청 접수, 청문과 중재 일정을 감독하고, 이에 대한 관련 공지가 모두 규칙에 따라 게시되고, 순위 변동사항이 채점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업무는 주최단체에서 심판단의 비서가 제공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 **On-the-water assignments.**

##### **수상 배치**

If Appendix P applies, then on-the-water judge assignments are decided for each day. This needs to take account of any existing rotation policies, the experience of each judge and any international judge reference assessments being conducted.

부칙 P가 적용될 경우, 날짜 별로 수상심판 배치가 결정된다. 이것은 기존의 로테이션 정책, 각 심판의 경험 그리고 국제심판 자격기준 평가를 해야하는 심판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Course chiefs.**

##### **각 구역별 대표 심판**

At events with multiple classes, one judge is assigned to each course to manage the on-the-water activities of the judges on the course and to communicate with the course race officer.

여러 클래스의 경기가 진행되는 대회에서, 각 구역별로 한 명의 심판을 지정하여, 그 구역에 배정된 심판들의 수상활동을 관리하고 그 구역의 경기운영관과 의사 소통한다.

#### **Rule42 infringement schedules.**

##### **규칙 42 위반에 대한 진행 일정**

If Appendix P applies, then this task involves gathering the infringements, posting them as required by the sailing instructions, and communicating any scoring changes to the scorer.

부칙 P가 적용될 경우, 이 업무는 수상에서의 규칙 42 위반사항을 수집하고, 범주지시서에 명시된 대로 게시하며, 순위 변동사항을 채점자에게 전달한다.

#### **Boats.**

##### **심판 보트**

This task involves managing the on-the-water equipment assigned to the protest committee : boats, boat keys, on-water safety equipment, flags, docking and refueling arrangements. This is usually best allocated to a local judge who speaks the local language and understands local customs.

이 업무는 항의위원회에 배정된 심판 보트, 심판 보트 열쇠, 수상 안전장비, 깃발, 정박 및 급유 준비와 같은 수상장비들을 관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업무는 보통 현지 언어를 구사하고, 현지 문화를 이해하는 그 지역 심판에게 배정하는 것이 좋다.

#### **Noticeboard.**

##### **공식게시판**

This task involves ensuring that the event notice boards and websites are displaying the correct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and to ensure that



any changes to the scores as a result of actions of the protest committee are in, and stay in, the results.

이 업무는 대회 공식게시판과 웹사이트가 규칙에 따라 올바른 정보를 표시하고, 항의위원회의 조치의 결과로 인한 성적의 변경이 성적표에 제대로 반영되었고,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

#### **Tracking systems (including official video and data collection).**

##### **트래킹 시스템 (공식 비디오와 데이터수집 포함)**

If the event is using any of the above, then appointing a member to liaise with the team managing the tracking systems/video/data collection is recommended. Understanding the limitations or advantages of these systems is essential in any hearings where they are submitted as evidence.

대회가 위의 트래킹 시스템 중 하나를 사용할 경우, 트래킹 시스템/비디오/데이터 수집을 관리하는 팀과 연락할 위원을 임명하는 것이 추천된다. 이러한 시스템의 한계나 장점을 이해하는 것은 이것들이 증거로 제출되는 모든 청문회에서 필수적이다.

#### **Travel reimbursements.**

##### **여행경비 정산**

This task involves ensuring that all members of the protest committee submit their travel expense claims to the organizing authority, and that reimbursements are paid either at the event, or through an arrangement that is communicated to all.

이 업무는 항의위원회 모두 그들의 여행경비 청구서를 조직위원회에 제출할 것과, 정산한 금액이 대회기간 중에 지급되거나 모두에게 통지된 대로 지급될 것이라는 것을 위원들에게 확인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 **Judge development.**

##### **심판의 실력향상**

This is an optional but important task on larger protest committees and international juries where the range of experience among members is wide. It involves the organizing of an informal daily rules talks and discussion on a current topic. Examples of topics are rule 42, procedures relating to issues with support persons, recent rule changes, recent Q&A decisions; medal race umpiring if applicable, etc. These sessions, sometimes referred to as judge university, have proven to be of high value. The protest committee chairman would ask members of the protest committee to contribute to these session for ongoing education.

이것은 선택적이기는 하지만, 항의위원들 간에 경험치에 차이가 많이 나는 큰 규모의 항의위원회나 국제심판단에게 중요한 과제이다. 이것은 매일 일반적인 규칙에 대한 비공식적인 대담과 현재 당면한 주제에 대한 토론을 포함한다. 이 주제의 예로는 규칙 42, 지원인력과 관련된 절차, 최근 변경된 규칙, 최근 Q&A 결정, 해당되는 경우 메달레이스 엄파이어링 등이 있다. 때때로 심판대학이라고 불리는 이 세션은 높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항의위원장은 지속적 교육을 위하여 항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이러한 세션에 기여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다.

#### **Social, lunch and water.**

### **사교, 점심 그리고 물**

This task involves ensuring that judges have lunches and waters to take afloat or have ashore, as suits the event, and making arrangements for evening meals.

이 업무는 심판들이 수상 또는 육상에서 점심과 물을 제공받고 있는지를 상황에 맞게 확실히 하고, 저녁식사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을 포함한다.

### **Track good ideas for future regattas.**

**미래의 대회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모두 기록해 둔다.**

Note all comments, changes to the Sis, changes to practices of the protest committee, and other procedures that happened during the regatta. Work with the chairman to compile a post-regatta report.

모든 의견, 범주지시서의 변경, 항의위원회 관행의 변경, 대회기간 동안 발생한 다른 절차들을 기록하라. 항의위원장과 함께 사후 대회보고서를 작성하라.

### **Post-regatta report.**

#### **사후 대회보고서**

The Chairman compiles the post-regatta report including relevant ideas gathered throughout the event to submit to the organizing authority.

항의위원장은 대회기간동안 수집한 관련 아이디어를 포함한 사후 대회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직 위원회에 제출한다.

This list is a sample only, and some of the tasks will not apply at some events. All members would also normally be expected to attend an initial competitors' briefing, daily protest committee meetings and to be on hearing panels and conduct arbitrations when required.

위의 목록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며, 일부 업무는 어떤 대회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모든 항의위원회의 위원들은 통상적으로 최초의 선수브리핑, 일일 항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청문회의 패널이 되고, 필요할 경우, 중재에 임하여야 한다.

## **At the Event**

### **D.6 Arrival 도착**

The chairman will arrange with the organizing authority the arrival schedule for the judges, based on the regatta schedule. The more members who arrive during pre-racing activities, the better. At the latest, all members should be in attendance the day before racing commences, or that morning if racing begins in the afternoon. This allows for the competitors, regatta staff, race management and judges to get to know each other. It also enables the protest committee to be available to respond to questions about measurement or equipment inspection or the sailing instructions and other race documentation. If it is not practical for all members to arrive early, there should be at least a majority of the panel present including either the chairman or vice chairman.

항의위원장은 대회 일정을 기준으로 조직위원회와 심판들의 도착 일정을 조율할 것이다. 경기

-전 활동에 참여할 심판들이 많을수록 좋다. 늦어도, 경기가 시작되기 전날이나 오후에 경기가 시작된다면, 그 날 오전에는 모든 심판들이 도착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선수, 대회관계자, 경기운영요원과 심판들이 서로에 대하여 알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항위위원회가 계측 또는 장비검사 또는 범주지시서와 기타 경기관련 문서에 대한 질문에 응답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모든 심판들이 일찍 도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항의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중 한 명을 포함한 과반수이상의 위원들이 도착하여야 한다.

## D.7 World Sailing Jury Policy

### 월드세일링 심판단 정책

The protest committee will use the most recent version of the World Sailing Jury Policy document and adapt it, if necessary.

항의위원회는 월드세일링 심판단 정책문서의 가장 최신판을 사용하고, 필요할 경우, 그것을 수정할 것이다.

[https://www.sailing.org/raceofficials/internationaljudge/document\\_library.php](https://www.sailing.org/raceofficials/internationaljudge/document_library.php)

It is important that all judges know how they are to work as a team. The Policy document is divided into four sections.

모든 심판들이 한 팀으로 일하는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심판정책 문서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The first section is published on the official notice board, so that the competitors know how the jury will act with respect to:

아래와 관련하여 심판단이 어떻게 행동할지 선수들이 알 수 있도록, 첫 번째 부분은 공식게시판에 게시된다.

- Protests by the Jury for Incidents on the Water  
수상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심판단의 항의
- Outside Help 외부의 도움
- Propulsion 추진
- Requests for Redress, claiming race committee error in scoring a boat  
구제 요청, 경기위원회의 보트 채점 실책에 대한 이의 제기
- Requests for Redress - RS:X under B5.62.1(b)(1)  
구제요청 - 규칙 B5.62.1(b)(1)에 따른 윈드서핑 클래스
- Video and Tracking Evidence  
비디오와 트래킹 증거
- Observers at Hearings  
청문회에서의 옵저버
- Rule 69 규칙69
- Questions on Jury Procedure and Policy  
심판단 절차와 정책에 대한 질문
- Use of Electronic Devices during Hearings  
청문회중 전자장비의 사용

The second part focuses on internal policy:

두 번째 부분은 내부 정책에 초점을 둔다:

- Answering Questions 질문에 대한 답변
- Jury Protests and Observation of Incidents on the Water  
수상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심판단의 항의와 그 관점 (어떤 사건을 목격했을 때, 이를 항의할 것인가에 대한 심판단의 관점)
- Managing Observers  
옵저버 관리
- Panel Decision Approval and Posting  
패널 판결의 승인 및 게시
- Permission to Withdraw a Protest  
항의 철회의 허가
- Redress 구제
- Redress Affecting the Rest of the Fleet  
나머지 플리트에 영향을 미치는 구제

The third section is Discretionary Penalty Policy for competitors:

세 번째는 선수들을 위한 임의재량 벌칙 정책에 대한 부분이다:

- General 일반적인 것
- Base Penalty Bands for Discretionary Penalties  
임의재량 벌칙에 대한 기본 벌칙 구분
- General Questions 일반적인 질문들

The fourth section is Discretionary Penalty Policy for Support Persons & Boats General:

네 번째 부분은 지원 인력과 보트 일반에 대한 임의재량 벌칙 정책이다:

- Base Penalty Bands for Discretionary Penalties  
임의재량 벌칙에 대한 기본 벌칙 구분
- Discretionary Penalties to a Boat  
보트에 대한 임의재량 벌칙
- Writing up the decision 판결문 작성

## **D.8 The First Meeting of the Protest Committee**

### **항의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

The purpose of the first meeting of the protest committee is to start molding the members into an integrated team. This first step in team building relies on giving each individual opportunity to voice their opinion with respect to any decisions and processes that are adopted for the event. Time to reflect on various views may lead to better decisions if immediate decisions are not needed on some matters.

항의위원회의 첫 회의의 목적은 심판들을 통합된 팀으로 구성하기 위한 것이다. 팀 단합을 위

한이 첫 번째 단계는 각 위원에게 대회를 위하여 채택된 결정과 절차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에 있다. 다양한 관점에 대한 성찰의 시간은, 즉각적인 결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더 나은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The most important duty is a last-minute check of the sailing instructions. However, at this late stage it is important to limit any proposed changes to those that are essential. Any changes thought necessary to the sailing instructions must be approved by the race committee, unless the protest committee has been specifically authorized to initiate changes. Diplomacy during this first interaction is very important. A cooperative first experience between the race committee and the protest committee will often lead to respect between the two bodies over the event. 가장 중요한 임무는 범주지시서를 최종 점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후반 단계에서는 필수적인 것에 대해서만 변경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 범주지시서에 필요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항의위원회가 그 변경을 제기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경기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첫 번째 상호작용에서의 절충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경기위원회와 항의위원회사이의 협력적인 첫 경험이 대회를 진행하는 동안, 두 위원회 사이의 존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Each member should lead on their areas of responsibility. This can also be the agenda for pre-race meetings where any concerns can be addressed before going afloat. Those tasked with attending other meetings must report back each day, so that any necessary actions can be taken.

각 위원들은 자신이 맡은 책임 분야에 대하여 나머지 위원들을 이끌어 주어야 한다. 이것은 또한 수상으로 나가기 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경기-전 회의에서의 의제가 될 수도 있다. 자신이 맡은 영역의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위원들은, 매일 심판단 회의에 보고해서,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Many events are now using online systems which include an official notice board so that competitors can access it from remote locations. The event might also have a traditional official notice board.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which of the two governs, and to so state in the sailing instructions.

현재 많은 대회에서 선수들이 원격지에서 열람할 수 있는 공식게시판을 포함한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대회 현장에는 기존 공식게시판도 있을 것이다. 둘 중 어느쪽이 우선하는지를 정한 후, 그렇게 범주지시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If other meetings are planned with competitors, support people, and other race officials, an agenda for these meetings should be agreed.

선수, 지원인력, 기타 운영요원들과 다른 회의를 계획할 경우, 이들 회의의 안건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If Appendix P for judging rule 42 is in place, the jury should discuss the most frequently observed breaches and class-specific rules.

규칙 42에 대하여 즉결로 판결하는 부칙 P를 사용할 경우, 심판단은 해당 클래스에서 특정적으로 적용되는 규칙과 빈번하게 목격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All meetings should be short, to the point and should include decisions. Any actions should be followed through to ensure completion.

모든 회의는 짧고, 요점을 짚고, 결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모든 조치는 심판단 회의에서 논의된 대로, 반드시 실천하여야 한다.

## **D.9 Pre-Race Meeting with Race Committee Chairman, Principal Race Officer and Other Officials**

### **경기위원장, 총괄수역장, 다른 요원들과의 경기-전 회의**

A meeting should be arranged before racing begins between the protest committee and the chairman of the race committee, the principal race officer and other key personnel, e.g. the safety officer. The objective of this meeting is to develop a spirit of cooperation as well as a level of mutual understanding and respect, while outlining some procedural details (e.g. how to post the protest time limits and who should do it). The chairman or representative of the protest committee should also meet with the technical committee and review the wet clothing control equipment and equipment weighing procedure, if being used.

경기가 시작되기 전, 항의위원회, 경기위원장, 총괄수역장과 기타핵심 인물 (예: 안전담당자 등)과의 회의를 주선하여야 한다. 이 회의의 목적은, 일부 절차적 세부사항 (예: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항의마감시간을 게시할 것인지)을 정하면서, 상호 이해와 존중의 수준, 협력 정신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또한 항의위원장 또는 그 대리인은 기술위원회를 만나서, 젖은의류를 측정하는 장비와 장비 무게 측정절차를 검토하여야 한다.

The protest committee should communicate with the race committee only through the chairman or his appointee. The chairman should speak to the race committee only through its principal race officer or someone delegated by him. This helps to avoid competitors receiving conflicting instructions and reduces the possibility of a request for redress.

항의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통해서만 경기위원회와 소통하여야 한다. 항의위원장은 총괄수역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만 경기위원회와 소통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선수들이 상반된 지시를 받는 것을 피하고, 구제 요청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

## **D.10 Briefing of Competitors**

### **선수브리핑**

Many regattas feature a competitors' briefing. Its main purpose is to introduce the key individuals of the race committee, technical committee and protest committee to the competitors. This will allow a competitor to know who to speak to for help solving a problem during the regatta.

많은 대회들이 선수 브리핑을 특별히 포함하고 있다. 선수 브리핑의 주요 목적은 경기위원회, 기술위원회, 항의위원회의 주요 인물들을 선수들에게 소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선수들이,

대회 기간 중 발생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누구에게 말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Anyone from the organizing committee, race committee or protest committee could chair the meeting. The meeting should be held in English if the competitors speak different languages. This means that the chairman of the meeting should be proficient in English and be experienced with speaking to multi-lingual groups.

조직위원회, 경기위원회 또는 항의위원회의 누구나 이 선수 브리핑의 의장이 될 수 있다. 선수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면, 선수 브리핑은 영어로 진행되어야 한다. 선수브리핑의 의장은 영어에 능숙해야 하며, 다국어 그룹과의 대화에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The following points in relation to the service provided by the protest committee will help to promote an atmosphere of friendliness, fairness, and impartiality:

항의위원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친근함, 공정성, 공명정대함 등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Introduce the members. 심판들 소개
- Emphasize that the protest committee is there to provide a service to competitors  
항의위원회는 선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할 것.
- If appropriate, remind that bad language will likely lead to a rule 69 action. Comment on Appendix P Special Procedures for Rule 42, if it is in effect. Remind sailors that the protest committee's job is to protect them from those around them who might break the rule.  
적절할 경우, 나쁜 언어 (욕 등)는 규칙 69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부칙 P <규칙 42를 위한 특별 절차>를 사용하는 대회라면, 이를 언급한다. 선수들에게 항의위원회의 역할은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것임을 상기시킬 것.
- If there are likely to be specific problems in certain areas, describe what action the protest committee will be taking to monitor those areas. It is comforting for rule-observing competitors to know that the protest committee is aware of likely problems and is ready to address them.  
특정 구역에서 구체적인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항의위원회가 해당 구역을 추적 감시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설명한다. 항의위원회가 예상되는 문제를 인지하고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규칙을 준수하는 선수들에게는 위안이 된다.

Remind youth or less experienced competitors of the importance of taking a penalty promptly for breaking a rule, whether or not the boat is protested. Also remind them of the penalties in rule 44 for breaking a rule of Part 2 or hitting a mark. Also stress also the importance of one or both boats protesting after a collision when no penalty is taken.

청소년 또는 경험이 적은 선수들에게 규칙을 어겼을 경우, 항의를 받든 안 받든, 즉시 벌칙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또한 그들에게 RRS <제2장의 규칙> 위반 또는 마크를 접촉하였을 때, 규칙 44에 있는 벌칙이행에 대하여 상기시킨다. 또한 보트 사이의 충돌 후, 어느 보트도 벌칙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한쪽 또는 양쪽 보트 모두 항의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Competitors often ask questions concerning a sailing instruction or some other regatta procedure question. Great care must be taken in responding. On the one hand, the protest committee wants to help competitors by answering their questions quickly. On the other hand, questions are often more complicated than they first appear. If the answer is not obvious, it is best to ask the competitor to submit the question in writing, so the protest committee can give it proper attention, and answer in writing. It is also helpful to emphasize that no answer to a question becomes official until both the question and answer are posted on the official notice board.

선수들은 종종 범주지시서 또는 경기 진행과정에 대한 질문을 한다. 그럴 경우, 그 답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으로, 항의위원회는 선수들의 질문에 빨리 답변함으로써 그들을 돕기를 원한다. 반면에, 그런 질문들은 처음에 보이는 것보다 복잡한 경우가 많다.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선수들에게 서면으로 질문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며, 항의위원회는 적절한 주의를 기울인 후 서면으로 답변한다. 질문과 답변이 모두 공식게시판에 게시되기 전까지는,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도 공식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When dealing with inexperienced or youth competitors, an even greater empathy and understanding is required. Make every effort to answer all their questions. Upon request, explain all decisions so the competitor and their coach or parent understand. At all times, judges should maintain an atmosphere of fairness and impartiality.

경험이 없거나 청소년 선수들을 대할 때는, 훨씬 더 큰 공감과 이해가 필요하다. 그들의 모든 질문에 답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요청에 따라, 모든 결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서, 선수와 그들의 코치 또는 부모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심판은 항상 공정하고 공명정대한 분위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 D.11 Communicating with Support Persons

### 지원 인력과의 소통

Treat all support persons with respect. Among them, coaches and team leaders are professionals. It is common for an Olympic team coach to attend world championships in four or five different classes in one year. This gives them a unique understanding of what specific issues are currently being discussed and might arise during the regatta.

모든 지원 인력을 존중하여야 하며, 특히, 그 중에서도, 코치와 팀 리더는 전문가이다. 올림픽 팀 코치가 1년에 4개 또는 5개의 다른 클래스의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원인력이 대회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특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The organizing authority will often arrange a meeting of support persons before



racing begins and, if possible, each morning during the regatta. Such meetings provide an informal interface between the competitors, the race management team and the protest committee, but in no way do they replace official communications to competitors posted on the official notice board.

조직위원회는 경기가 시작되기 전, 그리고 가능하다면,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매일 아침 지원 인력과의 회의를 주선한다. 이러한 회의는 선수, 경기운영팀 그리고 항의위원회 사이의 비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제공하지만, 공식게시판에 게시된 선수들과의 공식적인 정보전달을 대체할 수는 없다.

From the regatta organizer's point of view, the following problems and procedures can be addressed:

대회주최자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와 절차를 다룰 수 있다.

- rule observance 규칙준수
- acting as safety cover in bad weather and towing  
악천후 상황에서의 안전판 역할과 보트의 예인에 대한 토의(규칙 37 참고)
- regatta issues, such as parking, opening ceremony, social events, boat launching, and recovery  
주차, 개회식, 대회 중 열리는 행사들, 보트출항과 입항에 대한 문제
- support boats entering the racing exclusion zone.  
경기 중 제한구역에 진입하는 지원 보트에 대한 문제

These regular meetings provide an opportunity for competitors to offer constructive suggestions, either directly or through their coaches.

이러한 정기적인 회의는 선수들이 직접 또는 그들의 코치를 통하여 건설적인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Discussions with a coach often can prevent problems from occurring. One example is that, through the discussion, a coach may work with a competitor to change the kind of behavior that is approaching the stage of a breach of sportsmanship.

코치와의 토론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런 논의를 통하여, 코치는 스포츠맨십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선수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

## **D.12 Communicating with the Media**

### **미디어와의 소통**

The media play an important part in any regatta. Journalists and others involved in communicating with the general public are an essential part of the sport. Every assistance and cooperation should be accorded to the media without compromising the fairness of the competition.

미디어는 어느 대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언론인 그리고 일반 대중과의 소통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스포츠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대회의 공정성을 지키면서, 모든 지원과 협조가 언론에 맞춰져야 한다.

The chairman should appoint a member of the protest committee who will be its representative to communicate with the media. This is usually the chairman or the vice-chairman. All communications should be through this spokesperson. A copy of the hearing results should be passed to the media center promptly. The spokesperson should offer to explain protest hearing decisions to members of the media or attend press briefings. Clear communications can avoid misunderstandings that could harm the way the sport of sailing is viewed by the public.

항의위원장은 미디어와의 소통을 담당할 대리인이 될 항의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는 보통 항의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담당한다. 모든 의사소통은 이 대변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청문 판결의 사본은 미디어센터에 즉시 전달되어야 한다. 대변인은 언론인들에게 항의 청문 판결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언론 브리핑에 참석하여야 한다. 명확한 의사소통은 대중들이 세일링스포츠를 바라보는 관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오해를 피할 수 있다.

### **D.13 Appointing an Investigator, rule 69 allegations**

#### **조사원 임명, 규칙69 관련 혐의**

An investigator ideally should be appointed before the event, just in case an allegation is made under rule 69. The investigator must be free of any conflict of interest, so great care is needed in making the appointment. Consider both what might be perceived as well as the intention. If necessary, it could be one of the judges, as the minimum requirement for the panel for the hearing is only three members. If so, factors such as the issue leading to the report, age, gender, language and country of the participants, and balance of the remaining protest committee could influence the decision. However, if the investigator is to present the case in a hearing, he becomes a party as per the Definitions. He then cannot take part in panel discussions or in making any decisions. Refer to the section on rules 2 and 69 in this manual and to the World Sailing Misconduct Guidance:

규칙 69에 따른 혐의가 제기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회 전에 조사원을 임명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조사원은 어떤 이해상충도 없어야 하므로, 그의 임명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의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여 질 수 있는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부정행위 청문을 위한 패널의 최소 요건이 3명이므로, 필요할 경우, 심판단 중 한 명이 조사원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청문당사자들의 보고서, 나이, 성별, 언어 그리고 출신 국가와 잔류 항의위원회의 균형 등의 요인이 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조사원이 해당 사건 청문회에 출석할 경우, 그는 정의 <당사자>에 따라 당사자가 된다. 그럴 경우, 그 조사원은 패널의 논의에 참여하거나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 본 매뉴얼의 규칙 2와 규칙 69에 대한 G절과 <월드세일링 부정행위 지침>을 참조하시오..

[https://www.sailing.org/tools/documents/2017WorldSailingMisconductGuidance-\[22804\].pdf](https://www.sailing.org/tools/documents/2017WorldSailingMisconductGuidance-[22804].pdf)

## E Protest Committee Administration at the Event

### 대회에서 항의위원회의 행정업무

Contents	Page
E.1 The Duties of the Jury Secretary 심판단 간사의 임무	E 1
E.2 General Daily Administration 일반적인 일일 행정업무	E 2
E.3 Receiving Hearing Request Forms 청문요청서 받기	E 2
E.4 Recording and Copying the Request for Hearing Form 청문요청서의 기록과 복사	E 2
E.5 Protests Considered for Arbitration 중재가 고려되는 항의	E 3
E.6 Accepting a Penalty in an Incident 사건에서의 벌칙 수락	E 3
E.7 Withdrawing Protests 항의철회	E 4
E.8 Scheduling Hearings 청문일정 잡기	E 4
E.9 The Hearing 청문	E 5
E.10 After the Last Race 마지막 경기 후	E 6

#### E.1 The Duties of the Jury Secretary

##### 심판단 간사의 임무

At many events, a secretary is appointed to manage the administrative tasks of the protest committee. This person could be a local judge who is in training; but need not be a judge. A person with strong organizational skills who speaks the local language is an asset to the committee. The person is most frequently referred to as the jury secretary, and that term is used throughout this section.

많은 대회에서, 항의위원회의 행정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심판단 간사가 임명된다. 훈련 중인 그 지역 심판이 간사로 임명될 수 있지만, 반드시 심판일 필요는 없다. 조직력이 뛰어나고 현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심판단의 큰 자산이 된다. 이런 사람을 심판단 간사로 가장 흔하게 호칭하며, 이 용어는 이 E절 전체에서 사용된다.

The most essential part of the jury secretary's job is organizing the protest committee desk for the receiving and processing of requests for hearings. Ideally the desk should be situated next to the hearing room, where it is easily accessible by sailors, and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at some events they might come in wet. The secretary and the chairman should consult before the start of the event and decide the system for receiving protests to be used.

심판단 간사의 가장 본질적인 업무는, 청문 요청의 접수와 그 처리를 위한 항의위원회의 접수처를 체계화하는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그 접수처가 선수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청문회실 옆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떤 대회에서는 선수들이 젖은 상태로 방문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심판단 간사와 항의위원장은 서로 협의하여 항의접수 시스템을 정해야 한다.

The job of the jury secretary depends on the working relationship between the people involved. A good secretary will take a wide view and allow the protest committee to concentrate on the racing, the hearings and the rules without having to take on administrative tasks. The secretary should check to see that:

심판단 간사의 임무는 관계자들 사이의 업무 관계에 영향을 받는다. 좋은 간사라면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항의위원회가 행정업무에 신경 쓰는 일 없이 경기, 청문과 규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간사는 다음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 the hearing room has sufficient chairs, table, lighting, paper pads, protest models:  
청문실에 충분한 의자, 테이블, 조명, 메모지, 자석기능이 있는 모형 보트를 준비할 것;
- the official notice board is located where designated in the sailing instructions and is properly identified, including space for notices from the protest committee:  
항의 공식게시판이 범주지시서에 명시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항의위원회 공지를 위한 공간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 there is access to a printer, a dedicated photocopier, and fast internet:  
프린터, 전용 복사기 및 고속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할 것;
-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chairman, race committee, results service, and others has been agreed and is operating:  
항의위원장, 경기위원회, 채점표 확인 관련 요원, 그리고 기타 관계자들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것;
- a messaging system, such as a WhatsApp link between members of the protest committee and other officials, is established and working:  
항의위원회의 위원들과 다른 운영요원들 사이에 WhatsApp 링크와 같은 메시지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
- when national authority prescriptions are in force, a copy in English is available for all competitors and also posted on the official notice board:  
국가협회 규정이 적용될 경우, 모든 선수를 위하여 영어로 된 사본이 준비되어야 하며, 공식게시판에도 게시할 것;
- there is a wifi access code:  
와이파이 접속 코드를 알려줄 것;
- request for hearing forms and scoring inquiry forms are available at the protest

desk.

청문요청서와 성적 정정 요청서를 항의 접수처에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것.

The jury secretary should have a full understanding of any online event management system being used and be able to arrange training for others where necessary.

심판단 간사는 사용할 모든 온라인 대회 관리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심판위원들에 대한 교육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 The secretary should be able to provide the protest committee with:  
심판단 간사는 항의위원회에 다음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a copy of or a link to the notice of race, sailing instructions, applicable national authority prescriptions, class rules and notices for each member;  
항의위원들에게 대회공고, 범주지시서, 적용될 국가협회 규정, 클래스규칙과 기타 공고의 사본이나 링크를 알려줄 것;
- the daily time limits for filing protests on each course;  
각 수역 또는 클래스별 당일 항의마감시간;
- the daily list of alternative penalties taken, if prescribed in sailing instructions;  
범주지시서에 명시된 경우, 당일 취해진 대체벌칙 목록;
- access to copies of mark rounding and finish records, if needed for redress requests;  
구제요청 청문에서 필요할 경우, 마크 돌기와 피니시 기록의 사본에 대한 접근;
- any letter regarding denial of right of appeal or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jury, if applicable, and ensure that it is displayed, if it is not in the sailing instructions.  
적용 가능한 경우, 상고권의 거부와 관련된 모든 문서 또는 국제심판단의 정관이 범주지시서에 없는 경우 명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 E.2 General Daily Administration

### 일반적인 일일 행정업무

The chairman of the protest committee should attend meetings of the protest committee and race committee meetings.

항의위원장은 항의위원회와 경기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Each day, each member of the protest committee needs copies of any new paper work, such as amendments. These could be in paper or electronic form. The section of the official notice board for notices from the protest committee must be kept in order.

항의위원회의 각 위원들은 매일 범주지시서 수정과 같은 새로운 문서의 사본을 필요로 한다. 이는 종이 양식이나 전자 양식일 수 있다. 공식게시판에서 항의위원회의 공지를 위한 부분은 순서에 맞추어 보관되어야 한다.

Applications for crew substitutions and haul-out requests must be processed, if the

sailing instructions specify that these require approval of the protest committee. 범주지시서에 항의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 승정원의 교체와 육상 올리기 요청 신청은 반드시 항의위원회가 처리하여야 한다.

### E.3 Receiving Hearing Request Forms

#### 청문요청서 받기

The person receiving hearing requests must always accept, and never reject any request for a hearing, whatever form it takes, and whether or not it is received within the time limit. Only the protest committee may decide on the validity of the request in a hearing.

청문요청서를 받는 사람은 언제나 이를 접수하여야 하며, 어떤 형식의 문서이든, 항의마감시간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항의위원회만이 그 요청의 유효성을 청문에서 결정할 수 있다.

### E.4 Recording and Copying the Request for Hearing Form

#### 청문요청서의 기록과 복사

On receipt, each request for a hearing should receive a number, date, time, and the initials of the person who received it. Record this information on the request form and in the log of requests received.

수령 즉시, 각각의 청문 요청에는 번호, 날짜, 시간과 그것을 받은 사람의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정보를 요청 양식과 요청서 수령 일지에 기록한다.

Some events are using regatta management systems with electronic filing of hearing requests forms. Otherwise, if paper copies are used, make a copy of each request form for each member of the protest committee, one for the person lodging the request, and one for the other party to the hearing. Keep the original for the chairman.

어떤 대회는 전자식 청문요청서 제출을 통한 대회 관리 시스템을 사용한다. 그렇지 않고 종이 문서를 사용할 경우, 요청서의 사본을 각 항위위원별 1부, 요청서를 제출한 사람 1부, 상대방사자 1부씩 준비한다. 원본은 패널위원장을 위해 보관해 둔다..

Keep the papers for each hearing in either a transparent A4 folder or in a paper A4 envelope with the protest details written on its front.

각 청문 서류를 투명한 A4 서류철이나 전면에 항의 내용을 기재한 A4 종이봉투에 보관한다.

The transparent folder has several advantages:

투명 서류철에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 It reduces the number of tasks that the receiving person has to complete in a moment where being timely is essential, despite having many incoming requests. 많은 청문요청이 있더라도 시간 준수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그 요청을 받는 사람이 적시에 완료하여야 하는 업무를 줄일 수 있다.
- It reduces the number of possible errors when copying data from the Request

for Hearing Form to the envelope.

청문요청서에서 해당 청문에 관련된 서류를 모아두는 봉투의 바깥 면에 해당 정보를 옮겨 쓸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일 수 있다.

- It maintains the same level of information as the envelope system does: an open case will show on top the Request for Hearing Form, while a closed case will show the decision form as the first document in the transparent folder.

이는 항의 내용을 기재한 A4 종이 봉투에 보관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정보를 유지한다. 미 해결 건은 청문요청서가 맨 위에 보일 것이고, 반면에 종료된 건은 투명 서류철의 첫 문서로 판결문이 보여 질 것이다.

Keep the copy for the parties to the hearing at the protest desk and provide the parties with a copy as soon as possible.

청문 당사자들을 위한 사본을 항의 접수처에 보관하고, 당사자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사본을 제공한다.

Any report alleging misconduct of either a competitor or a support person, presented either verbally or written, must immediately be given to the chairman. It must also be recorded with a time of receipt.

구두나 서면으로 제출된 선수 또는 지원 인력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모든 보고서는 즉시 항의위원장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접수된 시간이 함께 기록되어야 한다.

## E.5 Protests Considered for Arbitration

### 중재가 고려되는 항의

The section on Arbitration in this manual explains the procedures when a protest is considered for arbitration. When a protest is delivered to the protest desk, the jury secretary will process it as outlined in the previous paragraphs and pass it to the judge who will determine if the protest meets the requirements for arbitration. If so, the judge will follow the procedures for Arbitration. The notice of hearing should be posted on the official notice board, whether or not it proceeds to an arbitration meeting. This ensures that the arbitration or a hearing if necessary, may proceed as soon as possible.

이 매뉴얼의 H절 (중재)에서는 중재의 대상이 되는 항의일 경우에, 그 절차를 설명한다. 항의 접수처에 항의가 전달되면, 심판단 간사는 앞의 항목에서 설명된 절차대로 처리하고, 그것을 그 항의가 중재 요건을 충족하는지 결정할 심판에게 전달한다. 만약 그렇다면, 심판은 중재 절차를 따를 것이다. 중재회의의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청문일정에 대한 공고는 공식게시판에 게시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중재 또는 청문이 가능한 한 빨리 진행될 수 있다. .

If one or more parties to the arbitration meeting decide to take a post-race penalty, the jury secretary will record that information on the official notice board and report the score change to the scorer. If the judge permits the protest to be withdrawn, then the notice of hearing will be changed to show that the protest is withdrawn, so no hearing will occur. If the arbitration meeting does not proceed or

the protest is not withdrawn, then the hearing will proceed as scheduled.

중재회의에 참석한 당사자 중 한 명 이상이 경기-후 벌칙을 받겠다고 결정하면, 심판단 간사는 공식계시판의 항의결과표에 이 정보를 기록하고, 채점관에게 이를 알린다. 중재가 성립되어 심판이 항의 철회를 허가하면, 청문일정 공고에 항의가 철회되었음을 알리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청문은 진행되지 않는다. 중재회의가 진행되지 않거나 항의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청문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 E.6 Accepting a Penalty in an Incident

### 사건에서의 벌칙 수락

When a protest has been delivered, a protestee may accept a penalty for the incident prior to a hearing. A judge will ask whether the incident resulted in any damage to any boat or injury to a competitor. If there was no damage or injury, the boat may take a penalty by retiring from the race or take any alternative penalty available in the sailing instructions. If there was serious damage or injury, the penalty is to retire from the race. The judge will ask the competitor to write on the protest form:

항의가 접수되었을 때, 피항의자는 청문에 앞서 그 사건에 대한 벌칙을 수락할 수 있다. 심판은 해당 사건에서 보트의 손상이나 선수의 부상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물을 것이다. 만약 손상이나 부상이 없다면, 보트는 경기에서 리타이어하는 것으로 벌칙을 받거나 범주지시서에 명시된 대체 벌칙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심각한 손상 또는 부상이 있었다면, 그 벌칙은 해당 경기에서 리타이어하는 것이다. 심판은 선수에게 접수 받은 항의서에 아래와 같이 작성할 것을 요청할 것이다.

I accept a penalty in the incident described in this protest, and hereby retire (or accept the penalty of \_\_\_\_\_ (fill in any alternative penalty that might be available)

본인은 이 항의에 기재된 사건에 대한 벌칙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 리타이어 (또는 \_\_\_\_\_(가능한 대체 벌칙을 쓸 것))벌칙을 받아들입니다.

A representative of the boat accepting the penalty would sign the form. A separate form may be used for this declaration. If so, attach it to the protest form. In all cases of acknowledgment, the protest must be presented to the protest committee; if possible, alert the protestor and verify if he or she wishes to withdraw the protest.

벌칙을 수락하는 보트의 대표가 항의서 양식에 서명한다. 이 신고서는 별도의 양식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항의서에 첨부하도록 한다. 벌칙을 수락하는 모든 항의는, 대표자의 서명과 함께 항의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가능한 경우, 항의자에게 알리고, 항의 철회를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E.7 Withdrawing Protests

### 항의철회

Once the protest has been received, a protestor's request to withdraw the protest



must be approved as a decision of the protest committee under rule 63.1. World Sailing Jury Policy states that the protest committee may appoint a member or members to make this decision. The protestor provides the reasons for the request. The protest committee would allow the withdrawal of the protest if there is no reason to refuse the request. The competitor should also sign the request form confirming withdrawal of the protest.

일단 항의가 접수되면, 항의자의 철회 요청은 항의위원회의 결정(규칙 63.1)에 따라 승인되어야 한다. 월드세일링 심판단의 판결방침에는 이 결정을 하기 위해 한 사람 혹은 몇 사람의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항의자는 철회요청 사유를 제공한다. 항의위원회는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면, 항의 철회를 허용할 것이다. 항의자는 항의철회를 확인하는 요청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 E.8 Scheduling Hearings

### 청문일정 잡기

Many large events use event management systems which have a section for jury hearings and notices. All protest committee members need to be familiar with the capabilities of the system in use. Some that permit scheduling of hearings will also send notifications by text or e-mail to parties, post notices on the event website and update the hearing schedule as hearings progress. These programs add to the efficiency of communicating with competitors.

많은 큰 대회에서는 심판 청문과 그 공지를 위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대회관리 시스템을 사용한다. 모든 심판위원들은 그 시스템의 사용법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청문 일정 공지를 허용하는 일부 시스템은, 당사자들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해당 공지를 보내고, 대회 홈페이지에 공지들을 게시하며, 청문진행에 따라 청문일정을 업데이트하기도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선수들과 의사소통 효율성을 높인다.

The sailing instructions inform when the hearings may begin. Inform the parties as soon as possible of their scheduled hearing time. The first few hearings are best scheduled at 20-minute intervals, and then at half-hour intervals for each hearing panel. Thus, if the first one or two requests are invalid, there is little delay. Should the first hearings take much longer, the remaining hearings can be rescheduled.

범주지시서는 언제 청문이 시작되는지 알려준다. 당사자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그들의 청문시간 일정을 알린다. 처음 몇 번의 청문은 20분 간격으로, 그 다음에는 각 청문 패널마다 30분 간격으로 일정을 잡는 것이 가장 좋다. 따라서, 처음 한 두 개의 청문요청이 무효일 경우, 청문 일정 지연은 거의 없다. 첫 번째 청문이 예상보다 길어지면, 남은 청문 일정을 재조정할 수 있다.

The objective is to keep the protest committee working until all hearings are complete. Keep the competitors waiting for as short a time as possible. If hearings get behind schedule, later hearings should be rescheduled, so that competitors can get changed or go for a meal.

모든 청문이 완료될 때까지, 항의위원회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목표다. 선수들이 최대한 짧은

시간 동안 기다리도록 한다. 청문이 일정보다 늦어지면, 이후의 청문일정을 재조정하여 선수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식사를 하러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When there is a protest and a counter protest, or protests or requests for redress from different boats about the same incident, they should be scheduled to be heard in one hearing.

같은 사건에 대하여, 항의와 맞항의가 있거나, 같은 사건에서 서로 항의 또는 구제요청을 한 경우, 이 요청들을 합하여 하나의 청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야 한다.

The chairman should first read the Request for Hearing Forms and decide the most efficient order of the hearings. Schedule first any hearings where the race committee is a party once they are ashore, so they can be heard consecutively. On the last day of the event, schedule first any hearings involving boats that may possibly be prize winners, so the prize giving can commence as soon as possible.

패널위원장이 먼저 청문요청서를 읽고, 가장 효율적인 청문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경기위원회가 구제요청의 당사자인 경우, 경기위원회가 육상으로 복귀하면, 그들이 연속적으로 청문에 참가할 수 있도록 청문 일정을 잡는다. 대회의 마지막 날에는, 입상 가능성이 있는 보트와 관련된 청문 일정을 먼저 잡아서, 가능한 한 빨리 시상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한다.

Inform the race committee promptly of any request for redress to allow them as much time as possible to investigate the request.

경기위원회에 대한 구제요청을 그들에게 즉시 통보하여, 그들이 그 구제요청에 대하여 최대한 많은 시간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Post the hearing schedule on the official notice board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 end of protest time but before the end of the time limit for posting notifications of hearings. Hearings may begin before the protest time expires, provided that the parties to the protest are ready to proceed.

항의마감시간 후 가능한 한 빨리 공식게시판에 청문 일정을 게시하여야 하지만, 항의마감시간 전이라도, 청문 일정을 공식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청문에 참가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항의마감시간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청문을 진행할 수 있다.

If the request for a hearing is from the protest committee, race committee or technical committee, check if the boats have been notified within the protest time limit.

항의위원회, 경기위원회 또는 기술위원회가 청문을 요청하였을 경우, 항의마감시간이내에 해당 보트에게 통보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 E.9 The Hearing

### 청문

When the protest committee is ready for a hearing, give a copy of the Hearing

Request Form to each member. When it is ready to proceed, call the parties, usually one from each boat, and interpreters if necessary.

항의위원회가 청문을 시작할 준비가 되면, 청문요청서 사본을 각 위원들에게 전달한다. 청문을 진행할 준비가 되면, 보통 각 보트 당 한 명의 당사자를 부르고, 필요할 경우, 통역을 둘 수 있다.

Check the alternative penalty list to see whether either party to the hearing took a penalty.

청문당사자 중 어느 쪽이 벌칙을 이행했는지 대체 벌칙 리스트를 확인한다.

If observers are allowed, the chairman should remind them of the applicable rules for observers and have them sign an acknowledgment form.

옵저버를 허용할 경우, 항의위원장은 옵저버에게 적용되는 규칙을 상기시키고, 확인서에 서명하게 한다.

The jury secretary should check that witnesses are available and waiting outside when they are called to the hearing. Make sure they cannot hear the proceedings before they come in to give their evidence.

심판단 간사는 청문하는 동안 심판단이 증인을 부를 때, 해당 증인이 청문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증인이 증언하러 청문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청문 진행 과정이나 그 진술내용을 들을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After each hearing, record the decision, and file the original protest form, protest committee members' notes, and any other papers received during the hearing. The jury secretary should communicate results of hearings and score changes after each hearing. In consultation with the chairman, complete the protest results log and post it on the notice board.

각 청문을 마친 다음, 판결을 기록하고, 항의서 원본, 항의위원회 위원의 메모와 청문 중 받은 기타 서류들을 정리한다. 심판단 간사는 청문 결과와 각 청문에 따른 성적 변경을 채점관에게 전달한다. 항의위원장과 협의하여 항의결과 일지를 작성하여 공식게시판에 게시한다.

Some regatta management systems permit posting the decisions from hearings on-line. Consider how much detail is given, given the large audience for posted decisions.

일부 대회관리 시스템은 청문의 판결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시스템에는 많은 사람이 열람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게시되는 판결에 어느 정도의 세부 내용이 담길지를 고려하도록 한다.

On the last day of the event, there is a 30-minute time limit after a hearing to request a reopening or redress based on a protest committee's decision from each hearing. Post these decisions and the individual time limits for reopening and redress promptly on the official notice board, stamped with the date and time of posting.

대회의 마지막 날에는, 각 청문의 항의위원회 판결에 대한 재청문 또는 구제요청의 제한시간

은 청문을 마친 후, 30분이다. 이러한 판결과 재청문 그리고 구제에 대한 각 제한시간을 게시 날짜와 시간을 날인하여 공식게시판에 즉시 게시한다.

The chairman should ensure that a full written decision is made available for any party to the hearing who requests the decision.

항의위원장은 판결문을 요청하는 청문의 당사자에게 완전한 서면 판결문이 열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E.10 After the Last Race**

### **마지막 경기 후**

The jury secretary, in consultation with the chairman, should ensure that all protests and papers are filed with the organizing club, for reference. They should be kept for at least six months after the event.

심판단 간사는 항의위원장과 협의하여 모든 항의와 그 서류들을 참고용으로 주최 클럽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 자료들은 대회 후 최소 6개월 동안은 보관되어야한다.

## F The Hearing

### 청문

#### F.1 General Principles, Jurisdiction, Preparation

##### 일반 원칙, 관할권, 준비

Although already stated in the previous section, it bears repeating that the reputation of sailing, and that of the judging community, rests upon the protest committee making correct and fair decisions.

앞 절에서 이미 밝혔지만, 세일링 스포츠와 그에 종사하는 심판들에 대한 평판은 항의위원회가 올바르게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데 달려 있다는 점을 반복하여 강조할 만 하다.

There are four different types of defined hearings within the rules - the protest hearing, the redress hearing, a hearing to consider whether a support person has broken a rule, and a misconduct hearing. There are also requests to reopen hearings. Misconduct under rules 2 and 69 is covered in the section on rule 2 and rule 69 of this manual.

규칙상 청문에는 항의 청문, 구제 청문, 지원 인력이 규칙을 어겼는지 여부를 따지는 청문, 부정행위에 대한 청문 등 4가지 유형이 있다. 또한 재청문에 대한 요청도 있다. 규칙 2와 69에 따른 부정행위는 이 매뉴얼의 G절 <규칙 2와 규칙 69>에서 다룬다.

The rules and procedures for initiating, conducting and deciding these hearings are presented in RRS Part 5. However, there are other types of hearings that are not so specifically defined. Under rule N2, an international jury may be asked to decide a matter that directly affects the fairness of the competition. For example, the organizing authority asks the protest committee to decide a question on eligibility or measurement that is not as a result of a protest or request for redress. Such a request may require obtaining evidence from competitors, officials or other participants, so that a hearing may be warranted.

이러한 청문에 대한 개시, 시행 및 판결을 위한 규칙과 절차는 RRS <제 5장>에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다른 유형의 청문도 있다. 부칙 N2에 따라, 국제심판단은 경기의 공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떤 문제에 대한 판결을 요청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조직위원회는 참가자격 또는 계측 문제처럼, 항의나 구제요청에 의한 것이 아닌 문제들에 대한 판결을 항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그런 요청에 응할 때는, 선수와 운영요원 또는 다른 참가자들로부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청문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The protest committee's jurisdiction is limited by the rules as defined in the current version of theRRS. A boat's breach of a government, harbor or maritime agency regulation is outside the jurisdiction of the protest committee, unless the requirement for a boat to comply with such a law is included in the notice of race or sailing instructions.

항의위원회의 관할권은 현행 RRS에 정의된 규칙에 의하여 제한된다. 정부기관, 항만관리소 또는

해운항만청의 법규에 대한 보트의 위반은, 그런 법규를 따라야 한다고 대회공고나 범주지시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의위원회의 관할이 아니다.

Appendix M Recommendations for Protest Committees provides standard procedures and considerations for hearings. Any hearing should be conducted in a formal but friendly way, so that the parties feel they had their evidence seriously considered. In a hearing, the protest committee should be polite but always in control.

부칙 M <항의위원회에 대한 권고>는 청문을 위한 표준 절차와 고려 사항을 제공한다. 모든 청문은 정중하면서도 우호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그리하여 당사자들이 그들의 증거가 진지하게 고려되어 졌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청문에서, 항의위원회는 예의 바르게 행동하되, 항상 통제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Protest committee members should be identified by name tags or name plates. It is often difficult for a party to understand a judge's name and its spelling when the members quickly introduce themselves.

항의위원회 위원들은 명찰이나 명패로 식별되어야 한다. 위원들이 빠르게 자기소개를 할 때, 청문 당사자들이 심판의 이름과 스펠링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Many different room configurations for hearings work well and often depend upon the furniture that is available. Most often the protest committee sits on the side of the table facing the door with the chairman in the middle.

Parties should sit opposite the chairman. When a witness gives evidence, he should sit between the parties.

청문실은 다양한 가구배치가 가능하며, 종종 그 가구배치의 영향을 받는다. 대부분의 항의위원회는 문을 바라보도록 테이블을 놓고, 패널위원장을 가운데 두고, 나란히 앉는다. 당사자들은 위원장의 맞은편에 앉아야 한다. 증인이 증거를 제시할 경우, 그 증인은 당사자들 사이에 앉아야 한다.

No alcohol or smoking should be allowed in the protest room. All mobile telephones and recording devices must be switched off. A policy for other beverages such as water, non-alcoholic drinks or coffee is usually established at the initial protest committee meeting. Be aware that space is often limited and there is a risk of drinks being spilled on computers.

청문실에서는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모든 휴대 전화와 녹음 장치는 전원을 꺼야 한다. 물, 무-알코올 음료, 커피와 같은 다른 음료에 대한 방침은 보통 대회가 시작되기 전, 처음 항의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다. 청문실의 공간이 제한된 경우가 많고, 컴퓨터에 음료가 쏟아질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Dress by members of the protest committee should be appropriate for the event and its venue. The organizing authority may provide the protest committee with event clothing. If so, it may be appropriate to wear that in hearings to give the impression that the protest committee operates as part of the team. However, it also may be a problem when the protest committee and the race committee are both wearing the same event clothing, for example at a redress hearing for a boat claiming she was misidentified by the race committee as OCS.

항의위원회 위원들의 복장은 대회 및 그 개최지에 적합하여야 한다. 조직위원회가 항의위원회 위원들에게 대회 기념 티-셔츠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항의위원회가 팀의 일원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하여 청문회에서 그 기념 티-셔츠를 착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그러나, 항의위원회와 경기위원회가 같은 기념 티-셔츠를 입고 있을 경우, 예를 들어, 경기위원회에 의하여 OCS로 잘못 기록되었다고 주장하는 보트에 대한 구제요청 청문에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 F.1.1 Before the hearing

#### 청문 전에

If possible, the chairman should review the hearing request with the other members of the protest committee well before the hearing. This gives the protest committee an idea of the issues involved and time to gather relevant documents.

가능하면, 항의위원장은 청문 전에 다른 항의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청문 요청서를 잘 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항의위원회는 관련 쟁점에 대한 검토와 그에 관련된 문서를 수집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

Before the parties are called into the room, the chairman or his delegate should make sure that each party has a copy of the hearing request form and is ready to proceed. A request for more time to prepare should be considered on its own merit.

If a copy of the protest has been available at the protest desk for 30 minutes since the end of protest time, and all the postings were timely, the chairman might give the party only ten minutes. If the protest committee is asking to start the hearing before the scheduled time, the chairman might give the protestee more time to prepare a defense. Also ensure that witnesses are standing by outside the protest room.

당사자들을 청문실로 불러들이기 전에, 패널위원장 또는 그의 대리인은 각 당사자들이 청문요청서 사본을 가지고 있고, 청문에 참가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준비할 시간을 더 달라는 요구는 그 요청의 타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항의마감시간 종료 이후, 당사자들은 항의 접수처에서 30분 동안 해당 항의서의 사본을 받을 수 있었고, 모든 공지가 일정대로 이루어졌다면, 패널위원장은 그 요청 당사자에게 10분 정도의 시간을 더 줄 수도 있다. 항의위원회가 예정시간보다 이르게 청문을 시작하려는 경우라면, 패널위원장은 피항의자가 청문에 대한 방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줄 수도 있다. 또한 증인들이 청문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In the hearing, use a personal checklist throughout the process to ensure that nothing is missed. The Hearing Checklist may be found in the Document Library of the International Judge section of the World Sailing web site).

청문에서는, 과정 전반에 걸쳐 개인용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한다. <청문 체크리스트>는 월드세일링 사이트 <국제심판>절에 있는 <문서보관함>에서 찾을 수 있다.

### F.1.2 Conflict of Interest

#### 이해 상충

After the preliminary topics are checked and before the hearing, the members of the protest committee should be introduced to the parties to the hearing. Any member of

the protest committee with a conflict of interest shall declare it to the parties at this time. Nationality, club membership, or past protest hearing results do not fit within the definition of conflict of interest (COI).

청문의 당사자가 출석하였는지 확인한 다음, 청문이 열리기 전에, 청문 당사자들에게 항의위원들을 소개하여야 한다. 이해 상충이 있는 항의위원회 위원은 이 때 당사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국적, 특정 클럽 회원, 또는 과거 항의 청문 결과는 이해 상충(COI)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

The chairman then asks all parties if they consent to the members.  
항의위원장은 출석한 당사자들에게 위원 구성에 이의가 없는지 묻는다.

If a member of the protest committee has declared a conflict of interest, and, knowing the conflict, both parties consent to him being on the protest committee, he may remain.

항의위원회 위원이 이해 상충을 선언하였고, 그 이해 상충을 알게 되었는데, 당사자들 모두 그 위원이 항의위원회에 남는 것에 동의할 경우, 해당 위원은 항의위원회에 남을 수 있다.

If a party objects to a member of the protest committee based upon a conflict of interest, the chairman should ask the reasons.

청문 당사자가 이해 상충을 이유로 항의위원회 위원을 거부할 경우, 패널위원장은 그 이유를 물어야 한다.

Once the reasons are given, the parties and the judge are asked to leave the room and the protest committee decides:

일단 그 이유가 제시되면, 청문 당사자들과 해당 심판은 청문실에서 나가도록 요청하고, 항의위원회는 다음 내용을 검토한다.

do the objections meet the definition of conflict of interest, and, is the conflict of interest significant

이의제기가 이해 상충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이해 상충이 심각한지?

If the protest committee concludes:

the reason for the objections does not meet the definition of conflict of interest, or, the conflict of interest is not significant, the judge would remain on the protest committee.

항의위원회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면:

이의제기의 사유가 이해 상충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해 상충이 심각하지 않다면,

해당 심판은 항의위원회 위원으로 남을 것이다.

If the protest committee decides

the conflict of interest is significant, and

a party to the protest does not consent,

the judge would not be on the protest committee hearing that protest.



항의위원회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면  
이해 상충의 정도가 심하고,  
청문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심판은 그 항의를 청문하는 항의위원회에 남을 수 없다. (항의위원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When a request for redress is made under rule 62.1(a) alleging an improper action or omission of the race committee, organizing authority, or technical committee, but not the protest committee, a member of that committee should not be a member of the protest committee hearing that case.

항의위원회에 대한 구제요청을 제외하고, 경기위원회, 조직위원회, 기술위원회의 부적절한 조치 또는 임무의 누락을 이유로 규칙 62.1(a)에 따른 구제요청이 있을 경우, 그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사건을 청문하는 항의위원회의 위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Furthermore, for World Sailing major events, or for other events as prescribed by the national authority of the venue rule 63.4(b) does not apply and a person who meets the definition conflict of interest, whether or not significant, shall not be a member of the protest committee (rule 63.4(d)).

또한, 월드세일링의 주요 대회 또는 대회 개최지의 국가협회가 규정하는 대회에 대해서는 규칙 63.4(b)가 적용되지 않으며, 심각성 여부에 관계없이, 이해 상충이 있는 사람은 항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규칙 63.4(d)).

## F.2 Right to be Present

### 출석할 권리

The parties to the protest, have the right to be present during the hearing and to ask questions of any person giving evidence. A party to a hearing is a defined term.

Depending on the hearing, it may be: a protestor, a protestee, a boat requesting redress or for which redress is requested, a race committee, a technical committee, a person against whom an allegation of a breach of rule 69 is made, a person presenting an allegation of misconduct, or a support person and any boat that person supports. The protest committee is never a party.

항의 당사자들은 청문에 출석할 권리가 있으며, 증거를 제시하는 모든 사람에게 질문할 수 있다. 청문에서 당사자란 RRS <정의>에서 정의된 용어이며, 청문의 유형에 따라 항의자, 피항의자, 구제를 요청하는 보트 또는 구제가 요청된 보트, 경기위원회, 기술위원회, 규칙 69 위반 혐의가 있는 사람, 규칙 69 (부정행위) 혐의를 제기한 사람, 또는 지원인력 그리고 지원인력과 관련된 보트가 될 수 있다. 항의위원회는 결코 당사자가 아니다.

When a party is absent and it is verified that the required notice of the time and place of the hearing was properly posted, the hearing should normally proceed without him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for the absence. When a party wishes to attend, but finds the time of the hearing inconvenient, such as a prior dinner engagement, the protest committee must decide to what extent, if any, the competitor can be accommodated.

당사자가 청문에 불출석하더라도, 청문의 일시, 장소에 대한 통지가 제대로 되었다면, 특별한 불출석 사유가 없는 한, 청문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청문에 참석하기를 희망하지는 않지만, 불가피한 사전 저녁약속 등으로 청문 참석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항의위원회는 해당 선수의 사정을 파악하여,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When the protest claims a breach of a rule of Parts 2, 3 or 4 the representative of each boat shall have been on board the boat at the time of the incident, unless there is a good reason for the protest committee to rule otherwise (rule 63.3(a)).

항의가 제2장, 제3장 또는 제4장의 규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항의위원회가 달리 판단할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청문에 참석할 각 보트의 대표자는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에 승선해 있어야만 한다. (규칙 63.3(a))

When neither party attends the protest hearing, the committee should first consider whether there was an error in the posting of the time or place of the hearing. If the parties were properly notified, the protest committee may act without the parties. In this case, the protest committee will often conclude they do not have sufficient evidence to find the facts and reach a conclusion that the protest is valid.

The hearing is then closed. However, the protest committee may act upon the evidence provided by the protest form and may decide, based on the balance of probabilities, to disqualify a boat. When this occurs, the protest committee should be ready to reopen the hearing on request, if good grounds are provided for the non-attendance. 당사자 중 누구도 청문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항의위원회는 청문 일시나 장소 게시에 오류가 있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당사자에게 제대로 통보되었을 경우, 항의위원회는 당사자 없이 청문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항의위원회는 종종 항의는 유효하지만, 사실관계를 규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청문은 종료된다. 그러나, 항의위원회는 항의서에 제시된 증거에 따라 판결할 수 있으며, 증거의 우월성에 근거하여 보트를 실격시킬 수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청문 당사자가 불출석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청문의 재개를 요청하면, 항의위원회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Note that Regulation 22.5.3 changes rule 63.3(a), determining the right to be present, for protest hearings involving categorization of a competitor.

선수분류와 관련된 항의 청문에서는, 출석할 권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월드세일링 규정 22.5.3이 규칙 63.3(a)를 변경한다는 것에 유의할 것.

### F.3 Interpreters 통역

Ensure that competitors who are not fluent in English understand all of the statements and procedures and are able to communicate in English. Protest committee members should speak slowly and clearly to assist the party in understanding what is being said.

영어에 능통하지 않은 선수가 모든 문장과 절차를 이해하고, 영어로 의사 소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항의위원회 위원들은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말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If a competitor speaks enough English to say he has trouble understanding English, ask him to start the hearing without an interpreter. If he is still having trouble understanding, allow an interpreter to be present. Ideally a member of the protest committee would serve as the interpreter. If a coach or team member is the only available interpreter, the chairman must ensure that this does not provide an unfair advantage to the party concerned. Remind the interpreter that he or she is there as an interpreter, and not as a rules advisor or to clarify a question.

선수가 영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를 구사할 경우, 일단 통역 없이 청문을 시작하도록 요청한다. 만약 선수가 여전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통역을 참석시킨다. 항의위원회의 위원이 통역 역할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만약 통역이 가능한 사람이 코치나 팀원뿐이라면, 패널위원장은 그렇게 하는 것이 통역받는 당사자가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통역에게 당신은 통역으로 있을 뿐이며, 규칙에 대한 조언 또는 질문을 수정하여 통역하면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 **F.4 Withdrawing a Protest or Request**

##### **항의 또는 요청의 철회**

Once a hearing request has been received, the party's request to withdraw the protest or the request for redress must be approved as a decision of the protest committee under rule 63.1 World Sailing Jury Policy states that the protest committee may appoint a member or members to make this decision. The protest committee should determine why it is being withdrawn. If damage or injury is suspected, or the protest committee thinks the protestor has realized he may have broken a rule and is attempting to avoid a penalty, permission should not be given. In both cases the protestor may be in breach of rule 2 Fair Sailing.

일단 청문요청이 접수되면 당사자의 항의 철회 요청 또는 구제요청은 규칙 63.1에 의해 항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승인되어야 한다. 월드세일링 심판단 판결방침에는 항의위원회는 이 결정을 위하여 한 명 또는 몇 명의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항의위원회는 철회하는 사유를 알아내야 한다. 만일 손상 또는 상해가 예상되거나, 또는 항의위원회는 항의자가 스스로 규칙을 어겼음을 깨닫고, 페널티를 피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면 허가해 주면 안 된다. 두 경우 모두, 항의자는 규칙 2 공정한 범부를 위반할 수 있다.

#### **F.5 Hearing More Than One Request Concurrently**

##### **같은 사건에 대한 동시 청문**

When there is a protest and a counter-protest, or when several protests appear to relate to the same incident, or multiple requests for redress about the same issue, they may be heard together in one hearing. If the protest committee has doubts about whether protests or redress requests are about the same incident, assume that they are, and start the hearing with all the parties. Provided that at least one is valid, the hearing must proceed.

항의와 맞항의 또는 같은 사건에 관련된 여러 항의, 또는 같은 이슈에 대한 복수의 구제요청이 있을 경우, 하나의 청문으로 묶어서 진행할 수 있다. 항의나 구제요청이 같은 사건인지 의심이 든다면, 일

단 그렇다고 가정하고 , 모든 당사자와 함께 청문을 시작한다. 적어도 하나 이상의 항의나 구제요청이 유효하다면, 청문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 F.6 When A Third Boat, May Have Broken a Rule

### 당사자가 아닌 제 3자 보트가 규칙을 어겼을 때

Sometimes during a hearing, after hearing the evidence of a witness, it becomes clear that the witness, or another boat, might have broken a rule and should be included as a party in the hearing. This is done by the protest committee stopping the hearing and protesting the other boat.

가끔은 청문을 하는 동안, 증인의 증언을 들은 뒤, 그 증인이나 다른 보트가 규칙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분명해져서, 그들을 청문의 당사자로 포함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가 발생하면, 항의위원회가 청문을 중단하고, 해당 보트를 항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When doing so, all of the safeguards and validity rules must be met. The protest committee shall inform the boat that she is being protested, the protest shall be in writing and include the required information, the time and place shall be posted, and the protested boat must be given time to prepare. The hearing is then started anew with all parties being given an opportunity to object to a member having a conflict of interest. During the validity phase, the protest committee will extend the time limit for filing the third protest since the information was learned from a valid protest and filed immediately. All evidence previously heard in the absence of the witness must be reheard.

그렇게 할 경우, 규칙에 따른 절차와 항의의 유효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항의위원회는 해당 보트에게 항의를 받게 되었음을 알려야 하며, 요구되는 정보를 포함한 항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청문의 시간과 장소를 게시하여야 하며, 항의받은 보트에게 청문을 준비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후 모든 당사자들에게 이해상충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준 다음, 새로운 청문이 시작된다. 해당 정보가 유효한 항의에서 얻어졌고, 그 즉시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항의위원회는 제3자에 대한 항의를 제출하기 위하여, 항의의 유효성을 충족할 수 있는 시간만큼, 항의마감시간을 연장할 것이다. 그 증인이 없는 상황에서 이전에 들었던 모든 증거들은 다시 제시되어야 한다.

## F.7 Observers

### 옵저버

World Sailing's policy is to open hearings to observers if possible. The protest committee should decide, at their initial meeting, circumstances for opening hearings to observers.

월드세일링의 방침은 가능하다면 청문을 옵저버들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항의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청문을 옵저버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The advantage of open hearings is that they can greatly enhance the respect for and understanding of the hearing system. However, a hearing should not be open to

observers if any protest committee member is uncomfortable with spectators. It is more important to give a good service to the parties than to educate, impress or accommodate people who are not involved. Similarly, a party might ask for a hearing to be closed to observers. The protest committee would consider the request on its merits after the reasons are stated.

공개 청문의 장점은 청문시스템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항의 위원회 위원 중 누구라도 옵저버가 참관하는 것을 불편해 한다면, 청문을 옵저버에게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감동시키거나 수용하는 것보다는 (위원들이 집중해서) 당사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당사자는 옵저버가 없는 비공개 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항의위원회는 당사자의 비공개 요청을 받은 다음에, 그 요청의 타당성에 따라 이의 수용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Observers may include persons not connected with the hearing, such as other competitors, parents, coaches, club members and the press or media. No observer may give evidence as a witness.

옵저버에는 다른 선수, 부모, 코치, 클럽 회원, 언론 혹은 미디어와 같이 그 청문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포함될 수 있다. 옵저버는 증인으로 나서서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

Advise observers of their obligation to remain silent and not record or photograph any part of the hearing, and that they must leave the room while the protest committee discusses the case and makes a decision.

옵저버에게 청문의 내용을 기록하거나 사진 촬영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야 하는 의무사항과, 항의 위원회가 사건을 논의하고 판결을 내리는 동안에는 방에서 나가야 함을 알린다.

## **F.8 Windsurfing, Kiteboard, Super Yachts and Radio Sailing Appendices** **윈드서핑, 카이트보드, 슈퍼요트, 무선세일링 부칙**

For windsurfing, kiteboard, super yacht and radio sailing competitions, protest committees need to use the appropriate RRS Appendices which modify any rules for protests, redress and hearings.

윈드서핑, 카이트보드, 슈퍼요트 그리고 무선세일링 경기에 대해서, 항의위원회는 항의, 구제와 청문에 관한 규칙을 수정한 해당 RRS 부칙을 사용하여야 한다.

## **F.9 The Protest Hearing** **항의 청문**

The hearing is now ready to start. Although not a rule, it is good practice for the chairman to remind the parties that this is the deadline to meet certain rule requirements, such as correcting the protestor and protestee on their protest form, or when Appendix T is in effect, accepting a Post-Race Penalty. The chairman then officially declares the hearing started.

이제 청문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비록 규칙은 아니지만, 항의위원장이 항의자와 피항의자가 항의서를 정정하는 것이나, 부칙 T가 적용되는 경우, <경기-후 벌칙>을 받는 것처럼, 일정 규칙 요건

을 충족하는 최종시간이 지금이라는 것을 당사자들에게 상기시키는 일은, 좋은 관행이다. 그런 다음 패널위원장은 청문이 시작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 F.9.1 Protests by Boats in the Racing Area

### 경기수역에서 보트에 의한 항의

With regard to the hail of 'Protest', there is currently no World Sailing Case to interpret the word 'reasonable' in rule 61, '... she shall hail 'Protest' and conspicuously display a red flag at the first reasonable opportunity for each.' Judges must use common sense to interpret the requirement, but it does not take long to make a hail. When the protestee states that a hail was not heard, a crew member may be asked to provide evidence as a witness. The protest committee will then weigh the evidence and decide, on a balance of probabilities, whether these requirements were met. The protest committee may not decide, 'the rule requires a hail - it does not require that it be heard'.

'프로테스트(Protest)'라고 소리지르는 것과 관련하여, 규칙 61의 “~~, 각각 최초의 적절한 기회에 '프로테스트(Protest)' 라고 소리지르고, 빨간기를 잘 보이게 올려야 한다.”는 문장의 '적절한' 이라는 단어를 해석한 월드세일링 판결사례가 현재는 없다. 심판은 상식을 동원하여 '적절한'이 뜻하는 의미를 해석하여야 하지만, 소리지르기를 하는 데는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피항의자가 소리지르기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할 경우, 이에 대한 증인으로서, 항의자의 보트에 동승한 승정원에게 증언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런 다음, 항의위원회는 증거의 우월성에 따라, 제시된 증거의 가중치를 따져서 결정한 다음, 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항의위원회는 '규칙은 소리지르기를 요구하지만 - 그것이 들려야 한다고 요구하지는 않는다.'라고 결정할 수는 없다.

When required, a red flag must be conspicuously displayed at the first reasonable opportunity after the incident and until the boat is no longer racing. A protest flag must be seen primarily to be a flag (World Sailing Case 72). No protest flag is required from boats less than six metres unless specifically stated in the sailing instructions or in the class rules as allowed by rule 87.

그렇게 요구될 경우, 보트는 사건 후 최초의 적절한 기회에 빨간기를 잘 보이게 올린 다음, 이를 더 이상 경기 중이 아닐 때까지 올려두어야 한다. 항의기는 기본적으로 깃발로 보여야 한다 (월드세일링판결사례 72). 범주지시서 또는 규칙 87에 따른 클래스규칙의 변경으로 공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6M 미만의 보트에서는 항의 깃발이 필요하지 않다.

There are two exceptions when the protesting boat is not required to hail or display a flag at the time of the incident: one is if the incident was an error by the other boat in sailing the course; the second is if at the time of the incident it is obvious to the protesting boat that a member of either crew is in danger, or that injury or serious damage resulted. In these cases, the boat shall attempt to inform the other boat within the protest time limit.

사건 당시 항의하려는 보트가 소리지르거나 깃발을 게양할 필요가 없는 두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경기 <코스 범주>에 대한 다른 보트의 실책인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항의하는 보트의

입장에서 사건이 발생한 시각에 어느 쪽 승정원이든 위험에 처했거나, 상해 또는 중대한 손상이 발생되었다는 것이 명백할 경우이다. 이 경우, 항의하려는 보트는 항의마감시간 이내에 상대 보트에게 알리려고 시도하여야 한다.

## F.9.2 Protests for Incidents not in the Racing Area

### 경기수역이 아닌 곳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항의

When the protest involves an incident that is not in the racing area, the protestor must inform the protestee of the protest as soon as reasonably possible. This might be the next time they come close on the race course or as soon as reasonably possible after coming ashore.

경기수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항의인 경우, 항의자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피항의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는 경기코스에서 다시 가까워졌을 때 또는 육상으로 돌아와서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알리는 것일 수도 있다.

## F.9.3 Protest Contents 항의내용

The requirement that the protest identify the incident is the only one of the five protest contents of rule 61.2 that cannot be corrected after the protest is delivered to the race office. There must be adequate information from which the protestee can identify the incident and understand the allegation. When the incident is not identified, the protest will be found invalid.

항의자가 사건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요구사항은, 규칙 61.2의 5개 항목 중 항의가 항의위원회에 접수된 후 수정이 불가능한 유일한 항목이다. 항의서에는 피항의자가 사건을 파악하고 혐의를 이 해할 수 있는 적절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사건이 명시되지 않으면, 그 항의는 무효이다.

Other contents, such as when and where the incident occurred, the protestor and protestee, the rule, and the protestor's representative have deadlines before or during the hearing.

그 밖의 항목인, 사건 발생 시기와 장소, 항의자와 피항의자, 규칙 그리고 사건 발생 시기와 장소, 항의자와 피항의자, 규칙이나 항의 대표자와 같은 그 밖의 항목에 대한 수정 기한은 청문전 또는 청문 중에 있다.

The protest must identify the protestee. In almost all cases, this will be by sail number or the boat's name. When there is an error in identification, the error may be corrected before the hearing starts. If the correction to the protestee's identity is made after the end of protest time, the protest committee should decide how the other protest requirements of rule 61 will be met for notifying the new party.

항의서에는 피항의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거의 모든 경우, 피항의자는 세일 넘버 또는 보트명으로 표시된다. 세일 넘버 또는 보트명에 오류가 있을 경우, 청문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잡을 수 있다. 피항의자의 신원이 항의마감시간 이후에 수정된 경우, 항의위원회는 그 새로운 당사자에게 통보함에 있어서, 규칙 61의 다른 항의요건들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지 결정하여야 한다.

## F.9.4 Time Limits to File Protests

### 항의서 제출 마감시간

There are two time limits for filing protests: one for incidents observed in the racing area, and another for other protests. Rule 61.3 states that the protest shall be delivered to the race office unless a different procedure is stated in the sailing instructions.

However, a protest should be considered to be delivered when it is received by any official acting on behalf of the race committee or protest committee.

If the protest is delivered after the protest time limit, it must still be accepted by the official and the time of receipt noted clearly on the first page. The official must not refuse a protest because the time limit has expired. The sailing instructions may change a rule and may provide for special procedures for delivering a protest.

항의서 제출에는 두 가지 마감 시간이 있는데: 하나는 경기수역에서 목격한 사건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항의들에 대한 것이다. 규칙 61.3은, 범주지시서에 다른 절차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항의서를 대회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위원회나 항의위원회를 대리하는 운영요원이 항의서를 받았을 때에도, 항의서가 제출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항의 마감시간 이후에 항의서가 제출되었다면, 운영요원은 여전히 이것을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받은 시간을 항의서의 첫 페이지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운영요원은 항의마감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항의서 접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범주지시서는 규칙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항의서 제출을 위한 특별 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If the protest is delivered late, rule 61.3 requires the protest committee to decide whether there is good reason for it being delivered after the protest time limit. When there is a good reason, the protest committee shall extend the time limit and record its action.

항의가 늦게 제출된 경우, 규칙 61.3은 항의마감시간 이후에 제출된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항의위원회가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항의위원회는 그 기한을 연장하고,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판결문에 기록하여야 한다.

## F.9.5 Validity of the Protest

### 항의의 유효성

The protest committee must address the validity of a protest before the hearing can proceed. It is not sufficient to simply obtain the protestor's opinion that the protest is valid. This may require that the chairman investigate deeper if the response to the question, 'When did you hail protest?' is 'Immediately.' Give both parties the opportunity to give evidence on the validity requirements.

항의위원회는 청문을 진행하기 전에 항의의 유효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항의가 유효하다는 항의자의 견해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언제 '프로테스트'라고 소리지르기를 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즉시"라고 대답했다면, 패널위원장은 좀 더 심도있게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양 당사자 모두에게 유효성 요건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기회를 제공한다.

Often after the evidence, it is clear that the protest is valid. Then a simple nod of agreement by the judges to the chairman is enough to



announce the protest is valid. If there is conflicting evidence, ask the parties and any observers to leave the room while the protest committee deliberates. The protest committee's decision is based upon a balance of probabilities.

종종 증거가 제시된 후, 항의가 유효하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그러면 위원들이 패널위원장에게 동의의 뜻으로 간단히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만으로도 항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다. 항의의 유효성에 대하여 상충되는 증거가 있을 경우, 항의위원회가 심의하는 동안 당사자와 옵저버들에게 청문실에서 나가있도록 요청한다. 항의위원회는 증거의 우월성에 기초하여 결정한다.

When the protest or request is valid, the hearing proceeds. When the protest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for validity, the committee shall declare it invalid and close the hearing. The facts that lead to the conclusion and decision that the protest was invalid should be written on the hearing decision form.

항의나 요청이 유효하면, 청문이 진행된다. 항의가 유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항의위원회는 무효를 선언하고 청문을 종결하여야 한다. 항의가 무효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사실과 그 판결을 판결문에 기록하여야 한다.

## **F.9.6 Validity Involving Injury or Damage**

### **상해 또는 손상이 포함된 항의의 유효성**

If a protest is invalid, but the incident may have resulted in injury or serious damage, the protest committee may file a protest and proceed with the hearing. Getting the necessary evidence may involve a walk to the boat park to view damage to a boat or gathering evidence about an injured competitor. If the protest committee later finds out that the damage was not serious, or the competitor was not injured, the protest committee should reopen the hearing of its protest and correct its error by deciding the protest was invalid.

무효한 항의라 하더라도, 그 사건으로 인하여 상해나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항의위원회는 규칙 60.3(a)(1)에 따라 항의서를 제출하여 청문을 진행할 수 있다. 필요한 증거를 얻는 것에는, 보트의 손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계류장까지 걸어가거나 부상당한 선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만약 해당 청문 이후에 항의위원회가 손상이 심각하지 않거나, 선수가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항의위원회는 그 판결에 대한 청문을 재개하고, 그 항의가 무효였다고 결정함으로써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

## **F.10 Hearing Procedure**

### **청문 절차**

### **F.10.1 Taking Evidence and Finding Facts**

#### **증거수집 및 사실 판명**

After the protest is found to be valid, the protest committee takes the evidence of each party and witness. Appendix M gives the normal order of conducting a hearing. Since it is advisory, the recommended procedures may be changed if

needed.

항의가 유효하다고 확인되면, 항의위원회는 각 당사자와 증인의 증거를 취합한다. 부칙 M에는 청문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순서가 제시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는 조언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권장 절차를 변경할 수 있다.

The chairman should explain that the procedure will permit each party to give his evidence when asked. Do not allow the parties to interrupt each other's statements. Allow only an interruption by a party or protest committee member to say he did not hear or did not understand.

패널위원장은 청문이 진행되는 동안, 각 당사자는 요구받을 때에만 자신의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점을 설명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서로의 진술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당사자나 항의위원회 위원이 잘 못들었거나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말을 끊는 것이 허용된다.

As the evidence is presented, each judge should individually develop their personal understanding of how the incident developed, the rules that apply and the facts needed to reach their conclusion. When it is time for the protest committee's questions, members should limit their questions to facts that have not already been asked and answered in earlier evidence. For example, if the list of rules includes 12, 11 and 15, a judge will ask questions to determine when an overlap occurred, how close the boats were and how much time went by before a boat altered course.

증거가 제시됨에 따라, 각 심판은 사건의 전개 양상, 적용되는 규칙, 결론에 근거가 되는 사실들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개별적으로 진척시켜 나가야 한다. 항의위원회가 질문할 차례가 되면, 위원들은 앞선 증거에서 이미 질의, 답변되지 않은 사실에 한정하여 질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 보트가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규칙 목록에 12, 11과 15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심판은 언제 오버랩이 되었는지, 보트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보트가 코스를 변경하기 전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었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질문한다.

## F.10.2 Witnesses

### 증인들

Rule 63.6 requires the protest committee to take the evidence from the parties and their witnesses. When witnesses are called, a member of the protest committee or the protest committee secretary should retrieve the witness. This eliminates any coaching of the witnesses after the hearing has started. If a party asks if more witnesses are needed, the chairman should respond, 'it is up to you to decide if the witness can provide relevant additional evidence'.

규칙 63.6은 항의위원회가 당사자와 증인들로부터 증거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인을 불러야 할 경우, 항의위원회 위원 또는 항의위원회 간사가 증인을 데려온다. 이렇게 함으로써, 청문이 시작된 이후, 증인에 대한 청문 당사자들의 어떠한 조언도 없앨 수 있다. 당사자가 증인이 더 필요한지 묻는다면, 패널위원장은 “증인이 관련 추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는 본인 자신이 결정할 일이다.” 라고 답변하여야 한다.

Allow witnesses to show the incident with model boats from their own angle, even if this is more difficult for judges. Not all people are good at mental rotation of objects in space, and the requirement to rotate their presentation could interfere with their recall of the incident.

반대 편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심판들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증인들이 모형 보트를 사용하여 자신이 목격한 각도에서 사건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한다. 모든 사람이 공간 지각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므로, 심판들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증인이 자신의 기억을 떠올리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Asking the parties and witnesses to keep the assigned colors of models to the boats involved in the protest can help to identify the boats correctly. This can be done if, before the witness enters the room, the previous situation is broken down and all of the same color boats are placed in front of the assigned party.

당사자와 증인에게 항의와 관련된 보트에 할당된 모형 보트의 색상을 유지하도록 요청하면, 보트를 올바르게 식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증인이 청문실에 들어오기 전에, 상황을 나타냈던 이전의 보트 배치를 흐뜨리고, 각 당사자에게 할당된 색깔의 모델 보트를 당사자 앞에 배치해 둔다.

Under rule 63.6, a member of the protest committee who saw the incident shall state that fact while the parties are present and then may give evidence. If that member knows something that is relevant but was not revealed by the evidence from the parties and witnesses, he should volunteer to give that evidence in the presence of the parties. Never introduce new evidence from any source without the parties present.

규칙 63.6에 따라, 사건을 목격한 항의위원회 위원은 당사자들이 출석한 동안, 그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만약 그 위원이 사건과 관련된 어떤 증거를 알고 있는데, 당사자와 증인들이 이를 언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위원은 당사자들이 참석해 있는 자리에서 해당 증거를 자진해서 제시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출처에서 나온 새로운 증거도 제시하지 않는다.

### F.10.3 Leading Questions

#### 유도질문

A leading question is a question in the form of a statement inviting agreement. Judges need to recognize leading questions and weigh the answers accordingly. Examples of leading questions include:

유도질문은 동의를 구하는 진술 형식의 질문이다. 심판은 유도질문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유도 질문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You saw me steering a straight course, didn't you? , or Do you agree that as I was sailing toward the mark, I had a half boat length overlap?

당신은 내가 직선코스 조종하는 것 봤지요?, 그렇지요? 또는

내가 마크를 향하여 범주하고 있을 때, 반 정신 오버랩되었던 것에 동의합니까?

Had the boats reached the zone when the overlap was established? This question accepts the overlap to be true. A better question would be, position the two boats relative to each other when the lead boat got to the zone.

오버랩이 성립되었을 때 보트가 구역에 들어왔나요? 이 질문은 오버랩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더 좋은 질문은, 선두정이 구역에 들어갔을 때, 관련된 두 보트의 상대적인 위치를 묻는 것이다.

How many lengths, 1, 2, or 3? A better question would just be How many lengths? Avoid multiple choice questions.

몇 척 길이입니까?, 1, 2척 또는 3척? 더 나은 질문은 몇 척 길이였습니다습니까? 이다. 선택형의 질문은 피하도록 한다.

The question, how far apart? will lead witnesses to respond with a greater number than the question, how close? A better question would be, position the two boats relative to each other and estimate the distance between them.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은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라는 질문보다 증인들이 더 많은 수로 대답하게 만들 것이다. 더 좋은 질문은, 두 보트의 상대적인 위치를 배치하게 해서, 두 보트 사이의 거리를 추정하는 것이다.

The chairman should discourage leading questions and advise parties how to rephrase the question.

패널위원장은 유도질문을 자제하게 하고, 질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당사자들에게 조언하여야 한다.

#### **F.10.4 Hearsay and Written Evidence**

##### **전해들은 증거 및 서면 증거**

The term 'hearsay evidence' is a technical legal term meaning evidence which is given by a person who has no direct knowledge; he has simply heard or received it from another party. Hearsay evidence can be in the form of a witness telling what someone told him, or written reports where the author is not called as a witness, or audio or video or tracking information that is not authenticated, or a written statement of a person not called at a hearing.

'전해들은 증거'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이 제출한 증거를 의미하는 전문 법률 용어이다. 전해들은 증거는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것을 증인이 말하는 형태일 수도 있고, 증인이 아닌 사람이 써준 서면보고서, 또는 인증되지 않은 오디오, 비디오 또는 트래킹 정보, 또는 청문에 소환되지 않은 사람의 서면 진술서일 수도 있다.

It is common that a party will make a statement or produce a document that is

hearsay, in that the maker of the statement is not going to give live evidence. The difficulty with hearsay evidence is that it can be hard to challenge or to examine its validity or credibility. Where possible, attempt to have the person who provided the written statement attend by telephone or video conference.

사건을 목격하였거나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문에 참석하여 증언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당사자가 그 목격자에게서 전해들은 것을 진술서나 문서로 만드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전해들은 증거와 관련된 어려움은 그것의 타당성 또는 신뢰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타당성 또는 신뢰성을 검토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가능한 경우, 서면 진술서를 제공한 사람을 전화나 화상회의로 참석시키도록 시도한다.

Rule 63.6(a) changed in the 2021-24 racing rules so that the protest committee shall take hearsay evidence. However, it must give it the weight it considers appropriate. Different types of hearsay may be given more or less weight. For example, mark rounding sheets, where the person who recorded the information is not called, should normally be given significant weight. Similarly, tracking information or photographs or video, without calling a witness to authenticate the information, can be given significant weight in the sense that the information is considered to be authentic. The reliability of the information and the weight to be given to it must be considered separately. A letter or an email from the technical committee or from a class association about facts that are generally within the author's knowledge should be given significant weight, but not conclusive weight. On the other hand, hearsay evidence of the description of a racing incident should be given little or no weight.

규칙 63.6(a)는 2021-24 세일링 경기규칙에서, 항의위원회가 전해들은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항의위원회는 그 증거에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여야 한다. 전해들은 증거는 각각의 형태에 따라 크고 작은 가중치가 부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문에 직접 부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기운영요원이 작성한 마크 돌기 기록과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상당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마찬가지로, 트래킹 정보나 사진 또는 비디오 증거는, 그 진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증인으로 부르지는 않더라도, 그 정보가 사실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정보의 신뢰성과 정보에 부여될 가중치는 별도로 고려되어야 한다. 기술위원회 혹은 클래스협회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작성한 서신이나 이메일은 상당한 비중을 두되, 결정적인 비중을 두어서는 안 된다. 반면에, 경기 중의 사건에 대하여 기술한 전해들은 증거는, 거의 또는 전혀 가중치가 없다.

## F.10.5 Photographic and Video Evidence

### 사진 및 비디오 증거

Photographic and video recordings may be accepted as evidence at a hearing and can sometimes be useful.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and problems, and these should be appreciated by the protest committee.

사진 및 비디오 녹화는 청문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으며, 때로는 유용할 수 있다. 다만 한계와 문제점이 있어, 항의위원회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When a video recording is to be shown to the protest committee, the party presenting the evidence should arrange the necessary equipment and provide an operator, preferably the person who made the recording.

청문에서 비디오 녹화를 항의위원회에 보여줄 경우, 증거를 제시하는 필요한 장비와 함께 작동할 사람을 준비해야 하는데 가급적 녹화한 사람으로 한다.

The party bringing the video evidence should have seen it before the hearing and provide reasons why he believes it will assist the protest committee.

비디오 증거물을 가지고 온 당사자는 청문 전에, 이를 보았어야 하며, 이것이 항의위원회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믿는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It is usually preferable to view the video after the parties have presented their evidence.

보통 당사자들의 증언을 들은 다음에, 비디오 증거물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Allow the recording to be viewed first without comment, then with the comments of the party bringing the evidence, then with those of the other party. Questions may be asked in the normal way by the parties and the protest committee members.

최초로 아무런 설명없이 비디오를 시청하고, 이후 증거를 제시한 당사자의 설명과 함께 시청하고, 그리고 나서 반대편 당사자의 설명과 함께 다시 한번 시청한다. 질문은 당사자들과 항의위원회 위원들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The depth of field of any camera is poor and with a telephoto lens, it is non-existent. When, for example, the camera's view is at right angles to the courses of two overlapped boats, it is impossible to assess the distance between them. Conversely, when the camera is directly ahead or astern, it is impossible to see when an overlap begins or even if one exists, unless it is substantial. Keep these limitations firmly in mind.

어떤 카메라든 원근감이 떨어지며, 특히 망원렌즈는 원근감이 전혀 없다. 예를 들어, 카메라의 시야가 오버랩된 두 척의 보트를 직각으로 보고 있다면, 두 보트 사이의 거리를 가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와 반대로 카메라가 선수나 선미를 바라보고 있을 경우, 상당히 오버랩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 언제 오버랩 되었는지 또는 심지어 오버랩이 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다. 이러한 한계를 확실히 알아 두어야 한다.

Use the first viewing of the recording to become familiar with the scene. Where was the camera in relation to the boat? What was the angle and distance between them? Was the camera's platform moving? If so, in what direction and how fast? Is the angle changing as the boats approach the critical point? (Beware of a radical change caused by fast panning of the camera.) Did the camera have an unrestricted view throughout? If not, how much does that diminish the value of the evidence? Full orientation may require several viewings; take the time necessary.

비디오 증거를 첫 번째 볼 때는, 그 장면에 익숙해지는 쪽으로 활용한다. 카메라는 보트와 관

련하여 어디에 있었는가? 카메라와 보트 사이의 카메라의 각도와 거리는 얼마였는가? 카메라가 있는 곳은 움직이고 있었는가? 그랬다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빨리 움직였는가? 보트들이 중요 지점, 특히 사건 발생 지점에 접근함에 따라 카메라 각도에 변화가 있었는지? 빠른 카메라의 움직임은 극단적인 변경을 유발한다는 것을 유념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카메라의 시야가 제한된 적이 없었는가? 만약 촬영 중 시야에 제한이 있었다면, 그것이 증거로서의 가치를 얼마나 감소시키는지? 전체 장면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러 번 되돌려 보기가 필요할 수 있다; 필요한 만큼 시간을 할애할 것.

Since a typical incident is brief, view it as many times as needed to be sure that each judge has extracted all the information needed. Also, be sure that each party has an equal opportunity to point out what he believes the video shows and does not show.

일반적으로 사건은 짧은 순간에 일어나므로, 각 심판이 필요한 모든 확실히 추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만큼 몇 번이고 되돌려 본다. 또한, 각 당사자에게 비디오가 보여주는 것과 보여주지 않는 것을 지적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준다.

Hold the equipment in the hearing room or obtain an electronic copy of the video file until the end of the hearing and through the deliberation, for review to settle questions as to just what fact or facts, if any, it helps to establish. It is sometimes useful to step through a video file frame by frame. Also, one of the members may have noticed something that the others did not.

청문이 끝날 때까지, 심사숙고하는 동안, 항의실에 장비를 남겨 두거나 비디오 파일의 디지털 사본을 받아 두어서, 사실관계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비디오 파일을 한 프레임씩 단계별로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때도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위원 중 한 명이 다른 위원들이 눈치채지 못한 것을 알아차릴 수도 있다.

Do not expect too much from the recording. Only occasionally, from a lucky camera angle, will it clearly establish the central fact of an incident. But, even if it does no more than settle one disputed point, that alone will help in reaching a correct decision.

녹화에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라. 카메라 각도가 운 좋게 잘 맞았을 때에나, 사건의 핵심 사실을 정립해 줄 것이다. 그러나, 비록 그것이 논쟁의 한 지점을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올바른 판결에 도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If the protest committee views video evidence prior to the hearing, the video must be shown during the hearing, giving each party the opportunity to comment on and question the evidence.

만약 항의위원회가 해당 청문에 앞서 비디오 증거를 열람했다면, 반드시 해당 비디오를 청문하는 동안 보여주어야 하며, 각 당사자에게 그 비디오 증거에 대한 발언과 질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F.10.6 Evaluating Evidence

### 증거에 대한 평가

Human perception begins with expectation based on prior knowledge. Persons with good race memory know where to look at the time of the incident and are able to recall incidents with good detail, including nearby boats, positions and relative speeds of boats, and the sequence of events. Competitors are usually good at judging distances between boats. However, people are not good at judging time durations. With good rules knowledge also, the witness will present evidence that is likely to fit within the requirements of the rule believed to apply. Persons who do not know the rules well may miss important details on boat positioning that are needed to find facts

인간의 인식은 자신의 사전지식에 근거한 예상에서 시작된다. 경기에 대한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사건 발생 시각에 어디를 보아야 하는지 잘 알고 있으며, 주변의 보트들과 그들의 위치 및 그 보트의 속도 그리고 사건의 순서 등 세세한 내용으로 사건을 떠올릴 수 있다. 선수들은 보통 보트 사이의 거리는 잘 판단한다. 그러나, 사람은 지속시간을 판단하는 것을 잘하지 못한다. 또한 훌륭한 규칙 지식을 가진 증인은, 적용될 것으로 믿는 규칙의 요건에 부합되는 증거를 제시할 것이다. 규칙을 잘 모르는 사람은 필요한 사실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보트위치에 대한 세부 내용을 놓칠 수 있다.

Be careful about making judgements about the credibility of evidence based on style of presentation. Evidence from witnesses who express their opinions confidently is often given more weight than that from those who are less confident; but their confidence may not be related to the accuracy of their recall. 발표하는 모습에 근거하여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하게 되는 것을 경계할 것. 자신의 의견을 자신 있게 표현하는 증인의 증거는 종종 덜 자신 있는 증인의 증거보다 더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만; 그들의 확신은 기억의 정확성과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 **F.10.7 GPS and Internet Tracking Evidence**

### **GPS 및 인터넷 트래킹 증거**

GPS and internet location and tracking have become common place and almost taken for granted. However, when GPS information such as histories, or internet tracking information is presented as evidence at a protest hearing, a deeper understanding is necessary to apply the appropriate weight.

GPS와 인터넷 위치 및 트래킹은 흔한 것이 되었고, 그 사용이 거의 당연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보트의 항적 이력 또는 인터넷 트래킹과 같은 GPS 정보가 항의 청문회에서 증거로 제시될 경우, 적절한 가중치를 적용하기 위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 **Single GPS location history (Snail Trail)**

#### **단일 GPS 위치 이력 (항적)**

All boat navigation GPS systems offer the ability to save and download the performance for later review. Whether this single-source information can be useful at a hearing depends very much on the issues. Although accurate, the boat's



positions alone usually do not offer much useful information. It does not include information about other boats' positions, where a mark was located, or the ends of a starting line. Information on boat speed may be helpful in determining wind speed.

모든 보트 내비게이션 GPS 시스템은 나중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항행 이력을 저장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 단일-출처 정보가 청문에서 유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쟁점과 깊이 연관된다. 비록 GPS가 정확하더라도, 보트의 위치만으로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데, 그것은 다른 보트들의 위치, 마크가 어디에 있었는지, 출발선의 끝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보트 속도에 대한 정보는 풍속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If the hearing is about a rule 19.2(c) protest against a boat that sailed into an inside overlap between the protesting boat and a nondescriptive shore some kilometers away, the GPS trail may offer useful information on the water depth and the distance inshore where the depth might be unsafe for sailing.

In all cases, the location of the GPS transmitter and sampling rate should be obtained by the protest committee.

만약 청문이, 항의하는 보트가 수 킬로미터에 걸쳐 이어지는 연속적인 해안선과 자신의 보트 사이의 안쪽으로 오버랩하여 범주한 보트에 대한 규칙 19.2(c)에 따른 항의일 경우, GPS 항적은 범주하기에 안전하지 않을 수 있는 수심과 해안과의 거리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어떤 경우든, GPS 송신기의 장착 위치와 샘플링 속도는 항의위원회가 파악하여야 한다.

## **Internet Tracking & Application Display Information**

### **인터넷 트래킹 및 정보 표시 프로그램**

To attract more visitors to regatta websites, commercial tracking systems are used to create publicity and promote the event. Small GPS position transmitters (trackers) are placed on boats or clipped to a crewmember as well as marks and starting lines. At local events, this information is transmitted to a shore base. In offshore races, the information is sent via satellite to the race headquarters. In both cases the raw data are entered into a display application and shown on the regatta's website. Races and individual teams can be followed over the internet from anywhere in the world.

더 많은 방문객들을 대회 웹사이트에 끌어들이기 위하여, 대회 홍보내용을 제작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데 상업적인 트래킹 시스템이 사용된다. 작은 GPS 위치 송신기는 마크와 스타트라인 뿐만 아니라, 보트 위에 놓거나 승정원의 몸에도 장착된다. 지역 대회에서는, 이 정보가 육상 기지로 전송된다. 외양경기에서는, 이 정보가 위성을 통하여 대회본부로 전송된다. 두 경우 모두, 원래의 자료는 디스플레이 애플리케이션에 입력되며, 대회의 웹사이트에 표시된다. 경기 관계자와 개별 참가팀들은 전세계 어디에서나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다.

The tracks shown in the graphical displays are not always based only on accurate position fixes. If position fixes from trackers are missing or if the software thinks they are out of position, the software might estimate the missing position fixes and eliminate fixes that look to be out of position. This can result in estimated tracks

shown in the graphical display that may be different from the real track sailed.

그래픽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항적이 언제나 정확한 위치의 지점에 근거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송수신기로부터 전달되어야 할 항적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소프트웨어가 예상 지점을 크게 벗어났다고 판단한 경우, 트래킹 소프트웨어는 누락된 항적을 추정하고, 위치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항적을 제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래픽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추적 항적은 실제 범주되는 항적과 다를 수 있다.

When ashore, sailors and coaches will review the race using the tracking system. If there was an incident on the water, the tracking information may be presented as evidence in a protest hearing. Race officers will sometimes compare the tracking information with their finishing sheets to locate a missing boat or answer a scoring query that may lead to a request for redress.

육지에 도착하면 선수와 코치들이 트래킹 시스템을 사용하여 경기를 검토한다. 수상에서 사건이 있었다면, 항의 청문회에서 트래킹 정보가 증거로 제시될 수도 있다. 경기운영요원들은, 순위를 매기지 못한 보트의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또는 구제요청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점수 확인 질의'에 답하기 위하여, 그들이 작성한 피니시 기록지와 트래킹 정보를 비교할 것이다.

While the core technology in use by the different tracking service providers is basically the same, there are many different approaches in the final delivery of the tracking system product. Every tracking service provider uses GNSS receivers to capture the basic geolocation data at regular intervals. The minimum raw data captured by the tracker for each position fix includes latitude, longitude, timestamp and tracker ID. The geographic positions are updated repeatedly within the GNSS receiver up to 10 times per second, but the frequency of fixes available from (or published by) the tracking system may vary from one or two fixes per second to up to one per hour or (s)lower for oceanic races.

서로 다른 트래킹 서비스 제공자들이 사용하는 핵심 기술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트래킹 시스템 제품의 최종 결과물을 도출하는 많은 다양한 접근법이 있다. 모든 트래킹 서비스 제공자는 GNSS 수신기를 사용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기본 지리적 위치 데이터를 저장한다. 각 보트의 항적에 대하여 저장한 원래의 자료에는 적어도 위도, 경도, 그 시간 및 트래킹 식별기호가 포함된다. 시각 및 트래커 식별기호가 포함된다. 지리적 위치는 GNSS 수신기 내에서 초당 최대 10회까지 반복적으로 업데이트되지만, 트래킹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항적 추정의 빈도는 초당 1~2회부터, 대양 경기에서는 1시간에 1회이거나 더 느릴 수 있다.

## Frequently Asked Questions

### 자주 묻는 질문

How often is the boat's position sampled? Answer: although the GPS can sample 10 times per second, the presentation is seldom that often. To save space in the memory chip, or to save money in the satellite data transfer, not all positions are transmitted or displayed. In a thirty-minute dinghy race, that might be only once per second. In a transoceanic race, that might be once every ten or thirty

minutes.

보트의 위치는 얼마나 자주 샘플링됩니까? 답변: 비록 GPS가 초당 10번 샘플을 채취할 수 있지만, 표시는 그렇게 자주 하지 않는다. 메모리 칩의 저장공간을 절약하거나 위성 데이터 전송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실시간으로 모든 위치가 전송되거나 표시되는 것은 아니다. 30분 간의 당기 경기에서는, 1초에 한 번 정도일 것이며, 대양횡단 경기에서는, 10분 혹은 30분에 한 번 정도일 것이다.

How accurate are the positions? Answer: there are many different factors affecting the accuracy of the position such as cost of the GPS unit and atmospheric conditions. Typically, 95% of the time, the accuracy is 2 to 8 meters.

위치가 얼마나 정확한가? 답변: GPS 장치의 비용이나 기상 조건과 같이 위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다양한 요인이 있다. 일반적으로, 시간은 95% 정도 정확하며, 그 위치에 대한 오차는 2~8 미터이다.

Are the marks of the course tracked? Answer: most of the time. Race committees will install trackers on the marks of the course, including both ends of the start and finish lines. This should be confirmed by the regatta's Tracking Team. Race committees do not usually place trackers on permanent or government buoys.

코스를 범주한 항적이 표시되는가? 답변: 대부분 표시된다. 경기위원회는 스타트라인과 피니시라인의 양쪽 끝을 포함한 코스의 마크들에 트랙커를 설치한다. 이것은 대회 트랙킹 담당 팀에 의하여 모니터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경기위원회는 보통 고정식 또는 정부의 공공 부표에는 트랙커를 설치하지 않는다.

Can the tracking system show overlaps and collisions? Answer: competitors will sometimes present tracking information in a hearing to show a collision or an overlap at the zone. In almost every case, the information from the tracking system will be inconclusive by itself. The graphical representation of the boat is almost never to scale. You can test this by comparing the length of the boat icon at various levels of zoom. In the 2016 Olympic Games, Lasers sometimes appeared to be over 20 meters long.

트래킹 시스템이 오버랩과 충돌을 나타낼 수 있는가? 답변: 선수들은 때때로 충돌 또는 구역에서 오버랩이 되었는지 보여주기 위하여 청문회에서 트랙킹 정보를 제시한다. 거의 모든 경우에, 트랙킹 시스템의 정보만으로는 결론을 내릴 수 없는데, 그래픽으로 표시된 보트는, 거의 축척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보트 아이콘의 길이를 다양하게 축소, 확대하면서 이를 비교하여 테스트해 볼 수 있다. 2016년 리오올림픽에서, 레이저 클래스는 때때로 20미터가 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 **Other considerations in a hearing.**

### **청문에서의 다른 고려사항들**

Since competitors are entitled to present evidence that they consider relevant, they may bring animated video clips of an incident they saw in the tracking system. The competitor will be basing his presentation on derived information and it is

important for the judges to know what it real and what is virtual.

선수들은 자신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증거를 제시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트래킹 시스템에서 본 해당 사건에 대한 애니메이션으로 표현된 단편 동영상을 가져올 수 있다. 선수들은 이렇게 얻은 일차 가공된 비디오 정보를 바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할 것이며, 심판은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가상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Because the enhanced graphics can lead competitors and judges to the wrong conclusions, there are a few things the protest committee can do to manage the presentation of tracking data in a hearing.

향상된 그래픽은 오히려 선수와 심판을 잘못된 결론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문회에서 트래킹 자료 프레젠테이션을 관리하기 위하여 항의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 있다.

Before the first race, the protest committee should discuss the tracking system being used. Review the instructions, verbal or written, that the sailors receive about the installation of the trackers on the boat. Know where the trackers are intended to be installed on the boats.

첫 번째 경기에 앞서, 항의위원회는 사용 예정인 트래킹 시스템에 대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선수들이 보트에 추적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받게 될, 지침을 검토한다. 보트에 트랙커가 설치되어야 하는 위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Review the tracker application. Zoom in and zoom out, observe the scaling, start and stop the race display, and know how to declutter the screen by removing boats and tags. Determine the accuracy of the tracking units and what averaging or smoothing is applied to the information.

트래커 응용프로그램을 검토한다. 확대 및 축소, 스케일링 관찰, 경기 시작과 멈춤, 그리고 보트와 식별표식을 제거하여 화면의 잡동사니를 어떻게 지울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한다. 트래킹 장치의 정확도와 정보에 적용되는 평균화(averaging) 또는 평활화(soothing) 하는 방법을 검사한다.

※ 주1) Averaging: 측정되지 않은 시각의 정보를 얻기 위해 (또는 측정값 자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앞뒤의 몇 개 정보를 함께 사용하여 계산된 평균값으로 대체하는 방법.

주1) Smoothing: 위치점 들끼리 단순하게 연결하면 직선과 직선의 연결로 보이기 때문에, 주변의 3점(또는 5점)데이터를 사용해서 부드러운 곡선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이 과정에서 튀는 데이터는 Raw Data 자체를 변경하기도 함

Ask the provider to explain the depiction of the three-length zone.

트래킹 장비 공급자에게 구역에서 3정신이 표시되도록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다.

Ask the race committee if trackers will be installed on marks and race committee boats and where they will be located.

트래커가 마크와 경기위원회 보트에 설치될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 경기위원회

에 문의한다.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party to provide the equipment to display tracking data (see RRS M7, first point).

트래킹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는 장비의 제공은 당사자의 몫이다. (RRS M7, 첫 번째 항목 참조)

During a hearing, get the verbal evidence from the parties first, before the presentation of the tracking clips. Let the parties question each other's verbal evidence. Make sure the protest committee understands the facts from the verbal evidence. Tracking data is always easier to assess when it is presented in support of the description of the incident by the parties.

청문 동안, 해당 트래킹 비디오를 프레젠테이션하기 전에 먼저 당사자들로부터 구두 진술을 받는다. 당사자들이 서로의 구두 진술에 질문하도록 한다. 항의위원회는 당사자들의 구두 진술로부터 사건에 대한 사실을 이해하도록 한다. 트래킹 데이터는 언제나, 당사자들의 사건에 대한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시될 때, 그 정보를 평가하기가 더 쉽다.

Normally judges would not view tracking information before the hearing. If the tracking information is seen by a judge without the parties present, it must also be included either as evidence submitted by a party, or by the protest committee.

통상적으로 심판은 청문 전에 트래킹 정보를 보지 않는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판이 트래킹 정보를 보았다면, 당사자 또는 항의위원회가 제출한 증거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 F.11 Finding the Facts

### 사실 판명

It is an unalterable responsibility of the protest committee to establish the facts that the decision will be based upon, even when the parties present widely differing evidence. Varying evidence is common and reflects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incident. If one party says the boats were one meter apart while the other says three meters apart, the protest committee must decide which opinion is more credible. When all the evidence is reviewed, the distance that is determined will become a 'fact' that the decision is based upon, even if that distance is neither one meter nor three meters.

당사자들이 서로 아주 다른 증거를 제시하더라도, 판결의 근거가 될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항의위원회의 불변의 책임이다. 증거가 서로 다른 경우는 흔하며, 그 사건에 대한 당사자들의 다른 관점을 반영한다. 한 당사자는 1미터 떨어져 있었다고 하였고, 다른 당사자는 3미터라고 진술할 경우, 항의위원회는 어느 쪽 의견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해야만 한다.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에 확정된 거리가 1미터도 아니고 3미터도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결정된 거리는, 판결의 근거가 되는 '판명된 사실'이 된다.

In almost all cases, the differences of opinion are settled by the weight of the

evidence. The racing rules do not give the onus of proof to one boat or the other, except to resolve doubt in rule 18.2(e). Port is not required to prove she kept clear of starboard. A protest committee is required to consider all the evidence, consider who was in the best position to determine what happened, determine which evidence is more credible, and then decide the facts of the incident on a balance of probabilities.

거의 모든 청문에서, 심판들 사이의 의견차이는 증거의 가중치에 의하여 정리된다. 세일링 경기규칙은 규칙 18.2(e)에서의 의심을 해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 보트 또는 다른 보트에게 입증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 포트는 스타보드를 킵클리어 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항의위원회는 모든 증거를 검토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판단하기에 누가 가장 좋은 위치에 있었고, 어떤 증거가 더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하며, 그런 다음 증거의 우월성에 입각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 F.12 Deliberations

### 심의

Once all the evidence is taken, it is the protest committee's responsibility to find the facts and make a decision. Often all members have individually reached the same facts and conclusion. The chairman can save considerable time by asking each member for their conclusion. If everyone has come to the same conclusion, then writing the facts and conclusions goes very quickly. Finding that the members have not all reached the same conclusion allows the committee to quickly focus on the differences.

증거가 모두 확보되면, 사실을 판명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항의위원회의 책임이다. 보통은 모든 위원들 각자가 도출한 판명된 사실과 결론이 서로 일치한다. 패널위원장은 각 위원들에게 결론을 물어봄으로써, 상당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면, 사실과 결론을 쓰는 것은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위원들이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위원회가 재빠르게 그 차이점에 집중하도록 한다.

Another method of proceeding is for the scribe to write during the hearing the points he considers to be the facts. After each judge has expressed their conclusion, and the differences have been resolved, the scribe would read the facts. Should a member not agree on some point or believe there is an omission of an essential fact, there is a discussion on that point to reach an agreement. Apply the relevant rules to these facts and identify any missing ones. Then write the rules applicable, conclusion and decision. Use the Preferred Standard Wording in the World Sailing's International Judge Document Library. Then read out the facts found, conclusion and decision for a final review. All decisions are based on a balance of probabilities, unless the rule provides a different standard of proof.

청문 진행의 또 다른 방법은, 청문하는 동안 사실이라고 여겨지는 요점을, 지정된 기록담당심판이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각 심판이 결론을 발표하고, 이견을 해결한 후, 기록담당심판이 기록해 둔 판명된 사실을 읽는다. 어떤 위원이 몇 가지 요점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합의를 이끌어낸다. 이

판명된 사실에 관련 규칙을 적용하고, 누락된 것은 없는지 확인한다. 그런 다음, 적용 가능한 규칙, 결정, 판결을 적는다. 월드세일링 국제심판 문서 라이브러리에 나오는 <선호하는 표준 문구>를 사용한다. 그리고 나서, 최종 검토를 위하여 기록담당심판이 작성한 판명된 사실, 결론 그리고 판결을 읽는다. 규칙이 다른 입증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판결은 증거의 우월성에 따른다.

### F.13 Resolving Differences Between Protest Committee Members' Opinions

#### 항의위원회 위원들 사이의 의견차이 해소

Decisions of the protest committee are made by a majority vote of all members. Try to obtain agreement among the protest committee members. Establish the most likely scenario by weighing the evidence. If necessary, recall the parties to obtain any missing information or further clarification. Once any differences of opinions among the protest committee members have been resolved, use the procedure in the previous paragraph. A vote can be useful, especially after a reasonable time has been allowed for discussion and a variety of views persist. When there is an equal division of votes cast, the chairman may cast an additional vote.

항의위원회의 판결은 전체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항의 위원들 간의 동의를 얻도록 노력한다. 증거의 신빙성을 따져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설정한다. 필요한 경우, 누락된 정보나 추가적인 설명을 얻기 위하여 당사자를 다시 부른다. 항의위원회 위원간의 의견이 해소되면, 앞서 언급한 절차를 따른다. 투표는, 특히 토론을 위한 합리적인 시간이 허용되고, 다양한 견해가 지속된 후에 유용할 수 있다. 투표결과가 동수일 경우, 패널위원장이 추가 투표를 할 수 있다.

When not all members are in agreement, the dissenter should be given an opportunity to state his point of view, and to try to persuade the other members. If a member maintains a strong minority opinion, it could be classified and resolved, as Level 1 or Level 2:

모든 위원이 동의하는 것이 아닐 경우,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에게 자신의 관점을 설명하고, 다른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위원이 소수의견을 강하게 견지하는 경우에는, 레벨1 또는 레벨2로 분류하여 해결할 수 있다:

Level 1: Usually, after thorough discussion, a member of the protest committee who does not agree with the majority accepts the decision of the majority. This should be simply recorded as a majority decision on the protest form without stating who the judge(s) in the minority is/are.

레벨1: 통상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다음, 다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던 항의위원이 그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이는 그 반대의견을 가졌던 심판이 누구인지를 명시하지 않고, 판결문에 다수의 판결로 기록하여야 한다.

Level 2: If the judges in the minority feel strongly that they do not wish to be associated with the decision, they have the right to be named as dissenting judges

when the decision is announced and to have their names recorded on the form.

레벨2: 다수의 의견에 반대하는 심판들이 판결에 연관되고 싶지 않다고 강하게 느낀다면, 판결에 반대한 심판으로 판결을 발표할 때 언급되고, 판결문에 기록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다.

Regardless of any personal disagreement with the protest committee's final decision, a judge is duty-bound to uphold it. A judge must refrain from criticizing the decision of a protest committee in public, whether or not he was a member. Criticism of a decision may be misconduct or 'inadequate conduct' in terms of Regulation 32, depending on the manner, time and place in which the criticism is expressed.

항의위원회의 최종 판결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차이와 상관없이, 심판은 그것을 지지할 의무가 있다. 심판은 자신이 위원이었던 아니든 항의위원회의 판결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판결에 대한 비판은 비판을 표현하는 방식, 시간 및 장소에 따라 월드세일링 규정32항의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가 될 수 있다.

Members may discuss and criticize a decision with other judges in private for the purpose of persuading a protest committee to reconsider the decision and reopen a hearing or for the purpose of education. However, any discussion with competitors, coaches or the public of a difference of opinions within the protest committee will never be appropriate conduct. It could only serve to inflame a situation and damage relationships with other officials. If a judge does not wish to associate himself with a decision, then the proper course of action is to exercise the right to be named as a dissenting member in the decision and then refer any queries to the published decision only.

해당 판결에 관여하지 않았던 심판들은 항의위원회가 판결을 재고하거나 청문을 재개하도록 설득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또는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다른 심판들과 판결에 대한 비공개 토론과 비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항의위원회 위원들 사이의 의견 차이에 대해서 선수, 코치, 혹은 대중과의 어떤 논의도 적절치 못한 행동이다. 그것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다른 심판들과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역할만을 할 뿐이다. 만약 심판이 판결과 연관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행동방침은 판결에 반대한 심판으로 판결문에 이름이 기록될 권리를 행사하고, 발표된 판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것이다.

The chairman must include details of the case in his regatta report if any member requests to be named as dissenting.

항의위원장은 어떤 위원이 반대 의견자로 기록되기를 요청할 경우, 자신의 대회심판보고서에 해당 판결사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F.14 Applying the Standard of Proof

### 입증 기준의 적용

The standard of proof for decisions is 'a balance of probabilities', unless a rule specifies a different standard. The standard for sportsmanship and fair play in rule



2 is that a breach be 'clearly established'. The standard for an act of misconduct in rule 69 is the protest committee's 'comfortable satisfaction' that it occurred, 'bearing in mind the seriousness of the alleged misconduct'.

규칙이 다른 기준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판결에 대한 입증 기준은 '증거의 우월성'이다. 규칙 2에서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의 기준은 그 위반이 '확실히 판명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규칙 69에 있어서 부정행위의 기준은, 발생한 '부정행위 혐의의 심각성'을 염두에 둔 항의위원회의 '충분한 납득'이다.

Rule 18.2(e) permits the boats and the protest committee, when there is a reasonable doubt, to presume facts about whether a boat obtained or broke an overlap in time. However, the protest committee must not merely rely on this rule; it must take an active part in trying to resolve the doubt by other means. It should question the parties and witnesses to elicit all available evidence to find facts and to learn what actually happened. Then, if still in doubt, it may use rule 18.2(e) to resolve the protest.

규칙 18.2(e)는 합리적 의심이 있을 경우, 그 시점에 오버랩이 되었거나 풀린 사실을 보트와 항의위원회가 추정하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항의위원회가 단순히 이 규칙에 의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방법으로 그 의심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것은 당사자와 증인들에게 질문하여 사실을 찾고, 실제로 일어난 일을 알아내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증거를 끌어내야 한다. 그런 다음에도, 여전히 의심이 남는다면, 규칙 18.2(e)를 사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F.15 Announcing the Decision

### 판결의 발표

The protest committee will recall the parties and any observers to inform them of the outcome of the hearing. The chairman or scribe will read the facts found, the decision, the rules that apply and any penalty imposed or exoneration. When appropriate, an interpreter will translate.

항의위원회는 청문의 결과를 알리기 위하여 당사자와 참관인들을 다시 부른다.

패널위원장이나 기록담당심판이 판명된 사실, 판결, 적용된 규칙, 주어진 벌칙 또는 면책을 읽어 주고, 필요할 경우, 통역사가 통역을 한다.

If the chairman is comfortable, he may give the facts, conclusion and decision orally and tell the parties they may come to the protest desk to receive a written copy of the decision later. The written decision must accurately record the information presented orally to the parties. Record the date and time that the parties were informed of the decision.

패널위원장이 판결문을 정서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판명된 사실, 결론과 판결을 구두로 전달하고, 그들에게 나중에 항의 접수처에 와서 판결문의 사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판결문은 당사자들에게 구두로 전달한 정보를 그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자에게 판결을 구두로 전달한 날짜와 시간을 판결문에 기록한다.

The protest committee may publish the decision, including the facts found and the conclusions, which will permit all the competitors to understand the decision and to decide if there are grounds for them to request redress based on it. However, if the issue is sensitive or involves minors, the protest committee may decide that only the decision will be published, and the facts and conclusion will only be made available to the parties.

The decision will be to dismiss the protest, or that a boat broke a rule and is to be disqualified unless some other penalty applies. The penalty will apply except when a boat is exonerated for her breach or rule 36, Races Restarted or Resailed applies or the boat has taken a Post-Race Penalty or retired.

항의위원회는 모든 선수가 해당 판결을 이해할 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구제 요청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판명된 사실과 결론이 포함된 판결문을 발표할 수 있다.

그러나, 사안이 민감하거나 미성년자가 연루된 경우, 항의위원회는 판결만 공표하고, 판명된 사실과 결론은 당사자에게만 공개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판결은, 기각된 항의 또는 다른 벌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규칙을 위반한 보트는 실격 처리된다. 보트가 규칙 위반에 대하여 면책받거나 규칙 36에 따라 <재스타트 또는 재경기되는 경기>가 적용되거나 <경기-후 벌칙> 또는 리타이어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벌칙은 적용된다.

The penalty for a breach of the following rules is a disqualification that is not excludable (DNE):

- rule 2;
- rule 30.4; and
- rule 42, if P2.2 or P2.3 applies.

Promptly notify the scorer of all protest committee decisions that affect scoring and keep a running record of the scoring changes.

다음 규칙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은 제외할 수 없는 실격이다. (DNE)

- 규칙 2;
- 규칙 30.4; 그리고
- 규칙42, P2.2 또는 규칙42 P2.3가 적용될 경우,

채점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항의위원회의 판결은 채점관에게 즉시 알리고, 득점을 변경한 일련의 기록을 모두 남겨둔다.

When a party to the protest requests clarification of the decision, this can be given immediately, but no further discussion should be permitted at this time. Any further discussion with a dissatisfied party at a future time and its content will depend on the experience and confidence of the chairman and members of the protest committee.

항의 당사자가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바로 그렇게 해줄 수는 있지만, 이 시점에서 더 이상의 논의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향후 판결에 만족하지 못한 당사자와의 해당 판결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그 내용은 패널위원장과 항의위원회 위원들의 경험과 확신에 달려 있다.

Permitting an informal discussion with the protest committee and setting a time for

this discussion in response to dissatisfaction when the protest decision is announced can often defuse a stressful atmosphere. Conversely, refusing any future discussion can exacerbate any bad feeling. Alternatively, two protest committee members may be appointed to informally explain a decision.

항의 판결이 공표되었을 때, 항의위원회와 비공식적인 토론을 허용하고, 불만족에 답하여 토론할 시간을 정하는 것은 종종 스트레스 받는 분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다. 반대로, 앞으로의 어떠한 논의도 거부하는 것은 나쁜 감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 대안으로, 판결에 대한 비공식적인 설명을 위하여 두 명의 항의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

If a dissatisfied party asks what recourse they have, advise them of their right under the rules to request a reopening of the hearing. They also have the right to appeal the decision of a protest committee when rule 70.5 is not in effect.

판결에 불만족한 당사자가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묻는 경우, 규칙 66에 따라 <청문의 재개>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알려준다. 또한 규칙 70.5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그 당사자는 항의위원회의 판결에 상고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

## **F.16 Protests by the Race Committee or Technical Committee**

### **경기위원회 또는 기술위원회에 의한 항의**

A protest initiated by the race committee under rule 60.2 or the technical committee under rule 60.4 has certain validity requirements which the protest committee must ensure are met before proceeding with the hearing. The protest committee must find that the protest has not resulted from information arising from a request for redress or an invalid protest or from a report from a person with a conflict of interest. Otherwise, the protest is invalid. Rule 61.1(b) requires the protestee to be informed. Rule 61.2, Protest Contents, also applies to protests by the race committee or technical committee. The time limit for filing the protest depends on whether or not the committee observed the incident in the racing area.

규칙 60.2에 따른 경기위원회 또는 규칙 60.4에 따라 기술위원회가 제기한 항의는 항의위원회가 청문을 진행하기 전에 유효성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는 특정 요구사항이 있다. 항의위원회는 그 항의가 구제요청 또는 무효가 된 항의 또는 이해 상충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얻어진 정보가 아닌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항의가 무효이다. 규칙 61.1(b)는 피항의자에게 항의의사를 알려야 할 것을 요구한다. 규칙 61.2 항의내용은 경기위원회 혹은 기술위원회에 의한 항의에도 적용된다. 항의제출 마감시간은 해당 위원회가 경기수역에서 사건을 목격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A representative of the race committee or the technical committee who files a protest acts in the same way as a protesting boat would do. As a party to the hearing, he gives evidence, may ask questions, answer questions, and call witnesses. He then leaves the room while the protest committee makes its decision. 항의를 제기한 경기위원회 또는 기술위원회의 대표자는 항의하는 보트가 하는 것과 같은 방식

을 따라야 한다. 청문 당사자로서, 그는 증거를 제시하고, 질문을 하고, 질문에 답하고, 증인을 부를 수 있다. 그런 다음, 그는 항의위원회가 판결을 내리는 동안, 청문실 밖에서 기다린다.

## **F.17 Protests involving Sailing Instructions**

### **범주지시서와 관련된 항의**

Sailing instructions may include provisions for the handling of measurement questions. They often include everything from pre-race procedures to measurement checks to penalties. If the race organizers intend to take an active role in checking measurement and enforcing compliance, it is important that any special rules and procedures be written in the sailing instructions. Such advance planning will help eliminate problems that might develop later and save the protest committee endless time in clearly identifying its authority and role in measurement questions.

범주지시서에 계측문제 취급에 대한 규칙 조항이 포함될 수 있다. 종종 계측에 이르는 경기-전 절차부터 벌칙까지 모든 것이 포함된다. 대회 조직위원회가 계측과 규정 준수를 강화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범주지시서에 특별한 규칙과 절차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전 계획은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계측관련 문제를 제거하고, 계측 문제에 대한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파악하면서 소모되는 항의위원회의 시간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F.18 Protests Concerning Class Rules and Equipment**

### **클래스규칙 및 장비에 대한 항의**

Protests concerning class rules may be initiated by a boat, the race committee, the protest committee, or the technical committee. The rules do not give the Class Association, National Authority or an independent measurer the right to protest.

클래스규칙과 관련된 항의는 보트, 경기위원회, 항의위원회 또는 기술위원회에 의하여 제기될 수 있다. 이 규칙은 클래스협회, 국가협회, 또는 계측을 담당한 계측관에게 항의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Most measurement problems are found during pre-regatta inspection and are worked out between the technical committee and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boat. However, the protest committee is sometimes asked to settle a dispute over an interpretation of a class rule before the start of racing. Otherwise, class rule protests usually arise from a protest by the technical committee based on a post-race equipment inspection.

대부분의 계측 문제는 대회-전 검사에서 발견되며, 기술위원회와 보트 승정원 사이에 해결된다. 그러나, 항의위원회는 때때로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클래스규칙의 해석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라는 요청을 받는다. 그 외에, 클래스규칙에 대한 항의는 보통 기술위원회에 의한 경기-후 장비검사를 기반으로 한 항의로부터 발생한다.

Class rules provide details of how a boat must measure or rate, or both. They usually include administrative provisions, the owner's responsibilities. And prohibitions while racing, in addition to the details about the measurement of the boat. Class association measurement and championship rules govern a class. However, these rules do not empower a class association to disqualify or otherwise penalize boats for any deviation during an event, since a hearing would be required.

클래스규칙은 보트가 어떻게 계측 또는 레이팅이 매겨져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여기에는 소유자의 책임인 관리조항 그리고 경기 중 금지사항 외에도 보트의 계측에 대한 세부사항이 포함된다. 클래스협회의 계측에 관련된 클래스규칙과 해당 대회와 계측관련 규칙이 해당 클래스를 통제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은 청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회를 하는 동안 발생한 계측규칙 위반에 대하여 해당 클래스협회에게 보트를 실격시키거나 아니면 벌칙을 주는 권한을 준 것은 아니다.

A protest about class rules or rating does not imply that the owner or person in charge has knowledge or should have had knowledge of the breach. The alleged infringement could be a simple error or misunderstanding about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a rule. Sometimes there is uncertainty between what is clearly permissible and what is clearly prohibited, exposing the rule to variation in interpretation. The entire process of a measurement protest is supported by only a few basic rules. Competitors and all race officials are required to abide by these rules.

클래스규칙이나 레이팅에 대한 항의는 보트의 소유자나 책임자가 위반한 것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위반 혐의는 규칙의 해석이나 그 적용에 대한 단순한 오류나 오해일 수 있다. 때로는 명확하게 허용되는 것과 명백히 금지된 것 사이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클래스규칙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계측 항의에 대한 모든 과정은 단지 몇 가지 기본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수와 모든 운영요원들은 이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Rule 78 is fundamental. It makes the owner and any other person in charge responsible to ensure that the boat is maintained to comply with her class rules and that her measurement certificate, if any, remains valid. Rule 64.4 provides the procedures for deciding a protest brought under rule 78. When the technical committee concludes that a boat that was racing did not comply with the rules, its only option is to protest.

계측과 관련해서는, 규칙 78이 핵심인데, 이 규칙은 소유자와 책임자에게 클래스규칙과 계측 증명서를 적합하게 준수하도록 하고, 계측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이 유효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규칙 64.4는 규칙 78에 따라 제기된 항의를 판결하는 절차를 제공한다. 기술위원회에서 경기에 참가한 보트가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면, 유일한 선택은 항의하는 것이다.

When a protest alleges an infringement of a class rule, the protest committee must first determine whether the protest has met the requirements of rule 61 for validity. The protest must identify the incident. A protest stating only, 'the boat

doesn't measure', 'she is too fast for her rating', or 'the boat has an illegal hull' with no evidence of the way in which the boat has broken the class rules, does not meet the rule 61.1 requirement to 'identify the incident' and would normally be determined to be invalid.

항의가 클래스규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항의위원회는 먼저 그 항의가 항의의 유효성에 대한 규칙61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항의서에 명시된 것이 단지 '보트가 계측받지 않음', '그 보트의 레이팅에 비해 너무 빠름' 또는 '보트에 불법적인 선체를 가지고 있음' 등으로 기록한 항의는 규칙61.1의 요구조건인 '사건의 식별'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무효로 결정된다.

If the validity requirements have been met, the hearing proceeds under rule 63 with the protest committee taking evidence from the parties and such other evidence as it thinks necessary. It is helpful to have a judge on the protest committee who is familiar with the class rules and procedures.

유효성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규칙 63에 따라 항의위원회가 당사자로부터 그리고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증거를 수집하면서 청문을 진행한다. 클래스규칙과 그 절차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항의위원회의 심판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

In some cases, the protest committee will not be able to resolve a protest concerning class rules without calling one or more expert witnesses. The protest committee should have the names and contact information of class expert witnesses including the class' technical committee. Boat designers can be expert witnesses when there is no conflict of interest. Remember that witnesses, no matter how expert, are just witnesses. The protest committee makes the final decision.

경우에 따라서는, 항의위원회가 그 클래스에 정통한 한 명 이상의 전문가 증인을 부르지 않고서는, 클래스규칙과 관련된 항의를 해결할 수 없다. 항의위원회는 해당 클래스협회의 기술위원회를 포함하여 클래스 전문가 증인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이해 상충이 없을 경우, 보트 디자이너가 그 클래스의 전문가 증인이 될 수 있다.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증인은 단지 증인일 뿐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들의 증언을 기반으로, 항의위원회가 최종 판결을 내린다.

When the technical committee is available, and the protest alleges complex breaches, the protest committee may order measurement checks or even remeasurement. This is within its power and its obligation to 'take such other evidence' as it needs to make a decision.

기술위원회에서 그럴만한 여유가 있고, 해당 계측 항의가 복합적인 위반을 제기한 것일 경우, 항의위원회는 계측 확인 또는 재계측을 명할 수 있다. 이는 정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며, '가능한 모든 증거를 취합해야' 하는 항의위원회의 권한과 의무에 속한다.

The rules do not give a boat the right to demand that another boat be remeasured. The decision to order or request re-measurement is a matter for the protest committee or, if the notice of race or sailing instructions so state, for the organizing authority. The losing party pays for re-measurement and any

measurement costs, unless the protest committee decides otherwise.

이 규칙은 보트에게 다른 보트의 재계측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재계측을 명하거나 요청하는 것에 대한 결정은 항의위원회의 문제이고, 대회공고나 범주지시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면, 조직위원회의 문제이다. 항의위원회가 달리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계측과 그에 따른 경비는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A member of the technical committee may be called as a witness to give evidence on the technical details in the incident. In almost all cases the protest committee is able to decide the protest using the process outlined in rule 64.4. Evidence concerning the accuracy of the measurement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rule is presented by the competitor and the event technical committee. The World Sailing Equipment Rules of Sailing should be used to resolve questions about measurement procedures.

기술위원회의 위원은 사건의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다. 거의 모든 경우에, 항의위원회는 규칙 64.4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판결할 수 있다. 계측의 정확성과 규칙의 해석에 관련된 증거는 선수와 그 대회 기술위원회에 의해서 제시된다. 월드세일링의 <세일링 장비 규칙>은 계측 절차에 대한 질문을 해결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If the protest committee is still in doubt about the interpretation of a class rule, then rule 64.4(b) requires that the protest committee refer the questions and relevant facts to an authority responsible for interpreting the rule. This authority will usually be the class association's technical committee, World Sailing, or a national authority. This authority is not the event's technical committee, even if the technical committee member is also the chairman of the class technical committee. Once the protest committee refers the question, it is bound by the authority's reply.

항의위원회가 클래스규칙의 해석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이 있을 경우, 규칙 64.4(b)는 항의위원회가 질문과 관련 사실을 클래스규칙의 해석에 책임이 있는 기관에 문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기관은 일반적으로 해당 국제 클래스협회의 기술위원회, 월드세일링, 또는 국가협회이다. 이 기관은, 기술위원회 위원이 클래스협회의 기술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대회의 기술위원회가 아니다. 일단 항의위원회가 해당 기관에 질문하면, 항의위원회는 그 기관의 답변에 따라야 한다.

For a question concerning the rules of a handicap or rating system, it may be the technical chairman of the organization who issues the handicap or the rating certificate in the waters the boat is lying in. In making its decision the protest committee is bound by the reply of the authority.

핸디캡 또는 레이팅 시스템의 규칙에 대한 질문은, 보트가 위치해 있는 수역에서 핸디캡 또는 레이팅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의 기술위원장이 답변할 수도 있다.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 항의위원회는 그 기관의 답변에 따라야 한다.

Provided that an appeal has not been denied by rule 70.5, a boat disqualified under a measurement rule may continue to compete in subsequent races without

making changes to the boat. To do so, the boat shall state in writing that she intends to appeal. If she fails to appeal or the appeal is decided against her, she will be disqualified from all races (rule 64.4(d)).

규칙 70.5에 의하여 상고가 거부되지 않는 경우, 계측 규칙에 의해서 실격된 보트가 상고하려고 한다면, 보트에 대한 아무런 변경 없이 그 뒤에 이어지는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경기에 참가하려는 보트는 상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만약 그 보트가 상고하지 않거나, 상고가 그 보트에 불리하게 판결될 경우, 모든 경기에서 실격된다. (규칙 64.4(d))

## F.19 Protests by the Protest Committee

### 항의위원회에 의한 항의

A protest initiated by the protest committee under rule 60.3 must meet the validity requirements of rule 61.1. It is best for one member of the protest committee to present the evidence, and not participate as a member of the panel that hears the protest.

규칙 60.3에 따라 항의위원회가 제기한 항의는 규칙 61.1에 명시되어 있는 유효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항의위원회 위원 중 1명이 증거를 제시하고, 해당 청문의 패널의 위원으로 참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If a member of the protest committee saw the incident, rule 63.6(b) requires them to state that fact at the hearing. That member may give evidence as a witness. The evidence should be restricted to what was observed and not about any conclusions as to whether a rule was broken.

규칙 63.6(b)는 항의위원회 위원이 사건을 목격한 경우, 해당 청문에서 자신이 목격한 것을 진술하도록 하고 있다. 그 위원은 증인으로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그 증거는 목격한 것에 대한 것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규칙위반 여부에 이르는 어떠한 결론에 대한 언급도 하지 말아야 한다..

The members giving evidence may participate in the deliberations and the decision, since they have no conflict of interest. They are a part of an independent body, with nothing to gain or lose from the decision. Such witnesses who stay for the decision must not give any new evidence after the parties have been dismissed. Rule N1.6 provides that the protest committee remains properly constituted as an international jury as long as 3 members remain and at least 2 members are International Judges.

이해 상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증거를 제출한 위원은 심의와 판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들은 판결로 얻거나 잃을 것이 없는 독립적인 기구이다. 항의위원회 위원이 수상에서 목격한 것을 증거로 제출한 후 판결과정까지 참여할 경우, 해당 청문의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서는 안 된다. 규칙 N1.6은 3명의 항의위원이 남아있고, 그 중 2명이 국제심판이라면, 항의위원회가 국제심판단으로 적절하게 구성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F.20 Requests to Reopen 청문의 재개



Any party to the hearing may request a re-opening of the hearing. In cases where the request for redress was from the race committee or the technical committee or considered by the protest committee under rule 60.3(b), parties are boats for which redress is requested. All other boats are 'affected' boats, but they are not parties.

청문의당사자는 누구든지 청문의 재개를 요청할 수 있다. 경기위원회나 기술위원회 또는 규칙 60.3(b)에 따라 항의위원회에 의해서 요청된 구제요청의 경우, 당사자는 구제가 요청된 보트이다. 다른 모든 보트는 '영향'을 받는 보트이지는 않지만, 당사자는 아니다.

The word 'may' in the first sentence of rule 66 means that there is no obligation on the protest committee to reopen. A protest committee may re-open a hearing when either one of the two requirements of rule 66 is met. One is when the protest committee decides that it may have made a significant error. The other is when significant new evidence which was not available at the time of the original hearing becomes available within a reasonable time. That said, it is not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event to allow an unsuccessful party a reopening only for the purpose of re-stating an argument or evidence that had already been considered. In those circumstances, a reopening would be unreasonably burdensome to the protest committee and to the other parties involved.

규칙 66의 첫 번째 문장에서 '할 수 있다 (may)' 라는 단어는, 항의위원회가 재청문을 열어야 할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항의위원회는 규칙 66의 두 가지 요건중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 청문을 재개할 수 있다. 하나는 항의위원회가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원래의 청문당시 입수할 수 없었던 중요한 새로운 증거가 적절한 시간 이내에 확보된 경우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고려된 증거 또는 논쟁을 다시 증언할 목적으로만 재청문을 요청하는 패소한 당사자에게 이를 허용하는 것은 최선책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재청문은, 항의위원회와 원래의 청문과 관련된 다른 당사자들에게 불합리한 부담이 될 것이다.

Errors by the protest committee that should lead to a reopening include improper procedures or misapplication of a rule. The protest committee might decide that a key conclusion was not supported by the facts. More often, a hearing is reopened when a mistake was made in interpreting the applicable rules. For a hearing to be reopened to consider new evidence, the evidence must be both new and significant. Rule M4 and World Sailing Case 115 provide an interpretation of the word 'new' as used in rule 66:

재청문 요건에 해당되는 항의위원회에 의한 실책은 부적절한 절차나 규칙의 잘못된 적용을 포함한다. 항의위원회는 결론의 핵심이 판명된 사실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적용 규칙을 잘못 해석하여 청문이 재개되는 경우가 더 많다. 새로운 증거를 고려하기 위한 재청문의 경우, 이 증거는 새롭고 중요한 것,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규칙 M4와 월드세일링 판결 사례집 115는 규칙 66에서 사용된 '새로운'이라는 단어의 해석을 제공하고 있다.

Evidence is 'new'

‘새로운’ 증거란

- if it was not reasonably possible for the party asking for the reopening to have discovered the evidence before the original hearing;  
재청문을 요청한 당사자가 원래의 청문 전에 이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합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았을 경우;
- if the protest committee is satisfied that before the original hearing the evidence was diligently but unsuccessfully sought by the party asking for the reopening;  
or  
재청문을 요청한 당사자가 원래의 청문 전에 열심히 찾았지만, 이 증거를 찾는데 실패하였다는 것을 항의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또는
- if the protest committee learns from any source that the evidence was not available to the parties or to the committee at the time of the original hearing.  
항의위원회가 원래의 청문 당시에 당사자 또는 위원회에서 이 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는 것을 어떠한 경로로 알게 된 경우.

Significant evidence is evidence that bears directly and substantially upon the specific matter under consideration, and which is neither cumulative nor redundant. Cumulative evidence is additional evidence of the same character as existing evidence and that supports a fact established in the previous hearing, especially a fact that does not need further support. Significant evidence must be relevant to the decision and lead to a reasonable possibility that, when viewed in the context of all the evidence, the outcome of the case will change.

중요한 증거란 고려 중인 특정 사안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누적 또는 중복되지 않는 증거이다. 누적 증거란 기존의 증거와 같은 유형의 추가적인 증거인데, 그것은 특별한 추가 내용이 없는, 지난 청문에서 이미 확보한 사실에 대한 뒷받침을 반복하는 증거이다. 중요한 증거란 반드시 판결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모든 증거의 맥락에서 볼 때, 사건의 결과가 바뀔 수 있는 합리적인 가능성으로 이어져야 한다.

A party to a hearing has an obligation to prepare for the hearing, to locate witnesses, to collect evidence in advance of the hearing, and to request a postponement if it is needed, as described in rule 63.2. If a witness or other evidence is known to exist but cannot be obtained in time for the hearing,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party to ask for additional time. The scribe will record any such request. For example, a new witness presented after the hearing is closed is rarely considered 'new evidence' unless the party made the protest committee aware of the witness before or during the original hearing, or the witness and his evidence were unknown to the party by the time of the original hearing. When a party does not search for witnesses or does not ask the protest committee for a postponement, any later request to reopen to hear a 'new' witness will rarely be granted.

청문 당사자는 청문 준비, 증인 소재 파악, 청문 전 증거수집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필

요한 경우, 규칙 63.2에 명시된 대로 청문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할 의무가 있다. 증인 또는 다른 증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청문시간에 맞추어 입수할 수 없는 경우, 추가 시간을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의 책임이다. 기록담당심판은 그러한 요청을 기록할 것이다. 예를 들어, 청문이 종료된 다음 제시한 새로운 증인은, 원래의 청문 전 또는 청문이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가 항의위원회에 그 증인의 존재를 알렸거나, 또는 당사자가 원래의 청문이 진행될 때까지 그 증인과 그의 증거를 알지 못했을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새로운 증거'로 고려되지 않는다. 원래의 청문에서 당사자가 증인을 찾지 않았거나, 또는 항의위원회에 연기를 요청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새로운' 증언을 내세워서 재청문을 요청할 경우, 그 요청은 거의 승인되지 않는다.

If, however, the party attended the hearing and requested a postponement or extension of time to locate a witness, a subsequent request to reopen may meet the test of rule 66 and the protest committee will likely decide to reopen the hearing.

그러나, 만약 당사자가 청문에 출석하였고, 증인을 찾기 위하여 청문의 연기나 시간 연장을 요청하였다면, 그 재청문 요청은 규칙 66의 요건에 부합될 수 있으며, 항의위원회는 청문을 재개하기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Photographic and video graphic evidence that is claimed to be new should undergo a preview by some or all of the members to establish that the evidence is new, material and not cumulative. The chairman will usually assign two or three members to view the evidence and report back to the protest committee. If the evidence is appropriate and pertinent, or if there is any doubt, the members will refer the evidence to the full protest committee.

'새로운(new)'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진과 동영상 증거는, 그 증거가 누적되지 않은 새로운 소재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심판의 일부 또는 전체 위원들이 시사회를 하여야 한다. 패널위원장은 통상적으로 2~3명의 심판위원이 그 증거를 검토한 후, 항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지명한다. 그 증거가 적절하고 관련이 있거나 혹은 그 증거를 통해 의문이 제기된다면, 그 배정된 위원들은 그 증거를 전체 항의위원회에 회부한다.

The protest committee could also learn itself of significant new evidence and decide to reopen the hearing. If any new evidence is to be considered, the parties have a right to be present under rule 63.3. In addition, the parties have the right under rule 63.6 to question any new witnesses.

또한 항의위원회는 중요한 새로운 증거를 스스로 입수하여 청문의 재개를 결정할 수도 있다. 새로운 증거가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 원래 청문의 당사자들은 규칙 63.3에 따라 출석할 권리가 있다. 게다가, 그 당사자들은 규칙 63.6에 따라 새로운 증인에게 질문할 권리가 있다

If a party requests a reopening, the protest committee must decide if the request to reopen is valid. There is a time limit for requests to reopen a hearing. Under rule 66, a party has up to 24 hours after being informed of the protest hearing decision to ask for a reopening. On the last scheduled day of racing, the time limit is 30 minutes after being informed of the decision on that day.

당사자가 재청문을 요청할 경우, 항의위원회는 그 재청문 요청이 유효한지 결정하여야 한다.

청문의 재개 요청에는 제한시간이 있다. 규칙 66에 따르면, 당사자는 항의청문 판결을 통보받은 후 최대 24시간 이내에 재청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경기 마지막 날의 제한시간은 당일 판결을 통보받은 후 30분이다.

If the request is timely, the protest committee must decide, from the reasons given by the requesting party, whether it has, or may have, made a significant error or whether there is significant new evidence. The initial presentation by the requesting party should be limited to the reasons for reopening. Any new evidence would be heard only to determine if it was 'new'. If the other parties are available, invite them to this initial fact-finding, but note that the rules are silent on this subject.

청문의 재개 요청이 그 제한시간 이내에 제출되었을 경우, 요청 당사자가 제시한 사유에 근거해서, 항의위원회의 중대한 잘못이 있거나, 있을 수도 있었는지 또는 중요한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재청문을 요청한 당사자의 최초 진술은, 재청문의 사유에 대한 것으로만 한정되어야 한다. 어떠한 새로운 증거도 그것이 '새로운 (new)'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만 청문될 것이다. 다른 당사자들이 가능할 경우, 그들을 최초의 진상-조사에 초대할 수는 있지만, 최초 진술 단계에 있어서 규칙에 대한 언급이 불가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If the protest committee decides on its own that it may have made a significant error, it may, without taking any new evidence, revise its decision without the parties present. There is no time limit for the protest committee to reconsider its decision. When the protest committee changes its decision, it shall inform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rule 65.1. This can be done by posting the revised decision or by delivering copies of the decision to the parties to the hearing. It is always up to the protest committee to decide whether a request to re-open is granted. The examples above of situations where a protest committee may grant a reopening, are only a guide, and should only be used as such.

항의위원회 스스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지 않고 당사자 출석시키지 않고, 그 판결을 수정할 수 있다. 항의위원회가 스스로 내렸던 판결을 재고하는 데는 시간제한이 없다. 항의위원회가 판결을 변경한 경우, 규칙 65.1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것은 수정된 판결을 게시하거나, 또는 청문 당사자들에게 판결문 사본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재청문 요청 수락에 대한 것을 판단하는 것은 언제나 항의위원회의 소관이다. 위에 열거한 항의위원회가 재청문을 승인하는 상황에 대한 예시는 오직 지침일 뿐이므로, 지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The protest committee may also reopen a hearing under rule 63.3(b) when it has decided a protest without a party present, but later finds that the party was unavoidably absent. That hearing would begin anew, rehearing all evidence previously presented. If the national authority's decision in an appeal is to reopen the hearing using rule 71.2 or rule R5, the reopening proceeds with the evidence and witnesses that the parties bring, and with any other evidence the protest committee considers necessary.

당사자의 출석없이 판결을 하였지만, 나중에 당사자가 불가피하게 불참한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도, 항의위원회는 규칙 63.3(b)에 따라 청문을 재개할 수 있다. 그 청문은 이미 제시되

있던 모든 증거들을 다시 청취하면서 새롭게 시작되어야 한다. 상고에서 국가협회가 규칙 71.2 또는 규칙 R5에 따라 청문을 재개하라고 결정하였을 경우, 그 재청문은 당사자들이 가지고 온 증거와 증인, 그리고 항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다른 증거와 함께 진행된다.

If the protest committee decides there is sufficient reason to reopen, it must notify the parties of its decision. When the hearing will be reopened, the protest committee must provide the same notification that is required for a protest hearing. In addition, when the reopening is based only on new evidence, a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protest committee shall, if possible, be members of the original protest committee. However, if the reopening is based on a significant error, the protest committee shall, if practicable, have at least one new member. However, to avoid the perceptions that the old protest committee is reviewing itself, replacing more members, but not all, should be considered.

항의위원회가 재청문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청문이 재개될 경우, 항의위원회는 일반 항의 청문과 동일한 통보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재청문이 단지 새로운 증거에 근거한 경우, 가능하다면, 항의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원래의 항의위원회 위원이어야 한다. 그러나, 중대한 잘못에 근거한 재청문의 경우에는, 새로운 항의위원회는 가능하다면 최소 1명의 새로운 위원을 두어야 한다. 또한, 기존 항의위원회의 동일 위원이 같은 시각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는 인식을 피하기 위하여, 기존의 항의위원 전부는 아니지만, 더 많은 위원을 교체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At a reopened hearing, the procedural rules of Part 5 apply, particularly, rule 63.6. The protest committee shall take the evidence of the parties present at the hearing and of their witnesses and other evidence it considers necessary. Parties may also ask questions. The protest committee proceeds as it would in any other hearing.

재개된 청문에서, 규칙 제5장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데, 특히 규칙 63.6이 적용된다. 항의위원회는 청문에 출석한 당사자들과 증인들의 증거,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역시 질문할 수 있다. 청문의 재개는 다른 청문과 똑같이 진행된다.

## **F.21 Breaches of World Sailing Regulations**

### **월드세일링규정 위반**

Rule 6 lists World Sailing Regulations that competitors, boat owners and support persons shall comply with. Check each regulation before proceeding with any protest for breaches.

규칙 6에는 선수, 보트 소유자 및 지원인력이 준수하여야 할 월드세일링 규정 목록이 있다. 월드세일링 규정위반에 대한 청문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각 규정을 확인할 것.

## **F.22 Redress Hearings**

### **구제 청문**

A boat whose score or place in a race or series that has been made significantly

worse through no fault of her own may, in circumstances complying with rule 62.1, be granted redress through a hearing.

규칙 62.1에 명시된 범위에서,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경기 또는 시리즈에서 득점 또는 순위가 크게 나빠진 보트는, 구제 청문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 F.22.1 Who May Request Redress?

### 누가 구제요청을 할 수 있는가?

A boat (rule 60.1(b))

The introduction to the RRS, Terminology, states that a 'boat' means a sailboat and the crew on board. Normally boats request redress for themselves; however, this is not a requirement of the rules. A boat or its crew may request redress for another boat. Rule 60.1(b) requires the protest committee to include all boats affected in a redress award, whether or not they asked for redress.

규칙(60.1(b))

RRS 머리말에 있는 <용어>에서, '보트'란 세일보트와 그에 승선한 승정원을 의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보통은 보트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구제를 요청한다; 그러나, 그것이 규칙의 절대요건은 아니다. 보트와 그 승정원은 다른 보트에 대한 구제요청을 할 수 있다. 규칙 60.1(b)는 구제를 요청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구제에 영향을 받는 모든 보트들을 항의위원회가 구제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The race committee (rule 60.2(b))

The race committee may request redress for a boat that it believes may be entitled to it. Often it is to correct any errors it has made that may have affected a boat or boats.

경기위원회(규칙60.2(b))

경기위원회는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보트에 대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가끔 그것은 보트 또는 보트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스로의 잘못을 수정하는 것이다.

The protest committee (rule 60.3(b))

The protest committee may call a hearing based on a report or information received from any source, including invalid protests or requests for redress, or from any party, whether interested or not.

The protest committee may also grant redress as part of its decision in a protest hearing if it decides a boat is entitled to redress under rule 62, whether or not they asked for redress. (rule 64.2).

항의위원회(규칙60.3(b))

무효가 된 항의나 구제요청으로부터 얻어진 정보에 의한 경우, 또는 이해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어느 당사자로부터 받은 보고 또는 정보에 의한 경우에는, 구제를 고려하기 위하여 청문을 소집할 수 있다. 항의위원회는 구제를 요청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규칙62에 따라 구제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항의청문 판결의 일부로 해당되는 보트를 구제해 줄 수 있다. (규칙 64.2)

The technical committee (rule 60.4(b))

The technical committee may request redress for a boat that it believes may be entitled to it. Often it is to correct any errors it has made that may have affected a boat or boats.

기술위원회 (규칙 60.4(b))

기술위원회는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보트에 대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가끔 그것은 보트 또는 보트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스로의 잘못을 수정하는 것이다.

## F.22.2 Parties to a Redress Hearing

### 구제 청문의 당사자

The definition of party to a hearing includes a boat requesting redress or for which redress is requested by the race committee under rule 60.2(b), or the technical committee under rule 60.4(b), or considered by the protest committee under rule 60.3(b). In such cases, all boats for which redress is being considered are entitled to attend the hearing.

정의에서의 청문 당사자에는, 구제를 요청하는 보트, 규칙 60.2(a)에 따라 경기위원회에 의하여, 혹은 규칙 60.4(b)에 따라 기술위원회에 의하여 구제 요청이 된 보트, 그리고 규칙 60.3(b)에 따라 항의위원회에 의하여 구제가 고려되고 있는 보트가 포함된다. 이 경우, 구제가 고려되고 있는 모든 보트는 청문에 참석할 수 있다.

Such a large hearing can be difficult to manage. First, find a space large enough to allow all parties to be present. This may mean gathering outside in a quiet corner of the boat park. Second, allow all parties who wish to give evidence to do so. Third, have the protest committee chairman explain that everyone is going to get a chance to speak, but ask the parties not to restate evidence that has already been presented. With this request, the result is often that the first few parties will explain their reasons for requesting redress, then most of the rest of the witnesses will respond, 'I have the same evidence and opinion.' In requests for redress under rule 62.1(a) the race committee, the technical committee or the organizing authority who made the request is a party to the hearing.

이렇게 많은 보트가 구제의 대상이 되는 큰 청문은 많은 당사자들로 인하여 관리하기 힘들 수 있다. 먼저, 참석할 모든 당사자들을 수용할 만한 큰 공간을 찾을 것. 그것은 보트 계류장의 넓고 조용한 구석자리 같은 곳을 의미할 수도 있다. 둘째, 증거를 제시하고자 하는 모든 당사자들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할 것. 셋째, 패널위원장은 모두가 발언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되, 이미 제시된 증거를 반복하지는 말아달라고 요청할 것. 이러한 요청으로 인하여, 처음 몇 명의 당사자가 구제를 요청한 이유를 설명하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증인들 대부분은 '나도 같은 증거와 의견을 가지고 있다' 라고 답변할 것이다. 규칙 62.1(a) 에 따른 구제 요청에서, 경기위원회, 기술위원회, 조직위원회는 청문의 당사자이다.

After deciding to grant redress and considering what redress is to be granted, the protest committee may conclude that other boats are also entitled to redress, even

if they were not parties to the request for redress. If more investigation is needed and time permits, the hearing could be adjourned, and a new hearing started, after notifying all boats which could be entitled to redress. As all parties to the redress hearing must be notified of the time and place of the hearing, proper notification must be posted on the official notice board. In this situation, it may also be beneficial to phone, e-mail or SMS all the parties, particularly if the time for posting protest notices has expired. This hearing must restart from the beginning as the new parties to the hearing are entitled to hear all the evidence. Make sure that the hearing room is large enough to accommodate all parties, which could mean only one representative from each boat.

구제해 주기로 결정하고 어떤 구제를 줄 것인가를 검토한 다음, 항의위원회는 구제를 요청한 당사자들이 아닌 다른 보트들도 구제받을 자격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시간이 허락 된다면, 청문을 중지하고, 구제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보트에게 통보한 다음, 새로운 청문을 시작한다. 이러한 구제청문에서는 구제의 대상이 되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청문의 시간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는 만큼 적절한 공지사항을 공식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특히 청문일정을 게시하는 시간이 종료된 경우, 모든 당사자들에게 전화, 이메일 또는 SMS를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새로 청문에 참가하는 당사자들은 모든 증거를 들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청문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청문실은 모든 당사자들을 수용할 만큼 크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는 각 보트에서 오직 한 명의 대표만이 참가할 수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 F.22.3 Redress Hearing Procedures

#### 구제 청문 절차

The hearing of requests for redress falls into four parts:

구제요청 청문은 크게 4부분으로 나뉜다.

Validity 유효성

Compliance 구제요건의 준수

The incident 사건

Redress given 구제가 주어짐

Validity is considered first. If the request is invalid, the parties should be informed of this and the hearing closed. If valid, the hearing should proceed to consider whether the request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rule 62.1. If the request does not comply, the parties should be informed at this time and the hearing closed.

유효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청문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에게 이것을 알리고 청문은 종료되어야 한다. 유효한 경우, 그 요청이 규칙 62.1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서 청문이 진행되어야 한다. 청문요청이 규칙 62.1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당사자에게 바로 통보하고, 청문을 종료하여야 한다.

If the request complies, the protest committee then considers the incident and



whether the boat is entitled to redress or not. If not, the parties are informed of the facts found and that redress is not given, and the hearing is closed. If the protest committee decides that redress is to be given, it now decides what redress would be appropriate. Once decided, the parties should be informed of the decision and the hearing closed.

구제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항의위원회는 사건을 검토하고, 보트가 구제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게 된다. 구제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에게 판명된 사실과 구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통보하며, 청문은 종료된다. 만일 항의위원회가 구제해 주기로 결정하면, 어떤 구제가 적절할 것인지 결정한다. 결정이 나면, 당사자에게 판결을 통보하고, 청문은 종료된다.

## F.22.4 Validity of a Request for Redress

### 구제요청의 유효성

At a hearing to consider a request for redress, the protest committee must first address the validity of the request. The request must be in writing and state the reason for making it. No protest flag is required, and there is no obligation for the boat requesting redress to inform the race committee. Match racing and fleet-umpired races, like medal races under Addendum Q have different requirements.

구제요청 청문에서, 항의위원회는 우선 구제요청의 유효성을 따져보아야 한다. 구제요청은 서면으로 되어야 하며, 요청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항의기는 필요하지 않으며, 구제를 요청하는 보트가 경기위원회에 이를 알릴 의무도 없다. 매치레이스와 엄파이어 방식 플리트 레이스는, 부록 Q가 적용되는 메달레이스처럼 다른 요건이 적용된다.

Any protest by the boat against the organizing authority, the race committee, the protest committee or the technical committee may be accepted as a request for redress, provided it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rule 62.2.

조직위원회, 경기위원회, 항의위원회 또는 기술위원회에 대한 보트의 항의는, 규칙 62.2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구제요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There are two time limits for filing requests for redress in rule 62.2. For an incident in the racing area, a request for redress must be delivered to the race office no later than the protest time limit or two hours after the incident, whichever is the later. Other requests shall be delivered as soon as possible after learning of the reason for the request.

규칙 62.2에는 두 가지 구제요청서 제출 시간제한이 있다. 경기수역에서의 사건이라면, 항의 마감시간 이내 또는 사건 후 2시간 이내 중 늦은 시간을 기준으로 청문요청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기타 청문요청은 그 청문요청 사유를 알게된 후 가능한 한 빨리 제출되어야 한다.

The time of the incident depends on the circumstances of each request. In the case of a scoring error, or where a boat has been scored OCS or similar, the time of the incident would usually be when the results were posted, as this could be

the first reasonable opportunity for the party to know the score. However, if the results were not posted within a reasonable time, the time of the incident could be considered to be even later still.

사건 발생 시간은 각 청문요청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채점 오류 또는 보트가 OCS 또는 이와 유사한 채점을 받은 경우, 보통은 당사자가 자신의 성적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합리적인 기회가 성적이 게시된 시점이 될 것이므로, 그 시간이 사건의 시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합리적인 시간 내에 성적이 게시되지 않았다면, 사건의 시점은 더 늦다고 볼 수 있다.

Requests for redress by the race committee, the technical committee or the protest committee on behalf of boats must be delivered within the relevant time limit of rule 62.2. When a request for redress is received outside the time limit, the protest committee must extend the time limit if it decides that there is a good reason to do so. The extension would normally be to the first reasonable opportunity after the boat or the committee making the request becomes aware of the situation.

경기위원회, 기술위원회, 항의위원회가 요청하는 보트에 대한 구제요청은, 규칙 62.2에 따른 제한시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구제요청이 접수되었지만, 항의위원회가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결정하였을 경우, 그 시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제한시간은 구제를 요청하는 보트나 해당 위원회가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첫 번째 합리적인 기회 이후까지로 연장된다.

## F.22.5 Requirements for Redress

### 구제 요건

When the request for redress is accepted as valid, the protest committee must now decide whether the request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rule 62, namely whether the boat's score or place in a race or series has been or may be, through no fault of her own, made significantly worse by:

구제요청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면, 이제 항의위원회는 해당 요청이 규칙 62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즉 경기 또는 시리즈에서 보트의 득점 또는 순위가, 그 보트의 잘못이 아닌 다음의 어느 이유로 크게 나빠졌거나 나빠질 수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a) an improper action or omission of the race committee, protest committee organizing authority or technical committee for the event, but not by a protest committee decision when the boat was a party to the hearing;
  - b) injury or physical damage because of the action of a boat that was breaking a rule of Part 2 and took an appropriate penalty or was penalized, or of a vessel not racing that was required to keep clear or is determined to be at fault under the IRPCAS or a government right-of-way rule;
  - c) giving help (except to herself or her crew) in compliance with rule 1.1; or
  - d) an action of another boat or a crew member or support person of that boat, that resulted in a penalty under rule 2 or a penalty or warning under rule 69.
- The protest committee should take evidence of the parties, their witnesses, and

witnesses of the protest committee.

a) 대회의 경기위원회, 항의위원회, 조직위원회 또는 기술위원회의 부적절한 조치 또는 임무의 누락. 그러나, 그 보트가 청문의 당사자였던 청문에서 항의위원회가 내린 판결에 의한 것은 제외;

b) 제2장의 규칙을 위반한 후, 적절한 벌칙을 이행하였거나 벌칙을 받은 보트, 또는 킵 클리어할 의무가 있었던 경기 중이 아닌 배, 또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IRPCAS) 또는 국가항로권규칙에 따라 잘못이 판명된 배의 행위에 의한 손해나 물리적 손상;

c) 규칙 1.1에 따른 도움 주기 (자기 보트 또는 승정원에 대한 구조는 제외); 또는

d) 규칙 2에 따른 벌칙 또는 규칙 69에 따른 벌칙이나 경고를 받은 상대 보트, 또는 승정원 또는 상대 보트 지원인력의 행동.

항의위원회는 당사자, 그들의 증인, 그리고 항의위원회의 증인으로부터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 F.22.6 Score or Place Made Significantly Worse

### 크게 나빠진 득점 또는 순위

Rule 62.1 states that a request for redress 'shall be based on a claim or possibility that a boat's score or place in a race or series has been or may be, through no fault of her own, made significantly worse'.

규칙62.1은 구제요청이 '경기 또는 시리즈에서 보트의 득점 또는 순위가, 그 보트의 잘못이 아닌 다음의 어느 이유로 크게 나빠졌거나 나빠질 수 있다는 주장 또는 가능성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If the race committee made a scoring error, and as a result of correcting that error, a boat's score is worse than that previously posted, the corrected score has not been made worse than the score the boat should have been scor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This would not be an improper action by the race committee, as they are required by the rules to score all boats in accordance with their finishing place.

만약 경기위원회의 채점오류가 있었고, 그 오류를 수정한 결과 이전에 게시되었던 성적보다 나빠졌지만, 그 수정된 점수가 규칙에 따라 원래 받았어야 했을 점수보다 나쁘게 된 것은 아니었을 경우, 이는 경기위원회의 부적절한 조치가 아니다. 왜냐하면, 경기위원회는 규칙이 요구하는 대로 보트들의 피니시 순위에 따라 채점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A boat's score or place in a race or series must be made significantly worse. The term 'significantly' is subjective and is determined by the protest committee based on the circumstances of each case.

구제를 받으려면, 경기 또는 시리즈에서 보트의 점수나 순위는 '크게(significantly)' 나빠져야 한다. '크게(significantly)' 라는 용어는 주관적이며, 각각의 상황에 따라 항의위원회가 판단한다.

The worsening of a score or place by one point would obviously be significant if it decides the outcome of a series. It might also be significant if one point determines the difference between sixteenth and seventh place in the regatta.

득점 또는 순위가 1점 나빠지는 것이 시리즈의 승패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분명히 '크게 (significantly)'라는 용어에 해당될 것이다. 또한 그 1점이 대회 전체 성적을 16등 또는 7등으로 정해지는데 영향을 미친다면, 이것 역시 '크게(significantly)'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party requesting the redress to establish that the boat's score had been made 'significantly' worse. However, the fact that a boat has made an effort to request redress, it is clear that she considers her loss to be significant. A liberal interpretation of 'significant', especially if other boats are not affected, is often the best.

보트의 점수가 '크게(significantly)' 나빠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구제를 요청한 당사자의 책임이다. 그러나, 보트가 구제를 요청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은, 그 보트가 자신의 손실이 중대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한다. 특히 다른 보트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보통 '크게(significantly)'라는 용어의 유연한 해석이 최선이다.

#### **F.22.7 No Fault of her Own**

##### **보트 자신의 잘못이 아님**

To be entitled to redress, a boat's score or place in a race or series must have been made significantly worse through no fault of her own. This means that if a boat is responsible either fully or partially, for the worsening of her score, no matter how small a part she was responsible for, she shall not be entitled to redress.

In one example, the race committee starts a race at its scheduled time, but a boat leaves the marina late and misses the start. This is the fault of the boat and not of the race committee.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기 또는 시리즈에서 보트의 득점 또는 순위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크게 나빠졌어야 한다. 보트가 나쁘게 된 득점에 대하여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구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예로, 경기위원회는 경기일정의 예정된 시간대로 스타트시켰는데, 어떤 보트가 육상계류장으로부터 늦게 출발하여 스타트를 하지 못한 경우, 이는 보트의 잘못이지 경기위원회의 잘못이 아니다.

Case 31 offers the example where the race committee, after they identified a boat as OCS and displayed the required flag, failed to make the required sound signal. The boat argued that, although she knew she was OCS at the start, she was not required to return because of the omission of the race committee. The case acknowledges the race committee's error but finds that the boat was fully or partially responsible for not starting according to the definition. The boat knew she was OCS, and nothing prevented her from complying with the definition of start or with rule 28.1.

판결 사례 31은 경기위원회에서, 어떤 보트가 OCS인 것을 확인한 다음 'X'기는 올렸지만, 소

리신호를 발하지 못한 사례를 제시한다. 그 보트는 스타트할 때 자신이 OCS임을 알았지만, 경기위원회의 임무의 누락(소리신호 불발)때문에 스타트라인으로 복귀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경기위원회의 실책은 인정하지만, 정의- <스타트>에 따르지 않은 보트에 전부 또는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판결 사례이다. 즉, 그 보트는 자신이 OCS라는 것을 알았고, 아무것도 그 보트가 정의- <스타트> 또는 규칙 28.1을 준수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보트가 OCS로 기록된 것은 정상이며, 따라서 구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F.22.8 Improper Action or Omission

### 부적절한 조치또는 임무의 누락

Redress might be awarded to a boat when it is established that an improper action or omission of the race committee, protest committee, technical committee or organizing authority has caused her score to be made significantly worse through no fault of her own. The exception is the effect of a protest committee's decision on a boat when she was a party to the hearing.

경기위원회, 항의위원회, 기술위원회 또는 조직위원회의 부적절한 조치 또는 임무의 누락이 그 보트의 잘못이 아닌 다른 이유로 보트의 점수를 크게 나쁘게 한 것이 확정되었을 때, 보트는 구제받을 수 있다. 그가 청문 당사자였을 때 항의위원회 판결이 보트에 미친 영향은 예외로 한다.

Race management policies, jury policies and advice to competitors are not rules. If the race committee or protest committee did not act on those policies or that advice, that would not be grounds for redress. World Sailing Case 129 provides an example of a race committee action that was not good race management practice but was not an improper action of the race committee.

경기운영 방침, 심판 방침 그리고 선수들에 대한 조언은 규칙이 아니다. 따라서 경기위원회 또는 항의위원회가 그들의 방침에 대한 조치나, 조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구제 요청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월드세일링 판결 사례 129는, 비록 경기위원회가 좋은 경기운영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경기위원회의 부적절한 조치는 아니었던 사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In one example, If a race committee signals course 3 when only courses 1 and 2 are described in the sailing instructions, this would be an improper action because the course was not in the sailing instructions.

한 예로, 범주지시서에 코스 1과 2만 명시되어 있는데, 경기위원회가 코스3으로 신호를 했다면, 코스3이 범주지시서에 없었기 때문에, 이는 부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다.

In another example, If the race committee signals course 2 and subsequently the first boat could not finish the race within the time limit, and the course is not shortened, this would not be an improper action or omission. This course is permitted by the sailing instructions and shortening the course is discretionary; it is not an improper action or omission.

또 다른 예로, 경기위원회가 코스 2로 신호하였는데, 충분치 않은 바람이나 기타의 영향으로 첫 번째 보트가 제한시간 이내에 피니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축코스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경기위원회의 부적절한 조치나 임무의 누락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범주지시서에 따라 코스 2를 신호하였고, 코스를 단축하는 것은 경기위원회의 재량이므로; 이는 경기위원회의 부적절한 조치나 임무의 누락이 아니다.

## F.22.9 Physical Damage and Injury

### 물리적 손상이나 상해

There are three components to rule 62.1(b):

- the boat has sustained injury or physical damage;
- because of the action of a boat that was breaking a relevant rule; and,
- the other boat took an appropriate penalty or was penalized.

Physical damage is where the value of part or the whole of the boat is diminished, or it is rendered less functional. Refer to Case 19. The following are not physical damage: capsized; rigs or lifelines entangled; crew overboard; loss of places.

규칙 62.1(b)는 아래의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보트가 상해나 물리적 손상을 입었고;
- 규칙을 위반한 보트의 행위 때문에 발생하였고; 그리고
- 규칙을 위반한 보트가 적절한 벌칙을 이행하였거나 벌칙을 받은 경우.

물리적 손상이란 보트의 일부 또는 전체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판결 사례 19를 참조할 것. 다음은 물리적 손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전복; 리그 또는 라이프라인의 얽힘; 승정원이 물에 빠짐; 순위의 하락 등.

Injury would be any issue that required medical treatment or rendered the crew less functional. Minor cuts or abrasions would not be considered injuries for the purposes of this rule.

Case 135 advises that Rule 62.1(b) does not require physical damage or injury to have been caused directly by the boat that was breaking a rule of Part 2. It is sufficient that any physical damage or injury was the probable consequence of the action of the boat breaking a rule.

상해는 의학적 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승정원들의 기능이 떨어지게 만드는 어떤 것이다. 경미한 자상이나 찰과상은 이 규칙의 목적상 상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판결 사례 135는 규칙 62.1(b)가 제2장의 규칙을 위반한 보트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물리적 손상이나 상해이어야 한다고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조언한다. 이는 발생한 물리적 손상이나 상해가 규칙을 위반한 보트의 행위와 개연성이 있는 결과였다는 것으로 충분하다.

The committee must also determine that the boat that was breaking a rule took an appropriate penalty or was penalized. Check for a record that the boat retired, or reported an appropriate penalty. If the boat requesting redress also filed a valid protest against the boat, hear it together with the request for redress.

항의위원회는 규칙을 위반한 보트가 적절한 벌칙을 이행하였거나 벌칙받은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보트가 리타이어 또는 적절한 벌칙이행을 하였는지 그 기록을 확인할 것. 구제를 요청하는 보트가 해당 보트에 대해서 유효한 항의서도 제출한 경우, 구제요청과 함께 그 항의를

청문한다.

### F.22.10 Giving help 도움주기

A boat giving help (except to herself or her crew) in compliance with rule 1.1 may be entitled to redress. When it is possible that a boat is in danger, another boat that gives help may be entitled to redress, even if her help was not asked for or it was later found that there was no danger. See rule 62.1(c) and Case 20.

규칙 1.1에 따라 도움을 주는 보트 (자신 또는 자신의 승정원은 제외)는 구제받을 수 있다. 보트가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한 경우, 비록 그 보트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나중에 위험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도움을 주려고 했던 보트는 구제받을 자격이 있다. 규칙 62.1(c)과 판결 사례 20을 참조할 것.

### F.22.11 Penalty action

#### 벌칙 이행

A boat whose score has been made significantly worse by the actions of a boat against which a penalty has been imposed under rule 2 or a penalty or warning under rule 69 may be granted redress. Once a penalty has been imposed the protest committee may consider calling a hearing to consider redress.

규칙 2에 따라 벌칙이 부과된 보트 또는 규칙 69에 따른 벌칙이나 경고가 주어진 보트의 행위로 인하여 점수가 크게 나빠진 보트는 구제받을 수 있다. 일단 그런 벌칙이 부과되면, 항의 위원회는 구제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청문의 개최를 고려할 수 있다.

### F.22.12 Pre-Race Requests for Redress

#### 경기-전 구제요청

Any requests for redress submitted before racing begins should be heard at the first reasonable opportunity. Any such claim could only relate to an alleged improper action or omission by the organizing authority or race committee.

Examples might be issues raised in the notice of race or sailing instructions, measurement procedures, eligibility or exclusion of a competitor.

The request for redress might claim that the notice of race or the sailing instructions were incomplete, contradictory or did not comply with the rules. These requests are similar to requests to the organizing authority for clarification or interpretation of their documents. In cases like this, the organizing authority often asks the protest committee for their advice, but they are not bound to comply with the advice given.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제출된 구제요청은 첫 번째 합리적인 기회에 청문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은 조직위원회나 경기위원회에 의한 부적절한 조치 또는 임무의 누락에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대회공고 또는 범주지시서, 계측 절차, 선수의 자격 또는 선수의 배제 등과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그 구제요청은 대회공고 또는 범주지시서가 불완전하거나 모순되거나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구제요청은 조직위원회에 대회에서 사용하는 문서들에 대한 설명 또는 해석을 요청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러한 경우, 조직위원회는 종종 항의위원회에 조언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항의위원회에 의하여 주어진 조언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 F.22.13 Alleged Error in Scores Determined by the Race Committee

#### <경기위원회에 의해 결정되는 득점>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실책

Boats sometimes challenge the race committee's decision to score them OCS, ZFP, UFD, BFD, SCP, NSC or DNF by requesting redress under rule 62.1(a).

For a boat to be given redress, she must provide evidence that the race committee has made an error. Video evidence or the relative positions of two boats scored differently rarely proves that the race committee has made an error.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boat requesting the use of video evidence to supply the video and the equipment on which to view it. In finding the facts, the protest committee will be governed by the weight of evidence using a balance of probabilities as the standard of proof. See Case 136.

보트들은 때때로 OCS, ZFP, UFD, BFD, SCP, NSC 또는 DNF로 채점한 경기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규칙 62.1(a)에 따른 구제 요청으로 이의를 제기한다.

보트가 구제를 받으려면, 경기위원회가 실수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비디오 증거 또는 다르게 채점된 두 보트의 상대적 위치에 의하여 경기위원회가 실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비디오 증거의 사용을 요청하는 보트는, 그 비디오와 그것을 보여주는 장비를 제공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사실을 찾아내는데 있어서, 항의위원회는 증거의 우월성을 입증 기준으로 삼아, 그 비디오 증거의 가중치에 따라 좌우된다. 판결 사례 136 참조할 것.

### F.22.14 Redress Given

#### 구제가 주어짐

When the protest committee is satisfied that the request meets the requirements, it must make as fair an arrangement as possible for all boats affected. This is the most challenging part of the redress hearing. Ask the parties what they believe would be the fairest arrangement for all boats affected, although the protest committee is under no obligation to give the requested redress.

구제요청이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항의위원회가 판단하였을 경우, 영향을 받는 모든 보트들에 대하여 가능한 한 공정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이것이 구제청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항의위원회는 구제청문에서 영향을 받는 모든 보트들이 요구하는대로 구제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그들에게 가장 공정한 조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도록 한다.

When in doubt about the fact or probable results of any arrangement for the race or series, especially before abandoning the race, the protest committee shall take evidence from appropriate sources. This might include evidence from other boats not involved in the request and race committee records. Rule 64.3 offers examples of redress that may be given.

Average points may be awarded when a boat has been unable to finish the race.



Ensure that fewer than half of a boat's race scores included in her series scores, after any exclusion(s), are based on average points. See Case 116.

특히 경기를 취소하기 전, 사실 또는 이러한 조정에 의하여 경기 또는 시리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항의위원회는 적절한 출처로부터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이 구제요청과 관련이 없는 다른 보트들의 증거와 경기위원회의 기록이 포함될 수 있다. 규칙 64.3은 주어질 수 있는 구제의 사례를 제공한다.

보트가 구제를 요청한 경기 중에 완주하지 못한 경기는 (RRS A9의 방법을 사용한) 평균점수로 보상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구제를 요청한 경기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버리는 성적을 제외하고 최종성적을 계산할 때 사용하게 될 경기 수의 절반 미만의 (상황에 따라 더 적은 갯수의) 경기에 대해서만 그 평균점수로 구제할 수 있다. 판결 사례 116을 참고할 것.

In major events, consideration may also be given to excluding the last race, or the last day of the series, from the average points calculation. This allows competitors to know the exact scores of all boats going into the final race or final day so they can devise their tactics and strategies. If a majority of races in a series have already been completed the average points could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her points for all races completed before the race in question.

중요 대회에서는, 평균 점수 계산에서 마지막 경기 또는 시리즈 마지막 날을 제외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선수들은 결승전이나 마지막 날 경기에 나가는 모든 보트들의 정확한 점수를 알 수 있어, 그에 따른 자신의 전략과 전술을 구상할 수 있다. 만약 대부분의 시리즈 경기를 이미 완료하였다면, 문제가 된 경기 이전에 완료된 모든 경기에서의 성적에 기반한 평균점수로 결정될 수 있다.

Position of boat at time of incident: points can be awarded based on the position of the boat in that race at the time of the incident. This method should not be used unless the positions of the boats in the race have become well established..

사건 시점의 보트의 순위: 경기에서, 사건 당시 그 보트의 순위에 근거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 방법은 경기에서 보트의 위치가 정확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

Finishing times: if the time lost by a boat in an incident can be reasonably determined, the boat's score could be adjusted by awarding points equal to the finishing position the boat would have had if that time was deducted from its elapsed time for the race. Protest committees must be careful to follow Case 110 and not grant redress for time or places lost during contact or an incident, but rather only grant redress for time or places lost because of the boat's slower progress caused by the injury or damage.

피니시한 시간: 해당 사건에서 보트가 잃어버린 시간을 합리적으로 알아낼 수 있다면, 보트의 점수는 해당 사건에서 잃어버린 시간을 차감할 경우 받았을 피니시 순위와 동등한 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항의위원회는 판결 사례 110을 세심하게 따라야 하며, 접촉이나 사건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시간 또는 순위에 대한 구제가 아니라, 그 상해나 손상으로 인하여 보트가 느려져서 발생한 시간 또는 순위에 대해서만 구제가 주어져야 한다.

Other arrangements: if a boat's score cannot be fairly adjusted using the above arrangements, some other method of redressing its score could be appropriate. For example, in a two-of-a-kind mixed fleet race it could be considered fair to give that boat points equal to the other boat of its same kind.

다른 조치: 위에 제시된 방법으로는 보트의 점수를 공정하게 조정할 수 없을 경우, 다른 방법으로 보트의 점수를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종류의 클래스가 혼합된 플리트레이스에서, 해당 보트에게 같은 클래스의 다른 보트와 같은 점수를 주는 것이 공정하게 여겨질 수 있다.

Abandonment: abandoning a race should only be used when no fair arrangement can be determined for all boats affected. This is important, because to abandon a race may be unfair to those boats that won or finished the race on their own merits.

취소: 경기의 취소는 영향을 받는 모든 보트들에게 공정한 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자신의 실력으로 1등으로 피니시하였거나 경기를 완주한 보트들에게 불공평할 수 있기 때문이다.

Qualifying and final series: where a series consists of a qualifying and final series, any redress given should relate to, and be based on, results relevant to that part of the series in which the incident occurred.

예선과 결승 시리즈: 시리즈가 예선과 결승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주어진 모든 구제는 사건이 발생한 그 시리즈의 해당 부분의 성적과 연관되어야 한다.

Remember rule 64.3 states that the protest committee shall make as fair an arrangement as possible for all boats affected.

항의위원회는 영향을 받는 모든 보트들에 대하여 가능한 한 공정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는 규칙 64.3의 취지를 명심할 것.

## F.23 Hearings Involving Support Persons

### 지원인력이 포함된 청문

A Support Person is defined as: Any person who  
지원인력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provides or may provide, physical or advisory support to a competitor including any coach, trainer, manager, team staff, medic, paramedic or any other person working with, treating or assisting a competitor in or preparing for the competition; or  
대회에 참가 중이거나 대회를 준비하는 선수들에게 신체적 또는 자문형태의 지원을 하거나 할수 있는 사람으로서 코치, 트레이너, 매니저, 팀 스태프, 의료진, 의료 보조인 또는 선수와 같이 일하거나 선수를 치료하거나 돕는 인력; 또는
- is the parent or guardian of a competitor.

Support persons, by rule 4.1(b), are bound by the rules of the regatta.

선수의 부모나 보호자.

지원인력은 규칙 4.1(b)에 따라 대회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F.23.1 Procedures for a Hearing for a Support Person

### 지원인력에 대한 청문 절차

The protest committee may call a hearing to consider whether a support person has broken a rule. Most commonly, the allegation is of a breach of a rule in the sailing instructions or notice of race or Support Team Regulations that are in effect at the event. The protest committee may call this hearing based on its own observation or on information received from any source. This could include evidence taken during a hearing. The allegation could also be an act of misconduct under rule 69, as discussed later in this section.

항의위원회는 청문을 소집하여 지원인력이 규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는, 지원인력이 대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범주지시서 또는 대회공고 또는 지원인력 규정을 위반한 혐의이다. 항의위원회가 직접 목격하였거나 어떤 출처를 통하여 입수한 정보에 근거하여 이 청문을 소집할 수 있다. 여기에는 청문 중에 입수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또한 그 혐의는 이 절의 뒷부분에서 논의되는 규칙 69에 따른 부정행위일 수도 있다.

To initiate the hearing, the allegation of the breach must be in writing, typically describing the incident, including when and where it occurred, and the rule that is believed to have been broken. The support person must be notified of the details of the alleged breach. This information is typically provided on the Request for Hearing form.

청문을 시작하려면, 일반적으로 사건이 언제 어디서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규칙을 포함한 위반혐의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그 지원인력에게 위반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통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청문 요청양식을 사용하여 제공된다.

For the hearing, follow the procedures listed in rule 63.9. Check for a conflict of interest of any member of the protest committee. Take evidence from the parties, hear their witnesses and allow for questions to the parties and their witnesses. The exception to the usual protest procedure is that validity requirements do not apply. 지원인력 청문은, 규칙 63.9에 열거된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항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상충 여부를 확인한 다음, 당사자들로부터 증거를 확보하고, 증인의 증언을 듣고, 당사자와 그들의 증인에게 질문한다. 통상적인 항의절차와 다른 점은, 유효성에 대한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The support person is a party to the hearing. In addition, by definition, any boat that person supports is also a party to the hearing. The hearing request form

should identify all boats associated with the support person as parties to the hearing. Present the support person with a copy of the hearing request form to provide them with the details of the alleged breach. Make copies available at the jury desk for the associated boats.

지원인력은 청문의 당사자이다. 게다가, 정의에 따르면, 그 사람이 지원하는 보트들 또한 청문의 당사자라는 것이다. 청문요청서에는 지원인력과 관련된 모든 보트가 청문의 당사자로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위반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청문요청서의 사본을 지원인력에게 제공한다. 지원인력과 관련된 보트들을 위하여 항의 접수처에 그 사본을 준비해 둔다.

The protest committee must notify the support person and all boats associated with the support person, of the time and place of the hearing. The notification must be timely once the protest committee is aware of the alleged breach. Notification may be on the official notice board, if the sailing instructions so permit. The hearing for the support person may be scheduled with the protest and redress hearings.

항의위원회는 청문의 시간과 장소를 지원인력과 지원인력과 관련된 모든 보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일단 항의위원회가 위반혐의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 통지는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범주지시서가 그렇게 허용할 경우, 이를 공식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지원인력에 대한 청문을 항의와 구제요청에 대한 청문일정 공고 양식에 함께 기재하여 공식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The support person and all boats that person supports are entitled to attend the hearing as parties. If some or all boats do not attend, the hearing may proceed in their absence if they have been duly notified. Give all parties reasonable time to prepare for the hearing.

지원인력과 그 사람이 지원하는 모든 보트는 당사자로서 청문에 참석할 수 있다. 규칙에서 요구하는 대로 적절한 통보가 이루어졌다면, 이 청문과 관련된 일부 또는 모든 보트가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문을 진행할 수 있다. 모든 당사자에게 청문을 준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제공할 것.

At times, the protest committee will bring the allegation against the support person, especially when based on their own observations. In this case, it is better for that member to step off of the protest committee and not participate in the protest committee's decision. Alternatively, the protest committee may appoint another person to present the allegation at the hearing. This approach ensures that the protest committee is independent of the person who presents the allegations at the hearing.

때때로, 특히 항의위원회 스스로 목격하였을 경우, 항의위원회는 지원인력에 대한 혐의를 제기한다. 이럴 경우, 혐의를 제기하는 위원은 해당 청문에서 빠지고, 그 판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방법으로는, 항의위원회가 해당 청문에서 그 혐의를 제기할 다른 사람을 지명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항의위원회가 해당 청문에서 혐의를 제기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한다.

## F.23.2 Penalizing a Support Person

### 지원인력에 대한 벌칙

The protest committee concludes, based upon the balance of probabilities, whether the support person broke a rule. There is a range of penalties that may be applied. The protest committee may issue a warning, or for more serious breaches, exclude the person from the event or venue or remove any privileges or benefits of the event or venue. This exclusion may be for a limited time, such as for one race or one day, or for an extended period up to the end of the event. Consider also whether to exclude the support person from social events organized by the regatta. Decide further whether the support person would be permitted to return to the venue after the event to pack up gear. Before recommending that the organizing authority remove accreditation from a support person, be sure whether it is needed to access meals that have already been paid, or to enter the athlete's village to sleep. The protest committee may also take other action within its jurisdiction provided by the rules.

항의위원회는 증거의 우월성에 근거하여 지원인력의 규칙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여기에는 적용할 수 있는 벌칙의 범위가 있다. 항의위원회는 경고를 주거나, 또는 좀 더 심각한 위반에 대해서는 해당 지원인력에 대하여 대회나 경기수역의 출입을 차단하거나 대회나 경기수역에서의 모든 특권이나 혜택을 박탈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한 경기 또는 하루, 또는 대회가 끝날 때까지 등, 항의위원회가 결정한 시간동안일 수 있다. 또한 대회기간 중, 조직위원회가 준비한 사고 모임에서 배제할 것인지도 검토하여야 한다. 이에 추가하여, 대회가 종료된 후에, 지원인력이 장비를 챙기기 위하여 경기수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도 결정하여야 한다. 항의위원회는 지원인력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도록 조직위원회에 권고하기 전에, 지원인력이 이미 지불한 식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또는 잠자기 위하여 선수촌의 숙소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항의위원회는 규칙에 따른 심판 관할권 내에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The World Sailing Discretionary Penalties for Support Persons and Boats Policy (DPI) provides protests committees with guidance on penalties related to the rule that applies. By using the logic model in this Policy, protest committees may be consistent in penalizing for similar breaches across events. Not all rules in the Policy will apply at every regatta. It is important for the protest committee to stay within its jurisdiction in applying rules and giving the penalty.

월드세일링의 <지원인력과 보트에 대한 임의재량 벌칙의 방침(DPI)>은 항의위원회에 적용되는 규칙과 관련된 벌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 방침의 논리모델을 사용함으로써, 항의위원회는 대회전반에 걸쳐 유사한 위반에 대하여 일관된 벌칙을 줄 수 있다. 정책에 있는 모든 규칙은 모든 레가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항의위원회는 규칙을 적용하고 벌칙을 부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신의 관할권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F.23.3 Penalizing a Boat for a Breach by a Support Person

### 지원인력의 규칙 위반에 의한 보트의 벌칙

If a support person is penalized in a hearing, the protest committee will also decide whether to issue a warning to the boats associated with the support person.

This decision is normally considered during the hearing by inviting the boats to make a representation as to whether a warning should be issued or not. The advantage of a warning to the boat is that the boat is put on notice that they are exposed to a penalty related to the conduct of their support person.

However, a warning is not mandatory, and the circumstances of the support person's actions must be considered. If a warning is given, it should be included in the written decision for the hearing.

지원인력이 청문에서 벌칙을 받을 경우, 항의위원회는 지원인력과 관련된 보트들에 대한 경고 조치 여부도 결정한다. 이 결정은 일반적으로 경고가 주어져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변론을 하도록 해당 보트들을 초대함으로써 청문회 중에 고려된다. 보트에 대한 경고의 이점은, 그 보트들이 지원인력의 행위와 관련된 벌칙에 노출되어(=벌칙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게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지원인력이 그렇게 행동하게 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경고가 주어질 경우, 청문에 대한 서면 판결문에 포함되어야 한다.

Standard wording where the boats supported are, say, sail numbers 1572, 1539, 1600 and 1602 and the support person is Chris Black is:

'Boats 1572, 1539, 1600 and 1602 are warned that a further breach by support person Chris Black may result in a penalty being imposed on the boats.'

지원인력에 관련된 보트에 대한 판결문의 표준 문구는 다음과 같다. 가령 지원인력이 Chris Black이고, 그의 지원을 받는 보트들이 세일넘버 1572, 1539, 1600 그리고 1602일 경우:

'지원인력 Chris Black이 추가로 규칙을 위반할 경우, 보트1572, 1539, 1600 그리고 1602에게 벌칙이 부과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Post the decision along with the warning to the boats that are supported on the official notice board. This provides sufficient warning to the boats, even if they did not attend the hearing.

지원받은 보트에 대한 경고와 함께 판결문을 공식게시판에 게시한다. 이는 보트들이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한 경고를 준다.

A protest committee may also penalize a boat that is a party to a hearing about a support person under certain conditions in the rules. However, it will not automatically do so.

항의위원회는 규칙 안에서의 특정 조건에 따라, 지원인력에 대한 청문의 당사자로서 해당되는 보트에게 벌칙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자동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One condition for penalizing boats is that the boats may have gained a competitive advantage as a result of the breach by the support person. In these cases, there is usually a good reason to protest the boat as well. If possible, the rule alleged to have been broken in the protest will be the same rule the support person is alleged to have broken. Otherwise, the protest committee can use an associated rule. Examples include protesting a boat for outside assistance, or for a breach of a class rule when the boat has been modified, or when the support person has interfered with other boats that are racing.

Since the protest and the action against the support person arise out of the same incident, they can be heard together in the same hearing.

보트에게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지원인력이 규칙을 위반한 결과로 경기에서 이득을 얻었을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트도 항의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 이 항의에서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규칙도 지원인력이 위반한 것과 같은 규칙이다. 만약 같은 규칙이 아니라면, 항의위원회는 다른 관련 규칙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든다면, 외부의 도움으로 해당 보트를 항의하는 것, 또는 보트를 변형시켰다고 클래스규칙 위반으로 보트를 항의하는, 또는 지원인력이 경기 중인 다른 보트를 방해하였다고 보트를 항의하는 것 등이 있다.

항의와 지원인력에 대한 조치가 같은 사건으로부터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합동으로 청문할 수 있다.

A second condition for penalizing boats for a breach of a support person is that the support person has committed a further breach after the protest committee has warned the boat in writing that a penalty may be imposed. The further breach could involve the same rule or a different rule.

If either of these conditions are met, then the protest committee may penalize boats that are party to the hearing. Rule 64.5(b) allows for other penalties than a DSQ. The boats may be penalized, even if they did not attend the hearings.

지원인력의 위반에 따라보트에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은, 항의위원회가 지원인력에게 벌칙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서면으로 경고한 후, 추가적인 위반을 저질렀을 경우이다. 추가 위반은 같은 규칙이나 다른 규칙이 포함될 수 있다.

이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된다면, 항의위원회는 청문 당사자인 해당 보트에 벌칙을 줄 수 있다. 규칙 64.5(b)는 DSQ이외의 다른 벌칙을 허용한다. 보트가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벌칙이 부과될 수 있다.

#### **F.23.4 Appeal by a Support Person or Boats he Supports**

##### **지원인력 또는 그가 지원하는 보트에 의한 상고**

All boats associated with the support person are parties to the hearing. Therefore, they all have the right to appeal the decision of the protest committee, unless the right of appeal has been denied. The protest committee would provide a copy of their decision in writing to any parties who request it. This would include the support person and boats he supports.

지원인력과 관련된 모든 보트는 청문의 당사자이다. 따라서, 상고의 권리가 거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들 모두는 항의위원회의 판결에 대해서 상고할 권리가 있다. 항의위원회는 그것을 요청하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된 판결문의 사본을 제공할 것이다. 이는 지원인력과 그의 지원을 받는 모든 보트를 포함한다.

#### **F.23.5 Allegations of Misconduct by a Support Person**

## 지원인력에 대한 부정행위 혐의

The protest committee may also call a hearing for a support person who is alleged to have committed misconduct in breach of rule 69.1. In this case, the protest committee would follow the procedures in rule 69.2. The World Sailing Misconduct Guidance 2017 or more recent version is also a good resource for protest committees who investigate and conduct hearings about misconduct. The section on rule 2 and rule 69 of this manual provides further details of protest committees' procedures and responsibilities.

If the allegation against the support person is misconduct, any boat that person supports is also a party to the hearing. While these boats are not alleged to have committed misconduct themselves, they are subject to penalties if conditions are met.

또한 항의위원회는 규칙 69.1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지원인력에 대한 청문을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항의위원회는 규칙 69.2의 절차를 따를 것이다. 2017년 월드세일링의 <부정행위 지침> 또는 최신판 역시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청문을 진행하는 항의위원회에 좋은 자료이다. 이 매뉴얼의 규칙 2와 규칙 69에 관한 절은 항의위원회의 절차와 책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한다.

지원인력에 대한 혐의가 부정행위일 경우, 그의 지원을 받는 보트들 또한 청문의 당사자이다. 비록 이 보트들이 스스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제기된 것은 아니지만, 조건이 충족되면, 벌칙받는다.



## G Rule 2 and Rule 69

### G.1 Rule 2 Fair Sailing

#### 규칙 2 공정한 범주

Rule 2 requires boats and their owners to compete in compliance with recognized principles of sportsmanship and fair play. The rule is one of six fundamental rules of sailing. A boat, a protest committee, technical committee or race committee may protest under this rule.

규칙 2는 보트와 그 소유자에게 스포츠맨십 원칙과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하여 경기하도록 요구한다. 이 규칙은 여섯 개의 세일링 기본규칙 중 하나이다. 보트, 항의위원회, 기술위원회 또는 경기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항의할 수 있다.

The Case Book gives guidance as to what actions may be considered a breach of the principles of sportsmanship and fair play. Case 138 advises that an action that is considered to be an act of misconduct and that does not directly affect the competition should be subject to action under rule 69.

판결 사례집은 스포츠맨십 원칙과 페어플레이를 위반하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지침이 수록되어 있다. 판결 사례 138은 대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행위에 대하여 규칙 69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A boat may be penalized only when it is clearly established that this rule has been broken. This standard of proof is higher than a balance of probabilities. The penalty is a disqualification that is not excludable from a boat's series score (DNE). 보트는 이 규칙을 위반했다는 것이 확실히 판명된 경우에만 벌칙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의 입증 기준은 증거의 우월성보다 높으며, 그 벌칙은 보트의 시리즈 성적에서 제외할 수 없는 실격 (DNE)이다.

A protest committee may disqualify a boat for a breach of rule 2 even though it is not mentioned in the protest. Rule 2 does not have the procedural and formal safeguards of rule 69. When the protest committee is considering that the competitor's action may also be a breach of rule 2, it should explain the potential breach of sportsmanship and give the boat an opportunity to address the issue before it makes a decision.

항의위원회는 항의서에 언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규칙 2를 위반한 보트를 실격시킬 수 있다. 규칙 2에는 규칙 69와 같은 절차적, 형식적 보호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선수의 행동이 규칙 2의 위반일 수도 있다고 항의위원회가 판단한다면, 판결을 내리기 전에, 해당 보트에게 스포츠맨십 위반일 수도 있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G.2 Rule 69 Hearings

#### 규칙 69 청문

We recommend the reader to review the most recent version of the World Sailing Misconduct Guidance. It is a complete reference work for all race officials - in particular, judges and protest committees, based on the World Sailing Racing Rules of Sailing. At the moment this manual has been released, the current version of this Guidance is dated 2017 and refers to the 2017-2020 rules, but it still provides guidance under the 2021-2024 rules.

<https://www.sailing.org/42208.php>

월드세일링은 독자들에게 월드세일링 부정행위 지침의 가장 최신판을 읽어보도록 권고한다. 해당지침은 모든 대회 관계자 - 특히 심판과 항의위원회를 위한 월드세일링의 세일링 경기규칙에 근거한 완전한 참고 자료이다. 이 매뉴얼이 배포된 현재, 월드세일링의 부정행위 지침서의 최신판은 2017년인데, 이 지침서는 2017-2020 규칙을 참조하고는 있지만, 2021-2024 규칙에 따라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https://www.sailing.org/42208.php>

Rule 69 hearings are separate and different from other hearings in four main ways:

규칙 69 청문은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다른 청문들과 구분되며 다르다:

- An action under rule 69 is not a protest:  
규칙 69에 따른 조치는 항의가 아니다;
- An action under rule 69 is against a competitor, a boat owner or a support person, not a boat:  
규칙 69에 따른 조치는 보트가 아닌 선수, 보트 소유자 또는 지원인력에 대한 것이다.
- An action under rule 69 may be initiated only by a protest committee:  
규칙 69에 따른 조치는 오직 항의위원회만이 제기할 수 있다.
- on receiving a report, the protest committee has discretion as to whether to proceed to a hearing or not.  
관련보고를 받은 항의위원회는, 청문 개최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가진다.

The protest committee initiates a rule 69 hearing either on its own, or after receiving an oral or written report from anyone, including a person who is not involved in the regatta.

항의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또는 대회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한 누군가로부터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를 받은 다음, 규칙 69에 따른 청문을 제기한다.

Note: Major international events have very different procedures under rule 69 as defined by WS Regulation, Disciplinary, Appeals and Reviews. Since this manual does not cover these procedures, it is important to refer to the Regulation if involved with misconduct issues at one of these events.

참고 : 중요 국제대회들은 규칙 69에 따라 월드세일링 규정, 징계, 상고 및 검토에 정의된 대로 매우 다른 절차를 가지고 있다. 본 매뉴얼은 이러한 절차를 다루지 않으므로, 이런 중요 대회에서, 부정행위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규정을 참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 G.2.1 When the Protest Committee Should Initiate Action Under Rule 69

### 항의위원회가 규칙 69에 따른 조치를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

Standards of ethical behavior among sailors throughout the world vary greatly, and it is not the responsibility of judges to educate individuals in the subject of moral behavior. Under rule 69.1(a) a competitor, boat owner and support person shall not commit misconduct, being conduct that is a breach of good manners, sportsmanship or unethical behavior, or conduct bringing the sport into disrepute. 윤리적 행동에 대한 기준은 전 세계 선수들 사이에 매우 다르며, 개개인에게 도덕적 행동양식에 대하여 교육하는 것은 심판의 의무가 아니다. 규칙 69.1(a)에 따라, 선수, 보트 소유자 및 지원인력은 부정행위, 좋은 매너와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위, 또는 비윤리적 행위, 또는 세일링 스포츠를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Such actions are addressed through two rules. Rule 2 requires that a boat, her owner and crew shall compete in compliance with recognized principles of sportsmanship and fair play. Rule 69 prohibits misconduct and describes the procedure for the protest committee to adopt, should a competitor, boat owner or support person commit such an act of misconduct.

그러한 행위들은 두 가지 규칙에 의해 다루어진다. 규칙 2는 보트와 그 소유자, 선수가 규정된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의 원칙에 따라 경기하도록 요구한다. 규칙 69는 금지된 부정행위 그리고 선수, 보트 소유자 또는 지원인력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항의위원회가 취해야 하는 절차가 기술되어 있다.

It is essential to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sport that severe penalties be imposed on competitors, boat owners or support persons who knowingly infringe a racing rule. Protest committees should take action under rule 69 if a competitor deliberately breaks a rule for his own advancement or if a deliberate breach results in injury, or if a competitor cheats, lies at a hearing, or behaves in any way that brings the sport into disrepute. Protest committees should also take action under rule 69 if the actions of support persons might affect the fairness of the competition or seriously affects people's enjoyment of the sport.

경기규칙을 고의로 위반한 선수, 보트 소유자, 지원인력에게 엄중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세일링 스포츠의 건강한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항의위원회는 선수가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고의로 규칙을 위반하거나, 고의적 규칙 위반으로 상해를 초래했거나, 또는 선수가 속임수를 쓰거나, 청문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세일링 스포츠를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규칙 69에 의거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항의위원회는 지원인력의 행동이 대회에 공정성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거나 세일링 스포츠에 대한 즐거움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경우, 규칙 69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G.2.2 Who Can be Subject to a Rule 69 Hearing

### 규칙 69 청문의 적용 대상

Rule 69 uses the terms, competitor, boat owner and support person; this means any boat owner and any crew member and any support person.

규칙 69는 선수, 보트 소유자, 지원인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모든 보트 소유자, 모든 승정원 및 모든 지원인력을 의미한다.

Support persons are bound by the rules because the competitor agrees on behalf of the support person to be bound by the rules (rule 4.2). In addition, a parent or guardian who enters their child in a race thereby agrees to be bound by the rules (rule 4.1(b)).

선수가 지원인력을 대신하여 규칙 4.2에 따를 것을 동의하였기 때문에, 모든 규칙은 지원인력에게도 적용된다. 또한, 자식을 대회에 참가시키는 부모 또는 보호자는 규칙을 따를 것에 동의한 것이다 (규칙 4.1(b)).

A parent or other support person might object to a rule 69 hearing on the grounds that the competitor did not have authority to bind the support person to comply with the rules, and that he did not know that providing support would bind the person. If this objection is raised, advise the support person that, if that is so, the competitor broke rule 4.2 and must be disqualified. The limitation of a disqualification in a single race in rule 64.5(b) does not apply to the breach by the competitor of rule 4.2. In most cases that will cause the support person to accept that he is bound.

부모 또는 지원인력은 선수가 그들(부모나 지원인력)에게 규칙을 따르게 할 권한이 없고,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도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이유로, 규칙 69에 따른 청문에 반대할 수 있다. 이렇게 반대한다면, 그런 주장(내용)은 해당 선수의 규칙 4.2 위반사항으로써 실격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지원인력에게 조언한다. 게다가, 규칙 64.5(b)에 따른 실격은 해당 단일 경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국한되지만, 선수가 규칙 4.2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런 제한이 없다.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조언하면, 지원인력은 자신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Consider this point as a preliminary issue and whether, on the facts, the support person is bound to the rules. If the protest committee is convinced that the support person was indeed bound (such as the case of a coach which would be expected to know the rules, including the provisions of rule 4.1 and 4.2), it should proceed with the rule 69 hearing. If the protest committee determines the support person is not bound to the rules, then it cannot proceed against them and must turn its consideration to the competitor's compliance with rule 4.2.

이를 염두에 두고, 지원인력이 사실상 규칙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지원인력이 당연히 규칙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항의위원회가 확신 (예를 들어, 규칙 4.1과 4.2를 포함한 규칙에 대하여 당연히 알 것으로 예상되는 코치의 경우)할 경우, 규칙 69에 따른 청문을 진행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항의위원회가 해당 지원인력이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그들을 상대로 규칙 69에 따른 청문을 더이상 진행할 수 없고, 이후 항의위원회는 선수의 규칙 4.2 준수 여부에 대한 심의로 전환해야 한다.

## G.2.3 The Time and Place of the Act of Misconduct

### 부정행위를 저지른 시간과 장소

The act of misconduct must be associated with the event. It would therefore normally occur within the period immediately prior to the event, commencing with the competitor's arrival at the venue for the purpose of the event, and may extend beyond their departure from the venue. Thus, a protest committee is not at liberty to hold a rule 69 hearing to address alleged misconduct by a competitor which happened before the beginning of the event, unless the misconduct relates to the event. For example, before an event, a competitor may threaten to do something at the event or do something to prevent another competitor to partake in an event, such as deliberately damaging another competitor's boat. Such an act, even though it happened before the event, will be sufficiently closely connected to the event to say that the person is a competitor.

부정행위는 반드시 대회와 관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대회 직전 기간에 발생되며, 이 기간은 선수가 참가를 목적으로 대회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해당 장소를 떠난 이후까지 연장될 수 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대회와 연관된 것이 아니라면, 항의위원회는 대회가 시작 되기 전에 발생한 선수의 부정행위 혐의를 다루기 위한 규칙 69 청문을 임의대로 개최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대회가 시작되기 전, 선수가 다른 선수에게 대회에서 무언가를 하도록 위협하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다른 선수의 보트를 손상시키는 등 다른 선수의 대회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이다. 그런 행위는, 비록 대회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행위자를 선수라고 칭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대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The place where the act of misconduct occurred is not necessarily relevant. An example is a competitor who was involved in an assault during a fight in a public place unrelated to the venue of the regatta. This may still bring the sport into disrepute because the public associates the competitor with the event, so the competitor could be the subject of a rule 69 hearing. If that fight took place between the competitor and someone unrelated to the regatta, in private or in public, without the public knowing the competitor was competing in the regatta, it would probably not be appropriate for a protest committee to initiate a rule 69 hearing.

부정행위가 일어난 장소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대회와 관계없는 공공장소에서 싸움을 벌이다가 폭행을 저지른 경우이다. 대중들은 해당 선수를 대회와 연관 지을 것이고, 이는 세일링 스포츠를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일이므로, 해당 선수는 규칙 69에 따른 청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선수가 대회와 관련이 없는 일반인을 상대로, 사적 또는 공공장소에서, 그 선수가 대회에 참가한다는 사실을 일반 대중이 모른 채 다툰 경우라면, 규칙 69에 따른 청문의 개최는 아마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 G.2.4 Preparation by the Protest Committee.

### 항의위원회의 준비사항

Before a protest committee convenes a rule 69 hearing, it should first prepare

itself. The protest committee will try to get a clear view about the meaning of rule 69 and the procedure to follow.

항의위원회는 준비를 마친 다음, 규칙 69 청문을 소집하여야 한다. 항의위원회는 규칙 69가 의미하는 바를 확실히 이해함과 동시에 따라야 하는 절차들을 알아야 한다.

Start reading rule 69 carefully. Discuss the implications of the rule and discuss the potential infringement.

규칙 69를 정독 해보라. 규칙의 함축적 의미와 가능성 있는 위반사항들을 토론 해보라.

Read rule M5 again, and the World Sailing Misconduct Guidance and ensure you are knowledgeable of the procedure to follow. Think about what might happen during the hearing and what your answers will be. Plan the procedure within the protest committee, delegating tasks among the members: one chairs the hearing, another person is the scribe.

규칙 M5와 <월드세일링 부정행위 지침>을 다시 읽고, 당신이 따라야 하는 절차를 숙지했는지 확인할 것. 청문하는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할지, 그리고 어떤 답변을 할지 생각해 둘 것. 항의위원회 내에서 절차를 계획하고, 위원들간의 업무를 분담할 것; 한 명이 청문의 위원장을 맡고, 위원 중 한 명은 기록을 담당한다.

If the hearing involves youths, make arrangements, if possible, that a parent, guardian or coach is present as a witness to the proceedings. Also refer to the section on Judges and Junior Sailors.

청소년과 관련된 청문일 경우, 가능하다면, 부모, 보호자 또는 코치를 참석시켜서 청문의 절차를 지켜보게 한다. 이 매뉴얼의 <심판과 청소년 선수>에 대한 절도 참조할 것.

## **G.2.5 Appointing an Investigator, Rules 69.2(c) and (d)**

### **조사원 임명, 규칙 69.2(c) and (d)**

The protest committee may appoint an investigator when they do not have sufficient information to decide whether to call a hearing or not. The purpose of the investigator is to ensure that the protest committee is independent, and that their judgment is not influenced by information obtained during the investigation.

청문소집 여부를 결정할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항의위원회는 조사원을 임명할 수 있다. 조사원 임명의 목적은 항의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들의 판결이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If possible, the investigator should be familiar with the procedures of rule 69. He may be a member of the protest committee, or another race official or member of the organizing authority. However, the investigator, whether one of the protest committee or not, is prohibited from participating in any further decisions made by the protest committee in the case.

가능하다면, 규칙 69 절차들에 익숙한 조사원이 좋다. 항의위원회의 위원, 운영요원 또는 조직위원회 관계자 등 누구라도 조사원이 될 수 있지만. 항의위원회의 위원이든 아니든 조사원

이 될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항의위원회의 판결에는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다.

It is important that the investigator keeps a written record of all the evidence he obtains. Rule 69.2(d) deals with the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 gathered by the investigator, an essential element in the fairness of any subsequent procedures. Fairness and rule 69.2(d) dictate that the investigator must disclose all information that it gathers, favorable and unfavorable, to protest committee and, if a hearing is called, to the parties.

조사원이 입수한 모든 증거를 서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규칙 69.2(d)는 조사원이 수집한 증거들의 공개여부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후속 절차의 공정성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된다. 공정성의 원칙과 규칙 69.2(d)는 조사원이 수집한 모든 정보를 유불리에 관계없이 항의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며, 청문이 소집될 경우, 당사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The investigator may be appointed by the protest committee under rule 69. 2(a) to present the allegation in the hearing. If appointed under this rule, the investigator will gain the status of a party.

조사원은 규칙 69.2(a)에 따라 항의위원회에 의해 임명되어 해당 청문에서 혐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조사원은 당사자의 지위를 가진다

## G.2.6 Informing the Person in Writing

### 당사자 서면 통보

Prepare the written statement of allegations that you will give to the person against whom the allegation of the rule 69 violation is made. Make the allegations as detailed as possible and include the time and place of the hearing (rule 69.2(a)). 규칙 69 위반 혐의가 제기된 사람에게 줄 서면 혐의 통지서를 준비할 것. 혐의에 대하여 가능한 자세히 기술하고, 청문이 열릴 시간과 장소를 포함할 것 (규칙 69.2(e)).

Should the protest committee learn of the evidence of misconduct during a protest hearing, rule 69 cannot be addressed in that hearing. The protest committee must prepare the written allegation after that hearing is closed, and promptly deliver the statement to the person. Even if the person gives approval to proceed with the hearing immediately, wait. The person must be given a reasonable time to prepare a defense. Schedule the rule 69 hearing leaving enough time for the person to review the allegations, gather witnesses and find an advisor and representative to provide support during the hearing. This is often only the following day.

항의위원회가 항의 청문 중에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알게 된 경우, 해당 청문에서는 규칙 69를 다룰 수 없다. 항의위원회는 해당 청문이 종료된 다음, 혐의 통지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당사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비록 당사자가 기존의 청문에서 관련 혐의에 대하여 즉시 다루고 싶어 하더라도, 일단은 새로운 청문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당사자에게는 변호를 준비할 합리적인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혐의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증인을 모은 뒤, 청문이 진행되는 동안 도움 받을 조연자와 그를 대신할 수

있는 대리인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하는데, 따라서 그 청문 일정은, 보통 다음 날이다.

The written notice should state the alleged specific act or acts of misconduct under rule 69.2. It is not sufficient to state that the person committed an act of misconduct by committing a breach of good manners, without saying what the misconduct is. The description of the misconduct should be specific.

그 서면 통지서에는 규칙 69.2에 따른, 부정행위의 혐의가 제기된 특정 행동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부정행위가 무엇인지 거론하지 않은 채, 단순히 좋은 매너를 위반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부정행위에 대한 기술은 명확하여야 한다..

The notice should be detailed. For example, write, 'immediately after the decision was announced, the competitor stated in a loud voice that the decision was wrong and called the members of the protest committee 'idiots' and said that they have 'no clue what they are doing''. It is not sufficient to write, "the competitor said that the decision of a protest committee is wrong".

통지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판결문을 들은 다음, 선수가 항의위원회의 판결이 틀렸다고 말했다.'라고 적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그 대신, '판결문을 들은 다음, 선수가 항의위원회를 향하여 거칠게' 본인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멍청이들'이라고 소리쳤다.'라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Where foul language is used, the notice should either quote the language or describe it clearly. For example, 'using vulgar language indicating sexual intercourse.' Do not merely say that the competitor used 'insulting language' without quoting or paraphrasing the language.

비속어가 사용되었을 경우, 통지서에는 해당 언어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자세한 설명 없이 이를 의역하여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 함'이라고 하기보다는, '성관계를 의미하는 저속한 단어를 사용함' 이라고 하여야 한다.

A good test is whether a dispassionate outsider will understand the notice and would agree that the alleged conduct is misconduct.

전혀 무관한 제 3자가 통지서를 보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혐의가 분명한 부정행위라고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The notice should also allege the time, place and identity of other persons involved, if known.

또한 통지서에는 시간과 장소와 더불어,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건에 관련된 사람의 신원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It is preferable to be specific regarding the act of misconduct so that there is no possible misunderstanding by the competitor. Remember that a finding at the end of the hearing cannot be of any misconduct other than that alleged in the notice. If the evidence at the hearing differs materially from what is alleged in the notice, the hearing should be adjourned to give a further written statement of allegations



and time to prepare. An alternative is to inform the competitor or other person that a finding might be made in respect of this additional misconduct, then ask whether he requires additional time to prepare and gather evidence. Make a record that this was done, which should form part of the report made in terms of rule 69.2(j).

부정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선수가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다. 부정행위 청문의 마지막에 내리는 결론은, 통지서에 제기된 내용 외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할 것. 청문 중 얻은 증거가 통지서에 기재된 것과 현저하게 다를 경우, 해당 혐의에 대한 새로운 서면 진술서와 당사자에게 변호를 준비할 합리적인 시간을 주기 위하여 휴정되어야 한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당사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추가적인 부정행위가 밝혀졌다는 것을 알린 다음, 이에 대해 증거 수집을 비롯,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지 묻는다. 규칙 69.2(j)에 해당될 경우, 이는 보고서에 명시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이행했었다는 것을 기록할 것.

## G.2.7 Examples of Cause for Initiation of a Rule 69 Hearing

### 규칙 69 청문개최 사유의 예시

Only when the protest committee has evidence that indicates a realistic prospect that misconduct has occurred should a rule 69 hearing be initiated. It should also be in the interests of the sport to initiate a hearing. For example, misconduct by a junior sailor might not justify a hearing if a lesser and more appropriate form of intervention can be made. However, in most cases this test will clearly be met.

항의위원회는 규칙 69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가 있을 때에만 청문을 개최하여야 한다. 또한 청문을 여는 것이 세일링 스포츠의 이익에 부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 선수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부정행위 청문보다는 더 적절한 형태의 조정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요건은 충족될 것이다.

Breach of good manners: whether conduct is a breach of good manners will depend much upon whether other people, such as competitors, officials or the public, are offended by the behavior. What might be acceptable behavior in one situation may be unacceptable in another. The common use of foul language in daily life makes it difficult for some young people to realize how offensive such language may be to others. Persons who do not speak the language spoken at the regatta as their first language might also have less understanding of the offensiveness of specific terms. This is a difficult area to be judged consistently. Swearing directed at an individual could be considered differently from expressions of frustration that are not directed to any individual.

좋은 매너의 위반: 좋은 매너의 위반인지 아닌지는, 다른 선수들과 운영요원, 또는 일반대중이 그 행위로 인하여 불쾌함을 느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상황 A에서는 괜찮았던 행동이, 상황 B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일 수도 있다. 일상 생활에서 비속어를 자주 사용하는 일부 젊은 선수들에게는 그러한 언행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불쾌하게 만드는지 깨닫기 힘들 수 있다. 대회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자신의 모국어가 아닌 경우, 비속어를 듣고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이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가 힘든 부분이다. 특정 개인을 향한 욕설은, 혼잣말로 욕설을

섞어 자신에게 실망감을 표현하는 것과는 다르게 취급될 수 있다.

Breach of good sportsmanship: this includes cheating by acting to gain an advantage by infringing rule 2, lying at a hearing, etc. Unlike protests where it is assumed that if there is a rule infringement it was not done on purpose, the person's intentions or attitude, if it was reckless, can be important in deciding whether conduct is a breach of good sportsmanship. Examples of occasions when action under rule 69 would be appropriate, should the protest committee become aware of evidence, are presented in Case 138. Some include:

좋은 스포츠맨십의 위반에는: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규칙 2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 청문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 등이 있다. 규칙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더라도, 그것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가정하는 일반적인 항의와 달리, 해당 청문에서의 말투나 태도가 난폭했다면, 이는 좋은 스포츠맨십을 위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할 수 있다. 항의위원회가 이러한 경우를 접하였을 때, 규칙 69에 따른 조치가 적절한 경우의 사례는 판결 사례 138에 제시되어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든다면:

- lying at a hearing;  
청문에서의 거짓말
- knowingly infringing a rule with intent to gain an unfair advantage;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고의적인 규칙의 위반
- threatening behavior, or physical contact;  
위협적인 행위 또는 신체적 접촉
- falsifying measurement documents;  
계측 서류에 대한 위조
- failure to comply with a reasonable request of a race official;  
운영요원의 합당한 요청에 대한 불응
- deliberately damaging another boat;  
고의로 다른 보트를 파손하는 행위
- abuse of officials;  
운영요원에 대한 욕설
- theft;  
절도
- offensive drunken behavior;  
불쾌한 술주정 행위
- fighting.  
싸움

## G.2.8 The Rule 69 Hearing

### 규칙 69 청문

During the hearing, follow the procedures meticulously. Any doubt as to the correct procedure should be resolved in favour of the course of action which presents the greatest fairness to the competitor.

청문하는 동안, 절차를 철저히 따를 것. 올바른 절차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공정성을 위하여 선수에게 최대한 우호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It is especially important at a rule 69 hearing to maintain an atmosphere of formality. Ensure that the competitor is given ample opportunity to answer the allegations. Keep a written account of the proceedings. The hearing must be held in accordance with rules listed in rule 69.2(e).

규칙 69 청문에서는 격식을 갖춘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선수에게 반드시 혐의들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준다.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기록할 것. 부정행위 청문은 반드시 규칙 69.2(e)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개최되어야 한다.

The protest committee should consider making an audio or video recording of the hearing. Such a recording is often very useful if there is a dispute later as to what happened at the hearing or what evidence was given. This is particularly so where there might be further proceedings by World Sailing or an MNA under the Regulation, Disciplinary, Appeals and Reviews, or proceedings before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항의위원회는 청문 내용을 녹음하거나 비디오로 녹화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녹취록은 청문에서 생긴 일이나 제기된 증거들에 대하여 추후 분쟁이 생겼을 경우, 매우 유용할 경우가 많다. 특히 월드세일링이나 국가협회가 규정, 징계, 상고 및 검토를 위하여 추가 절차를 밟을 경우, 또는 스포츠 중재 재판소 (CAS)로 이관될 경우 그러하다.

If a recording is to be made, consent to the recording must be obtained from the competitor, boat owner or support person and any witnesses prior to commencement of the hearing.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inform about the duration of the recording and the institutions to which it is to be distributed, in advance. If one of these persons does not agree, a record of her or his statement shall not be made. If only the consent of the parties has been given, but not that of a witness, the hearing but not the testimony of the witness can be recorded. In some nations a recording made without a person's consent is a criminal offence and the power to do so is generally reserved exclusively for law enforcement agencies (prosecutors and police). Note that a protest committee is not a law enforcement agency. The protest committee has only the possibility of verbal or analogous written record of the statement, if the personal consent to the electronic record is not given.

녹취를 할 경우, 청문을 시작하기 전에, 선수와 보트 소유자 또는 지원인력과 증인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또한 녹취 기간과 녹취 자료가 공유될 기관들에 대해서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만약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는 녹취할 수 없다. 당사자의 동의만 있고, 증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증인의 증언을 제외하고, 녹취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개인의 동의 없이 녹취를 하는 것이 범죄행위이며,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일반적으로 사법기관에게만 주어진다. 항의위원회는 법률집행기관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할 것. 전자기록에 대한 개인적 동의가 없을 경우, 항의위원회는 진술서에 대한 구두 또는 이와 유사한 서면 기록만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A party is entitled to a copy of the recording if required for an appeal or further proceedings. In that case, the party must first agree that the recording will only be used for that purpose, and that its confidentiality will be respected. After expiration of the duration of the recording, and in particular if no appeal or further proceedings have taken place, all persons recorded are entitled to a cancellation of the recording. Upon written request, the entitled person must be informed about the institutions to which the record was distributed. An alternative to providing the recording is to order a transcript of the recording via a commercial provider.

상고 또는 추가 절차에 필요할 경우, 당사자는 녹취 기록의 사본을 받을 수 있다. 그럴 경우, 먼저 녹취 기록은 그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기밀을 유지할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녹취 보관 기간의 만료 후, 특히 상고 또는 추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녹취된 모든 사람은 그 녹취 기록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이 서면으로 요청하면, 녹취 기록이 전달된 기관 리스트를 통지받아야 한다. 비용을 지불하고 녹취록의 대본 작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녹취록 제공의 대안이 될 수 있다.

Rule 69.2(g) requires that the protest committee find to its 'comfortable satisfaction' bearing in mind the seriousness of the alleged conduct, whether or not the competitor has broken rule 69.1(a). The following explanation of this standard of proof is based on World Sailing Case 122. An act of misconduct may be a breach of a rule, good manners or sportsmanship, or conduct that brings the sport into disrepute.

규칙 69.2(g)는 선수가 규칙 69.1(a)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항의위원회가 주장된 행위의 심각성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납득'이 되는지의 여부이다. 입증 기준에 대한 아래의 설명은 월드세일링 판결 사례 122에 기초한 것이다. 부정행위란 규칙의 위반, 좋은 매너 또는 스포츠맨십, 또는 세일링 스포츠를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행위일 수 있다.

Comfortable Satisfaction is greater than the 'balance of probabilities'. In a rule 69 hearing, the protest committee must answer 'yes' to both of the following questions before it penalizes a competitor or boat owner or support person under rule 69.2(h) or 69.2(i):

충분한 납득은 '증거의 우월성'보다 우위에 있다. 규칙 69 청문회에서 항의위원회는 69.2(h)와 69.2(i)에 따라 선수, 보트 소유자, 지원인력에게 벌칙을 부과하기 전에, 아래 두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 Is the committee comfortably satisfied that the facts found establish that the alleged conduct occurred?  
항의위원회는, 혐의가 제기된 행위가 발생했다는 것이 판명된 사실에 의하여 입증된다고 충분히 납득하고 있는가?
- Is the committee comfortably satisfied that the conduct that occurred was misconduct?  
항의위원회는, 그 행위가 부정행위였다는 것에 충분한 납득하고 있는가?

The requirement that the protest committee must be comfortably satisfied does not mean that all of them needs to be so satisfied. It is sufficient if a majority of them are so satisfied.

항의위원회가 충분한 납득이 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항의위원 전체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대다수가 만족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The standard of proof may have been varied by a National Prescription with the consent of World Sailing. No country has done so to October, 2020.

입증 기준은 월드세일링의 동의 하에 국가협회 규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지만, 2020년 10월 까지 어느 국가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Comfortable satisfaction is a standard used by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 as well as in doping cases.

충분한 납득은 스포츠 중재재판소 (CAS)와 도핑사건에서 사용되는 기준이다.

## G.2.9 Mitigating and Aggravating Circumstances

### 벌칙의 감경과 가중

Once the protest committee decides that the person has committed an act of misconduct, they will consider whether to give a penalty. In doing so, the protest committee should also consider whether there are any mitigating circumstances that may lead to reducing the penalty, and aggravating circumstances that may lead to a more severe penalty than is typical for similar misconduct.

청문의 당사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결정했다면, 항의위원회는 벌칙부과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다. 그 과정에서, 항의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사례와 비교하여, 벌칙을 낮출 수 있는 감경사유가 있는지, 벌칙을 높여야 할 가중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Consider whether any remorse is for the misconduct itself. This is different from remorse for being called to a rule 69 hearing or for the penalty that might be given. Take into consideration any sincere and unprompted apology in relation to an incident that admits that the conduct was impulsive or spontaneous.

당사자가 부정행위 자체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는지 판단할 것. 이는 규칙 69 청문에 불려가거나 벌칙을 받을 것에 대한 뉘우침과는 다르다. 그 행위가 즉흥적이고 충동적이었음을 인정하고, 사건과 관련하여 진심을 담아 자발적인 사과를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 G.2.10 Litigation 소송

In the past, competitors have made threats against protest committees, such as threatening to sue the committee members for libel or defamation. The dictionary defines libel as, 'the publication of defamatory matter in permanent form, as by a written or permanent statement, picture, etc.'

과거에, 몇몇 선수들이 항의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적이 있다. 사전에서는 명예훼손을 '글 또는 영구적인 진술서, 사진 등과

같이 내구성있는 형태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공표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It is the personal responsibility of a race official to ensure that appropriate insurance policies are in place to cover their work (whether this is through the organizing authority, MNA, etc.). World Sailing does not provide insurance for World Sailing Race Officials.

그들의 업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적절한 보험이 (조직위원회나 국가협회 등에 의해서)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운영요원의 개인적인 책임이다. 월드세일링은 월드세일링 운영요원들에게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다.

It might be appropriate in some countries for protest committee members to be insured against costs arising out of civil court proceedings. Although action brought by a competitor might fail, the costs of defense might be considerable.

일부 국가에서는, 항의위원회 위원들이 민사재판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소송에서 선수들이 패소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송 방어비용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Under rule 4, each competitor, boat owner and support person agrees to be governed by the racing rules and to accept the penalties imposed or other action taken, subject to appeal and review procedures. Nonetheless, courts in some countries state that they have a greater authority than the racing rules to decide on decisions from a protest committee under rule 69.

규칙 4에 따라, 선수, 보트 소유자 그리고 지원인력은 경기규칙에 의해 통제된다는 것과 상고 및 재심 절차에 따라 부과된 벌칙이나 다른 조치를 받아들인다는 것에 동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의 법원은 항의위원회가 규칙 69에 따라 내린 판결보다 그들이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 G.2.11 Party Fails to Attend

### 당사자의 불참

Rule 69.2(f) states that, if the competitor provides good reasons for being unable to attend the hearing, the protest committee shall reschedule it.

선수가 청문에 참석할 수 없는 합당한 사유를 제시할 경우, 규칙 69.2(f)에 따라 항의위원회는 청문 일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Rule 69.2(f) states that, if the competitor does not provide a good reason for being unable to attend the hearing and does not come to it, the protest committee may conduct it without the competitor present. If the committee proceeds without the competitor, and penalizes the competitor, it shall include in its report under rule 69.2(j), the facts found and the decision and the reasons for it

선수가 청문에 참석할 수 없는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불참할 경우, 69.2(f)에 따라 항의위원회가 당사자 없이 청문을 진행 할 수 있다. 만약 항의위원회가 당사자 없이 청문을 진행하였고, 당사자에게 벌칙을 부과하기로 하였다면, 규칙 69.2(j)에 따른 보고서에 판명된 사

실과 판결 그리고 그 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Under rule 69.2(k), if the protest committee chooses not to conduct the hearing without the competitor present, or if the hearing cannot be scheduled for a time and place when it would be reasonable for the competitor to attend, the protest committee shall collect all available information and, if the allegation seems justified, make a report to the relevant national authorities. If the protest committee is appointed by the World Sailing under rule 89.2(c), it shall send a copy of the report to the World Sailing.

규칙 69.2(k)에 따라 항의위원회가 당사자 없이 청문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거나, 또는 당사자가 참석할 수 있는 합당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청문일정을 잡을 수 없다면, 항의위원회는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한 다음, 혐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국가협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항의위원회가 규칙 89.2(c)에 따라 월드세일링에서 임명된 경우, 보고서의 사본을 월드세일링에 보내야 한다.

Rule 69.2(k) applies also when the protest committee has left the event and a report alleging a breach of rule 69.1(a) is received. The race committee or organizing authority may appoint a new protest committee to proceed under this rule.

규칙 69.2(k)는 항의위원회가 대회를 마치고 떠난 뒤 69.1(a)에 따른 위반 혐의가 접수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경우, 경기위원회나 조직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새로운 항의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다.

## **G.2.12 Case Dismissal 사건 기각**

After a hearing, if it is found that the allegation of misconduct is not proven, the protest committee should make this clear. The news of a rule 69 hearing will have spread throughout the regatta, and it is important that the competitor's name is cleared publicly.

청문을 마친 다음, 부정행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항의위원회는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규칙 69 청문에 대한 소식은 대회 전체에 퍼지곤 하기에, 해당 당사자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명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 **G.2.13 Penalties 벌칙**

A rule 69 hearing does not have to result in the imposition of a penalty if the allegation of misconduct is proven. A warning may suffice after, for example, a minor act of misconduct followed by an apology for the misconduct. A penalty equal to or less than one DNE shall not normally be reported to any national authority (see discussion of rule 69.2(j)(3) below). If a person is excluded from an event or venue it must report the penalty to the national authority. The protest committee may exclude a competitor and their boat, when suitable, from further

participation in an event or series. The maximum penalty would be to disqualify the competitor from the entire regatta, since the protest committee has no power to penalize outside the event over which it has jurisdiction.

규칙 69 청문에서. 부정행위가 입증되었다더라도, 반드시 벌칙이 부과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사소한 부정행위 이후에 그 행위에 대하여 진솔한 사과를 하였다면, 경고를 주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1개 이하의 DNE 벌칙은 일반적으로 국가협회에 보고하지 않는다 (아래 규칙 69.2(j)(3) 관련 내용 참조). 만약 부과된 벌칙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대회 또는 경기수역에서 배제되었다면, 이는 해당 국가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적절할 경우, 항의위원회는 선수와 그 보트가 대회 또는 시리즈에 더 이상 참가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항의위원회는 대회현장 외에는 벌칙을 줄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항의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칙은 해당 대회 전체에 대한 실격 처리이다.

The protest committee may also take any other action within its jurisdiction as provided by the rules. The protest committee must stay within their jurisdiction, using only the rules that govern the event, within the definition rule, and specified in the notice of race or sailing instructions.

또한, 항의위원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권 이내에서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항의위원회는 그들의 관할권 이내에서, 정의의 <규칙>에 명시된 대회를 관장하는 규칙, 그리고 대회공고 또는 범주지시서에 명시된 규칙들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No publication of the outcome should normally be made, other than the usual hearing result on the official notice board (see the World Sailing Misconduct Guidance for suggested wording).

공식 게시판의 일반적인 청문결과 외에, 다른 내용들은 공표하지 않는다 (월드세일링 부정행위 지침에서 제안한 문구 참조).

## **G.2.14 Appealing the Decision**

### **판결에 대한 상고**

The competitor may appeal a decision only if the protest committee was not a properly constituted international jury or a protest committee from which the right of appeal was denied under rule 70.5.

항의위원회가 부칙 N에 따라 제대로 구성된 국제심판단이 아니거나, 규칙 70.5에 따라 상고의 권리가 거부되지 않는 경우에만 상고할 수 있다.

## **G.2.15 Reporting to National Authorities**

### **국가협회에 보고**

A person against whom a finding was made is entitled to a copy of the proceedings to prepare an appeal or his defense before another body that might impose a further penalty, such as his national authority or World Sailing.

판결의 당사자는 국가협회나 월드세일링과 같이 본인에게 추가적인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하여, 또는 상고를 준비하기 위하여 청문절차의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다.

When a penalty less than or equal to one DNE is imposed, no report to any national authority is required.

1개 이하의 DNE 벌칙이 부과되었을 경우, 국가협회에 대한 보고는 필요하지 않다.

When a penalty greater than one DNE is imposed, the case must be reported to the national authority of the person involved, or in specific instances, to World Sailing instead of the national authority. The report should be detailed, since the national authority will rely on it to decide whether to investigate the matter further. It is useful for the protest committee to recommend whether a further penalty is appropriate. Make this report as soon as possible, so important issues are not forgotten and so that the competitor can know whether further sanctions might follow. It is also important for other persons to see that the matter is dealt with promptly. Undue delay in reporting such matters brings the administration of discipline in the sport into disrepute. A copy of the report should be given to the competitor.

1개 초과인 DNE 벌칙이 부과되었을 경우, 해당 사건은 당사자의 국가협회에 보고되거나, 특정한 경우에는 국가협회 대신 월드세일링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협회는 이 사건의 추가적인 조사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이 보고서에 의존할 것이기 때문에, 보고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항의위원회가 추가적인 벌칙이 적절한지 여부를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사자가 추가 제재가 있을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해줌과 동시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중요한 사안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보고서는 가능한 한 빨리 작성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지나친 보고 지연은, 스포츠의 규율관리에 대하여 부정적 평판을 가져온다. 그 보고서의 사본은 당사자에게 주어져야 한다.

Rule 69.2(j)(3) allows the protest committee to report its decision to a national authority in any other case it considers appropriate. This could include a case where the protest committee has imposed a penalty of one DNE or less. However, the protest committee should exercise this power very carefully and explain its reasons in the report which is also sent to the competitor. It would be unusual for a protest committee to make a discretionary report where it has not imposed a penalty that is within its powers. An example would be where one member of a large crew on a keel boat is the person committing misconduct and it would be inappropriate to penalize the boat and the whole crew for the misconduct of one person. There must be a reason for involving the national authority or World Sailing which cannot be addressed by the protest committee at the event. In particular, the protest committee should not make a report without conducting a rule 69 hearing merely because it does not wish to deal with a difficult misconduct issue.

규칙 69.2(j)(3)은 항의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안의 경우, 국가협회에 그 판결을 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1개 이하의 DNE 벌칙을 부과하였을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항의위원회는 이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되며, 당사자에게 보내는 통지서에도 그 이유를 설

명하여야 한다. 항의위원회가 그의 권한에 해당하는 벌칙을 부과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국가협회의 임의 보고를 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예를 들어, 많은 승정원이 있는 킬 보트에서, 한 승정원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해서, 보트와 승정원 전부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다. 대회에서 항의위원회가 내부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국가협회 또는 월드세일링에 보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특히나, 항의위원회는 단지 어려운 부정행위 문제 처리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규칙 69 청문을 개최하지도 않은 채 보고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 **G.2.16 Action by the National Authority**

### **국가협회의 조치**

When the protest committee is required to make a report to the national authority, provide as much information and evidence as is practically possible while events are fresh in the minds of witnesses, to assist another disciplinary body to come to the best decision at a later time. This might include recording the evidence as it is given to the protest committee.

항의위원회가 국가협회에 보고를 해야 할 경우, 추후 다른 징계기관이 최선의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증인들의 머릿속에 해당 사건이 생생하게 남아있을 동안, 최대한 많은 증거와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에는 항의위원회에 주어진 증거를 녹취한 것이 포함될 수 있다.

## H Appendix T Arbitration

### 부칙 T 중재

#### H.1 Introduction

##### 소개

Appendix T Arbitration can eliminate the need for protest hearings by offering a simplified review of the protest between the two parties and an experienced judge. After hearing both parties the judge offers an opinion of how the protest committee is likely to decide the protest. After hearing both parties the judge offers an opinion of how the protest committee is likely to decide the protest. The appendix then offers ways to settle the dispute, allow a boat that broke a rule a lesser penalty than disqualification, and conclude the protest.

부칙 T <중재>에는, 두 당사자들과 경험이 풍부한 중재심판이 함께 항의를 간략하게 검토하여, 항의청문의 필요성을 없앨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중재심판은 두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본 다음, 만약 항의위원회가 이 항의의 청문을 진행한다면 이렇게 판결할 것이라고, 그가 예상하는 견해를 제시한다. 그리고 중재심판이 분쟁을 해결할 방법을 제시한 다음, 당사자들이 이를 수용할 경우, 규칙을 위반한 보트에게 실격보다 가벼운 벌칙 <30% 득점 벌칙>을 받도록 하고, 항의를 종결한다.

Appendix T Arbitration applies when so stated in the notice of race or sailing instructions. It has two parts: the Post-Race Penalty; and the arbitration meetings.

부칙 T <중재>는 대회공고나 범주지시서에 명시 되어 있을 경우에 적용 가능하며; ‘경기 후 벌칙’과 ‘중재회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Post-Race Penalty: A boat may take a post-race penalty for breaking a rule of Part 2 or rule 31 provided the requirements of rule 44.1(b) are met. If a boat decides she has broken a rule, she may choose to accept a 30% scoring penalty. This decision may be made at the end of the race, before or during the arbitration meeting, and up to the start of a protest hearing.

경기-후 벌칙: 보트는 규칙 44.1(b)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 2장의 규칙 또는 규칙 31 위반에 대해서 경기-후 벌칙을 받을 수 있다. 보트가 규칙을 위반했다고 결정한 경우, 그 보트는 <30% 득점 벌칙>을 받겠다고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결정은 경기를 마친 다음, 중재회의 전 또는 중재회의를 하는 도중, 그리고 본격적인 항의 청문이 시작하기 전까지 내릴 수 있다.

Arbitration Meeting: The second part is an arbitration meeting of the protestor and the protestee with the arbitrator, who is an experienced judge. The sailors each describe what happened on the water, and the judge then gives an opinion about the validity of the protest, and which boat, if any, broke a rule.

중재회의: 두 번째는 항의자와 피항의자가 숙련된 심판인 중재자와 함께 중재회의를 하는 것이다. 선수들은 각각 수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심판은 해당 항의가 유효한지, 그렇다면 어떤 보트가 규칙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다.

Regardless of whether a Post-Race Penalty is taken, a protestor may ask to withdraw the protest. Regardless of whether a Post-Race Penalty is taken, a protestor may ask to withdraw the protest. The judge who arbitrated may then act on behalf of the protest committee and in accordance with normal jury policy, to allow the withdrawal.

<경기-후 벌칙>이 부과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항의자는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 심판은 항의위원회를 대신하여, 그리고 보편적 <심판단 방침>에 따라 철회를 승인할 수 있다.

## H.2 The Arbitrator

### 중재자

The judge who will conduct an arbitration meeting should be highly experienced with a good knowledge of the rules. The individual must think and make decisions quickly and have the respect of the parties. He should have a thorough understanding of RRS Appendix T, validity, the rules of Part 2, rule 31, and rule 44.1(b). An excellent and thoughtful judge who needs time to reach a decision may not make the best judge to select to arbitrate, and will usually be more valuable in hearings deciding the complex protests.

중재회의를 담당할 심판은 고도로 숙련되고 규칙에 해박해야 한다. 그는 당사자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 하며, 사건에 대해 빠르게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는 RRS 부칙 T, 항의의 유효성, 제 2장의 규칙, 규칙 31, 그리고 규칙 44.1(b)에 대하여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훌륭하고 사려가 깊지만 판결을 내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심판은 중재를 담당할 심판으로는 적절치 않으며, 오히려 복잡한 사건을 다루는 청문에 더 적합한 경우가 많다.

While it is not stated in the rules, where an international jury has been appointed, judges who conduct arbitration meetings should be members of the protest committee.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제심판이 임명되어 있을 경우, 중재회의를 담당할 심판은 항의위원회의 위원이어야 한다.

If a protest is not withdrawn, the judge who arbitrated may be a member of the protest committee that hears the protest.

항의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중재를 담당했던 심판은 해당 항의를 청문하는 항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 H.3 The Post-Race Penalty

### 경기 후 벌칙

Appendix T must be included as a rule by the notice of race or the sailing instructions to permit the Post-Race Penalty and arbitration meeting.

경기-후 벌칙과 중재회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회공고나 범주지시서에 부칙 T <중재>가 규칙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The Post-Race Penalty system and arbitration meeting work only if the Post-Race Penalty is less than the disqualification that a boat would receive in a subsequent protest hearing, and more severe than any penalty that is available to the boat on the water at the time of the incident.

경기-후 벌칙 시스템과 중재회의는, 경기-후 벌칙이, 중재가 실패하였을 때 열리게 될 청문에서 보트가 받을 실격(DSQ)보다는 작고, 사건 당시 수상에서 보트가 면책받기 위하여 행하여야 했을 <두-바퀴 돌기 벌칙>보다는 클 경우에만 제 역할을 한다.

A severe penalty often results in a competitor refusing to accept arbitration and instead deciding to take a chance on avoiding a DSQ in a hearing. Mathematically, the worse the boat's finishing position in the race, the less advantage taking the Post-Race Penalty provides over a possible disqualification in a hearing. Likewise, a lesser penalty encourages a boat not to do a turns penalty on the water in the hope that the protesting boat will decide to drop her protest.

과중한 벌칙은 선수로 하여금 중재를 거부하고, 청문에서 실격(DSQ)을 피할 기회를 노리게끔 한다. 수리적으로 따져보면, 해당 보트의 순위가 나쁠수록, 청문에서 받게 될 실격(DSQ)과 대비해서 경기-후 벌칙이 주는 이점이 줄어든다. 이와 마찬가지로, 작은 벌칙은 항의하는 보트가 그 항의를 포기하기를 바라면서, 수상에서 '돌기 벌칙'을 이행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The Appendix T Post-Race Penalty is 30% of the score for DNF, rounded to the nearest whole number. The organizing authority may change the penalty by modifying T1(b) in the sailing instructions by changing the percentage, or by providing for a Post-Race Penalty that is a set points penalty.

부칙 T <경기-후 벌칙>은 DNF 점수의 30%이며, 소수점을 반올림한다. 조직위원회는 범주지시서에서 부칙 T1(b)를 수정하여, 백분율 (%)을 변경하거나, 또는 일정 점수 벌칙을 주는 것으로 경기-후 벌칙을 변경할 수 있다.

As with other scoring penalties, there is no change to the finishing order of other boats in the race. Therefore, two boats may receive the same score.

다른 채점 벌칙들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를 제외한 다른 보트들의 피니시 순위는 변경되지 않는다. 따라서, 두 보트가 같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

The Appendix T Post-Race Penalty is available to any boat, when appropriate. A boat may not take a penalty other than retirement if she caused injury or serious damage, or if she has gained a significant advantage from her breach. See rule T1(a) and rule 44.1(b).

합당할 경우 부칙 T <경기-후 벌칙>은 어떤 보트에게든 적용 될 수 있다. 상해 또는 중대한 손상을 초래하였거나, 또는 규칙 위반으로 상당한 이득을 얻었다면, 그 보트는 리타이어하는

것 이외의 다른 벌칙을 받을 수 없다. 규칙 T1(a)와 44.1(b) 참고할 것.

A basic principle under Sportsmanship and the Rules is that when competitors break a rule, they will promptly take a penalty. If the protest committee concludes that it is clearly established that a boat knowingly broke a rule and did not promptly take a penalty, the boat broke rule 2. Since rule 2 is a rule in Part 1, the Post-Race Penalty is not available to her.

스포츠맨십과 규칙의 기본 원칙은 선수가 규칙을 어겼을 경우, 즉시 벌칙을 이행하는 것이다. 보트가 규칙을 위반했다는 것을 인식하였는데도 즉시 벌칙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항의위원회가 결론을 내리면, 그 보트는 규칙 2를 위반한 것이다. 규칙 2는 규칙 <제 1장>에 속한 규칙이기 때문에, 그 보트에게는 경기-후 벌칙을 적용할 수 없다.

Some advantages of the Post-Race Penalty in Appendix T are:

부칙 T에 명시된 경기 후 벌칙의 이점들은:

- A boat may take a penalty instead of retiring (RET) after coming ashore, when she realizes she broke one or more rules of Part 2 or rule 31.

보트가 경기를 마치고 육상으로 돌아온 다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 2장의 규칙 또는 규칙 31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인식하였을 경우, 그 보트는 리타이어(RET)하는 대신 경기-후 벌칙을 받을 수 있다.

- A boat that takes a Post-Race Penalty may not be penalized further unless a protest committee finds that there was injury or serious damage, or she gained a significant advantage from her breach.

경기-후 벌칙을 받은 보트는, 해당 사건에서의 규칙 위반으로 상해 또는 중대한 손상을 초래하였거나, 또는 규칙 위반으로 상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것을 항의위원회가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가 벌칙을 받지 않을 수 있다.

- A boat may take the Post-Race Penalty before, during or after the arbitration meeting, and up until the beginning of a protest hearing involving the incident.

보트는 중재회의의 전, 중, 후 언제든지, 그리고 해당 사건에 대한 청문이 시작될 때까지 경기-후 벌칙을 받을 수 있다.

## H.4 Principles of Arbitration

### 중재의 원칙

Arbitration takes place after a written protest has been delivered, but prior to the protest hearing.

The judge's role at an arbitration meeting is to give an opinion as to what the protest committee is likely to decide. Even though the process is informal, and the boats are not bound by the opinion of the judge, all the safeguards built into the rules of Part 5 for procedures for protest hearings and decisions remain in place.

Even if a party decides to take a Post-Race Penalty, the protest remains and rule 63.1 requires that it must be heard by the protest committee. If the protestor requests to withdraw the protest, the judge who arbitrated may then act on behalf of the protest committee and, in accordance with normal jury policy, allow the withdrawal.

중재는 항의서가 접수되고 난 다음, 청문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진다. 중재회의에서 심판의 역할은 예상되는 항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비록 그 과정이 비공식적이고 보트들이 심판의 의견에 얽매이지 않더라도 <제 5장>의 규칙에 명시된 항의 청문 절차와 판결에 대한 안전장치는 모두 그대로 유지된다. 그리고 당사자가 경기-후 벌칙을 받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항의는 그대로 남아있으며, 규칙 63.1에 따라 반드시 항의위원회 청문을 받아야 한다. 항의자가 항의의 철회를 요청할 경우, 해당 사건을 중재한 심판은 항의위원회를 대신하여, 그리고 보편적인 심판 방침에 따라, 철회를 허용할 수 있다.

Arbitration is appropriate when:

중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절하다:

- rule 44.1(b) does not apply: No boat caused injury or serious damage in the incident, and no boat gained a significant advantage in the race or series by her breach, even if she took a penalty.

규칙 44.1(b)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사건으로 상해 또는 중대한 손상을 유발하지 않았고, 보트가 벌칙을 이행하였더라도, 그 규칙위반으로 해당 경기 또는 시리즈에서 상당한 이득을 얻지 않은 경우. 규칙 44.1(b)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the incident is limited to the rules of Part 2 or rule 31. If it becomes clear that other rules are applicable or another boat may be involved, the judge will close the meeting and send the protest to the protest committee;

중재를 할 수 있는 사건은 <제 2장>의 규칙 또는 규칙 31에 국한된다. <제 2장>의 규칙 또는 규칙 31이 아닌 다른 규칙이 적용되거나 또는 다른 보트가 연루된 것이 명백할 경우, 중재심판은 중재회의를 종료하고 항의위원회로 사건을 이관한다;

- the incident involves only two boats. A protest involving three or more boats may be too complex to work through in arbitration of less than 15 minutes.

두 척의 보트만 관련된 사건. 세 척 이상의 보트가 연루된 항의는 15분 이내에 중재하기에는 너무 복잡할 수 있다.

- The arbitration meeting proceeds with the understanding that the protestor might not ask to withdraw the protest, and so it may still be heard by the protest committee. The judge never enters a discussion on the applicable rules or interpretation of a rule or answers questions regarding any conclusions before the protest is withdrawn.

중재회의는 항의자가 항의의 철회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며, 여전히 항의위원회가 청문할 수 있다. 중재심판은 항의가 철회되기 전에는 절대 해당 규칙

또는 규칙의 해석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거나 또는 결론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다.

## H.5 The Procedures

### 절차

When a protest is delivered to the race office the protestor is asked to stand by while a judge reviews the protest to determine if the protest is suitable for arbitration.

항의접수처에 항의서가 접수되면, 심판이 해당 항의가 중재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동안, 항의자는 대기하라는 요청을 받는다.

If the protest is suitable and the protestor is comfortable, the judge may ask the protestor to find the other party and to come to the race office for the arbitration meeting. The hearing should be scheduled and the arbitration meeting is held when the parties arrive. The scheduling of hearings can anticipate that some protests will be withdrawn during arbitration prior to a hearing. At large events, have more than one judge ready to arbitrate protests.

항의가 중재하기에 적합하고 항의자가 동의할 경우, 심판은 항의자에게 중재회의를 할 수 있도록 피항의자를 찾아서 항의청문실로 데리고 오라고 요청할 수 있다. 청문일정을 잡아 공식 게시판에 공고하는 한편, 당사자들이 도착하면 중재회의를 시작한다. 청문회 일정조율 시, 본격적인 청문에 앞서 열리게 될 중재 과정에서 일부 항의가 철회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있다. 큰 대회에서는 한 명 이상의 중재심판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If one of the parties does not attend, or chooses not to attend, the arbitration meeting does not proceed, and the protest is scheduled for a hearing. The protestee is given a copy of the protest and time to prepare before the arbitration meeting begins.

한 명의 당사자라도 참석하지 않거나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중재회의는 진행되지 않으며, 항의는 청문 일정대로 진행된다. 중재회의가 시작되기 전, 피항의자에게 항의서의 사본과 준비할 시간이 주어진다.

Hold the arbitration meeting in a quiet location, away from other competitors and observers. Standing, rather than sitting around a table, usually shortens the duration of the meeting. Only the parties to the protest give testimony. Witnesses are not allowed. Evidence given during the arbitration meeting should not be overheard by any potential witnesses if it goes to a hearing. A judge trainee or judge assessor may be allowed to observe the meeting if the parties do not object. A judge trainee or judge assessor may be allowed to observe the meeting if the parties do not object.

중재회의는 다른 선수와 옹저버로부터 멀리 떨어진 조용한 공간에서 개최한다. 앉아서 진행하기 보다 일어서서 진행하면 일반적으로 회의의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오직 항의의 당사자들만이 증언할 수 있으며, 증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재가 실패하여, 이 사건이 청문



으로 넘어갈 경우를 대비하여, 어떤 잠재적 증인도 중재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들의 증언을 엿듣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중재회의의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수습 심판 또는 심판 평가관이 중재회의를 참관하게 할 수 있다.

The rules do not address whether observers are allowed at an arbitration meeting. The rules do not address whether observers are allowed at an arbitration meeting. They are usually discouraged. If they are permitted, e.g., a parent at a youth event, then they must acknowledge that they must only observe. Also, the intent of rule 63.3 is clear and an observer at an arbitration meeting may not be a witness at a subsequent protest hearing.

중재회의에서 옵저버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규칙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옵저버는 보통 권장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청소년 대회에서 부모에게 중재회의의 참관을 허락할 경우, 그들에게 단지 참관만 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규칙 63.3은 중재회의의 옵저버가 청문에서 증인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The judge should have available the notice of race, the sailing instructions and any amendments to them, a current rule book, boat models and a watch to keep track of the time. When a boat accepts a Post-Race Penalty, it may be recorded on a form or on the back side of the original protest form and signed by the representative. The back side of the protest form also has a tick box for the protestor to request to withdraw the protest.

심판은 대회공고, 범주지시서와 그에 대한 변경 내용, 최신 규칙서, 보트 모델 그리고 시간을 확인할 시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보트가 경기-후 벌칙을 수용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중재에 사용하는 별도의 양식 또는 원본 항의서의 뒷면에 기록할 수 있으며, 대표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항의서 뒷면에는 항의자가 항의의 철회를 요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체크 박스도 있다.

The first step is to confirm that the judge has no conflict of interest.

첫 단계는, 심판에게 이해상충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The judge explains to the parties how the arbitration meeting is conducted, that it should take about 15 minutes, and that the parties will be deciding the outcome of the meeting.

심판은 중재회의의 절차와 15분 정도의 소요시간, 그리고 당사자들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The next step is to determine if there was any damage or injury as a result of the incident. If it is possible that rule 44.1(b) applies, then rules T1(a) and T2 do not permit the boat to take a Post-Race Penalty. In that case, the arbitration meeting would not be held, and if it was in progress, it would be closed.

다음 단계는, 해당 사건으로 인한 손상 또는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규칙 44.1(b)가 적용될 수 있다면, 보트는 규칙 T1(a)와 T2에 따른 경기-후 벌칙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중재회의는 열리지 않으며, 회의가 진행 중이었다면 종료된다.

During the arbitration meeting, the judge might find that the protest is not suitable

for arbitration. It may involve a rule not suited to arbitration, or the Post-Race Penalty is not appropriate. The arbitration meeting is then closed, and the protest, if not withdrawn, proceeds to a hearing.

심판은 중재회의를 진행하는 도중, 해당 항의가 중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중재에 적합하지 않은 규칙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경기-후 벌칙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중재회의는 종료되며, 철회되지 않을 경우, 청문으로 넘어간다.

The next step is to give an opinion on the validity of the protest. This includes the possibility that the protest committee will find the protest is invalid. For example, if the protest form and the protestor's testimony clearly indicate that the protestor did not comply with rule 61.1(a), the judge will advise the parties that the protest committee will likely find the protest invalid. The protestor then may request to withdraw the protest or proceed to the protest committee for a hearing. In either case, the arbitration meeting ends.

그 다음 단계는, 항의의 유효성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항의위원회가 해당 항의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항의서와 항의자의 진술이 규칙 61.1(a)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면, 심판은 당사자들에게 항의위원회가 해당 항의를 무효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그 내용을 들은 다음, 항의자는 항의 철회를 요청하거나 항의위원회의 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데, 두 경우 모두, 중재회의는 종료된다.

If the protest is clearly valid or clearly invalid after the protestor's initial statement, then the judge's task of giving an opinion on validity is easy. However, it is much more common that the protest is neither clearly valid nor clearly invalid. In such cases, consider:

항의자의 최초 진술 이후, 항의가 명백하게 유효하거나 무효할 경우, 유효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 하여야 하는 심판의 업무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항의의 유효, 무효에 대한 문제는 명백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이럴 경우, 아래 사항을 고려해 본다.

- The task of determining validity during an arbitration meeting cannot be an exhaustive investigation. No witnesses can be called, and it is unlikely that extensive questioning will resolve validity.

중재회의 중 유효성을 판단하는 업무는 완전한 조사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증인을 부를 수도 없고, 당사자에 대한 다각적인 추가 질문이 유효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이다.

- Due process is not at risk because neither party is bound by the opinion of the judge who arbitrates.

두 당사자 모두 중재심판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절차를 따르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 A statement by the protestor that a hail was made, and a flag was displayed, coupled with a statement that the protestee did not hear the hail and did not see the flag, does not mean that either party is not telling the truth.

항의자가 소리지르고 빨간기를 올렸었다는 진술과 피항의자가 이를 듣거나 보지 못했다는

(서로 상충되는) 진술이, 어느 한 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The judge will decide, based on the balance of probabilities, if the protest meets the validity rules. When the judge is in doubt that the protest is suitable for arbitration, it proceeds to a hearing.

심판은 증거의 우월성에 근거하여, 해당 항의가 규칙에서 요구하는 유효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해당 사건이 중재에 적합한지 의구심이 든다면, 중재를 종료하고, 청문으로 넘겨야 한다.

If the judge's opinion is that the protest is valid and if rule 44.1(b) does not apply, then the arbitration meeting proceeds. In this step, the judge takes each party's evidence, in turn, using model boats. The judge asks any necessary questions but keeps tight control of the conversation.

중재심판이 판단하기에 해당 항의가 유효하며 규칙 44.1(b)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중재회의를 진행한다. 이 단계에서 심판은 모델 보트들을 사용하여 당사자들의 증거를 수집한다. 심판은 필요한 질문은 하지만, 대화의 흐름을 확실히 주도해야 한다.

The judge will offer one of these opinions as to what the protest committee is likely to decide:

심판은 항의위원회가 다음 중 하나와 같이 판결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 The protest is invalid.  
항의는 무효이다.
- One or both boats broke one or more rules. The judge applies the principles of exoneration to a boat that has been compelled by the other boat to break a rule.  
보트(들)는 하나 이상의 규칙을 위반했다. 심판은 다른 보트의 규칙위반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규칙을 위반하게 된 보트에 대하여 면책의 원칙을 적용한다.
- No boat would be penalized for breaking a rule.  
어느 보트도 규칙위반으로 벌칙받지 않는다.

If the meeting is not closed, Appendix T requires that the judge must give an opinion as to what the protest committee would be likely to decide. Stating that, 'The situation is too complicated,' is not an option.

회의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 심판은 부칙 T에 따라 항의위원회가 내릴만한 판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상황이 너무 복잡하다' 라고 심판이 말하는 것은 의견제시가 아니다.

A good way for the judge to give his opinion is by saying 'If this goes to a protest hearing, the protest committee will likely decide . . .'

심판이 제시하는 의견으로는 '이 사건이 청문으로 넘어갈 경우, 항의위원회는 아마 ○○○ 라고 판결할 것이다'와 같은 것이다.

After hearing the opinion of the judge, a party to the protest may decide to take a Post-Race Penalty at any time prior to the start of hearing.

중재심판의 의견을 들은 다음, 당사자는 청문이 시작되기 전 언제든지 경기-후 벌칙을 받겠다고 결정할 수 있다.

A party that has been given the opinion that they are likely to have broken a rule will sometimes consult with their coach or others after the arbitration meeting has ended and will often return to take a Post-Race Penalty before the start of a protest hearing. Remember that a boat may accept a Post-Race Penalty up to the start of the protest hearing.

중재회의가 끝날 때 중재심판으로부터, 규칙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달받은 당사자가 그들의 코치 또는 동료 등과 협의하여 항의청문이 시작되기 전에 경기-후 벌칙을 받기 위해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보트는 항의청문이 시작되기 전까지 경기-후 벌칙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Also, regardless of whether a Post-Race penalty is taken, a protestor may ask to withdraw the protest and the judge who arbitrated may allow the withdrawal in accordance with normal jury policy for allowing the withdrawal.

또한, <경기-후 벌칙>을 받아들이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항의자는 항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중재심판은 항의의 철회를 허용하는 보편적인 <심판단 방침>에 따라 철회를 허용할 수 있다.

Once the protest is withdrawn, the judge may discuss any aspect of the protested incident with the parties, if time allows. If time is limited, arrange to meet the parties later.

항의가 철회된 다음, 시간이 허락한다면, 심판은 당사자들과 해당 사건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다. 당장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당사자들과 나중에 약속을 잡는다.

If the protest is not withdrawn, it must be heard by the protest committee.

항의가 철회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건은 항의위원회에서 청문되어야 한다.

Sometimes a protestor may choose not to withdraw the protest, on the misunderstanding that the protestee would be scored DSQ in the protest hearing. The judge should explain that if a boat has taken an applicable penalty, such as the Post-Race Penalty, then rule 64.2(a) applies. Then the boat may not be penalized further unless the protest committee finds that the Post-Race Penalty was not applicable, normally because rule 44.1(b), or rule 2 applied.

때때로 항의자는 중재가 실패하였을 경우에 열릴 항의 청문에서, 피항의자가 DSQ를 받게 될 것이라는 착각으로 인하여, 항의를 철회하지 않기도 한다. 중재심판은 보트가 경기-후 벌칙과 같은 적절한 벌칙을 받았을 경우, 규칙 64.2(a)가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규칙 44.1(b) 또는 규칙 2가 적용되기 때문에, 항의위원회가 경기-후 벌칙 적용 불가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후 벌칙을 받은 보트는 추가 벌칙을 받지 않을 수 있다.

If the protest goes to a hearing, the judge who arbitrated may participate as a member of the hearing panel. If so, he must be careful not to discuss any aspects of the arbitration meeting with any members of the protest committee before or during the hearing.

중재가 실패하여 청문으로 넘어간 경우, 중재심판은 해당 청문의 패널위원으로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심판은 청문 전 또는 청문 중, 항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중재회의에서 얻은 정보에 대하여 거론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Parties to the hearing may include statements and evidence that were presented in the arbitration meeting. Any discrepancies from information presented in the protest hearing may be questioned by parties and the protest committee.

청문의 당사자들은 중재회의에서 제시하였던 진술과 증거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중재회의에서 제시되었던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와 항의위원회는 질문할 수 있다.

## **H.6 No Appeal**

### **상고 불가**

The opinion of the judge and the decisions of the parties made at the arbitration meeting are irreversible. They are not subject to reopening or appeal. If the protest is withdrawn, there is no decision of the protest committee to appeal.

중재회의에서 내린 심판의 의견과 당사자들이 내린 결정은 돌이킬 수 없다. 이는 청문의 재개나 상고의 대상이 아니다. 항의가 철회되었다면, 항의위원회의 판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역시 상고의 대상이 아니다.

# I On the Water Judging Including Rule 42 and Appendix P

## 규칙 42와 부칙 P를 포함한 수상에서의 판결

### I.1 Introduction

#### 머리말

This section focuses on judges' activities when Appendix P is in effect. The first section applies whenever the judges are on the water observing racing. The remainder of the section focuses on judging rule 42 when Appendix P applies.

이 절은 부칙 P가 발효 중일 때, 심판의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첫 번째 절은 수상에서 심판들이 경기를 관찰할 때마다 적용된다. 이 절의 나머지 부분은, 부칙 P가 적용될 때, 규칙 42에 대한 심판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1.2 Monitoring Rules Compliance - General

#### 규칙준수 감시하기 - 일반

The judges' presence on the water in easily identified jury boats leads to better rules compliance and a better quality of racing. Officiating through proximity, by staying close, leads to competitors being less likely to break the rules. When judges are watching them, they could be penalized or protested. The majority of competitors, who normally respect the rules, feel less pressure to break rule 42 in order to keep up with those who are breaking the rules. Competitors are more likely to comply with a rule, or take their penalty when they infringe a rule, or to protest, if they know the judges may have seen the incident.

쉽게 식별되는 심판 보트를 타고 심판들이 수상에 있는 것은, 선수들로 하여금 규칙을 준수하게 만들며, 따라서 질 좋은 경기로 이어진다. 심판이 가까이서 지켜봄으로써, 선수들이 규칙 위반을 덜 하도록 만든다. 심판이 선수를 지켜보고 있을 때, 선수는 벌칙 받거나 항의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규칙을 평소에 잘 지키던 대다수의 선수들은, 규칙을 위반하는 선수들을 따라잡기 위하여 규칙 42를 위반해야 하는지에 대한 압박감을 덜 느낀다. 심판이 그 사건을 보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선수들은 규칙을 준수하거나, 또는 규칙을 위반했을 때 벌칙을 이행하거나, 또는 항의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In the absence of any other priority, judges should be in positions locations where incidents happen often. Here, they can be reliable independent witnesses in the event of a protest hearing.

상황이 허락한다면, 심판은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할 경우, 심판은 항의 청문회에서 믿을만한 독립적인 증인이 될 수 있다.

The Basic Principle of our sport is that the competitors, not judges, have the lead responsibility for enforcing the rules on themselves and their fellow competitors. Therefore, not every incident observed by the judges on the water leads to a protest. World Sailing Jury Policy advises that judges will not usually protest for a

breach of a rule of Part 2 unless they observe an apparent breach of good sportsmanship (RRS 2).

세일링 스포츠의 기본 원칙은, 심판이 아닌 선수 자신과 동료 선수들이 규칙을 지키는 것에 대해 주도적인 책임을 갖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이 수상에서 목격한 모든 사건이 항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월드세일링 심판 방침은, 심판들이 명백하게 스포츠맨십 (규칙 2)의 위반을 목격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 2장>의 규칙 위반에 대하여 항의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Judges should also record details of any error or improper action by the race committee that may become the subject of a request for redress.

심판은 구제요청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경기위원회의 실책 또는 부적절한 조치에 대한 세부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I.3 Liaison with Race Committee**

#### **경기위원회와의 연락**

Many classes have special rules related to wind speed that switch on and off some of the prohibited or permitted actions under rule 42. If the wind speed exceeds or falls below a specified limit, the race committee may signal to permit or to prohibit pumping, rocking and ooching at a mark, by displaying flag Oscar or flag Romeo. For these classes, it is essential that the race committee and the judges have a proactive and reliable means of communicating about these signals to ensure that judges apply rule 42 correctly.

많은 클래스들은 규칙 42조의 금지된 동작에 대하여, 일정 풍속을 넘을 경우 이를 허용하고, 일정 풍속을 넘지 않을 경우 이를 금지하는 것과 관련된 특별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 풍속이 규정치를 초과하거나 그 이하로 떨어질 경우, 경기위원회는 “O기” 또는 “R기”를 올리는 것으로 마크에서 펌핑, 로킹 및 우칭을 허용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러한 클래스들에서 심판이 규칙 42를 제대로 적용하려면, 경기위원회와 심판이 그 신호들에 대해 통신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If radio communications are difficult, the judges should try to round the marks with the lead competitors to witness any signals that might change the application of the class rules.

무선 통신이 어려울 경우, 심판은, 클래스규칙에 따라 규칙 42에 대한 적용이 바뀔 수도 있는 깃발신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선두 선수들과 함께 마크를 돌리고 노력하여야 한다.

### **I.4 Equipment Required**

#### **준비해야 할 장비**

Prior to the event, the chairman of the protest committee should arrange suitable boats for judging rule 42 on the water. Suitable boats are those that are safe for the judges to use in the prevailing conditions and will not affect the fairness of competition in the racing area. If suitable boats that are also seaworthy for the

conditions cannot be provided, then the judges should not attempt to judge rule 42 on the water.

대회에 앞서, 항의위원회 위원장은 수상에서 규칙 42를 판결하는데 적합한 보트를 섭외하여야 한다. 적합한 보트란, 현 상황에서 심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경기수역에서 경쟁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트를 말한다. 해당 수역에 맞는 적절한 보트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심판은 수상에서 규칙 42를 판결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The jury boats must be suitable for the type of boats they are judging. They must be maneuverable, hard-bottom, and of a speed allowing the judges to follow the boats. The boats must accommodate two judges. Additionally, the boats should optimally have a design that minimizes their wind shadow and wake, since the judges will be maneuvering in close proximity to the competitors. The Rigid Inflatable Boat (RIB) is commonly used for this purpose.

심판 보트는 심판이 판결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종류의 것이어야 한다. 심판 보트는 기동성이 뛰어나고, 바닥이 단단해야 하며, 심판이 보트를 따라갈 수 있는 속도를 가져야 하고, 두 명의 심판을 태울 수 있어야 한다. 게다가, 심판은 선수들과 가까이에서 보트를 조정할 것이기 때문에, 바람을 가로막거나 파도를 일으키는 것을 최소화하는 디자인으로 설계된 보트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Rigid Inflatable Boat (RIB)가 사용된다.

It is preferable that the judges drive the boats themselves, without additional persons on board. The chairman of the protest committee would make this arrangement with the organizing authority prior to the event, especially when judges will use loaned boats.

심판 보트에는 추가적인 인원을 태우지 않고, 심판들만 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심판들이 대여받은 보트를 사용하게 될 경우,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회에 앞서 조직위원회와 이 문제에 대하여 협의할 것이다.

The jury boats should be clearly identified to avoid confusion with spectator and boats and support boats. Equipping the boats with two-way radios will facilitate communication between the judges and with the race committee.

심판 보트는 관람정과 일반 보트 그리고 지원 보트들과의 혼선이 없도록 명확히 식별 가능하여야 한다. 양방향 무전기를 심판 보트에 준비한다면, 심판과 경기위원회 간의 의사소통이 용이해질 것이다.

When going afloat, judges should have, at a minimum, wet notes, a voice recorder, sailing instructions, class rules relevant to rule 42, and the Interpretations of rule 42. When judging rule 42 under Appendix P, the judges must have a yellow flag and whistle for signaling penalties to competitors.

수상에 나갈 경우, 심판은 최소한, 젖어도 되는 메모장, 음성녹음기, 범주지시서, 규칙 42와 관련된 해당 클래스규칙, 그리고 규칙 42 해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부칙 P에 따라 규칙 42를 즉결판결하여야 할 경우, 심판은 선수에게 벌칙을 신호하기 위하여 노란기와 호각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 I.5 Appendix P – Special Procedures for Rule42



## 부칙 P - 규칙 42를 위한 특별 절차

Appendix P provides procedures for penalizing and penalties for breaking rule 42 on the water. This system evolved when it became clear that for Olympic class and other centerboard class events, the self-policing of rule 42 did not work and on-the-water judging with immediate penalties for infringements was needed. It made its debut in Olympic competition in 1992.

부칙 P는 수상에서 규칙 42 위반에 대한 벌칙 및 벌칙주기 절차를 제공한다. 이 시스템은 올림픽 클래스와 기타 센터보드 클래스 대회에서, 자율적으로 규칙 42가 지켜지지 않고, 규칙 42 위반에 대하여 수상에서 즉각적인 벌칙주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점진적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벌칙주기는 1992년 올림픽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The on-the-water judging of rule 42 under Appendix P is now fully developed. It is accepted by competitors and coaches who now expect judges to be on the water, to discourage infringements and to act on behalf of the other competitors when infringements are observed.

부칙 P에 따른 규칙 42에 대한 수상에서의 판결은 이제 완전히 발전되었다. 선수와 코치들도 심판이 수상에서 규칙위반을 억제하고, 규칙 위반을 목격하였을 때 다른 선수들을 대신하여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

When judges accept an appointment to an event with judging rule 42 under Appendix P, they must be willing to enforce the existing rules and interpretations to the best of their ability. It is far better to have no judge present on the water than to have a judge empowered to enforce the kinetics rule who observes infractions and does nothing. Judges who ignore breaches lose the respect of competitors and coaches. Judges may have diverse opinions on rule 42 and how it is judged on the water. However, they must accept the rule as written and the World Sailing interpretations of rule 42. If they disagree with a rule, they may follow the World Sailing's documented procedure for submitting proposals to change a rule.

심판들은 부칙 P에 따라 규칙 42에 대한 즉결판결을 해야 하는 대회의 심판 임명을 수락하였을 경우, 기존의 규칙 42와 월드세일링에서 출판한 규칙 42에 대한 해석을 숙지한 다음, 최선을 다하여 이를 집행할 용의가 있어야 한다. 수상에서 부칙 P에 따른 즉결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심판이 규칙 42의 위반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심판은 수상에 없는 것이 더 낫다. 또한, 규칙 42 위반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심판은 선수와 코치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한다. 심판은 규칙 42와 수상에서 어떤 경우에 규칙 42의 위반으로 벌칙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심판은 규칙서에 있는 규칙 42와 규칙 42에 대한 월드세일링의 해설서를 따라야만 한다. 만약 심판이 규칙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규칙 변경을 위한 제안서를 월드세일링에 제출할 수 있다.

### I.6 The Competitor Briefing

#### 선수에 대한 브리핑

At youth events, remind competitors that judges will be monitoring rule 42 in the racing area and that they will take action if they see any of their competitors clearly breaching rule 42.

청소년 대회에서, 심판들이 경기수역에서 규칙 42를 잘 지키는지 관찰할 것이며, 규칙 42를 명백히 위반한 선수를 발견한다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선수들에게 상기시킨다.

It is important to convey that the judges are on the water not to penalize them. They are on the water on their behalf 'as their friend' to penalize any other competitors that are infringing. Conveying the message in this way to parents who attend the briefings tells them that judges are the friends and not the enemies of their sailors.

선수에게 벌칙을 주기 위해서 심판이 수상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심판은 규칙을 준수하는 선수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규칙을 위반하는 다른 선수들에게 벌칙을 주기 위하여 수상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브리핑에 참석한 부모들에게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심판이 선수의 적이 아니라 친구라는 것을 말해준다.

Remind competitors that, even though there are judges on the water, they still may protest a boat for a breach of rule 42.

비록 심판이 수상에 있더라도, 선수들은 여전히 규칙 42를 위반한 보트를 (선수 자신이) 항의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 **I.7 Rule 42 - Propulsion**

### **규칙 42 - 추진**

Rule 42 includes basic rule 42.1, prohibited actions in rule 42.2 and exceptions in rule 42.3.

규칙 42는 규칙 42.1 <기본 규칙>, 규칙 42.2 <금지된 동작>과 규칙 42.3 <예외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World Sailing publishes interpretations of rule 42 and recognizes them as authoritative interpretations and explanations of the rule. They are reviewed and updated from time to time. These interpretations guide competitors on how to sail their boats and guide judges on how to judge rule 42 on the water. They are available on the World Sailing Website at:

<https://www.sailing.org/raceofficials/rule42/index.php>

월드세일링은 <규칙 42에 대한 해석>을 출판하고, 이를 규칙 42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과 설명으로 인정하며, 월드세일링은 이를 수시로 검토하고 보완한다. 이 해석은 선수들이 어떻게 범주해야 하고, 심판들이 수상에서 규칙 42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를 알려준다. 이 해석은 월드세일링 웹사이트에 있다.

<https://www.sailing.org/raceofficials/rule42/index.php>

Some classes have changed rule 42 in their class rules and that will affect judging on the water.

일부 클래스들은 해당 클래스규칙에서 규칙 42를 변경하였고, 이는 수상에서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The goal of enforcing rule 42 compliance on the water is to make the competition fair for all competitors and protect the sailors who are sailing within the rule. A judge must make consistent decisions. The only way to be consistent is to be totally objective. If someone is breaking the rule you give a penalty. It is also important that the judging team is consistent in their decisions. This requires continuing dialog among the judges about their observations. This also requires judges to arrive at an event prepared to judge on the first day the same as all other days in the event. There is no warm-up day.

수상에서 규칙 42 준수를 강제하는 목적은 모든 선수가 공정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규칙을 지키면서 범주하는 선수를 보호하는 것이다. 심판은 일관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일관성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완전히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누구라도 규칙 42를 위반하면 벌칙을 준다. 전체 심판단의 판단이 모두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점 또한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규칙 42의 관점에 대한 심판들 사이의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또한 심판들은 대회를 철저히 준비하고, 대회 기간 중 내내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대회 기간 중 워밍업하는 날은 없으며, 오직 실전만이 있을 뿐이다.

A high level of consistency in judging rule 42 is expected within each class, and across classes at multi-class regattas. With two judges aboard each judge boat, consistency can be achieved by having one judge on each judge boat staying with the class throughout the regatta and the other judge on each boat rotating through the classes on different days. This is now normal practice for judge rotation at the Olympics and at World Sailing events. This method works well for judges, as some prefer to stay with one class while others do not.

여러 클래스가 함께하는 대회에서는, 개별 클래스 내에서 그리고 각 클래스 사이에서, 규칙 42 판결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일관성이 요구된다. 각 심판 보트에 두 명의 심판이 탑승하게 되는데, 그중 한 명의 심판은 대회 기간 내내 하나의 클래스만 맡아서 심판을 하고, 다른 한 명의 심판은 다른 날에 교대로 다른 클래스 심판을 맡음으로써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올림픽과 큰 국제대회에서 심판 로테이션을 하는 일반적인 관행이다. 심판들 중에 몇 명은 특정 클래스를 선호하고, 다른 심판들은 그렇지 않을 때, 이 방법이 효과적이다.

Specific techniques used by each class are described in the papers on the most common breaches for that class. The papers have been translated into several languages. They are available on the World Sailing Website at:

<https://www.sailing.org/raceofficials/rule42/index.php>

각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특정 기술은, 해당 클래스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규칙 42 위반에 대

한 문서에 설명되어 있다. 그 문서들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있으며, 이는 월드세일링 웹사이트에 있다:

<https://www.sailing.org/raceofficials/rule42/index.php>

## I.8 Deciding Whether to Penalize

### 처벌 여부 결정

Before the first race, the judges should discuss the most common breaches that occur in specific classes, and when they should penalize a boat. They should also discuss trends and issues they have witnessed in recent events. During the event, the judges should regularly review penalties given and unusual body actions they see. These discussions should not identify individual competitors.

첫 번째 경기에 앞서, 심판은 특정 클래스에서 발생하는 가장 일반적인 규칙 42 위반에 대한 것과, 심판이 언제 보트에게 벌칙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여야 한다. 또한 심판은 최근 참가했던 대회에서 목격한 동향과 쟁점에 대해 논의하여야 한다. 대회 기간 중, 심판은 주어진 벌칙과 심판이 목격한 선수들의 특이한 몸동작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 특정 선수를 지정하여 논의해서는 안 된다.

Judges should give the benefit of the doubt to the competitor and penalize only when they are certain of the infraction. However, once they are convinced, they must act to protect the competitor who is sailing fairly.

RRS 부칙 P에 따라 즉결판결을 실행할 때, 심판은 규칙 42에 대하여 선수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그 위반이 확실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벌칙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심판이 규칙 42의 위반이라고 확신하는 경우에는, 규칙을 지키며 경기하는 선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단호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Judges should not allow individual classes a level of prohibited actions just because all boats seem to be breaching the rules a similar amount. Judges must remain objective and penalize boats that infringe the rules.

심판은 모든 보트가 비슷한 수준으로 규칙을 위반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각 클래스에 달리 적용되는 금지된 동작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심판들은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규칙을 위반하는 보트에게 벌칙을 주어야 한다

Judges should penalize a boat for a breach of rule 42 only when they are sure they have observed a breach and they are able to explain it to the competitor, using the words of the rule and the World Sailing interpretations. Impartiality and objectivity in judging are crucial. A second, third or subsequent penalty against a boat should be judged exactly the same as the first.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judges should rely on what they see on the water each day and how the kinetics fit within the World Sailing interpretations of rule 42. They should not focus on event results or yellow flag penalty counts.

심판은 규칙 위반을 확실하게 목격하였고, 선수들에게 규칙 및 월드세일링의 해석에서 사용하

는 용어를 사용하여 규칙 위반을 설명할 수 있을 때에만, 규칙 42를 위반한 보트에게 벌칙을 주어야 한다. 즉결판결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매우 중요하다. 보트에 대한 두 번째, 세 번째 또는 그 이후의 벌칙은 첫 번째와 정확히 동일하게 즉결판결하여야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심판은 매일 수상에서 무엇을 보았고, 그 몸동작이 월드세일링의 규칙42 해석에 어떻게 들어 맞는지에 의존하여야 한다. 심판은 대회에서의 성적이나 노란기 벌칙의 개수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

One of the first indications that a competitor might be breaking rule 42 is that one boat looks different from the others in the movement of the boat, rig or sails, or the body of the crew. Judges have to observe both the actions and the effects of those actions before they can conclude that a competitor has broken rule 42.

선수가 규칙 42를 위반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징후 중 하나는 보트, 리그, 세일 또는 승정원 몸통의 움직임이 다른 보트와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다. 심판은 선수가 규칙 42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해당 행동과 그 행동으로 인한 영향을 모두 관찰하여야 한다.

Judges will make decisions that are more objective and consistent if they go through the following process before deciding to penalize:

벌칙을 주기 전에 심판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면, 보다 객관적이고 일관된 판결을 할 수 있다.

- Be in the right position to observe the possible breach;  
규칙 위반을 관찰할 수 있는 올바른 위치에 있는가?;
- Verbalize what they see;  
심판이 본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가?;
- Connect the competitor's movement to the effect on the boat or sails;  
선수의 움직임이 보트나 세일에 미치는 영향과 연관이 있는가?;
- Decide whether that movement is a prohibited action.  
그러한 보트나 세일의 움직임이 금지된 동작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

Some of the questions that judges should ask themselves and each other are:  
심판이 스스로 그리고 서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Possible Pumping 펌핑의 가능성

- Do surfing, foiling or planing conditions exist?  
서핑, 포일링 또는 플레이닝 조건이 존재하는가?
- Are the crew pumping the sail(s) while surfing, foiling or planing?  
승정원이 서핑, 포일링 또는 플레이닝을 하는 동안 세일을 펌핑하고 있는가?
- Could the trim and release be a response to conditions?  
세일을 당겼다 늦추었다 하는 동작이 상황에 따른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가?
- Is the repeated trim and release fanning the sail?  
반복적으로 세일을 당겼다 늦추었다 하는 동작이 세일에 바람을 일으키는가?

- Does negative pumping cause the flicking leach? (Permitted by Pump 4)  
인위적으로 펌핑을 하지 않았는데, 리치의 펄럭임 (flick)이 생겼는가? (Pump 4에 의하여 허용됨)  
※ Pump 4 : A flick of a sail resulting from the sudden stopping of an eased sheet is permitted.  
Pump 4 : 시트를 풀었다가 갑자기 멈추면서 생기는 세일의 펄럭임 (flick)은 허용된다.
- Can the flicking leach be connected to body movement or is it caused by other factors?  
리치의 펄럭임이 몸의 움직임과 연관되어 있는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가?

#### Possible rocking

##### 로킹의 가능성

- Is the competitor causing the boat to roll?  
선수가 인위적으로 보트의 롤링을 일으키고 있는가?
- Is the competitor accentuating background rolling?  
선수가 인위적으로 백그라운드 롤링을 가속하고 있는가?
- Is competitor-induced rolling helping to steer the boat?  
선수가 유발한 롤링이 보트 조정에 도움이 되는가?
- Is the amount of rolling consistent with the amount the boat turns?  
롤링의 정도와 보트가 회전하는 정도가 일치하는가?
- Is it in sync with the waves?  
보트의 롤링이 파도의 패턴과 일치하는가?

#### Possible Ooching

##### 우칭의 가능성

#### Downwind:

##### 풍하코스:

- Is the competitor stopping his forward body movement abruptly?  
선수가 몸을 급하게 앞으로 움직였다가 갑자기 멈추는가?

#### Upwind: 풍상코스:

- Are there waves?  
파도가 있는가?
- Is the competitor's movement in phase with the waves?  
선수의 움직임이 파도와 일치하는가?
- Is the sail flicking?  
세일이 펄럭이는가?
- Could the flicks on the leach be caused by the waves?  
리치의 펄럭임은 파도에 의한 것인가?
- How does it compare to other boats?

다른 보트와 비교했을 때 어떤가?

#### Possible Sculling

스컬링의 가능성

- Are the tiller movements forceful?  
틸러의 움직임이 강력한가?
- Are they propelling the boat in any direction or preventing it from moving astern?  
보트를 어떤 방향으로든 추진하거나 또는 보트가 후진하는 것을 막고 있는가?
- Is the boat above close-hauled and clearly altering course towards a close-hauled course?  
클로스-홀드보다 위쪽인 풍위에 가깝게 있다가, 명백히 클로스-홀드 쪽으로 코스를 변경하고 있는가?
- Is the sculling offsetting previous sculling?  
스컬링이 이전 스컬링을 상쇄하고 있는가?
- If the competitor is backing the sail, is the sculling preventing the boat from changing course?  
선수가 역 세일하여 보트의 코스가 변경되는 것을, 스컬링으로 막고 있는가?

#### Repeated Tacks or Gybes

반복적인 태킹과 자이빙

- How close together and how frequent are the tacks and gybes?  
태킹과 자이빙을 얼마나 짧은 간격으로 자주 하는가?
- Does the boat change direction because of the gybes?  
자이빙으로 인하여 보트의 진행 방향이 변경되었는가?
- Can the tacks or gybes be justified for tactical reasons or wind shifts?  
반복적인 태킹이나 자이빙이 전술적인 이유나 바람의 변화 때문인가?

#### General

일반적인 사항

Judges must monitor all rule 42 infringements, even those not mentioned above, such as propelling a boat by fending off others and decreasing speed by dragging feet or the body in the water.

심판은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이라도, 다른 보트를 밀쳐냄으로써, 보트를 추진시키거나, 발이나 몸의 일부를 물에 집어넣어 보트의 속도를 줄이는 것과 같은 행위를 포함한, 모든 규칙 42 위반사항을 감시하여야 한다.

### I.9 Rule 42 - Judging Procedures

#### 규칙 42 - 즉결판결 절차

Judges must be thoroughly familiar with rule 42, the interpretations of rule 42 and Appendix P, Special Procedures for Rule 42. This Appendix outlines the penalties and procedures for on-the-water judging of rule 42. Before going afloat each day, a judge should re-read rule 42 and the interpretations, and any change in the class rule, so that it is fresh and clear in his mind.

심판은 규칙 42, <규칙 42의 해석>, 부칙 P <규칙 42를 위한 특별 절차>를 완전히 숙지하여야 한다. 부칙 P는 규칙 42에 대한 수상에서의 즉결판결과 그 절차를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매일 수상에 나가기 전, 심판은 규칙 42와 그 해석, 그리고 클래스규칙에 어떤 변동은 없는지 다시 읽어서, 생생하고 명확하게 되새겨야 한다.

During a race, the judges on the water should do their best to cover the entire fleet, but the major focus must be on the first third of the fleet. The top competitors generally set the example for the fleet.

경기 중, 수상에서 심판은 플리트 전체를 대상으로 그들의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주요 초점은 플리트의 선두 1/3에 맞춰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위 선수들이 플리트 전체의 본보기가 된다.

Rule 42 breaches divide into two types: tactical and technical.

규칙 42 위반은 전술 및 기술적 측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 Tactical infringements are of short duration and committed in order to achieve an immediate advantage. They typically occur at the start, while crossing a right-of-way boat, near the zone from a mark, or at the finish.

전술적 위반은 짧은 순간에 즉각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자행된다. 전형적으로, 스타트할 무렵, 권리정과 교차하는 동안, 마크의 구역 근처, 또는 피니시할 무렵 발생한다.

- Technical infringements of rule 42 occur around the course and are part of the competitor's normal style of sailing.

규칙 42의 기술적 위반은 코스를 범주하는 동안 발생하며, 선수의 통상적인 세일링 스타일의 일부이다.

Usually, both judges in the boat should agree on a technical infringement before they penalize a competitor. While the benefit of doubt remains with the competitor, once the judges are sure of the infringement they should penalize promptly and protect the fairness of the competition for the other sailors.

기술적 위반일 경우, 통상적으로 심판 보트에 있는 두 심판은 선수에게 벌칙을 주기 전에, 그 동작이 기술적 위반인지에 대해서, 두 심판 모두 동의하여야 한다. 선수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되, 심판이 위반을 확신하면 즉시 벌칙을 주어서, 규칙을 준수하는 다른 선수들을 보호하여야 한다.

A judge who sees a clear tactical infringement may and should act independently. 명백한 전술적 위반을 목격한 심판은, 이를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즉시 실행하여야 한다.



## I.9.1 Signaling the Penalty

### 벌칙 신호

Once the judges decide to penalize a boat, one judge should be responsible for all signaling and recording of penalties and the other should focus on driving.

심판들이 보트에 벌칙을 주기로 결정하면, 한 명의 심판은 벌칙의 모든 신호와 기록을 책임지고, 다른 한 명은 운전에 집중하여야 한다.

The judge handling the signals should raise the yellow flag high in the air immediately and hold it vertically while the boat moves into position to hail the competitor. Since the jury boat will often have to move faster than normal to get into a position to hail promptly, hold the flag up while moving into position to inform the competitors that the boat's sudden movements have a purpose.

신호를 담당하는 심판은 즉시 노란기를 공중에 높이 올리고, 선수에게 벌칙을 소리지르기 위한 위치로 심판 보트가 이동하는 동안, 깃발을 수직으로 들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심판 보트는 종종 평상시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선수에게 신호하기 위한 위치로 이동하는 동안, 노란기를 공중에 올리고 있음으로써, 주변에 있는 다른 선수들에게 심판 보트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규칙 42 벌칙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린다.

When the jury boat is close enough that the judge is sure the competitor will hear and understand, the judge should blow his whistle forcefully, point the yellow flag at the penalized boat and loudly hail their full sail number. If the competitor does not appear to hear or understand the hail, repeat it and make eye contact, if possible. Make absolutely certain that the competitor has heard the whistle and hail and seen the flag pointed at him. Once the judges are satisfied that the penalty has been clearly signaled and the competitor is aware, they should promptly remove the yellow flag. Do not keep it displayed until the competitor takes action.

심판 보트가 선수가 듣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갔을 때, 심판은 호각을 강하게 불고, 벌칙 받는 보트를 노란기로 가리키며, 보트의 전체 세일넘버를 크게 외쳐야 한다. 만약 선수가 심판 보트가 소리치는 것을 듣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 반복해서 신호를 보내고, 가능하면 눈을 마주친다. 선수가 호각소리와 심판이 자신의 세일넘버를 소리치는 소리를 듣고, 깃발이 자신을 가리키는 것을 보았는지 확실히 확인한다. 심판의 벌칙 신호가 명확히 전달되었고, 선수가 이를 인지하였다고 확신한다면, 즉시 노란기를 내리면 되며, 선수가 벌칙을 이행할 때까지 노란기를 올리고 있을 필요는 없다.

Remember that the signals should be clear and the hail loud and clear so that all competitors around the offending boat also know who has been penalized.

벌칙주기 신호가 명확하고 큰 소리로 세일넘버를 소리쳐야, 규칙 42를 위반한 보트 주변의 모든 선수도 누가 벌칙을 받는지 알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것.

If the judges have to delay their signaling to move into position safely, they may

add to the hail a very brief description of the infringement so that the competitor knows why he has been penalized. Examples include, 'Sculling just before the start', or 'Body pumping at the mark'.

심판이 안전하게 벌칙을 줄 위치로 이동하기 위하여 벌칙신호를 지연시켜야 할 경우, 선수가 벌칙을 받는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벌칙을 신호하면서 해당 위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추가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스타트 직전 스컬링, 또는 마크에서 바디 펌핑” 등이다.

When judges are observing penalties being taken and recording the details of the infringement, they should also be seen to keep observing the rest of fleet. This could prevent other competitors from infringing rule 42 while the judges appear to be distracted. The judge driving should keep observing the fleet while the other judge tracks the penalty and records the infringement.

심판은 선수가 벌칙을 이행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 위반 내용을 기록할 때도, 주변의 플리트를 계속 관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는 심판이 벌칙을 준 보트의 벌칙 이행을 지켜보느라 산만해 보이는 동안, 다른 선수들이 규칙 42를 위반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한 심판이 벌칙을 이행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위반사항을 기록하는 동안, 운전대를 잡은 심판은 주변의 플리트를 계속 관찰하여야 한다.

## I.9.2 Recording the Penalty

### 벌칙 기록

The judge recording the penalty should record: the boat's number; the race number and leg of the course; the time of day; the infringement; relevant rules and interpretations; what action the competitor took in response to the penalty; and any other special circumstances which may warrant consideration, such as a start being recalled.

벌칙을 기록한 심판은 세일넘버; 몇 번째 경기인지와 몇 번째 렉인지; 날짜와 시간; 위반사항, 위반한 규칙과 해석; 선수가 벌칙 이행 여부;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스타트 때 전체 리콜과 같은, 기타 특별한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When observing a competitor taking a Two-Turns Penalty, note the tack they were on when they started and finished their turns. Watch carefully whether the penalized boat takes its complete Two-Turns penalty with two tacks and two gybes. 선수가 <두-바퀴 돌기 벌칙>하는 것을 관찰할 때, 벌칙을 시작할 때와 종료할 때의 택을 메모할 것. 벌칙받은 보트가 두 번의 태킹과 두 번의 자이빙을 포함한 완전한 <두-바퀴 돌기 벌칙>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한다.

If the judges penalize two boats at the same time, each will observe one of the penalized boats to see that each boat performs the proper penalty.

심판이 동시에 두 보트에게 벌칙을 주었다면, 각각 한 척씩을 맡아서 관찰하며, 각 보트가 제대로 벌칙을 이행하는지 살펴본다.

If the penalty is signaled just before or after a boat finishes, the judges should

record boats that finish in front of and behind the penalized boat in both the penalized boat's original finish, and her second finish after performing her penalty turns. Ashore, judges should check the results to make sure that the boat is scored in its correct finishing position. If the boat fails to finish correctly after doing her penalty turns, they must communicate this to the race committee so that they may score her DNF. The responsibility for making sure that the boat complies with the definition of finishing after the penalty initiated by action by the judges lies with them, and not with the race committee.

피니시하기 직전이나 직후에 벌칙을 주었다면, 심판은 벌칙받은 보트가 원래 피니시했을 때의 앞과 뒤 보트의 피니시 순위를 기록하고, 돌기 벌칙을 이행한 다음의 두 번째 피니시 순위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육상으로 돌아 온 다음, 심판은 벌칙받은 보트의 순위가 올바르게 기록되었는지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보트가 돌기 벌칙을 이행한 다음, 코스 쪽에서 제대로 다시 피니시하지 않았다면, 이를 경기위원회에 알려 해당 보트를 DNF로 처리하도록 한다. 심판의 조치로 시작된 벌칙 이후에, <정의>에 부합되게 피니시하였는지 확인할 책임은 경기위원회가 아닌 심판에게 있다.

If a competitor continues to race or performs his penalty turns improperly, the judges must report that boat's disqualification to the judge recording the penalties: DSQ for a first penalty, and DNE for a second, third and subsequent penalty. The judge responsible for recording penalties will advise the race committee in accordance with Appendix P2 Penalties. The judge responsible for checking results should also check the posted results to ensure that they reflect the appropriate penalty.

벌칙받은 보트가 벌칙을 이행하지 않고 경기를 계속하거나 돌기 벌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심판은 벌칙을 기록하는 심판에게 그 보트가 실격이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 벌칙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첫 번째 벌칙은 DSQ, 두 번째 벌칙과 세 번째 벌칙 그리고 이어지는 벌칙은 DNE이다. 벌칙 기록을 담당하는 심판은 부칙 P2에 명시된 대로 경기위원회에 조언을 한다. 또한 벌칙 기록을 담당하는 심판은 경기위원회에서 공식게시판에 게시한 경기결과표에 항의위원회가 전달한 벌칙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If a competitor requests redress from the posted results the judges should be prepared to attend a hearing. P4 limits the possibility of redress for actions taken under P1, unless the action was improper due to a failure to take into account a race committee signal or a class rule.

선수가 게시된 경기결과표에 대하여 구제를 요청할 경우, 심판은 청문에 참석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부칙 P4는 심판이 경기위원회의 신호 또는 클래스규칙을 고려하지 않고 부칙 P1에 따른 벌칙을 준 경우를 제외하고, 구제의 가능성을 제한한다.

When judges penalize a competitor and the race committee subsequently postpones the start, signals a general recall, or abandons the race, the competitor is not required to take a penalty. If it is the boat's first breach, the boat does not have to take a Two-Turns Penalty. If it is the boat's second or subsequent breach, the boat may participate in any restart (see rule P3). However, the judges must record and report the penalty, since the penalty still counts in the number of times the

competitor has been penalized during the series.

심판이 선수에게 벌칙을 부과하였는데, 잠시 후에 경기위원회가 스타트를 연기시키거나 전체 리콜을 신호하거나, 또는 경기를 취소할 경우, 벌칙 받은 선수는 벌칙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럴 경우, 첫 번째 위반이면, 보트는 <두-바퀴 돌기 벌칙>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며,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일 경우에는 재스타트할 수 있다 (부칙 P3 참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선수가 시리즈 동안 벌칙을 받은 횟수에는 여전히 반영되기 때문에, 심판은 벌칙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When the judges penalize a boat for the third or subsequent time and she fails to retire, her penalty shall be disqualification without a hearing from all races in the regatta. Her score shall be DNE in all races in the regatta, and the protest committee shall consider calling a hearing under rule 69.2 (a).

심판이 세 번째 또는 그 이후 벌칙을 주었을 때, 보트가 리타이어 하지 않으면, 그 보트는 청문 없이 대회 모든 경기에서 실격처리 된다. 또한 리타이어하지 않은 보트의 점수는 대회 모든 경기에서 DNE로 처리되며, 항의위원회는 규칙 69.2(a)에 따른 청문소집을 고려하여야 한다.

Using an audio or video recorder can be a valuable tool. Some best practices to maximize the benefit include:

오디오 또는 비디오 녹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런 도구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모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Protect the device from water damage and the microphone from wind noise.  
장치를 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마이크를 바람 소음으로부터 보호한다.
- Confirm that the device started recording, especially if the device has the same button to start and stop recording.  
특히 장치에 녹화를 시작하거나 중지하는 것이 동일한 버튼일 경우, 녹화가 시작되었는지 확인한다.
- When positioned where tactical infringements are likely to happen, leave the device running. This includes the last 90 seconds before the start, throughout mark roundings, and while observing finishes.  
전술적 위반이 발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경우, 장치를 작동상태로 둔다. 여기에는 스타트 전 마지막 90초, 마크 돌기 전체, 피니시 관찰이 포함된다.
- When discussing a possible technical infringement, record the conversation between the judges as you analyze a competitor's movements. This can be useful later when you are describing what you saw to the competitor.  
기술적 위반 가능성을 논의할 경우, 선수들의 움직임을 분석하면서 심판들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녹화한다. 이는 추후 선수에게 벌칙을 준 내용을 설명할 때 유용할 수 있다.
- When penalizing boats, record the hail of the penalty and keep the recorder running while the boats complete their penalties.

보트에 벌칙을 줄 때는, 벌칙을 소리치는 소리를 녹음 또는 녹화하고, 보트가 벌칙을 마칠 때까지 녹화기를 작동시킨다.

- At all times when the device is running, keep voice and tone objective and impersonal. Refer to the boat by sail number only and avoid personal or editorial comments. Good recordings of well-described penalties can significantly improve a judge's credibility with the competitors.

장치가 작동 중일 때는 음성과 톤을 객관적이고, 개인적인 사심없이 유지한다. 보트를 세일 넘버로만 호칭하고, 개인적 또는 편집적 논평을 피한다. 벌칙을 구체적으로 잘 묘사하여 기록하면, 심판에 대한 선수의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수 있다.

- Ask your fellow judge's permission before using an audio or video recorder. Then, consider the recording confidential unless both of you agree to share the recording.

오디어나 비디오 녹화기를 사용하기 전에, 동료 심판의 허락을 구한다. 그런 다음, 두 명 모두 녹음 내용을 공유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한, 녹음 내용을 기밀로 간주한다.

- Occasionally review your recordings. Listen for improvements you can make in describing the behavior you are seeing.

때때로 녹음을 들어본다. 여러분이 보았던 행동을 묘사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경청한다.

- Transfer the audio information to the rule 42 report form as soon as possible.

녹화한 오디오 정보를 가능한 한 빨리 규칙 42 보고서 양식으로 만들어 전송한다.

Once ashore after racing, judges must report all yellow flag penalties and the resulting action taken by competitors to the judge responsible for recording penalties at the conclusion of the day's racing. This includes submitting a report of no activity if the judges did not give any yellow flag penalties. If an on-line reporting system is used, each judge will enter their own penalties into the database.

경기 종료 후 육상에서, 심판은 모든 노란기 벌칙과 그 결과로 선수가 취한 행동을 벌칙 기록을 담당하는 심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심판이 노란기 벌칙을 하나도 주지 않았을 경우, 조치가 없었다고 알려주는 것도 포함된다. 온라인 보고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각 심판은 자신이 준 벌칙을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한다.

### I.9.3 Explaining the Penalty to the Competitor

#### 선수에게 벌칙 설명하기

An accumulating list of Rule 42 infringements is posted on the official notice board after each day's racing. Provide a good explanation of what was seen with each infringement. Good explanations convey clearly to all competitors how a rule was broken and also demonstrates that the judges know what they are doing. They

also can replace the need for competitors to seek an explanation from the judges. The explanations should read like 'facts' and where possible use the terminology in the rules or, if needed, the interpretations.

매일 경기가 끝난 후, 규칙 42 위반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한 누적 목록이 공식 게시판에 게시된다. 각각의 위반에서 심판이 목격한 것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기재한다. 자세한 설명은 모든 선수들에게 규칙 42를 어떻게 위반했는지 명확히 전달하고, 또한 선수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심판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선수가 심판에게 설명을 요청해야 할 필요성을 대체할 수 있다. 설명은 '사실'처럼 읽혀져야 하며, 가능하다면, 규칙 또는 규칙 42 해석에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Judges should be available to answer questions from penalized competitors, either afloat between races, or ashore after racing. Take a competitor list on the water to identify the competitors that approach the judge boat for an explanation so you can greet them by name. This has a very positive effect on the interaction, particularly at youth events.

심판은 경기 중 또는 경기 후 육상에서, 벌칙 받은 선수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수상에서 선수를 식별할 수 있는 참가선수목록을 가지고, 설명을 듣기 위하여 심판 보트로 접근하는 선수의 이름을 부르며 인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특히 청소년 대회에서 상호 소통하는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At top level events competitors and their coaches will usually ask for an explanation of a penalty. In nearly all cases, the competitor will know why they were penalized, and are just seeking to confirm the reason.

최상위 대회에서의 선수와 코치들은 대체적으로 규칙 42 벌칙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 거의 모든 경우에, 선수들은 그들이 왜 벌칙을 받았는지 알고 있지만, 그 정확한 이유를 다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다.

Give as many details as possible about the competitor's actions. Describe what first attracted your attention to the boat and competitor. Describe how the competitor's actions affected the boat. Explain what rule he broke, and the relevant World Sailing interpretation.

선수의 행동에 대하여 가능한 상세하게 설명해 준다. 심판의 관점에서 보트와 선수의 움직임에서 처음 관심을 끈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준다. 선수의 행동이 보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한다. 어떤 규칙을 위반하였고, 관련된 월드세일링 해석을 설명해 준다.

Competitors can be angry, upset or confused by the judge's penalty. Some might deny the breach or link the penalty to an implicit accusation of cheating. A judge can mitigate the risk of an emotional confrontation by talking calmly about the competitor's specific actions and avoiding implications of the competitor's motives or intent. If both judges that were involved in an incident are available, they should talk to that competitor together. One judge should calmly handle most of the conversation. The other judge should watch for signs that the discussion is becoming confrontational or argumentative. If this happens, the second judge can suggest that they continue the conversation later. If only one judge involved in an

incident is available, ask another judge to be present while explaining the penalty to the competitor in order to avoid any misinterpretations.

선수들은 심판의 벌칙에 대하여 화가 나거나 흥분하거나 또는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일부 선수는 위반을 부인하거나, 심판의 벌칙 부과에 대하여 암묵적으로 비난할 수도 있다. 심판은 선수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차분히 대응하고 위반에 대한 선수의 부정적인 동기나 의도를 함축하지 않음으로, 감정적 대립의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 만약 해당 벌칙을 부과했던 두 명의 심판 모두 가능하다면, 그들은 함께, 그 선수의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두 명의 심판을 대표한 한 명이 선수와의 대화를 침착하게 처리해야 한다. 두 번째 심판은 토론이 대립적이거나 논쟁적으로 변하고 있는 징후를 주시하여야 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심판은 나중에 대화를 이어가자고 제안할 수 있다. 선수가 규칙 42 벌칙에 대해 질문하러 왔을 때, 해당 벌칙을 부과했던 두 명의 심판 중 한 명의 심판만 있는 경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선수에게 벌칙을 설명하는 동안 두 번째 심판에게 대화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한다.

Most of the time, judges should wait for the competitors to initiate the discussion. Judges should be more proactive about instigating a meeting when they believe a competitor may not understand how their actions break rule 42. This is particularly appropriate at youth or low-level adult events, with inexperienced competitors, or when a competitor has incurred a second penalty for the same action. By explaining and clarifying how the competitor is infringing the rules, the judges can help the competitor to avoid additional penalties.

대부분의 경우, 심판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선수가 토론을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심판은 선수가 자신의 어떤 행동이 규칙 42 위반인지를 잘 모르는 듯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선제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이는 특히 청소년 대회 또는 세일링 경험이 부족한 선수가 참가하는 낮은 수준의 성인 대회, 또는 어떤 선수가 같은 동작으로 두 번째 벌칙을 받았을 경우에 적절하다. 심판은 선수가 어떻게 규칙을 위반하였는지 설명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선수가 추가 벌칙을 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At times, a competitor will want to request redress alleging that the rule 42 penalty was an improper action of the jury. If using Appendix P, redress is limited to an improper action taken by a judge under rule P1.2 due to a failure to take into account race committee signals or a class rule.

때때로, 선수는 규칙 42의 벌칙이 심판의 부적절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제를 요청한다. 부칙 P가 적용되는 경우, 규칙 P1.2에 따라 임명된 심판이 경기위원회의 신호 또는 클래스규칙을 고려하지 못하여 생긴 부적절한 조치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런 경우의 선수에게는 구제가 주어지지 않는다.

## I.10 Judge Boat Positioning

### 심판 보트 위치 잡기

Being in the right position at the right time is crucial to doing a good job. For on- the-water rule 42 judging, the objective is to place boats in positions where they are close to potential problems. This requires:

심판이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간에 올바른 위치에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수상에서 규칙 42를 즉결판결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위반을 할 만한 장소 가까이 심판 보트를 위치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요구된다:

knowledge of the fleet racing tactics to anticipate the boats' movements:  
보트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한 플리트 경기 전술에 대한 지식;

knowledg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ecific boat designs to know what types of prohibited kinetics are most effective for that boat type:  
해당 보트 유형에 대해 어떤 형태의 금지된 움직임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특정 보트 설계의 특성에 대한 지식;

taking into account the types of boats racing, jury boats, number of judges, conditions, course configurations, and local geography to maximize the judges' ability to cover to whole fleet throughout the race;  
경기하는 보트의 종류, 심판 보트, 심판 수, 해황, 코스 구성, 경기수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기가 진행되는 내내, 전체 플리트를 감시할 수 있는 심판 능력의 극대화;

common sense and diligent focus to react to changing circumstances promptly;  
변화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상식과 지속적인 집중;

On-going awareness of the positions of the other judge boats.  
다른 심판 보트의 위치에 대한 지속적인 파악 등.

It is not possible to monitor all the boats all of the time. However, it is an achievable goal for the jury boats to cover the course such that every racing boat is aware of their presence at some time during each race. The best way to be effective is to position your boat near the front of the fleet and motor along at a similar speed to the competitors. The judges should pay closer attention to the leaders, but look with a wide vision, to scan as many competitors as possible.  
모든 보트를 항상 감시할 수는 없지만, 선수가 경기하는 도중, 어느 시점에, 심판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심판 보트의 달성 가능한 목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선수들과 비슷한 속도로 움직이면서, 플리트 앞쪽 가까이에 심판 보트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심판은 선두 그룹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만, 넓은 시야를 가지고 가능한 한 많은 선수들을 지켜봐야 한다.

In regattas with multi-fleets the judges may have insufficient resources to cover all of them. If choices have to be made, judges should prioritize starts, downwind legs, and finishing legs.  
여러 클래스가 함께 경기하는 대회에서, 심판은 모든 클래스를 지켜보기에 충분한 여건이 아닐 수 있다. 선택을 해야 한다면, 심판은 스타트, 풍하 렉, 피니시 렉을 우선시하여야 한다.

Judges operating boats are responsible for minimizing their engine wash and positioning their boat in a manner that will minimize the effects of their wind



shadow.

심판 보트를 운전하는 심판은 엔진 사용으로 인한 물결 일으킴을 최소한으로 하고, 바람을 최소한으로 가로막는 방법으로 운행할 책임이 있다.

Jury boats should try to cross boats at right angles maintaining a predictable course when close to competitors. Jury boats should be a minimum of five boat lengths away when crossing in front and one boat-length away when crossing behind. On downwind legs, be aware that in surfing conditions, competitors will often make dramatic course changes to take best advantage of the waves. If you find yourself too close to the boats, your best option may be to stop and let the competitor sail around you. The driver can raise both hands up high as a signal to the competitors that the jury boat has stopped.

심판 보트가 경기 중인 선수와 가까이 있는 경우, 선수가 예상할 수 있는 코스를 유지하면서 직각으로 경기 중인 보트를 가로질러야 한다. 심판 보트가 경기 중인 보트의 앞쪽으로 가로지를 때는 최소 5정신, 뒤쪽으로 가로지를 때는 1정신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서핑이 가능한 상황에서의 풍하 코스에서는, 종종 선수들이 파도를 가장 잘 이용하기 위하여, 극적인 코스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만약 심판 보트가 경기 중인 보트에 너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당신의 최선의 선택은 심판 보트를 멈추고, 선수가 심판 보트를 돌아서 지나가도록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때, 심판 보트를 운전하는 심판은 두 손을 높이 들어, 심판 보트가 멈췄다는 신호를 선수에게 보낼 수 있다.

Except at the start and during the first beat, jury boats should position themselves, so they are visible to the maximum number of competing boats.

스타트와 첫 번째 풍상 코스를 제외하고, 경기하는 보트들이, 최대한 많은 보트들이 심판 보트를 볼 수 있도록 위치를 잘 잡아야 한다.

When penalizing a boat, the driver must balance the need to be close enough to the competitor to signal the penalty clearly, while remaining sufficiently far away to stay clear of the penalty turns that the competitor may perform.

보트에 규칙 42 벌칙을 부과할 때, 심판 보트 운전자는 벌칙 신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선수와 충분히 가깝게 접근하여야 하며, 선수가 벌칙 돌기를 이행할 때는, 벌칙 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충분히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한다.

### I.10.1 Pre-Start

#### 스타트-전에

Rule 42 takes effect at the preparatory signal. Generally, rule 42 violations are rare until about a minute before the start. In light air, a boat that is having trouble reaching the starting area might use illegal kinetics after the preparatory signal, including a tow from their coach boat, to get to the starting area. A boat wishing to start at the far end of the starting line might break rule 42 in an effort to traverse the line quickly.

규칙 42는 준비신호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스타트 1분 전까지는 규칙 42의 위

반이 드물다. 미풍인 상황에서, 준비신호가 발하여진 이후, 스타트 구역에 제 시간에 도달하기 어려운 보트가, 스타트 구역에 도착하기 위하여 코치 보트가 견인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 또한 스타트 라인의 핀 엔드쪽에서 스타트하려고 시도하는 보트가 스타트라인을 빠르게 가로지르려고 규칙 42를 위반할 수 있다.

Signal penalties as soon after the incident as practical. Do not wait for the starting signal.

실제로 사건이 발생하면, 스타트 신호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벌칙을 신호하여야 한다.

A penalized boat must sail well clear of other boats and perform both turns promptly to take her penal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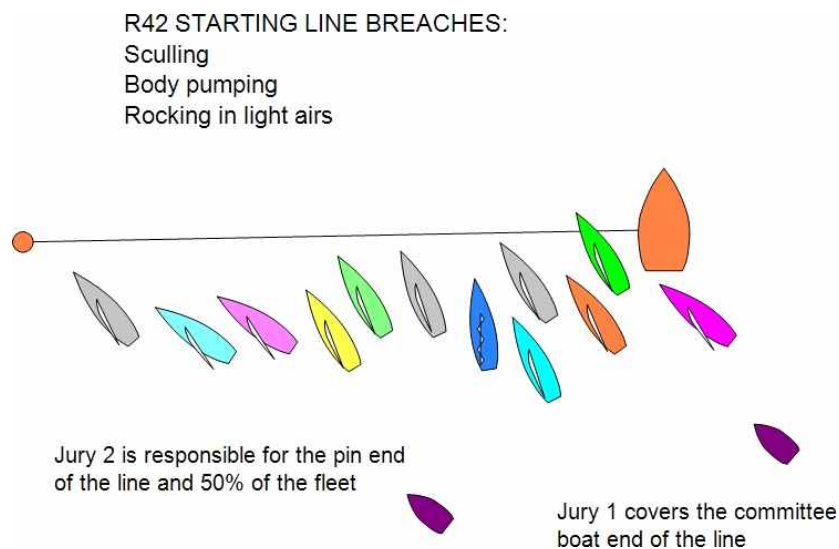
벌칙받은 보트는, 다른 보트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범주하면서, 즉시 <두-바퀴 돌기 벌칙>을 이행하여야 한다.

## I.10.2 Start

### 스타트에서

Penalties must be signaled quickly; therefore, the jury boat must stay clear of other competing boats.

벌칙신호는 신속하게 전달되어야 하며; 따라서 심판 보트는 스타트하려고 준비하는 다른 보트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 Common infractions

#### 일반적인 위반사항

- Sculling just prior to the starting signal  
스타트신호 직전의 스컬링

- Repeated rocking/pumping by body movement that rolls the boat or fans the sails, at the start  
스타트 때, 몸의 움직임으로 보트를 롤링키시거나 또는 세일에 바람을 일으키는 반복적인 로킹/펌핑
- Rocking before the start as a boat tries to propel itself from the 'second row' into the 'first row'  
스타트 전에 '두 번째 줄'에서 '첫 번째 줄'로 나가려고, 보트를 추진시키기 위하여 시도하는 로킹
- One roll of the starting line clearly propelling the boat - BASIC 4.  
스타트 라인에서, 한 번의 롤링으로 분명하게 보트를 추진시키는 동작 - BASIC4.

#### Positioning of boats

##### 심판 보트의 위치

The judge working as the course chief will assign positions of jury boats behind the fleet. Usually, the boats will spread from right to left. Their positioning will depend on the distribution of competitors, and not the actual starting line. When assigned to take the pin end at the left end, a boat will cover the boats closest to the pin end of the line.

코스를 담당하는 심판은 심판 보트들을 플리트의 뒤쪽에 배치한다. 보통, 보트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퍼져 있는데, 심판 보트의 위치는 실제 스타트라인이 아니라 선수들의 분포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스타트라인 왼쪽의 핀 엔드쪽을 맡은 심판 보트는, 플리트의 절반에서, 핀 엔드에 가까운 보트들을 담당한다

Each judge boat should identify the boats they are responsible for. In a fleet of 100 boats with four judge boats, each one would cover 25 boats. If two judges are on the boat, one judge watches 13 boats on one their side of the boat, and the other judge watches the remaining ones on their side. Stay focused on the boats that are your responsibility. Jury boats should position themselves far enough behind the fleet to observe all boats they are responsible for, and close enough to respond quickly,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fleet. Since most competitors are on starboard tack in their final positioning just before the start, jury boats will have the best view when they are positioned astern of the boats.

각 심판 보트는 자신이 책임져야 할 보트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100대의 보트와 4대의 심판 보트가 있다면, 각 심판 보트는 25대의 보트를 담당한다. 한 심판 보트에 두 명의 심판이 탑승하였을 경우, 한 심판은 13대의 보트를 담당하고, 다른 한 명은 나머지 보트를 담당하는데, 자신의 책임하에 있는 보트들에 집중하여야 한다. 심판 보트는 책임지고 있는 모든 보트를 관찰할 수 있도록 플리트 뒤에 충분히 떨어져 있어야 하며, 또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까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플리트의 크기에 따라 적절하게 그 거리를 조절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선수는 스타보드 택에 있기 때문에 배심원 보트는 보트들의 뒤쪽에 위치할 때 가장 잘 볼 수 있다.

Watch a large group of competitors seeking to start at the starboard end of the line from a position below and to the right of the entire starting 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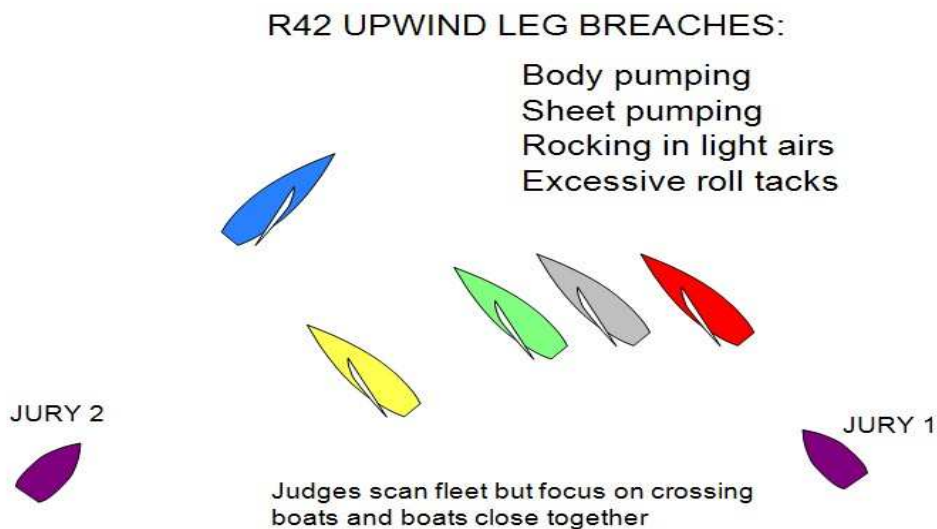
전체 스타트라인의 오른쪽 아래에 자리를 잡고, 오른쪽 끝에서 스타트하는 대규모 선수 그룹을 지켜본다.

### I.10.3 Upwind

#### 풍상-코스에서

Judges can find it challenging to move their boats into a good position to signal a penalty without affecting other competing boats. In light wind, the sound of a hail and the whistle will carry a long distance allowing the jury boat to signal with less movement. Immediately after the start, it may be impossible to signal promptly without interfering with other competing boats. In this case, wait to signal until you can make a good approach to the competitor. Add to a delayed signal a quick explanation such as, 'Rocking back at the start,' so that the competitor knows why you penalized them.

심판은 경기 중인 다른 보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벌칙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좋은 위치로 심판 보트를 이동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미풍에서는, 소리지르기와 호각 신호가 먼 거리까지 전달되어 심판 보트의 적은 움직임으로도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스타트 직후에는, 경기 중인 다른 보트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고는 신속한 신호가 불가능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보트를 방해하지 않고 해당 선수에게 접근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심판은 지연된 벌칙 신호와 함께, 왜 벌칙을 주는지 선수가 알 수 있도록 “스타트 때 로킹”과 같은 설명을 추가한다.



일반적인 위반  
Common infractions

In light wind:  
미풍에서

- Rocking the boat by body movement  
몸의 움직임으로 보트를 로킹시키는 행위
- Repeated roll tacking  
반복적인 롤 태킹
- Exaggerated roll tacking so that the boat's speed increases as a result of the tack  
태킹을 마친 다음의 보트 스피드가 증가되도록 하는 과도한 롤 태킹

In stronger wind:

강풍에서

- Fanning the sails by bouncing the body on the deck or in the hiking straps  
데크 또는 하이킹 스트랩에서 몸에 반동을 주어 세일에 바람을 일으키는 행위
- Fanning the sails by short sharp repeated pumps of the main sheet.  
메인 시트로 짧고 날카롭게 반복적인 펌핑으로 세일에 바람을 일으키는 행위 .

Jury boats will generally position themselves behind the fleet and focus on pressure points. Jury boats can move through the fleet, being extremely careful of their wake. A jury boat should avoid remaining alongside a single competitor for an extended time. The engine noise and propeller wash can be distracting to the competitors.

심판 보트는 일반적으로 플리트의 뒤쪽에 위치하며, 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 집중한다. 심판 보트는 플리트를 통과하여 움직일 수 있지만, 파도를 일으키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하여야 한다. 심판 보트는 한 선수 옆에 장시간 머물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심판 보트의 엔진 소음과 프로펠러가 만드는 선미파로 인하여 선수의 주의가 산만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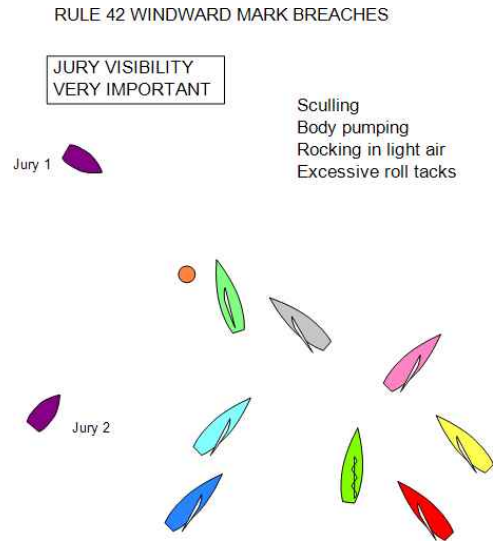
Towards the end of the upwind leg, the jury boats should start to position themselves for the next leg. The jury boat watching the front third of the fleet should move into a position to observe the leaders as they start the reach or run. Towards the end of the leg, the jury boat observing the rear two thirds of the fleet should move to a visible position to weather of the windward mark.

풍상 렉에서 선두정이 풍상마크에 도착할 무렵, 심판 보트는 다음 렉을 관찰하기 위하여, 미리 자리잡아야 한다. 플리트의 선두 1/3 그룹을 맡은 심판 보트는, 선두 그룹이 리칭-코스 또는 런-코스를 시작할 무렵, 이를 관찰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하여야 한다. 그리고 풍상 렉이 끝나갈 무렵, 플리트의 후미 2/3 그룹을 맡은 심판 보트는, 풍상마크의 위쪽으로 이동하여 플리트의 후미 그룹을 관찰한다.

At the first windward mark the jury boat should be highly visible. A second jury boat, positioned to leeward of the fleet, should go with the leaders as they sail on the reach. Positioning to leeward of the fleet on the reach allows judges to stay closer to the fleet with less negative effects from wind shadow or wake.

첫 번째 풍상마크에서는 심판 보트가 눈에 잘 띄어야 한다. 이 때, 코스의 왼쪽에서 플리트의 두 번째 그룹을 담당하는 심판 보트는 플리트의 풍하 쪽에 자리잡고 있다가, 선두 그룹이 리칭-코스를 범주할 때, 그들을 따라가야 한다. 리칭-코스에서는, 풍하 쪽에서 플리트를 따라가면, 심판 보트로 인한 바람 막음과 보트 항적(물결)의 영향을 덜 끼치면서 플리트에 좀 더 가

끼이 다가갈 수 있다.



#### I.10.4 Reaches

##### 리칭-코스에서

At the start of the leg, the judges should actively discuss and decide if surfing or planning or foiling conditions exist. If the conditions are marginal, judges must frequently reconsider as small changes in wind may cause surfing and or planning or foiling conditions to come and go.

선수들이 리칭-렉을 시작할 때, 심판들은 서핑 또는 플레이닝 또는 포일링이 가능한 조건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해당 조건이 미약할 경우, 심판은 바람의 작은 변화로 서핑이나 플레이닝 또는 포일링 조건이 수시로 바뀔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An increase in boat speed does not necessarily qualify as surfing (rapidly accelerating down the front of a wave).

보트의 속도가 빨라졌다고 해서, 반드시 서핑 (파도의 정면에서 빠르게 가속되어 내려가는 것) 이 된 것은 아니다.

On reaches, one competitor will often begin to surf by pumping illegally and start gaining on other boats. Seeing this, other boats may also begin to pump illegally, to maintain their position. Ideally, the judges will act before this happens, but if not, they should penalize the first clear breach they see.

리칭-코스에서, 종종 한 선수가 불법적으로 펌핑하여 서핑을 시작하면, 다른 보트들도 이를 따라하기 시작한다. 이를 본 다른 보트들 역시, 현재의 순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펌핑을 시작할 수 있다. 이상적으로는, 심판들이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조치하여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였을 경우, 심판들이 목격한 첫 번째 명백한 위반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여야 한다.

In the rare cases where the judges lose control of the fleet and the majority of

boats are breaking rule 42, judges must act. They should penalize the first clear breach and keep penalizing until the fleet starts complying with the rules.

드물지만, 심판들이 플리트를 통제하지 못하고, 대다수의 보트들이 규칙 42를 위반하는 경우, 심판들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심판들은 첫 번째 명백한 위반에 벌칙을 부과하고, 전체 플리트가 규칙을 준수하기 시작할 때까지, 계속 벌칙을 부과하여야 한다.

Judging when one wave ends and other starts can be difficult. You can judge the end of one wave as the end of a surge of boat speed. When a boat is planing, the competitor is not permitted to pump, even though the boat may move from one wave to another.

한 파도가 끝나고, 언제 다른 파도가 시작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한 파도의 끝은, 보트 속도의 급상승의 끝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보트가 플레이닝이 걸렸을 때, 선수는 한 파도에서 다른 파도로 이동할 수 있더라도, 펌핑은 허용되지 않는다.

In stronger winds, it is often difficult to differentiate between rapid trimming and pumping. The rules permit trimming that is in response to changes in wind, gusts or waves, even if rapid. However, they do not permit repeated trimming that is not connected to wind or waves. A competitor may not constantly pump their sails.

강풍에서는, 종종 빠른 세일 조절과 펌핑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규칙 42는 바람, 돌풍 또는 파도의 변화에 따른 세일 조절에 대해서는, 심지어 빠르게 세일을 조절하더라도, 이를 허용한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에 연결되지 않은 반복적인 세일의 조절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수는 지속적으로 세일을 펌핑할 수 없다.

#### Common infractions

##### 일반적인 위반사항

- Repeated trimming that is not in relation to waves or wind  
파도나 바람의 변화와 관련없는 반복적인 세일의 조절
- Pumping a sail more than once per wave  
한 파도에 한번 이상의 세일 펌핑
- Body pumping to promote surfing and/or planing  
서핑 그리고/또는 플레이닝을 촉진하기 위한 바디 펌핑
- Pumping a sail when already surfing or planing  
이미 서핑 또는 플레이닝인 상태에서의 세일 펌핑
- Ooching (generally in stronger winds to promote surfing).  
우칭 (일반적으로 강한 바람에서, 서핑을 촉진하기 위한)

#### Positioning of Jury boats

##### 심판 보트의 위치

One jury boat should stay to leeward of the fleet. The boat that was at the windward mark watches from the windward side of the fleet.

심판 보트 중 한 척은 플리트의 풍하 쪽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풍상마크에 있었던 심판 보트는 플리트의 풍상 쪽에서 지켜본다.

If you see an improper action during a mark rounding, wait until the boat is clear of the mark and on the next leg to signal the penalty.

마크 돌기 중에 규칙 42조 위반을 목격할 경우, 보트가 마크 돌기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레클을 향할 때 벌칙을 부과한다.

### I.10.5 Run

#### 런-코스에서

A competitor rolling the boat by repeatedly moving their bodies the same way as the mast with no change of direction is rocking. In positive rocking, the windward roll is caused by the competitor moving to windward first. In negative rocking, the competitor begins the rocking by moving to leeward first. If the competitor is moving his body to counter the roll of the boat, it is permitted trimming.

코스의 변경없이 마스트의 움직임에 맞춰서 몸을 반복적으로 움직여 보트를 롤링시키는 것이 로킹이다. 포지티브 로킹은, 선수가 먼저 풍상 쪽으로 몸을 움직여서 풍상 롤을 발생시키는 것이며, 네거티브 로킹은, 선수가 먼저 풍하 쪽으로 몸을 움직여서 풍하 롤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선수가 보트의 롤링을 막기 위하여, 보트가 롤링이 되고 있는 반대 방향으로 몸을 움직일 경우, 이는 허용된 동작이다.

The best way to identify boats that may be rocking illegally is to keep a wide view. Your eyes will naturally pick out boats that are rolling more than those around them. Watch those boats to identify what is causing the extra rolling. You should penalize body motion or repeated trimming not related to the wind or waves that is inducing the rolling and is not permitted by the exception. This can be difficult to judge, as competitors combine permitted and prohibited actions. Talk over the specifics of what you see with your fellow judge. If you are not certain that the motion is permitted, watch for a little longer. Penalize only when both judges are satisfied that the rolling is prohibited and that they would be able to describe clearly the prohibited body motion to the competitor.

불법적으로 로킹하는 보트를 식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넓은 시야를 유지하는 것이다. 심판은 자연스럽게 주변의 보트들보다 더 많이 롤링하는 보트를 구별하게 될 것인데, 심판들은 그 보트들을 유심히 관찰하여, 무엇이 추가적인 롤링을 발생시키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심판은 예외 (규칙 42.3)로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바람 또는 파도와 관련이 없는, 몸동작 또는 반복적인 세일의 조절에 벌칙을 부과하여야 한다. 이 때, 선수가 허용된 동작과 금지된 동작을 병행하기 때문에, 심판이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당신이 목격한 것에 대하여, 동료 심판과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그것이 허용된 동작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조금 더 지켜본다. 두 명의 심판이 그 롤링이 금지된 동작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경우에만 벌칙을 부과하여야 하며, 벌칙을 부과한 선수에게 어떤 몸동작이 문제가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The World Sailing interpretation, ROCK 3 does not require competitors to stop their boat's background rolling. However, when the boat is set up to be uns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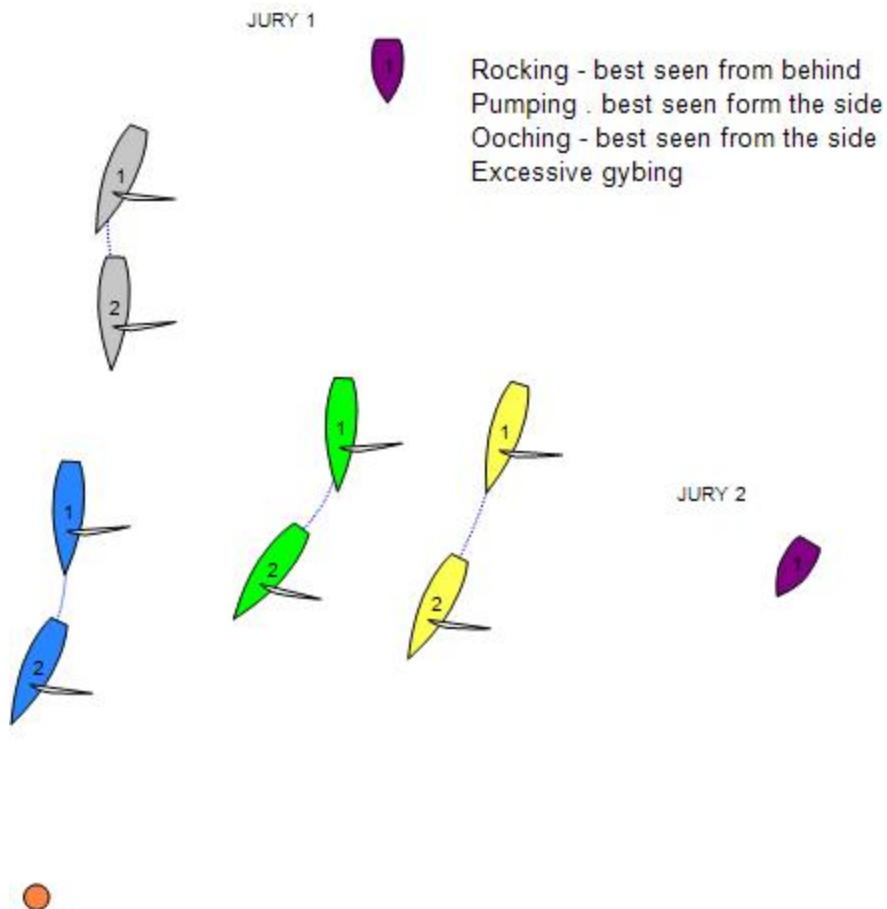
a single roll may be enough to induce repeated rocking and that is prohibited (ROCK 5).

<월드세일링 규칙 42 해석>, ROCK 3은 선수가 보트의 백그라운드 롤링을 멈추는 동작을 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보트가 불안정하게 세팅되어 있는 경우, (파도 등에 의한) 한 번의 롤링으로도 반복적인 로킹을 유발하기에 충분할 수 있으며, 이런 (반복적인 롤링) 상황은 금지된다 (ROCK 5).

Be alert for excessive gybing or pumping in the last 100 meters of the leg to establish or break overlaps.

렉의 마지막 100M에서, 오버랩을 성립시키거나 깨뜨리기 위하여, 과도한 자이빙 또는 펌핑을 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주의 깊게 살필 것.

### R42 DOWNWIND BREACHES



#### Common infractions

일반적인 위반사항

- Rocking  
로킹
- In light winds, repeated gybing clearly not in response to wind shifts or tactical

considerations

미풍에서, 명백한 바람의 변화 또는 전술적인 이유가 없는 반복적인 자이빙

- Exaggerated rolling during gybing that propels the boat faster than it would have done in the absence of the gybe.

자이빙시의 과도한 롤링으로 자이빙을 하지 않았을 때 보다 보트를 더 빠르게 전진시키는 것.

Positioning of Jury boats

심판 보트의 위치

Always position one jury boat near the front of the fleet. Often the same jury boat will follow the leaders throughout the race. Having a jury boat near the front will encourage rule compliance by the leaders. This helps ensure that the competitors will win or lose by fair sailing.

심판 보트 중 한 척은 항상 플리트의 앞쪽 가까이 배치되어야 한다. 흔히 동일한 심판 보트가 경기 내내 플리트의 선두 그룹을 따라다닌다. 플리트의 앞쪽에 심판 보트를 두는 것은 선두그룹이 규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이는 선수들이 공정한 범주를 통하여, 승패를 가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Both jury boats should attempt to move within the fleet. If a jury boat travels from the back of the fleet to the front, it should stay well clear of the fleet before accelerating, both for safety and to minimize the impact of their wake on the competitors. When moving at speed, try to find the speed at which the jury boat has the least wake. For many small powerboats, traveling at a moderate speed maximizes the size of their wake. Avoid such speeds unless necessary for safety.

두 척의 심판 보트는 플리트 내에서 이동을 시도하여야 한다. 만약 심판 보트가 플리트의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동한다면, 안전을 위해, 그리고 심판 보트가 움직이면서 일으키는 파도가 선수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속하기 전에 플리트와 충분히 떨어져 있어야 한다. 속도를 내어 움직일 경우, 심판 보트가 일으키는 선미파가 가장 적은 속도를 찾는다. 많은 소형 파워보트의 경우, 중간 정도의 속도로 이동하는 것이 선미파의 크기를 최대화한다.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런 중간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피할 것.

The lead jury boat should watch the initial roundings from the center of the gate, staying clear of sight lines for race committee and the media boats.

게이트 마크에서, 선두 그룹을 담당할 심판 보트는, 경기위원회와 보도용 보트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위치를 찾은 다음, 게이트 마크의 중앙에서, 선두정의 게이트 마크 돌기를 관찰하여야 한다.

## I.10.6 Finish

### 피니시에서

The issues on the final leg are the same, except that a jury boat must be present in the finishing area at all times when boats are finishing.

마지막 렉의 핵심인, 보트가 피니시할 때, 심판 보트가 항상 피니시 구역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다른 렉과 동일하다.

When the judges see an infringement right at the finish, they may and should penalize boats, even if they are no longer racing. Make every attempt to signal the penalty quickly when a boat has finished so that the competitor can promptly perform their penalty turns and re-finish.

피니시라인 근처에서의 규칙 위반을 목격하였을 경우, 보트가 비록 더 이상 경기 중이 아니더라도, 심판은 벌칙을 줄 수 있으며, 규칙을 위반한 보트에게 벌칙을 부과하여야 한다. 보트가 피니시라인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신속하게 벌칙을 신호하여, 선수가 즉시 벌칙을 이행한 다음, 다시 피니시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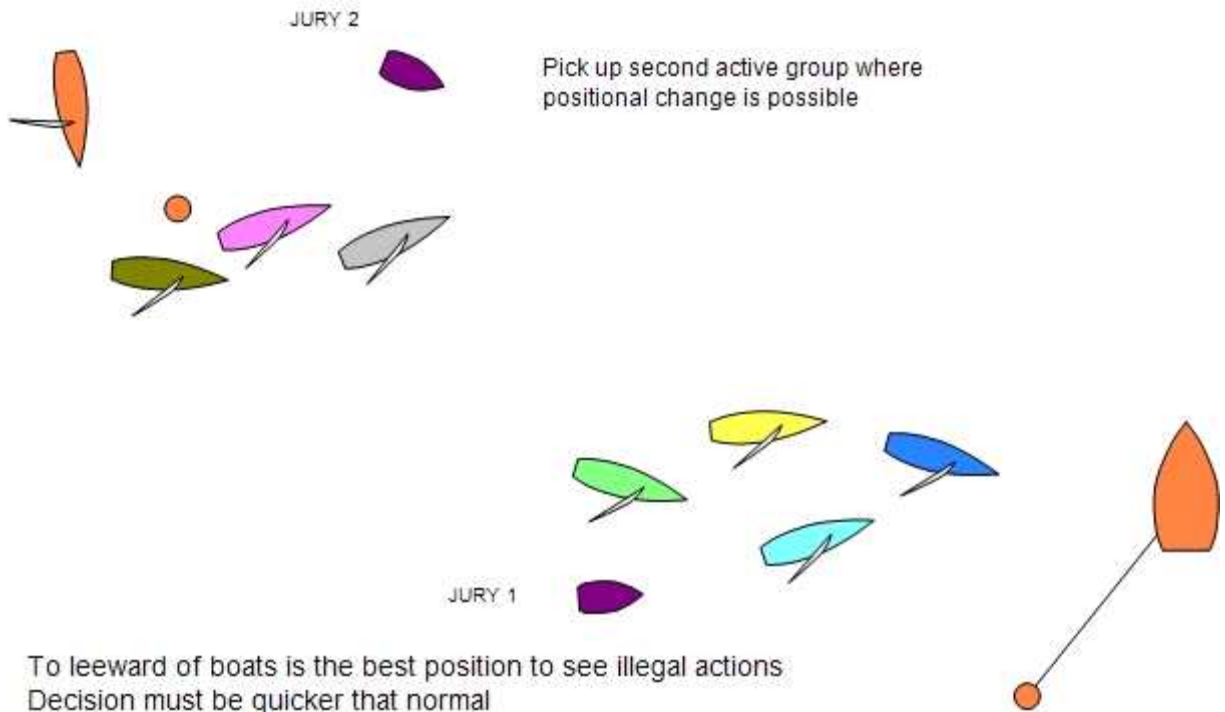
Be aware that the penalty for the competitor's second, third or subsequent yellow flag protest is to retire from the race instead of doing a Two-Turns Penalty. If the finish is crowded and the race committee is busy, the competitor may wait for a clear opportunity to notify the race committee that they are retiring.

심판이 선수에게 두 번째, 세 번째 또는 그 이후의 노란기 벌칙을 부과하였을 경우, 선수는 <두-바퀴 돌기 벌칙>을 하는 대신, 리타이어 하여야 한다는 것에 유의할 것. 피니시라인이 혼잡하고, 경기위원회가 바쁘면, 선수는 경기위원회에 리타이어한다고 알릴 확실한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



## R42 FINAL REACH BREACHES

Pumping  
Body pumping  
Rocking



### Common infractions

#### 일반적인 위반사항

- Pumping to pass one or two boats just as the boats are finishing  
보트가 피니시라인에 근접했을 때, 한두 척의 보트를 따라잡기 위한 펌핑
- In light air on beats or runs to a finish, roll tacks or gybes that are forceful and either repeated and unrelated to wind changes or tactics, or that result in the boat going faster than it would have without tacking or gybing  
미풍에서 피니시라인을 향해 범주하는 풍상-코스 또는 런-코스에서, 바람의 변화나 전술과 무관한 강력하고 반복적인 롤택 또는 롤자이빙, 또는 태킹이나 자이빙을 한 다음의 속도가 태킹이나 자이빙을 하지 않았을 때 보다 더 빨라지는 경우
- Often, if two boats are close coming into the finish, a boat will try one big roll and a pump, or both, to pull ahead just at the finish. In these situations, the

judge needs to be ready to react quickly, but correctly. One roll or one pump does not break a rule, unless it clearly propels the boat and breaks rule 42.1.

종종 두 척의 보트가 피니시라인에 가까워지면, 한 척 또는 두 척 모두 큰 롤과 펌핑을 시도하여, 빨리 피니시하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심판은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한 번의 롤링 또는 한 번의 펌핑은, 보트를 확실히 추진함으로써 규칙 42.1을 위반하지 않는 한 규칙 위반이 아니다.

#### Positioning of Jury boats

##### 심판 보트의 위치

A jury boat should position itself near the last leeward mark and move towards the finish with the leaders. The jury boat should position itself close to and to leeward of the first small group of closely competing boats and follow them to the finish. It should then remain at the finishing area.

한 심판 보트는 마지막 풍하마크 가까이에 자리를 잡고, 선두 그룹과 함께 피니시라인을 향하여 움직여야 한다. 심판 보트는 근접하여 경쟁하는 첫 번째 소규모 보트 그룹의 풍하 가까이 위치하여, 선수들이 피니시할 때까지 따라가야 한다. 그런 다음, 피니시 구역에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

The second jury boat should watch the end of the last run, and then patrol the final reaching area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pressure points where boats are close together and passing might be possible by infringing rule 42.

두 번째 심판 보트는 후미 그룹이 마지막 런-코스를 마치는 것을 지켜본 다음, 특히 보트들 서로 근접하여 있고, 규칙 42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그룹에 주의하면서, 마지막 리칭-코스 수역을 관찰하여야 한다.

## J Judges and Youth Sailors

### 심판과 청소년 선수

Contents	Page
목차	페이지
J.1 Introduction	J1
소개	
J.2 Definition of Youth Sailors	J2
청소년 선수의 정의	
J.3 Behavioral Expectations at Youth Regattas	J2
청소년 대회 행동 기대치	
J.4 Visibility of Judges	J3
심판의 시인성	
J.5 Regatta Briefings	J3
대회 브리핑	
J.6 Communication with Youth Sailors and Their Support Persons	J3
청소년 선수 및 그들의 지원인력과의 의사소통	
J.7 Hearings	J4
청문	
J.8 Observers at Hearings	J4
청문의 옵저버	
J.9 Use of the Protest Flag	J4
항의기 사용	
J.10 Rule 42 and Appendix P	J4
규칙 42 및 부칙 P	
J.11 Support Persons and Support Boats	J5
지원인력 및 지원보트	
J.12 Child Protection and Rule 69 Misconduct	J5
아동보호 및 규칙 69 <부정행위>	

#### J.1 Introduction

##### 소개

This section helps judges understand their role in the development of young sailors. The underlying principle is that all youth sailors receive the greatest

possible value from their participation in the sport and are encouraged to remain in sailing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ey are the future of our sport. This section discusses issues arising in youth events, ranging from local club racing to international events, posing unique cross-cultural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이 절은 청소년 선수들의 발전을 위하여 심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을 돕는다. 기본 원칙은 모든 청소년 선수들이 세일링 스포츠에 참여함으로써, 가능한 한 최대의 가치를 얻고, 오랜 기간 동안 세일링 스포츠에 머물도록 격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 스포츠의 미래이다. 이 절에서는 지역 클럽 경기에서 국제 대회에 이르기까지, 청소년 대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며, 다양한 문화의 체험과 그 기회에 대한 질문에 답한다.

Youth sailors have varying needs and interests. They will be at very different levels of competence, experience and knowledge of the rules. Even a difference of one or two years between youth competitors within their age category may make differences in their understanding, self-control, capacity to speak clearly in front of a group, resistance to stress and pressure, and skill development.

청소년 선수들은 다양한 욕구와 관심사를 가지고 있으며, 매우 다른 수준의 능력, 경험 및 규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같은 연령대의 청소년 선수들 사이에서도, 1~2년 정도의 차이로, 이해력, 자제력, 그룹 앞에서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 스트레스와 압박에 대한 저항력, 기술 개발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Race officials, coaches and parents at an event are in positions of leadership and trust and therefore have a responsibility to present the sport to the sailors in a way that maximizes their participation, enjoyment, security and satisfaction. Coaches and parents have multiple roles, not only the support of their youth sailors ashore or on the water, but also in communication, race management, rescue and protest proceedings.

대회의 운영요원, 코치 및 부모들은 리더십과 신뢰의 위치에 있으므로, 선수들의 참여, 즐거움, 안전 및 만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선수들에게 세일링 스포츠를 소개할 책임이 있다. 코치와 부모는 육상이나 수상에서, 그들이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선수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경기 관리, 구조 및 항의 절차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When a young sailor is exposed to harm, injury, harassment, bullying or a similar negative experience, the enjoyment of sailing is compromised, with the potential for the sailor dropping out of the sport. Young sailors must also learn how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own safety and the safety of others.

청소년 선수가 상해, 부상, 괴롭힘, 따돌림 또는 이와 유사한 부정적인 경험에 노출되면, 세일링의 즐거움이 감소되어, 결국 세일링 스포츠를 그만 둘 가능성이 있다. 또한, 청소년 선수들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책임지는 법도 배워야 한다.

Officials at events with youth sailors should be aware of ethical issues in sport. Of particular concern are doping, child abuse, spectator violence, sexual assault and misconduct, lack of respect for race officials and other competitors, and undue parental or entourage pressure on young children.

청소년 선수들과 함께하는 대회의 관계자들은, 스포츠의 윤리적 문제를 인식하여야 한다. 특히 도핑, 아동 학대, 관중 폭력, 성폭행 및 부정행위, 운영요원과 상대 선수에 대한 존중 결여, 어린 선수에 대한 부모 또는 코치의 과도한 압박이 우려된다.

Judges should be aware of any policies that a class may have with regard to protest procedures. For example, a class may prescribe a time limit for protest hearing involving younger age categories.

항의 절차와 관련하여, 심판은 각 클래스 별로 다르게 가질 수 있는 모든 방침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클래스는 더 어린 연령대와 관련된 항의청문에 대한 시간제한 규정을 둘 수 있다.

## J.2 Definition of Youth Sailors

### 청소년 선수의 정의

The racing rules do not prescribe any age groupings of sailors. However, certain class associations prescribe age groups for racing and protest procedures, based on the traditions and policies of their class.

경기 규칙에는 선수의 연령에 따른 그룹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어떤 클래스협회는 해당 클래스의 전통과 방침에 따라, 경기 및 항의 절차에 대한 연령에 따른 그룹을 규정하고 있다.

Youth sailors are generally aged from about 9 to 18 years old, though some classes include competitors aged 19. Local legislation applies, particularly in matters of child protection.

청소년 선수는 일반적으로 약 9세에서 18세 사이이지만, 일부 클래스에서는 19세의 선수도 포함한다. 특히, 아동보호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현지 법률이 적용된다.

Judges need to adapt their communication styles to the individual behavior of youth sailors. Since chronological age may be a poor indicator of maturity, an age-dependent approach may not be good developmental practice. A more appropriate approach is to consider maturity in terms of readiness. Readiness assumes that certain experiences have been accumulated that allow the young person to learn new skills and take in new information. A child or young person's readiness will depend on his or her:

심판들은 그들의 의사소통 방식을 청소년 선수들의 개별 행동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산술적인 나이가 선수들의 성숙도에 대한 정확한 지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나이에 의존하는 접근법은 좋지 않을 수 있다. 보다 적절한 접근법은, 준비상태 측면에서 성숙도를 판단하는 것이다. 준비상태란, 청소년에게 축적된 특정 경험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어린이나 청소년의 준비상태는 그들에게 달려있다:

- physical readiness, i.e., mastery of fundamental movement skill, growth;  
신체적 준비상태, 즉, 기본적인 운동 기술의 숙달, 성장;
- social readiness, i.e., sense of self, support and encouragement from parents and



friends:

사회적 준비상태, 즉, 자아인식, 부모와 친구들로부터의 지지와 격려;

- motivational readiness, i.e., expressing a desire to participate and learn:  
동기적 준비상태, 즉, 참여하고 배우고자 하는 열망에 대한 표현;
- cognitive readiness, i.e., ability to understand instruction, rules or tactics, in a relevant language, ability to re-build an on-the-water situation through statements, drawing and witness evidence:  
인지적 준비상태, 즉, 범주지시서, 규칙 또는 전술과 관련된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진술서, 도해, 증인의 증거를 바탕으로 수상에서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능력;
- experience with hearings and their procedures:  
청문 및 그 절차에 대한 경험;
- psycho-social readiness, i.e., the ability to accept that the same situation may be perceived differently by distinct persons resulting in different statements and evidence, and that a different statement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the person making it is lying.  
심리-사회적 준비상태, 즉, 사람에 따라 동일한 상황을 다르게 인식하여, 서로 다른 진술과 증언을 할 수 있는데, 서로 다른 진술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 J.3 Behavioral Expectations at Youth Regattas

#### 청소년 대회에서의 행동 기대치

Judges can have a major impact on the future conduct of a sailor. There is need for sensitivity in setting the behavioral expectations for a youth regatta. Even minor breaches of the rules should not be accepted because of their age. Strict and fair instruction at the start of a sailor's career can have an important educational effect now and in future competitions.

심판은 선수의 미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심판이 청소년 대회에 대한 행동 기대치를 설정하는 데 있어 세심함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사소한 규칙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어린 나이라는 이유로 눈감아주어서는 안 된다. 선수로서의 경력을 시작하는 시기의 엄격하고 공정한 교육은, 현재와 미래의 대회에서 청소년 선수들에게 중요한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Judges must discourage any attempt of intimidation of a younger or less confident competitor from an older one, or between a native English speaker and an English language learner. Such feeling may discourage youths to continue in the sport of sailing due to a bad perception and lack of confidence in hearing procedures.

심판은 나이가 어리거나 또는 자신감이 부족한 선수에 대한 나이가 많은 선수의 협박 또는, 영어 원어민과 영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없는 선수들 사이의 위협적인 행동을 막아야 한다. 이런 위협적인 행동은, 청소년 선수들에게 나쁜 인식을 심어주고, 청문 절차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이어져서, 청소년들이 세일링 스포츠를 계속할 수 없게 만들 수도 있다.

### J.4 Visibility of Judges

## 심판의 접근성

At all regattas, judges should be approachable by the sailors and their support teams. This is even more important at youth regattas, which may be the sailor's first contact with a protest committee or international jury.

모든 대회에서, 심판은 선수와 지원인력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 대회에서 훨씬 더 중요한데, 왜냐하면 청소년 선수들이 항의위원회나 국제심판단을 처음 접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When judges are ashore and are not required for official duties, they should make themselves available to the sailors. Visit the boat park in pairs, and be available for conversations with sailors, coaches or parents. It is recommended that more than one judge participates in discussions with sailors to avoid any perception of bias, conflict of interest, misunderstanding and other reasons.

심판이 육상에 있고,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선수들에게 자신들의 시간을 할애하여야 한다. 2인 1조로 짝을 이루어 보트 계류장을 방문하여, 선수, 코치 또는 부모들과 대화를 시도할 수 있다. 편견, 이해 상충, 언쟁 및 기타 이유의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두 명 이상의 심판이 선수와의 토론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During regattas, there may be opportunities to give rules workshops. There can also be opportunities ashore to discuss rule and situations with coaches.

대회기간 중, 규칙에 대한 워크숍을 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육상에서, 코치와 규칙 및 상황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다.

## J.5 Regatta Briefings

### 대회 브리핑

Briefings are no different from competitors' briefings at other events, but the chairman of the protest committee may take the opportunity to:

대회 브리핑은 다른 대회의 선수 브리핑과 다르지 않지만, 항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Introduce the members of the protest committee so that sailors and support persons may recognize them throughout the event;  
항의위원회 위원을 소개하여 대회기간 내내 선수와 지원인력이 그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 Advise the sailors that they may approach the members of the protest committee at any time ashore or on the water, except when racing;  
경기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선수들이 육상이나 수상에서 언제든지 항의위원회 위원에게 접근할 수 있다고 알려준다;
- Remind them that sailing is a self-policing sport, and remind them of their obligations under 'Sportsmanship and the Rules'; and  
세일링은 스스로 규제하는 스포츠임을 상기시키고, '스포츠맨십과 규칙'에 따른 의무를 상기

시킨다; 그리고

- Remind them of the behavior standard that is expected of them in relation to the racing rules,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other sailors.

경기규칙 및 다른 선수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그들에게 기대되는 행동기준을 상기시킨다.

For practical reasons, like limited space, number of languages, and class tradition, competitors' briefings at large youth events may be replaced by briefings for coaches or team leaders. Clear instructions to coaches can facilitate good behavior and rule observance by their sailors.

제한된 공간, 다양한 언어권, 각 클래스의 전통과 같은 현실적인 이유로, 대규모 청소년 대회에서의 선수 브리핑은 코치나 팀 리더를 위한 브리핑으로 대체될 수 있다. 코치에게 명확한 지침을 전달하면, 그것이 선수들의 올바른 행동과 규칙 준수를 촉진할 수 있다.

## J.6 Communication with Youth Sailors and Their Support Persons

### 청소년 선수 및 그들의 지원인력과의 의사소통

When speaking with sailors, ask for and use the sailor's name. When explaining rules or interpretations with sailors, use the vocabulary used in the rules, rather than changing the word. Where possible, include the sailor's coach or parent in the conversation. Ensure that another race official is with you during these conversations.

선수와 대화할 경우, 선수의 이름을 묻고, 이를 사용한다. 선수들에게 규칙이나 해석을 설명할 때는, 단어를 바꾸지 말고 규칙서에서 사용하는 어휘를 사용한다. 가능하다면, 선수의 코치나 부모를 그 대화에 포함시킨다. 이 대화를 하는 동안, 다른 운영요원이 당신과 함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J.7 Hearings

### 청문

In hearings, youth sailors should be respected as individuals, and not patronized. The hearing should be formal, and the judges should be firm, respectful, and helpful to all participants. Youth sailors may not have had previous experience in a hearing. Ask at the start of the hearing if this is their first hearing. If it is, the chairman should inform the parties and their coaches and witnesses of the process that will be followed, both initially and as the hearing proceeds.

청문에서, 청소년 선수들은 개인으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아랫사람 대하듯 하면 안 된다. 청문은 격식을 갖추어야 하며, 심판은 단호하고 존중하며, 청문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 청소년 선수들은 청문에 참석한 경험이 없을지도 모른다. 청문을 시작할 때, 이것이 첫 청문인지 물어본다. 만약 그렇다면, 패널위원장은 당사자와 그들의 코치 그리고 증인들에게 청문이 진행되는 초기 과정과 진행 과정을 모두 알려주어야 한다.

Anticipate and arrange for interpreters prior to hearings between sailors with no common language. Where possible, have a judge who speaks the same language as

the competitor to act as an interpreter. Otherwise, support team members may be used as interpreters.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는 선수들 사이의 청문일 경우, 사전에 이를 예상하고, 통역을 준비한다. 가능하다면, 통역을 할 수 있는 심판을 배정하여, 통역을 맡긴다. 그렇게 할 수 없을 경우, 지원인력을 통역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Judges should use the vocabulary of the rules throughout the hearing and when communicating the facts found, conclusion and decisions. This will avoid misunderstanding. A younger sailor may not have a full understanding of the terminology, rules and procedures. Provide explanations when needed. Ask questions that use defined terms by giving their definitions.

심판은 청문을 진행하는 동안 그리고 판명된 사실, 결론 및 판결을 전달할 때, 규칙서에 있는 어휘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래야 오해를 피할 수 있다. 청소년 선수는 용어, 규칙 및 절차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필요할 경우 설명해 준다. 규칙서의 <정의>에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질문하여야 한다..

While giving the decision at the end of the hearing, the chairman should check that all parties have understood the reasons for the decision.

청문의 마지막에 항의위원회의 판결을 전달하는 동안, 패널위원장은 모든 당사자 판결 이유를 이해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J.8 Observers at Hearings

### 청문의 옵저버

Observers at hearings should be encouraged at youth regattas. Besides coaches and parents, it may be beneficial for other sailors to observe the process, if space is available. The normal rules for observers in the section on Hearings will apply. Make the observers aware of these rules prior to the hearing starting.

청소년 대회에서 청문의 옵저버는 권장되어야 한다. 공간이 허락할 경우, 코치와 부모 외에도, 다른 선수들이 청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그 선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청문> 절의 옵저버에 대한 일반 규칙이 적용된다. 청문이 시작되기 전에, 옵저버에게 이러한 규칙을 알려야 한다.

## J.9 Use of the Protest Flag

### 항의기 사용

The racing rules do not require a protest flag for some classes of boats that youth sailors sail. Be aware of the class rules regarding protest flags and any special procedures that a class might have.

세일링 경기규칙은, 청소년 선수가 범주하는 일부 클래스 보트에 대해서, 항의기의 사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항의기와 관련된 클래스규칙과 각 클래스에 따른 모든 특별 절차에 대하여 숙지하여야 한다.

## J.10 Rule 42 and Appendix P

### 규칙 42 및 부칙 P

The use of Appendix P on the water to monitor compliance with rule 42 should be encouraged at youth regattas. This helps the sailors to understand the mechanics of rule 42 and encourages compliance with other rules.

규칙 42의 준수 여부를 관찰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회에서는 수상에서 부칙 P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어야 한다. 이는 선수들이 규칙 42의 적용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다른 규칙들도 준수하도록 한다.

At some youth regattas, the sailing instructions modify Appendix P so that the Two-Turns Penalty is used for all Appendix P penalties. Rule 42 compliance should be judged at a consistently high standard. This assists the sailors in understanding what actions are prohibited by rule 42 and allows them to learn from their mistakes.

일부 청소년 대회에서는, 범주지시서에서 부칙 P를 수정하여, 모든 부칙 P 벌칙에 <두-바퀴 돌기 벌칙>이 사용되도록 한다. 규칙 42 준수 여부는 일관되게 높은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 선수들은 규칙 42에 따른 금지된 동작을 이해하고,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다.

Judges must insist that the Two-Turns Penalty or retirement, if required, be completed in compliance with rule 44. When a boat does not complete her penalty, judges should take the appropriate action in Appendix P.

필요할 경우, 심판은 규칙 44에 따라 <두-바퀴 돌기 벌칙> 또는 리타이어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보트가 벌칙을 제대로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심판은 부칙 P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The section On the Water Judging Rule 42 and Appendix P in this manual, provides details on how judges operate under Appendix P. Being approachable and available on and off the water to explain penalties is essential for youth sailors to understand compliance with rule 42.

이 매뉴얼의 <규칙 42와 부칙 P를 수상에서 판결하기> 절에서, 부칙 P에 따라 심판들이 어떻게 운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벌칙을 받은 선수가, 육상과 수상에서, 그 벌칙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심판에게 접근할 수 있고, 심판들이 그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청소년 선수들이 규칙 42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 J.11 Support Persons and Support Boats

### 지원인력 및 지원보트

Support persons are bound by rule 4 to accepting the rules. This includes parents of youth sailors. It is therefore useful to remind support persons of their obligations to follow rules on shore and on the water. This is particularly useful when parents bring new youth sailors to the events and are new to the rules

themselves.

지원인력은 규칙 4에 따라 규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는 청소년 선수의 부모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지원인력들에게 육상과 수상에서 경기규칙을 지켜야 할 의무를 상기시키는 것이 유용하다. 이는 새로운 청소년 선수를 대회에 데려온 부모들이, 경기규칙 자체를 처음 접할 때, 특히 유용하다.

Support boats are an important part of the safety routine at a regatta. The movement and placement of support boats need to be restricted but can allow the boats to transit around the course following the limitations included in the sailing instructions or the coach boat regulations or both.

지원보트는 대회에서의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 중요하다. 지원보트의 이동 및 배치는 제한되어야 하지만, 범주지시서나 코치보트 규정 또는 둘 다에 포함된 제한 사항을 준수하면서, 지원보트가 코스를 돌아다니도록 허용할 수 있다.

Should a protest committee call a hearing to consider whether a support person has broken a rule, all boats that person supports should be invited to the hearing, as they are parties. Should the allegation be upheld, the competitors should be warned that they may be penalized later if the support person commits a further breach. These procedures are explained in the section The Hearing in this manual. 항의위원회가 지원인력의 규칙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하여 청문을 소집할 경우, 그 사람이 지원하는 보트는 모두 당사자이므로, 청문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지원인력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 지원인력이 추가적으로 규칙을 위반할 경우, 나중에 벌칙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해당 선수들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이 절차는 이 매뉴얼의 <청문>절에 설명되어 있다.

Not all young sailors will have support personnel on the water. Jury boats should not tow boats to the course area before racing, even if there is no wind. This avoids the appearance of showing favor to any boats. However, towing boats ashore after racing is acceptable as long as the judge shows no bias or preference as to which boats they give assistance.

모든 청소년 선수들이 수상에 지원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바람이 불지 않더라도,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심판 보트는 코스 구역으로 보트를 예인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특정 보트에 호의를 보이는 것 같은 인상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심판이 어떤 보트에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편견이나 선호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경기를 마친 후, 육상으로 보트를 예인하는 것은 허용된다.

## J.12 Child Protection and Rule 69 Misconduct

### 아동보호 및 규칙 69 <부정 행위>

Guidance on child protection issues and the use of rule 69 with minor children is provided in Appendix H of the World Sailing Misconduct Guidance. Judges are strongly advised to study and follow these procedures before beginning any investigation that might involve child abuse, child protection or bullying. Local child protection laws will have specific requirements that must be followed

carefully. The chairman should seek guidance from local authorities, should such a matter arise. The worst-case scenario is that a race official, however well-meaning and despite acting in good faith, will interfere with the course of justice by interviewing a child or investigating a serious complaint in the incorrect manner.

아동보호 문제 및 미성년 아동에 대한 규칙 69 사용에 대한 지침은 월드세일링 <부정행위 지침>의 부칙 H에 있다. 심판들은 아동학대, 아동보호 또는 따돌림이 포함될 수 있는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절차를 연구하고, 그 지침에 따를 것을 강력히 권고 받는다. 지역 아동보호법에는 주의 깊게 따라야 하는 구체적인 요건이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항의위원장은 지역 당국에 그 지침을 요청하여야 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운영요원이 아무리 올바른 신념과 선의를 가지고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어린 선수를 인터뷰하거나 심각한 불만사항을 조사하는 등 정당한 사법 절차를 위반하는 것이다.

## K Judging Oceanic and Offshore Racing

### 대양 및 외양 경기 심판

Contents	Page
목차	페이지
K.1 Protest Committee Composition and Organization 항위위원회 구성 및 조직	K1
K.2 Responsibilities of the Protest Committee 항의위원회의 책임	K2
K.3 Specific Rule Changes in Sailing Instructions 범주지시서에서의 특정한 규칙 변경	K3
K.4 Procedures for Hearings 청문 절차	K4
K.5 Penalties 벌칙	K5
K.6 Requests for Redress 구제요청	K6

### ABBREVIATIONS

#### 약어

DPI Discretionary Penalty Imposed

임의재량벌칙이 주어졌음

DNE Disqualification that is not excludable

제외할 수 없는 실격

DSQ Disqualification

실격

IRPCAS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OSR World Sailing Offshore Special Regulations

<월드세일링 외양특별규정>

TSS Traffic Separation Schemes in IRPCAS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의 통행분리 방식

### PREAMBLE



## 전문

This chapter provides information and help for judges at offshore and oceanic races. For readability and understanding, it follows the outline of the RRS Appendix N describing the duties of the international jury. The chapter takes into account that Oceanic and Offshore racing requires procedures that change the RRS (in accordance with rule 86), respecting as closely as possible the basic principle of Racing Rule of Sailing Part 5 Section B. This chapter also comments on some specific procedures at offshore and oceanic races.

이 장은 외양 및 대양 경기 심판들에게 정보와 도움말을 제공한다. 가독성과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제심판단의 임무를 설명하는 RRS 부칙 N의 개요를 따른다. 이 장에서는 대양 및 외양 경기가 RRS를 변경하는 절차 (규칙 86에 따라)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RRS 제5장 B절의 기본 원칙을 최대한 준수하였다. 또한 외양 및 대양 경기에서의 특정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 K.1 Protest Committee Composition and Organization

#### 항의위원회 구성 및 조직

Where possible, include members of the protest committee who have knowledge of navigation calculations, tracking systems, electronic charts, GPS and meteorological analyses, needed to decide the appropriate penalties and redress in hearings. A good knowledge of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IRPCAS) and the World Sailing Offshore Special Regulations (OSR) is also needed. If no member of the protest committee has this knowledge, an independent expert may be called when needed to give evidence. The race committee or the race director may also provide information and technical help.

가능한 경우, 항법 계산, 트래킹 시스템, 전자해도, GPS 및 기상 분석에 대한 지식을 갖춘 항의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청문에서 적절한 처벌과 구제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IRPCAS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및 OSR <월드세일링 외양특별규정>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 항의위원 중 이러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다면, 증거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 독립적인 전문가를 부를 수도 있다. 경기위원회 또는 경기위원장도 정보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A meeting of the full protest committee prior to the start and finish of the race is recommended. At the initial meeting the communications methods within the protest committee may be established. All members should be familiar with the use of the chosen technology. The aim is to define a policy to reduce misunderstanding and to ensure confidentiality.

대회가 시작되기 전 그리고 종료 전에, 항의위원회의 전체 회의가 권장된다. 최초 회의에서, 항의위원회 내의 소통 방법을 정립할 수 있다. 모든 위원은 항의위원회가 사용하기로 선택한 기술의 사용에 익숙하여야 한다. 그 취지는 오해를 줄이고, 기밀을 유지하기 위한 방침을 정하는 것이다.

During the race, the protest committee may resolve issues remotely, by email,

conference call, or other means. All judges must be available for contact throughout the race.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항의위원회는 이메일, 화상 회의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하여 원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모든 심판은 경기 내내 연락할 수 있어야 한다.

In a race that has various legs and stop-overs, the composition of the protest committee might not remain consistent. For continuity in a race that has various legs, it is preferable to keep at least the chairman and one other member of the protest committee throughout the entire race. After a leg of the race, local judges may take part in the PC, provided that all the required skills required are maintained.

다양한 렉과 중간 기착지가 있는 대회에서는, 항의위원회의 구성이 일관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다양한 렉이 있는 대회에서, 항의위원회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대회 전체에 걸쳐 최소한 항의위원회 위원장과 다른 1명의 항의위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기의 렉이 끝난 후, 항의 청문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중간 기착지의 지역 심판들이 항의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다.

Protest committee members must handle information relating to emergencies, serious accidents or any dangers relating to competitors sensitively. The confidentiality of the information must be safeguarded. The chapter on Crisis Management in the World Sailing Race Management provides guidance.

항의위원회 위원은 긴급 상황, 심각한 사고 또는 선수의 위험과 관련된 정보를 세심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비밀유지가 필요한 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월드세일링 경기운영>의 위기관리장에서 그 지침을 제공한다.

## K.2 Responsibilities of the Protest Committee

### 항의위원회의 책임

The responsibilities of the international jury set out in Appendix N2 are no different from those at other events. Since oceanic events span long periods of time, a good working relationship among all race officials is essential. It is also essential to maintain the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of the international jury.

RRS 부칙 N2에 명시된 국제심판단의 책임은 다른 대회의 책임과 다르지 않다. 대양 대회는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모든 운영요원들 사이에 좋은 협력 관계가 필수적이다. 국제심판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Pre-race protests on measurement and safety equipment or class requirements must be handled sensitively. Sensitive information about equipment or the race may be involved and might draw attention from the media. Judges must take extra care to safeguard this information.

계측 및 안전 장비 또는 클래스의 요건에 대한 경기-전 항의는 민감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장비 또는 경기에 대한 민감한 정보가 관련될 수 있으며, 언론의 관심을 받을 수도 있다. 심판은 이러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If referred by the organizing authority, the protest committee's responsibilities may include under rule N2.3:

조직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항의위원회의 책임에는 규칙 N2.3에 따라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BEFORE THE RACE:

대회가 시작되기 전:

- check the sailing instructions for consistency with the notice of race and class rules, relevance of any national prescriptions, and changes to racing rules;  
범주지시서가 대회공고 및 클래스규칙, 국가 규정과의 관련성, 경기규칙의 변경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consultation on race management's intention, keeping in mind RRS 85, 86, 87, and 88;  
RRS 85, 86, 87 및 88을 염두에 두고, 경기운영의 의도에 대하여 협의한다;
- establish and publish any discretionary penalties, or how navigational penalties may be calculated.  
재량벌칙 또는 항행벌칙(navigational penalties)의 계산 방법을 정립하고 공표한다.

DURING THE RACE: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 extensive consultation may be required at various stages of the race, for safety reasons such as relocating ice gates, or to extend or shorten the race.  
아이스 게이트(ice gates)의 이동과 같은 안전상의 이유, 또는 경기를 연장하거나 단축하기 위하여, 대회의 다양한 단계에서 광범위한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
- giving advice in relation to the RRS as consultants to the organizing authority, race committee or technical committee.  
조직위원회, 경기위원회 또는 기술위원회의 자문관으로서, RRS와 관련하여 조언을 제공한다.

AFTER THE RACE:

대회를 마친 후:

- if applicable, financial penalties, misconduct, etc.  
해당될 경우, 금전적 벌칙(financial penalties), 부정행위 등

### **K.3 Specific Rule Changes in Sailing Instructions**

#### **범주지시서에서의 특정한 규칙 변경**

The notice of race or sailing instructions may make various changes to the racing rules. This list, while not exhaustive, shows many examples of the rules that typically are changed in the sailing instructions in these categories:

대회공고 또는 범부지시서는 경기규칙에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다. 이 목록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범부지시서로 변경되는 규칙의 다양한 사례를 보여 준다:

#### RELATED TO PROTEST PROCEDURES AND DECISIONS OF THE PC 항의위원회의 항의절차 및 판결 관련

- modifications to protest procedures in RRS Part 5 in accordance with rule 86, to establish a different method for conducting hearings:  
규칙 86에 따라, RRS 제5장의 항의절차를 변경하여, 청문을 진행하는 다른 방법을 설정한다;
- change rule 64.2 so that the protest committee may impose a DPI instead of a DSQ for breaches of specified rules. Typical examples are for rule 28, rule 29, and rule 31;  
규칙 64.2를 변경하여, 항의위원회가 특정 규칙위반에 대하여 <실격(DSQ)> 대신 <임의재량 벌칙(DPI)>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적인 예는 규칙 28, 규칙 29 및 규칙 31이다;
- discretionary penalties involving navigation and breaches of Part 2 rules should be calculated at the hearing;  
항행관련 규칙 및 제 2장의 규칙 위반과 관련된 재량 벌칙은 청문에서 계산되도록 한다;
- various time limits for boats to deliver a protest before the race, while racing, and after the race;  
경기가 시작되기 전,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경기를 마친 다음에 보트가 항의서를 제출하는 다양한 시간 제한;
- various time limits for protests by the race committee, technical committee, protest committee, modifying rule 61;  
규칙 61을 수정하여, 경기위원회, 기술위원회, 항의위원회에 의한 항의의 다양한 시간 제한;
- circumstances in which a boat may be eligible for redress if she is stopped or delayed during the race due to actions of a governmental or official body.  
정부 또는 공식 기관의 조치로 인하여, 경기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경우, 보트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

#### RELATED TO OUTSIDE HELP, RULE 41

##### 규칙 41, 외부의 도움 관련

- organizers will frequently prohibit the use of routing and provide or limit access to a common set of weather forecast files to all participants in the race. Check with the race committee how it is controlled, and if it is reliable.  
조직위원회는 자주 데이터 라우팅(routing)의 사용을 금지하고,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참가자들에게 공용 일기예보 파일을 제공하거나 또는 그 접근을 제한한다. 그것이 어떻게 통제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경기위원회에 확인한다.
- may boats receive shore-based technical advice for on-board repairs?  
보트는 선체 수리를 위하여 육상으로부터 기술 조언을 받을 수 있는가?
- are technical stops permitted?  
기술적 정지(technical stop)는 허용되는가?

- will verbal outside help be permitted to resolve medical problems while racing?  
경기 중, 의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육성으로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 which sort of outside help is permitted?  
어떤 종류의 외부 도움이 허용되는가?

#### RELATED TO SAFETY

##### 안전 관련

- attending safety briefings before the race;  
경기 전 안전 브리핑 참석;
- for safety reason, changing rule 30 for boats that are OCS;  
안전상의 이유로, OCS인 보트에 대한 규칙 30의 벌칙 변경;
- changes to rule 44 for penalties for breaches of RRS Part 2 and rule 31;  
RRS 제2장 및 규칙 31 위반에 대한 규칙 44의 벌칙 변경;
- scheduled radio session imposed by race management for safety.  
경기운영 측에서 안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무전 세션 일정.

#### RELATED TO NAVIGATION

##### 항행 관련

- specific prohibited zones, TSS;  
특정 금지구역, TSS (IRPCAS의 통행분리방식);
- specifications of where and when RRS Part 2 rules apply, and where and when IRPCAS apply between boats racing, keeping in mind that IRPCAS always apply between vessels;  
배들(vessels) 사이에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이 항상 적용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RRS 제2장의 규칙이 적용되는 장소와 시기, 그리고 경기 중인 보트들 사이에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이 적용되는 장소와 시기에 대한 상세 내역;
- protected (forbidden) zone for the starting sequence, and when they apply (often one hour or more before the start)  
스타트 절차에 대한 보호 (금지) 구역 및 적용 시점 (종종 스타트 전 1시간 또는 그 이상);
- virtual mark: see experimental Appendix WP on the World Sailing website  
<https://www.sailing.org/documents/racingrules/experimental-rules.php>  
가상 마크: 월드세일링 웹사이트의 실험적인 부칙 WP 참조;  
<https://www.sailing.org/documents/racingrules/experimental-rules.php>
- whether an engine may be used to enter a port in case of emergency, repairs or medical treatment, subject to report to the race committee;  
경기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긴급 상황, 수리 또는 치료를 위한 입항 시 엔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whether the boat is permitted to go into port;  
보트의 입항 허가 여부;
- whether the boat is permitted to be hauled out in port;  
항구에서 보트의 육상올리기가 허용되는지 여부;
- whether crew members are permitted to go ashore or during technical repairs

stops;

승정원들이 육지에 상륙할 수 있는지 또는 기술적인 수리를 위한 정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whether crew may be replaced for medical reasons during a race.  
경기 중, 의학적 이유로 승정원을 교체할 수 있는지 여부.
- [World Sailing Development Rule DR21-01 Alternative Starting Penalty, available at https://www.sailing.org/tools/documents/DR2101AlternativeStartingPenaltyDevelopmentRule-%5b27257%5d.pdf](https://www.sailing.org/tools/documents/DR2101AlternativeStartingPenaltyDevelopmentRule-%5b27257%5d.pdf)

## RELATED TO MEDIA REQUIREMENTS IN THE NOTICE OF RACE AND SAILING INSTRUCTIONS

대회광고 및 범주지시서의 언론 요건 관련

- attending press conferences, opening ceremonies, prize-giving ceremonies and prologue races  
기자 회견, 개회식, 시상식, 프롤로그 경기 참석
- complying with advertising requirements.  
광고 요건 준수.
- radio or video session imposed by race management for media purposes  
경기운영 측에서 언론취재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라디오 또는 비디오 세션

## K.4 Procedures for Hearings

### 청문 절차

Even though there are specific hearing procedures for offshore and oceanic races, the protest committee must always protect each party's right to be heard, no matter what hearing procedure is followed. The scheduling of hearings conducted while racing, whether by email or other means, should accommodate sailors for fatigue or weather considerations. It is preferable that both boats agree on the time for the hearing.

외양 및 대양 대회에 대한 특정 청문 절차가 있더라도, 항의위원회는 어떤 청문 절차를 따르든, 항상 각 당사자의 청문권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이메일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하여 실시되는 청문의 일정은 승정원들의 피로도 또는 날씨를 고려하여 잡아야 한다. 청문 시간은, 청문의 당사자들인 두 보트와 협의하여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 BEFORE THE START

스타트 전

The full protest committee should be present on site, if possible. If any hearings need to be conducted before the start, the protest committee should be aware that there is no requirement for any party to check the notice board. Therefore, if a sailor or support person is called in for a hearing, the notice should be made in writing and delivered to the person himself. While this is true for all regattas, it is

more likely to occur at an oceanic or offshore event, for example in the case of measurement issues, the OSR, etc.

가능하면, 전체 항의위원회가 현장에 있어야 한다. 스타트 전에 청문을 개최하여야 할 경우, 항의위원회는 어느 당사자도 게시판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인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문에 승정원이나 지원인력을 소집해야 할 경우, 그 통지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는 모든 대회에 해당되지만, 특히 대양 또는 오프쇼어 대회에서 스타트 전에는, 계측 또는 <월드세일링 외양특별규정>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

#### DURING THE STARTING SEQUENCE

스타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Protests involving the rules of Part 2 are likely to occur during the starting sequence or around the initial rounding mark. Having members of the protest committee on the water is helpful. Especially early in the race, competitors may prefer to concentrate on racing and avoiding traffic rather than take time for a hearing via conference call or to write a complete statement. They may be able to respond to email or other written communications later, depending on weather and their progress in the race.

RRS 제2장의 규칙과 관련된 항의는, 스타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또는 첫 번째 마크돌기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수상에 항의위원회 위원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 특히 경기 초반에 선수는, 전화회의를 통한 청문에 시간을 할애하기 보다는 경기에 집중하여 체증 구간을 피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고, 또는 완성된 항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선수들은 날씨와 경기진행 상황에 따라, 나중에 이메일이나 다른 서면 통신방법으로 항의위원회의 요청에 응답할 수 있다.

If there is no agreement on the facts of a protest involving the rules of Part 2 or IRPCAS, it is often better to have a hearing after the finish. An exception could be if there is damage and a request for redress.

RRS 제2장 또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의 규칙과 관련된 항의에서 판명된 사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종종 해당 구간을 피한 후, 청문을 진행하는 것이 더 좋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손상 및 구제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청문을 진행할 수 있다.

#### DURING THE RACE AND WHILE RACING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및 경기 중

After the start, organisers frequently wish to have any protests or requests for redress resolved prior to boats finishing. The timing of conference calls for hearings and decisions must recognize that protest committee members may be in diverse locations and time zones. The chairman should give enough time to members to answer e-mails and set a timeline for answers.

스타트 후, 조직위원회는 보트가 피니시하기 전에 항의 또는 구제요청이 해결되기를 바란다. 청문 및 판결을 위한 전화 회의의 시간은 항의위원회 위원들이 다양한 위치와 시간대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항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들이 이메일에 답할 수 있는 충

분한 시간을 주어야 하며, 답변 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 AT OPEN SEA

난바다에서

Protests between boats are infrequent. Protests from the race committee, technical committee and protest committee are more frequent.

보트 사이의 항의는 드물다. 경기위원회, 기술위원회 및 항의위원회에 의한 항의가 더 자주 발생한다.

Protests by the race committee often relate to infringements of the IRPCAS, including rule 10 Part B relating to TSS. Keep in mind that some infringements of the IRPCAS may lead to an appearance in a national maritime high court.

경기위원회의 항의는 종종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의 위반과 관련이 있는데, (주로) 그 B장의 규칙 10 <TSS>와 관련된 것을 포함한다. 일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의 위반은 국가해양고등법원에 출두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When the protest has been decided, it may be communicated to all parties involved. A copy should be sent to all other committees for practical application and information.

항의 판결이 났을 경우,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판결문의 사본은 실제 적용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관련된 모든 위원회로 보내져야 한다.

#### AFTER THE FINISH

피니시 후

Protests after finishing are most frequently from the race committee and technical committee, in relation to broken seals or lost equipment.

피니시 후 항의의 대부분은, 트래킹 장치의 봉인 또는 트래킹 장비 분실과 관련되며, 경기위원회와 기술위원회에서 제출하는 것이다.

## K.5 Penalties

### 벌칙

In races of extended duration, disqualifying boats for rules breaches is usually inappropriate. For example, there is no DNE in The Ocean Race, the Figaro or the Vendee Globe. The longer the race, the more reluctant organisers may be to see a boat disqualified. There is a tendency to rely more on discretionary penalties (DPI). 장기간에 걸친 대회에서, 규칙 위반으로 보트를 실격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예를 들어, The Ocean Race, Figaro 또는 Vendee Globe와 같은 대회에서는 <제외할 수 없는 실격(DNE)>이 없다. 기간이 긴 대회일수록, 주최측은 보트가 실격되는 것을 더 꺼릴 수 있으며, <임의재량벌칙(DPI)>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The use of DPIs should be stated in the sailing instructions and may vary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organizing authority and the culture of the race. There is as yet no consistent approach to DPI for offshore and ocean racing, but a number of organisers have developed models for addressing penalties.

<임의재량벌칙(DPI)>의 사용은 범주지시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조직위원회의 요구 사항과 대회에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직 외양 및 대양 경기를 위한 <임의재량벌칙(DPI)>에 대한 일관된 접근 방식은 없지만, 많은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이러한 벌칙을 처리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였다.

#### COMMON DISCRETIONARY PENALTIES (DPI)

일반적인 <임의재량벌칙 (DPI)>

- time penalties, applied as a percentage of elapsed time (offshore races of relative short duration:  
범주한 시간의 백분율로 적용한 시간 벌칙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의 외양 경기);
- time penalties in days / hours / minutes added to the elapsed time;  
범주한 시간에 일/시간/분을 추가하는 시간 벌칙;
- stop penalties, to pass at the same waypoint, after a specified duration;  
지정된 기간이 지난 후, 동일한 중간지점을 통과하도록 하는 정지의 벌칙;
- stay penalties in port for a minimum period;  
최소 기간 동안, 항구에 정박시키는 벌칙;
- financial penalties for breaches of media obligations, which could also be Standard Penalties to be applied by the organizing authority without a hearing.  
언론의무 위반에 대한 재정적 처벌은, 조직위원회가 청문없이 부과하는 표준 벌칙일 수도 있다.

## K.6 Requests for Redress

### 구제요청

This is one of the most difficult parts of the protest committee's work at offshore and oceanic races because giving redress will have a direct impact on results. The most common requests for redress are for:

구제가 주어질 경우, 이는 경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양 및 대양 경기에서의 항의위원회 업무 중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이다. 가장 일반적인 구제요청은 다음과 같다:

- incidents during the starting sequence, resulting from a protest between boats:  
스타트 절차 중 발생한 사건으로 인한 보트들 사이의 항의;
- an alleged improper action of the organizing authority, race committee, protest committee, or technical committee, such as if spectator boats hinder a boat, while the organizing authority is responsible for providing a safe zone as defined in the SI:  
범주지시서에 정의된 안전구역을 제공할 책임이 조직위원회에 있는 가운데, 관람정이 경기

중인 보트를 방해하는 경우 등 조직위원회, 경기위원회, 항의위원회 또는 기술위원회의 부적절한 조치 혐의;

- for a boat giving or attempting to give help to a person or vessel in danger.  
보트가 위험에 처한 사람이나 선박에 도움을 주거나 제공하려고 시도한 경우.
- The value of the redress given is usually expressed as a reduction of the elapsed time, rather than as corrected time. In view of media attention, decisions on redress are best taken and published as soon as possible, and if at all possible, before the boats finish.

구제는 일반적으로 보정된 시간이 아니라 경과된 시간을 빼주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언론의 관심을 고려하여, 구제요청은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가능하다면, 보트가 피니시하기 전에 판결을 내리고 이를 공표하는 것이 최선이다.

## L Judging Radio Sailing

### 무선세일링 심판

Contents 목차	Page
L.1 Introduction 머리말	L 1
L.2.1 Additions to the Notice of Race 대회공고에 대한 추가 사항	L 2
L.2.2 Additions to Sailing Instructions 범주지시서에 대한 추가 사항	L 3
L.3 Umpiring umpiering 방식	L 3
L.4 Equipment 장비	L 3
L.5 Basic Principles of Radio Sailing Umpiring 무선세일링 umpiering 방식의 기본 원칙	L 3
L.6 Umpire Positioning umpiering 위치	L 4
L.7 Unresolved Incidents 해결되지 않은 사건	L 5
L.8 Summary 요약	L 5
Radio Controlled Umpiring Positioning Framework 무선 조종 umpiering 방식 표준 위치 체계	L 7

#### Abbreviations 약어

IRSA International Radio Sailing Association

IRSA - 국제무선세일링협회

SYRPH System for Reducing the Number of Protest Hearings

SYRPH - 항의청문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

### L.1 Introduction 머리말

Radio sailing differs from all other forms of sailing, as the crew handling the boat is not on board. Competitors and race officials stand side by side on the bank. As a result, radio sailing has developed specific rules set out in RRS Appendix E, along with practices for judges and umpires.

무선세일링은 보트를 조종하는 승정원들이 탑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모든 형태의 세일링과는 다르다. 선수와 운영요원이 독 (bank)에 나란히 선다. 그 결과, 무선세일링은 심판과 umpiering들을 위한 자료들과 함께, RRS 부칙 E에 명시된 특정한 규칙을 개발하였다.

No more than 24 boats may compete on the water at any one time. A system of

heats is used allowing events to be run with up to 84 competitors. In many cases an incident has to be resolved by the protest committee before the next heat can start, as one or more competitors involved may be scheduled to sail. Amongst other elements, these heat systems modify RRS Appendix A, Scoring. In particular, these changes introduc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oints for retiring or being disqualified.

수상에서 한 번에 25척 미만의 보트가 경기할 수 있다. 히트 시스템을 사용하여, 최대 84명의 선수가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한 명 이상의 선수가 다음 히트 일정에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히트가 스타트하기 전에 항의위원회에서 사건을 해결하여야 한다. 다른 요소들 중에서, 이러한 히트 시스템은 RRS 부칙 A <채점>을 수정한다. 특히, 이런 변경은 리타이어 또는 실격에 대한 채점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Most racing is run without umpires. However, radio sailing has developed the use of observers, who may be competitors not sailing in that heat, who hail and record contacts between boats, and between boats and marks. These reports are made available to parties to any protest hearing before the hearing opens. A party to the hearing may then choose to retire. This procedure is set out in the IRSA System for Reducing the number of Protest Hearings (SYRPH).

대부분의 경기는 umpire 없이 진행된다. 그러나, 무선세일링은 옵저버들을 이용하는 것을 발전시켰는데, 옵저버는, 그 히트에는 출전하지 않는 선수들이 맡게 될 수도 있으며, 그들은 보트들끼리의 접촉, 그리고 보트와 마크의 접촉을 소리지르고 기록한다. 이 보고서들은 청문이 열리기 전에, 모든 항의 청문 당사자들에게 공개된다. 그러면, 청문의 당사자는 보고서를 본 다음, 리타이어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 절차는 IRSA의 <항의청문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 (SYRPH)>에 정리되어 있다.

Major events, including those for which an international jury would be appointed, such as World or Continental Championships, are umpired. When racing is umpired, observers work closely with umpires. Observers will normally recognize boats rapidly and anticipate impending situations. They may also recognize slight contact more easily than an umpire. As a consequence, the building of mutual respect is vital and is key to establishing a good working relationship. Umpiring for Radio Sailing has been developed over a period of 15 years. The basic principles are now clearly established, but further development continues.

세계선수권 또는 대륙선수권대회와 같이 국제심판이 임명되는 중요 대회들은, umpire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회가 umpire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옵저버들은 umpire들과 긴밀하게 협력한다. 대체적으로 옵저버들은 보트를 빠르게 인식하고,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umpire들보다 가벼운 접촉을 더 쉽게 인식할 수 있다. 그에 따라, umpire와 옵저버 사이의 상호존중의 형성은 필수적이며, 이는 좋은 업무관계 형성의 핵심이다. 무선세일링의 umpire 방식은 15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개발되어 왔다. 기본 원칙은 이제 명확하게 확립되었지만, 그 이상의 발전이 계속되고 있다.

Procedures for umpiring are set out in the Rules for Umpired Racing. This is at present an IRSA document, but the transfer of the management of these rules to World Sailing is under way. These rules recognize that umpires cannot resolve all

incidents. If there is no decision from an umpire, then the competitor still has the right to a hearing. The current IRSA version of this document can be found at:

<https://www.radiosailing.org/documents/category/276-umpiring>

엠파이어 방식에 대한 절차는 엠파이어 방식 경기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현재 이는 IRSA 문서이지만, 이 규칙들의 관리권이 월드세일링으로 이관되고 있다. 이 규칙들은 엠파이어들이 모든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엠파이어가 즉결판결하지 않았을 경우, 선수는 여전히 청문받을 권리가 있다. 이 문서의 IRSA 최신 버전은 아래 주소에서 찾을 수 있다:

<https://www.radiosailing.org/documents/category/276-umpiring>)

(When the World Sailing version supersedes this document, it will be available on the World Sailing website.)

(월드세일링 버전이 이 문서를 대체할 경우, 월드세일링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다.)

It is intended that umpiring should modify normal procedures as little as possible. In this way, the Rules for Umpired Radio Sailing retain the use of competitor observers, who work closely with the umpires.

무선세일링 엠파이어 방식은 기존 엠파이어 방식의 절차를 최대한 적게 수정한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엠파이어 방식 무선세일링 규칙은 엠파이어와 긴밀히 협력하는 선수 옵저버의 활용을 유지한다.

Other developments include:

기타 개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n Accelerated Protest Procedure, which integrates SYRPH by providing prehearing procedures in which parties are given access to reports from umpires or observers, and offering parties the opportunity to retire, before the hearing is opened;

청문 전에, 당사자에게 엠파이어 또는 옵저버의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 사전청문 절차와 함께 리타이어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문을 시작하기 전에, 당사자가 엠파이어 또는 옵저버의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 사전 청문 절차를 가지고, 당사자에게 리타이어할 기회를 SYRPH를 통합하는 속성 항의절차;

- a Call Book which gives guidance on rules and situations specific to radio sailing. This document was initially prepared by IRSA but the transfer of the management of the Call Book to World Sailing should be completed by 2021.

무선세일링에 특화된 규칙과 상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즉결판결 지침서(Call Book). 이 문서는 IRSA에 의하여 처음 작성되었지만, 즉결심판 지침서(Call Book)의 관리권이 2021년 까지 월드세일링으로 이관될 것이다.

## L.2.1 Additions to the Notice of Race

### 대회공고 추가 사항

Radio sailing is governed by RRS Appendix E. This fact should be stated in the

notice of race, as there are many rules which are changed for this type of racing. Mention should also be made of other documents that may govern the event, including the Rules for Umpired Radio Sailing when racing is to be umpired, SYRPH and the Accelerated Protest Procedure.

IRSA has published a Notice of Race Guide.

무선세일링은 RRS 부칙 E로 통제된다. 이러한 유형의 경기에서는 변경되는 많은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한다는 것이 대회공고에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경기에서 엄파이어 방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엄파이어 방식 무선 세일링 규칙, 그 외에도 SYRPH 및 속성 항의절차를 포함하여, 대회를 통제할 수 있는 다른 문서들도 언급하여야 한다. IRSA는 대회공고 지침을 발행하였다.

## L.2.2 Additions to Sailing Instructions

### 범주지시서 추가 사항

Appendix E requires certain details to be specified in the sailing instructions, for example, whether there will be a defined control area, a defined launching area and how it may be used. In addition, the sailing instructions should set out how observers will be appointed for each heat, and any penalties for not carrying out observer duties.

IRSA has published a Sailing Instructions Guide.

부칙 E는 범주지시서에 특정 세부사항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해진 조종 구역, 정해진 진수구역 및 사용 방법이 있는지 등이다. 또한, 범주지시서는 각 히트마다 옵저버를 어떻게 임명할 것인지와 옵저버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벌칙을 명시하여야 한다. IRSA는 범주지시서 지침을 발행하였다.

## L.3 Umpiring

### 엄파이어 방식

For a major event, seven judges should be appointed. Four judges umpire each heat. The three others hear any protests as a panel under rule N1.4(b). Judges rotate between umpiring heats and hearings. In this way a member of the protest committee may have seen part of the incident. Postponing racing to hold a hearing strains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etitors and umpires. By having a panel available at all times, only hearings that could affect the composition of the next heat delay racing.

중요 대회에서는, 7명의 심판을 임명하여야 한다. 네 명의 심판들이 각 히트를 즉결판결한다. 나머지 3명은 규칙 N1.4(b)에 따른 패널로서 항의를 청문한다. 심판들은 히트가 진행되는 동안 즉결판결하는 것과 히트를 마친 후 항의 청문하는 것을 순환한다. 이런 식으로 순환할 경우, 항의위원회의 위원이 청문하는 사건의 일부를 목격하였을 수도 있다. 청문을 진행하기 위하여 다음 히트를 연기하는 것은, 선수와 심판들 사이의 관계에 부담을 준다. 패널은 언제나 청문을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다음 히트의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문의 경우에만, 경기를 지연시킬 수 있다.

It is possible to umpire a race with fewer umpires. However, the more boats an umpire is required to follow, the more incidents will go unobserved. Umpire teams work well when each umpire handles 6 boats per umpire. Each umpire works in close partnership with a competitor observer. Umpires may base their decisions on information provided by an observer, even if they themselves have not seen part or all of the incident.

더 적은 수의 umpier로 경기를 umpier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umpier가 더 많은 보트를 추적해야 할수록, 더 많은 사건들을 관찰할 수 없을 것이다. umpier 팀은 각 umpier가 6대의 보트를 처리할 때 잘 작동된다. 각 umpier는 선수 옵저버와 긴밀히 협력한다. umpier는 비록 그들 자신이 사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지 못하였더라도, 옵저버가 제공한 정보에 근거하여 즉결판결을 내릴 수 있다.

## **L.4 Equipment**

### **장비**

Little equipment is needed. Comfortable walking shoes are essential, as umpires may walk up to 15 km per day. Observers are provided with paper and a clipboard to make note of incidents. Judges should also have a means of recording incidents.

약간의 장비가 필요하다. umpier들은 하루에 15킬로미터까지 걸을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한 워킹화가 필수적이다. 옵저버에게는 사고를 기록할 수 있는 종이와 클립보드가 제공된다. 심판들 역시 사건을 기록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Signals are verbal, as the judges are very close to the competitors controlling their boats. Strong clear voice sounds must be made to ensure that all the competitors hear the umpires' hails. At some events, umpires are provided with microphones and hails are broadcast over the public-address system. At international events umpires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at many competitors will not have English as their primary language. Judges should use a minimal number of standard hails. In particular, sail numbers must be hailed, under rule E2.1(b) using single digits (e.g. 15 is one five, and not fifteen).

보트를 조종하는 선수들과 umpier가 서로 매우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별칭 신호는 구두로 한다. 모든 선수가 umpier의 소리지르기를 들을 수 있도록, 강하고 선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일부 대회에서는, umpier에게 마이크가 제공되며, umpier의 소리지르기가 확장장치를 통하여 방송된다. 국제대회에서, umpier들은 많은 선수들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umpier들은 최소한의 표준 소리지르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규칙 E2.1(b)에 따라, 세일번호는 한자리씩 소리질러야 한다 (예를 들어, 15는 '피프틴'이 아닌 '원 파이브').

## **L.5 Basic principles of Radio Sailing umpiring**

### **무선세일링 umpier 방식의 기본 원칙**

Umpires work as a team to cover the whole fleet, from the warning signal until

the last boat finishes. Umpires work in partnership with observers, one observer for each umpire. Umpires may rely on information provided by an observer when making a decision.

엠페이어들은 팀으로서, 예고신호에서 마지막 보트가 피니시할 때까지 전체 플리트를 지켜보아야 한다. 각 엠페이어당 한 명의 오퍼버를 배정하여, 오퍼버들과 협력하여 엠페이어 업무를 수행한다. 즉결판결을 내릴 때, 엠페이어들은 오퍼버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 있다.

To make a decision, umpires must follow boats before, during, and after any incident. To do this, each umpire follows a small, manageable number of boats. There will usually be an overlap between the groups of boats followed by each umpire. Each umpire can follow his boats because he relies on the other umpires to follow their allocated boats.

판결을 내리기 위하여, 엠페이어들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 도중, 그리고 발생한 후까지 계속 보트를 따라서 이동한다. 이를 위하여, 각 엠페이어는 감당할 수 있는 소수의 보트를 따라서 이동한다. 보통 각 엠페이어가 담당하는 보트 그룹 사이에 겹치는 부분이 있다. 각 엠페이어는 다른 엠페이어들이 그들 자신에게 할당된 보트들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맡은 보트들만을 따라갈 수 있다.

Umpires work to a pre-ordained plan to ensure that they concentrate on key points of the course. For example, all four umpires, with their observers, follow boats into and around the first windward mark.

코스의 핵심 포인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엠페이어들은 미리 정해진 계획에 따라 움직인다. 예를 들어, 네 명의 엠페이어 모두, 오퍼버와 함께 첫 번째 풍상마크 근처로 범주하는 보트들을 따라 이동한다.

When an observer hails 'Contact' between boats that are not in the group being followed by his umpire partner, he must assume that the umpire has not seen the incident. The umpire may request the observer to report to the pertinent umpire. The umpire will only penalize a boat if the observer provides convincing evidence that a rule has been broken.

오퍼버가 자신의 엠페이어 파트너가 관찰하는 그룹에 속하지 않은 보트 사이에 발생한 '접촉(contact)'을 소리쳤을 때, 오퍼버는 해당 엠페이어가 그 사건(접촉)을 보지 못하였다고 가정하여야 한다. 엠페이어는 오퍼버에게 해당 엠페이어에게 보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엠페이어는 오퍼버가 규칙위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경우에만, 해당 보트에 벌칙을 부과한다.

An umpire may not have sufficient information on which to base a decision. In this case, he will either remain silent or hail 'No Decision' to inform competitors. Following an observer or umpire hail of 'Contact' the incident will be reported to the race committee as an unresolved incident. When no decision is made following a valid hail of 'Protest,' the protestor may proceed with the protest after the heat. 엠페이어가 즉결판결을 내릴만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엠페이어는 침묵을 지키거나 또는 '판결 없음(No Decision)'이라고 선수들에게 소리쳐 알린다. 오퍼버 또는 엠페이어가 '접촉(contact)'이라고 소리쳤지만, 엠페이어가 침묵을 지키거나 또는 '



판결 없음(No Decision)'이라고 선수들에게 소리쳐 알렸다면, 그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사건으로 경기위원회에 보고된다. '프로테스트'라는 유효한 소리지르기에 대하여, umpire로부터 어떤 판결도 내려지지 않았을 경우, 항의자는 그 히트를 마친 다음, 그 사건에 대한 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Umpires apply the principle of last point of certainty: umpires will assume that the state of a boat, or her relationship with another boat, has not changed until they are certain that it has.

umpire들은 마지막 확실한 시점의 원칙을 적용한다: umpire들은 보트의 상태 또는 상대 보트와의 관계가 변경되었다고 확신할 때까지는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Umpires move around the control area in order to find the best viewpoint for observing their boats. This viewpoint may not be where some competitors choose to stand to control their boats. In most cases, the best view of a group of boats can be obtained by being level with leading boats, looking back.

umpire들은 그들이 담당하는 보트를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최적의 관측지점을 찾기 위하여 조종구역 주변을 움직인다. 이 관측지점은, 일부 선수들이 그들의 보트를 조종하기 위하여 서 있는 위치가 아닐 수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맡은 그룹의 선두 보트와 나란히 전진하면서, 고개를 돌려 후미 그룹을 지켜보는 것이 좋다.

Umpiring minimizes time taken for protests, and umpire procedures are designed to reduce the chance of error. Umpires will, on occasion, make errors, for which they should promptly apologize. When there is contact and neither boat takes a penalty, the umpire decides who is at fault; it is unlikely that both competitors will agree with the decision.

umpire 방식은 항의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즉결판결 절차는 오류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umpire들은 때때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즉시 사과하여야 한다. 접촉이 있었지만, 어느 보트도 벌칙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umpire는 누가 규칙을 위반하였는지 결정한다; 그렇지만, 두 선수 모두 이 판결에 동의하는 경우는 드물다.

When giving a decision the umpire may add a few words of explanation. When requested, the umpire may give a more detailed response after the end of the heat.

umpire가 즉결판결을 소리칠 때, 몇 마디 설명을 덧붙일 수도 있다. 요청이 있을 경우, umpire는 해당 히트가 끝난 후, 보다 상세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

Competitors may assist umpires when there is a protest by:

유효한 항의에서, 항의자는 아래의 예시와 같이 해서 umpire를 도와줄 수 있다:

- indicating where the incident took place;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알려줌;
- indicating why they are protesting;  
항의하는 이유를 설명함;
- acknowledging rapidly if they intend to take a penalty;

벌칙을 이행할 의사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인정함;

- taking penalties promptly;  
신속하게 벌칙을 이행함;
- indicating if they believe that an infringing boat has gained an advantage despite taking a penalty  
규칙을 위반한 보트가 벌칙을 이행하였더라도, 이득을 얻었다고 믿기 때문에 항의한다고 설명함

## L.6 Umpire positioning

### 엄파이어 위치

Umpires, accompanied by their observers, follow the plan shown in the positioning framework as they follow boats around the course. Umpires must remain within the control area which limits the movements of competitors. This ensures that umpire decisions are taken from the same viewpoint as that of the competitors handling the boats.

엄파이어들은 오퍼저버와 함께 코스를 돌 때, 이 절의 말미에 있는 엄파이어 위치 프레임워크에 표시된 계획을 따른다. 엄파이어들은 선수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조종구역 내에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엄파이어는 보트를 다루는 선수들과 동일한 관점에서 즉결판결을 내린다.

Umpires have developed, and continue to develop, a framework for umpiring positioning which allows for:

IRSA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엄파이어 위치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으며,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다:

- each umpire to follow a manageable group of boats;  
각 엄파이어가 자신이 감당할만한 보트 그룹을 따라 움직이게 한다;
- good coverage of key moments in the race;  
경기에서의 중요 순간들에 대하여 중복 관찰이 가능하도록 한다;
- reducing the movement of umpires. (This is important when the control area may be 150 metres long and umpires need to run to keep up with boats, especially on the downwind legs).  
엄파이어의 움직임을 최소화한다. (조종구역의 길이가 150미터 정도로 길고, 특히 풍하코스에서 엄파이어들이 보트를 따라잡기 위해 달려야 할 때 중요함).

The framework combines following groups of boats with observing specific zones. For instance, all four umpires cover the start, after which each umpire takes a small group of boats around the windward mark and down the first run. Two umpires then handle the passage through the gate whilst the other two follow the last boats down the run as they cross through the leaders on the beat.

이 프레임워크는 각 엄파이어가 담당할 보트 그룹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특정 구역을 연계시킨다. 예를 들어, 4명의 엄파이어 모두 스타트를 지켜보고, 풍상마크 주변에서는 작은 그룹으

로 나누어 자신에게 배정된 보트 그룹을 지켜본 다음, 첫 러닝-코스를 따라 내려간다. 그런 다음, 두 명의 ump이어는 게이트마크를 통과하는 보트들을 담당하고, 다른 두 명은 자신이 담당하는 보트 그룹을 게이트마크를 담당하는 보트들에게 넘기고, 게이트마크를 돌아 풍상으로 범주하는 선두 그룹을 담당한다.

The framework is described in a document 'Radio Controlled Umpiring Positioning Framework' that is available to competitors so that they can more easily follow umpires when appointed as observers. The document is presented on the final page of this chapter.

이 프레임워크는 선수가 오퍼버로 임명되었을 경우, ump이어를 따라서 더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제공되는 문서 '무선 조종 ump이어 방식: ump이어 위치 프레임워크'에 설명되어 있다. 이 문서는 이 절의 마지막 페이지에 있다.

## L.7 Unresolved incidents

### 해결되지 않은 사건

Incidents that are not resolved immediately are dealt with after the heat. As an alternative to the standard protest procedure, which includes a 10-minute protest time limit, judges have developed an accelerated protest procedure which does not require the protestor to lodge a written protest. Instead, having hailed 'protest' after the incident, the protestor informs an umpire of his intention to protest immediately after finishing or retiring. The umpire notes the essential details and hails all other parties to the protest. All competitors involved then recover their boats and report to the Jury Desk. The judges that are assigned to protests then apply pre-hearing procedures, and open a protest hearing if necessary. In many cases, a competitor will choose to retire rather than proceed to a hearing.

즉시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은, 해당 히트를 마치고 처리된다. 심판들은 10분의 항의마감시간이 포함된 표준 항의절차의 대안으로, 항의자가 서면 항의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속성 항의 절차를 개발하였다. 항의서를 제출하는 대신에, 사건 발생 후 '프로테스트'라고 소리친 항의자는 경기를 마치거나 또는 리타이어한 즉시 ump이어에게 항의할 의사를 알린다. ump이어는 본질적인 세부 사항들을 기록하고, 항의의 모든 다른 당사자들을 부른다. 항의에 관련된 모든 선수들은 보트를 회수하고, 항의 접수처에 보고한다. 항의에 배정된 심판들은 청문-전 절차를 적용하고, 필요하다면 항의 청문을 시작한다. 대부분의 경우, 선수는 청문을 진행하기 보다는 리타이어를 선택한다.

## L.8 Summary

### 요약

Umpired racing under the Rules for Umpired Radio Sailing works extremely well, with judges making on-the-water decisions on protests involving the rules of Part 2, and rules 31 and 42. At the same time, the system maintains the competitors' right to protest and to have a hearing for alleged breaches of all other rules.

ump이어 방식 무선세일링 규칙에 따른 ump이어 방식의 경기는 제2장의 규칙, 규칙 31과 규

칙 42와 관련된 항의에 대하여, 심판들이 수상에서 즉결판결을 내리면서 매우 잘 진행된다. 그와 동시에, 이 시스템은 다른 모든 규칙의 위반 주장에 대한 선수들의 항의와 청문을 요청할 권리를 유지한다.

The Accelerated Protest Procedure ensures fast-track hearings for incidents in which a judge's decision was not available, so that the result of each heat may be completed shortly afterwards. This procedure can be found on the Documents page of IRSA.

속성 항의절차는 엠파이어의 즉결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던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청문을 보장하여, 각 히트의 결과를 곧바로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절차는 IRSA의 <문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The speed with which radio sailing boats sail and maneuver means that incidents develop extremely rapidly. Radio sailing provides a real challenge for all race officials.

무선세일링 보트의 범주 속도와 조작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사건이 순식간에 발생한다는 것을 뜻한다. 무선세일링은 모든 운영 위원들에게 진정한 도전을 제공한다.

Radio Controlled Umpiring: A Positioning Framework

무선 조종 엠파이어 방식: 엠파이어 위치 프레임워크.

Notes:

주의:

- Each umpire takes  $\frac{1}{4}$  fleet plus 1. With 20 boat heats, umpires watch groups of 6 boats (so umpires overlap).  
각 엠파이어는 전체 플리트의  $\frac{1}{4} + 1$ 을 담당한다. 20척의 보트가 참가한 히트에서, 엠파이어는 6척의 보트 그룹을 담당한다(그래서 엠파이어들이 오버랩된다).
- If only 3 umpires, delete U4 on 1st lap and U2 for remainder. If only 2, delete U2 & U4.  
엠파이어가 3명만 있을 경우, 프레임워크의 도표에서의 1번째 랩에서는 U4를 삭제하고, 나머지 랩에서는 U2를 삭제한다. 2명만 있을 경우, U2 및 U4를 삭제한다.
- If more than 2 laps then repeat positions 6 through to 8 as many times as needed  
랩이 2바퀴 이상일 경우, 필요한 만큼 6~8번 위치를 반복한다.

Position 1: Pre-start and start

1번 위치: 프리-스타트와 스타트

U1 takes the boats nearest to the shore (near),

U2 those in the middle (middle) and U3 those furthest (far). U4 is left with the boats that are further back from the line (back).

At the start U1 will umpire the group of boats on the line nearest to the shore, U2

the group in the middle of the line and U3 the group on the line furthest from shore. U4 will take those boat in the second row at the start.

U1은 육상에 가장 가까운 보트 (가까운 쪽), U2는 중간 (중간), U3는 가장 멀리 있는 보트 (먼 쪽)를 담당한다. U4는 스타트라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뒷쪽) 보트와 함께 남겨진다. 스타트 때 스타트라인에서, U1은 육상에 가장 가까운 보트 그룹을, U2는 중간에 있는 그룹을, U3는 육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보트 그룹을 즉결판결한다. U4는 스타트라인의 두 번째 줄에 있는 보트들을 담당한다.

Position 2: The first beat

2번 위치: 첫 번째 비팅-코스

As boats leave the starting line the umpires remain in the same configuration monitoring the progress of the fleet. While umpiring their areas U1 and U2 need to think about advancing their positions ahead of U3 in preparation to take over the first and second groups respectively in preparation for the first mark rounding. U4 takes the back group for Lap 1.

보트가 스타트라인을 벗어날 때, 옴파이어들은 1번 위치와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플리트의 진행을 관찰한다. U1과 U2는 각자 자신이 맡은 구역을 즉결판결하는 동안, 첫 번째 마크 돌기에 대비하여, 각자 선두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룹을 담당할 준비를 하면서, U3보다 앞선 위치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U4는 첫 번째 랩에서 후미그룹을 맡는다.

Position 3 and 4: Rounding the windward marks

3번과 4번 위치: 풍상마크 돌기

Approaching Mark 1, U1 switches to the first group, U2 to the second and U3 to the third. U4 will remain with the last group. Umpires should be close enough so that U1 can tell U2 the last boat he is watching; likewise U2 tells U3.

As boats begin to round, all umpires advance to be level with Mark 1 to watch their boats round Marks 1 & 2, then promptly start walking downwind as their boats leave Mark 2. From P4 onwards, umpires should walk level with the leading boat of their group.

보트들이 풍상마크를 돌기위하여 접근할 때, U1은 첫 번째 그룹, U2는 두 번째 그룹, 그리고 U3은 세 번째 그룹 담당으로 전환된다. U4는 후미 그룹에 담당한다. 옴파이어들은 충분히 가까운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U1은 U2에게 자신이 관찰하는 마지막 보트를 말해주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U2도 U3에게 같은 말을 전한다.

보트가 1마크 돌기를 시작하면, 모든 옴파이어들은 마크 1과 나란히 자리를 잡고, 자기가 담당하는 보트들이 1마크와 2마크를 도는 것을 지켜본 다음, 그들이 담당하는 보트가 2마크를 돌고 풍하마크로 향할 때, 그들을 따라 움직인다. 4번 위치부터, 옴파이어들은 그들이 담당할 그룹의 선두 보트와 나란히 걸어야 한다.

Position 5: Approaching and rounding the gate As the boats do the final approach to the gate, U1 & 2 watch all boats' approach and round the Gate. U1 will usually

choose the starboard hand gate mark and U2 will pick the other one (umpires should collaborate when most boats choose one mark to make sure they can keep up with the fast pace rounding). U3 and U4 switch to take the leaders on the beat from when they pass through the running boats.

5번 위치: 게이트마크에 접근하고 돌기

보트들이 게이트마크로 접근하여 게이트마크를 돌 때, U1과 U2는 모든 보트의 게이트마크 접근과 돌기를 관찰한다. 일반적으로 U1은 오른쪽 게이트 마크를 담당하고, U2는 왼쪽 게이트마크를 담당한다 (대부분의 보트가 한쪽 게이트마크를 선택한다면, 빠르게 진행되는 게이트마크 돌기를 제대로 관찰하기 위하여 ump이어들끼리 협력하여야 한다). U3와 U4는 그들이 담당하는 보트들이 게이트마크에 가까이 접근하면, 자신들이 담당했던 보트들을 U1과 U2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비팅-코스로 범주하는 선두 보트들 담당으로 전환하여, 그 보트들을 따라 움직인다.

Position 6: The second beat As boats finish the rounding, U3 takes front far, U4 front near. U1 & U2 take the back, same side as at the leeward gate.

6번 위치: 두 번째 비팅-코스

게이트마크 돌기를 마치고 범주하는 두 번째 비팅-코스에서, U3는 선두의 먼쪽에 있는 보트들을 담당하고, U4는 선두의 가까운쪽에 있는 보트들을 담당한다. U1과 U2는 후미 그룹을 담당하는데, 풍하게이트에서 담당했던 것과 같은 쪽을 맡는다.

Position 7: The second windward rounding As boats approach to round the windward mark for the second time U3 & U4 watch the windward mark rounding. U1 watches the first group as they leave Mark 1 and round Mark 2. U2 does the same with the second group, and then U3 & U4 revert to following their groups around Marks 1 and 2. All follow their groups on the downwind leg.

7번 위치: 두 번째 풍상마크 돌기

보트들이 풍상마크를 두 번째로 돌기위하여 접근할 때, U3와 U4는 보트들의 풍상마크 돌기를 관찰한다. U1은 선두 그룹이 1마크와 2마크를 돌고 풍하마크로 향할 때, 첫 번째 그룹을 담당한다. U2는 두 번째 그룹을 담당하고, 그 다음 U3와 U4가 1마크와 2마크 주변에 있다가 후미 그룹을 담당한다. 풍하 렉에서는 자기가 맡은 그룹을 따라 움직인다.

Position 8: Second leeward gate rounding and final beat The second rounding of the leeward gate is a repetition of Position 5, but as they start the final beat if boats are well-spread, U4 takes the 1st group, U3 the 2nd, U2 the 3rd and U1 the 4th until each group finishes

8번 위치: 두 번째 풍하 게이트마크 돌기와 마지막 비팅-코스

두 번째 풍하 게이트마크 돌기는, 5번 위치의 반복이지만, 마지막 비팅-코스에서 보트들이 넓게 흩어져 있으면, U4가 선두 그룹을 담당하고, U3가 두 번째 그룹, U2가 세 번째 그룹, 그리고 U1이 네 번째 그룹을 맡아서, 각 그룹이 피니시할 때까지 담당한다.

## M Sailor Categorization World Sailing Regulation

### 선수분류 - 월드세일링 규정

Contents 목차	Page
M.1 Introduction 소개	M 1
M.2 Notice of Race/Sailing Instructions 대회공고/범주지시서	M 2
M.3 Spot Checks 임의 추출 조사	M 2
M.4 Protests 항의	M 3
M.5 Protests about Crew Limitations 승정원 제한에 대한 항의	M 4
M.6 Changes by the Categorization Commission 분류위원회에 의한 변경	M 4
M.7 Other Complaints or Information Received 접수된 기타 불만사항 또는 정보	M 4

#### M.1 Introduction

##### 소개

The World Sailing Regulation World Sailing Sailor Categorization Code provides an international system for the categorization of sailors as amateurs or professionals. This Regulation and process was renamed from 'Classification' to distinguish it from the classification system used in Para sailing.

월드세일링 규정 <월드세일링 선수분류 코드>는 선수를 아마추어 또는 프로로 분류하기 위한 국제적인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 규정과 과정은 '분류(Classification)'라는 명칭에서 변경되었는데, 장애인 세일링에서 사용하는 분류 시스템(classification system)과 구별하기 위함이다.

Categorization is based on 'financial involvement in boat racing(whether direct or indirect) and/or the use in the sailor's work of knowledge or skill capable of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a boat in a race' (Regulation World Sailing Sailor Categorization Code - Frequently Asked Questions(FAQs)). The Code categorizes competitors into two Categories: Category 1 sailors take part in racing only as a pastime, while Category 3 sailors have been paid for work or services in sailing.

선수분류는 '보트 경기에서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 재정적 연관성 그리고/또는 경기에서 보트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을 선수의 작업에 사용하는 것에 기초한다 (월드세일링 선수분류 코드 규정 자주 묻는 질문 (FAQs)). 이 선수분류 코드는 선수를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한다: 분류 1의 선수들은 단지 취미로 경기에 참가하는 반면, 분류 3의 선수들은 세일링 업무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World Sailing Regulations may be changed at any time, so checking that you are working with the latest version is essential.

월드세일링 규정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버전으로 분류 작업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vents and classes are not under an obligation to use a categorization system, but should they do so, rule 79 sets out the World Sailing Sailor Categorization Code as the only system that shall be used.

대회와 클래스협회는 선수분류 시스템을 사용할 의무가 없지만, 선수분류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규칙 79는 <월드세일링 선수분류 코드>를 유일한 시스템으로 제시한다.

If you are appointed to the protest committee of an event where categorization limitations apply, you should familiarize yourself with the requirements of categorization. A good place to start is the above-mentioned Frequently Asked Questions, which can be found on the World Sailing website, following the link from the main page on Classification (note reference to the former name of the Code):

<https://www.sailing.org/classification>

분류 제한이 적용되는 대회의 항의위원으로 위촉되었다면, 당신은 선수분류 요건을 숙지하여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자주 묻는 질문 (FAQs)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월드세일링 웹사이트에서 분류 (Classification)에 대한 링크를 따라가면 확인할 수 있다.(코드의 이전 이름 참조)

<https://www.sailing.org/classification>

The World Sailing Sailor Categorization Commission administers the system of categorization on behalf of World Sailing. The Commission has a number of responsibilities, such as:

월드세일링 선수분류 위원회는 월드세일링을 대신하여, 선수분류 시스템을 관리한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책임을 진다.

- deciding competitors' applications for categorization;  
선수분류 신청에 대한 결정;
- hearing appeals;  
상고 청문;
- liaising with classes and events; and  
클래스 협회 그리고 대회와의 연결; 그리고
- providing guidance on the application of the Categorization Code.  
분류 코드의 적용에 관한 지침 제공

This section discusses some of the situations that may affect judges at a classified event. The Categorization Commission is available to provide assistance and guidance to officials at all times and can be contacted via the World Sailing Office at [categorization@sailing.org](mailto:categorization@sailing.org).



이 절에서는 분류 제한이 적용되는 대회에서, 심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에 대하여 설명한다. 선수분류위원회(Categorization Commission)는 언제나 운영요원들에 대한 지원과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며, 월드세일링 사무국(categorization@sailing.org)을 통하여 연락할 수 있다.

At some events where the Code is being used, arrangements are made for a Categorization Commission member to be available in person or by telephone or audio or video conference. Where a referral is urgent, the Commission can usually respond to or investigate a situation within a short time, if you say the information is needed urgently.

선수분류 코드가 사용되는 일부 대회에서는, 선수분류위원회의 위원과 직접 대면 또는 전화 또는 음성 또는 화상 회의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의뢰가 긴급하고, 해당 정보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선수분류위원회에서 판단할 경우, 통상적으로 빠른 시간 이내에 대응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Categorization problems can provoke strong reactions from competitors and boat owners. Changes in categorization may require a change in a crew list close to the event, with impact on a boat's ability to train and compete. It is known for legal proceedings to be threatened and for legal representatives to contact the event organizers. In the event of such problems, it is wise to make immediate contact with the World Sailing Office and the Categorization Commission, as they have experience of similar issues and will usually be able to help.

선수분류에 대한 문제는 선수와 보트 소유자의 강한 반발을 유발할 수 있다. 선수분류의 변경은, 대회 직전에 승정원 명단을 변경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를 통해 보트의 훈련 및 경쟁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회의 조직위원회에 연락하여,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협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유사한 문제에 대한 경험이 있고, 일반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월드세일링 사무국 및 선수분류위원회에 즉시 연락하는 것이 현명하다.

## **M.2 Notice of Race and Sailing Instructions**

### **대회공고 및 범주지시서**

Where the class rules do not do so, the notice of race or sailing instructions should contain crew limitation rules which mention sailor categorization.

클래스규칙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회공고 또는 범주지시서에 선수분류를 명시한 승정원 제한 규칙이 포함되어야 한다.

For example, a boat may be limited to the number of Category 3 competitors who may be on board, or the helmsman might have to be Category 1. It is important that the requirements are drafted clearly and unambiguously.

예를 들어, 보트에 승선할 수 있는 분류 3에 해당하는 선수의 수를 제한하거나, 또는 스키피는 분류 1이어야 한다고 명시할 수 있다. 따라서, 선수분류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게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Some classes have additional requirements, such as prohibiting helmsmen who have competed in an Olympic Games or America's Cup within the last ten years. These are not categorization requirements and are permitted. It is also permitted (and recommended by World Sailing) that a class or event deems a competitor who does not hold a valid categorization to be a Category 3 competitor for the purposes of the crew limitation rules.

일부 클래스에서는 지난 10년 이내에 올림픽이나 아메리카컵에 출전한 스키퍼의 참가를 금지하는 것과 같은 추가적인 요건이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선수분류의 요건이 아니므로 허용된다. 또한, 클래스 또는 대회에서 승정원 제한 규칙의 목적을 위하여, 유효한 선수분류 증명을 보유하지 않은 선수를, 분류 3 선수로 간주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리고 월드세일링의 권고 사항이다).

However, it is not permitted to have a rule which states that a certain type of individual is or is not Category 1 or Category 3. Only World Sailing can make this decision.

그러나, 특정 유형의 개인이 분류 1 또는 분류 3 인지 아닌지를 명시하는 규칙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오직, 월드세일링만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M.3 Spot checks**

#### **임의 추출 조사 (불시점검)**

For some events, a Categorization Commission member may attend registration and conduct interviews with competitors. The Categorization Commission member has the power to change the categorization of a competitor at the event if there is a good reason to do so (e.g. if the categorization is wrong).

일부 대회에서는, 선수분류위원회의 위원이 등록에 참석하여 선수와 인터뷰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선수분류위원회의 위원은 대회에서 선수의 분류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예를 들어, 분류가 잘못된 경우).

The notice of race should state if a Categorization Commission member may be present during registration and perform spot checks. The Categorization Commission member will draw up the interview list in consultation with the event organizers or class and publish it on the official notice board. Interviews usually take place before registration closes and always before racing starts.

선수분류위원회의 위원이 등록기간 중에 참석하여 임의 추출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을 경우, 이를 대회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선수분류위원회의 위원은 조직위원회 또는 클래스협회와 협의하여, 인터뷰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식게시판에 게시한다. 인터뷰는 보통 등록 마감 전, 그리고 언제나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실시된다.

Interviews are initially conducted by the Commission member alone. If the Categorization Commission member has reason to believe that a competitor's categorization might need to be changed, the interview will be suspended, and the

competitor called back for a second interview. The second interview is then conducted in the presence of a witness, usually a member of the Jury. The role of the judge is then to take an independent note of the interview. At the end, the Categorization Commission member will announce his or her decision to the competitor.

처음 인터뷰는 선수분류위원회의 위원 단독으로 실시한다. 선수분류위원회의 위원이 선수의 분류를 변경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인터뷰는 일시 중지되고, 선수는 2차 인터뷰를 위하여 다시 호출된다. 두 번째 인터뷰는 보통 항의위원회의 위원이 그 인터뷰의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그렇게 진행될 경우, 그 심판의 역할은 독립적으로 인터뷰를 기록하는 것이다. 인터뷰를 마친 다음, 선수분류위원회의 위원은 선수에게 자신의 결정을 발표한다.

Competitors may appeal against a decision to re-categorize them, but this must be done online and this usually takes quite some time, i.e. it is extremely unlikely that any appeal would be decided in time for the start of racing. Until the appeal has been decided, the Code states that the decision of the Categorization Commission member at the event is binding. The competitor cannot request redress, as the Categorization Commission is not covered by rule 62.1(a) and there is no other redress procedure.

선수들은 자신의 재분류 결정에 불복하여 상고할 수 있지만, 이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보통은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즉, 대회가 시작되는 시간에 맞추어, 상고의 판결이 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선수분류 코드에는, 상고의 판결이 날 때까지, 대회에서 실시한 분류위원회 위원의 결정이 구속력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선수분류 위원회는 규칙 62.1(a)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구제요청 절차가 없기 때문에, 선수는 이 사안에 대한 구제를 요청할 수 없다.

## M.4 Protest

### 항의

A boat may be protested after the crew deadline (a defined term within the Categorization Code) and before the categorization protest time limit (also a defined term), or 24 hours after a changed crew list is posted, if:

다음과 같은 경우, 보트는 승정원 명단 제출 마감일 (선수분류 코드에서 정의한 기간) 이후로부터 선수분류에 대한 항의마감시간 (정의된 기간) 이전 또는 변경된 승정원 명단이 게시된 후 24시간 이내에, 항의를 받을 수 있다, 만약:

- information, which would have led to a higher categorization, was not disclosed when a competitor applied for a categorization; or  
선수가 분류를 신청할 때, 상위 분류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 a competitor has, since being categorized, engaged in activities incompatible with his categorization;  
선수가 분류된 이후, 자신의 분류와 양립할 수 없는 활동에 참여했을 경우;

and in either case, the boat would then break the crew limitations in the notice of race, sailing instructions or class rules.

위의 어느 경우든, 그 보트는 대회공고, 범주지시서 또는 클래스규칙에 대한 승정원의 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These types of protest are often complex and may require close liaison with the Categorization Commission. The protest committee will also need to consider the types of Category 3 activity, as listed in the Code, and how to best assess if a competitor falls into one of these categories.

이러한 유형의 항의는 종종 복잡하며, 선수분류 위원회와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항의위원회는 선수분류 코드에 열거된 분류 3 활동의 유형과 선수가 이러한 분류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이를 가장 잘 평가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The FAQs issued by the Categorization Commission can be helpful in assessing the different situations. See: [www.sailing.org/classification](http://www.sailing.org/classification).

선수분류 위원회가 발행한 FAQs는 다양한 상황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참조: [www.sailing.org/classification](http://www.sailing.org/classification)

As with measurement protests, where the protest committee is in doubt as to the categorization of a competitor, it may call a member of the Categorization Commission as a witness to the hearing. The member may attend by audio or video conference if not in attendance at the event. Alternatively, the protest committee may refer the facts found to the Categorization Commission to seek its opinion on them, in which case the response of the Categorization Commission then binds the protest committee.

계측에 대한 항의와 마찬가지로, 선수분류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경우, 선수분류 위원회의 위원을 청문의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 만약 선수분류 위원회의 위원이 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음성 또는 화상으로 청문에 참석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항의위원회가 판명한 사실을 선수분류 위원회가 참조하게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의위원회는 선수분류위원회의 답변에 따라야 한다.

Under the Code, which changes rule 63.3(a), the protestee is entitled, on request, to present evidence of a personal or private nature in the absence of the protestor. The protest committee must not then record that evidence in its decision. If the protest committee, on hearing the evidence, is not satisfied that it is of a personal or private nature, it must disregard the evidence unless it is offered again in the presence of the protestor.

규칙 63.3(a)를 변경하는 선수분류 코드에 따라, 개인적이고 사적인 성격의 증거에 대해서는, 피항의자가 요청하여, 항의자의 출석을 배제한 상태에서 증거를 제시할 권리가 있다. 그럴 경우, 항의위원회는 그 증거를 판결문에 기록해서는 안 된다. 증거를 들은 항의위원회가 그것이 개인적 또는 사적 성격이라고 납득하지 않을 경우, 그 증거를 항의자가 출석한 상태에서 다시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증거는 무시되어야 한다.

The penalties are set out in the Code. If the boat has not yet raced, she is not to be penalized. If she has completed a race or races, then the penalty is disqualification from each race (unless the protest arises as a result of a

mandatory protest by the race committee acting on a report from the Categorization Commission, in which case the penalty is at the discretion of the protest committee (see section M.6 below for more details).

벌칙은 선수분류 코드에 명시되어 있다. 만약 보트가 아직 경기하지 않았다면, 보트는 벌칙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보트가 하나 이상의 경기에 참가하였다면, 참가한 모든 경기에서 실격 처리된다. (다만, 그 항의가 선수분류위원회의 보고에 따른 경기위원회에 의한 의무적인 항의로 발생한 경우는 예외인데, 이런 사례에 대한 벌칙은 항의위원회의 재량에 따른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M.6절 참조)).

The protest committee has no power to change a categorization, only to determine whether it should be different. It must report its decision on a protest to the Categorization Commission, together with details of all the evidence heard by the committee (including any evidence given in private).

항의위원회는 선수분류를 바꿀 권한이 없고, 단지 선수분류가 잘못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뿐이다. 항의위원회는 그들이 들은 모든 증거 (비공개로 제시한 증거 포함)의 세부 내용과 함께, 항의에 대한 판결문을 선수분류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M.5 Protest about Crew Limitations**

### **승정원 제한에 대한 항의**

A protest under the RRS may, of course, be brought where a boat has simply not complied with the notice of race or class rules (for example by having more Category 3 sailors on board than permitted or having a crew member steer when this is not permitted). In these circumstances the protest committee will apply the normal rules regarding time limits, validity, penalties etc. to the protest. The categorization listed on the World Sailing website against the competitor is definitive in these cases.

물론, RRS에 따른 항의는 보트가 단순히 대회공고 또는 클래스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허용된 것보다 더 많은 분류3 선수를 승선시키거나 또는 그렇게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승정원이 보트를 조종하는 경우)에도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항의에서, 항의위원회는 항의마감시간, 유효성, 벌칙 등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을 적용한다. 이 경우, 월드세일링 웹사이트에 게시된, 그 선수에 대한 분류가 최종적이다.

## **M.6 Changes by the Categorization Commission**

### **선수분류위원회에 의한 변경**

If the Categorization Commission changes a competitor's categorization during an event (for example on the basis of an interview) it may backdate that change to the start of the event. If the Categorization Commission believes a boat would then break the crew limitation rules, it will report the matter to the race committee, which then must protest the boat. The penalty for a breach in this situation is at the discretion of the protest committee.

선수분류위원회가 대회 중에 선수의 분류를 변경한 경우 (예를 들어: 인터뷰에 기초하여), 그 변경을 대회 시작 날짜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보트가 승정원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선수분류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이 문제를 경기위원회에 보고하고, 경기위원회는 이에 근거하여 그 보트를 항의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의 벌칙은 항의위원회의 재량이다.

## **M.7 Other Complaints or Information Received**

### **접수된 기타 불만사항 또는 정보**

If the protest committee receives complaints or information at an event that may cast doubt on a competitor's categorization, but no protest is lodged, it should report that information in confidence to the Categorization Commission via the World Sailing Office.

한 대회에서 항의위원회가 선수의 분류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불만사항 또는 정보를 입수 하였지만 관련하여 아무런 항의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항의위원회에서는 이를 월드세일링 사무국을 통하여, 선수분류위원회에 기밀로 보고하여야 한다.



World Sailing

Official Partners



[www.sailing.org](http://www.sailing.org)

sport / nature / technology